# 목차

국제앰네스티 Amnesty International ..... 2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3

| 1강 | 차별을 다르게 생각해 보기 ..... 4
박건(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 2강 | 차별금지에서 혐오범죄가 갖는 의미 ..... 14
몽(언니네트워크)

| 3강 | 차별금지법의 쟁점, LGBT 바로알기 ..... 22
병권(동성애자인권연대)

| 4강 | 복합차별 사례를 통한 차별금지의 이해 ..... 26
진경(장애여성공감), 신기루(한국여성민우회)

| 5강 | 권력관계를 통해 한국사회의 차별보기 ..... 40
배융호(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 모둠 프로젝트 | ..... 51

가족상황 차별과 가족정책의 방향 ..... 52
우리는 노동력을 불렀다, 그런데 사람이 왔다 ..... 80
당신은 왜 동성애를 혐오하는가 ..... 86
인공임신중절 혹은 낙태에 관하여 ..... 118
장애인 접근권 ..... 148

# 국제앰네스티 Amnesty International

- 국제앰네스티는 정의와 자유, 진실과 존엄성을 침해 받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합니다.
- 국제앰네스티는 인권상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알립니다.
- 국제앰네스티는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행동하며 중대한 인권침해 상황을 중지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 국제앰네스티는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의 소중함에 대한 공감을 얻어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1976 년 노벨평화상, 1977 년 유엔인권상을 수상하였으며, 약 160 여 개국, 280 만 회원과 지지자들이 국적, 인종,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활동하는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이데올로기로부터 독립적인 단체이며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와 협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972 년에 창설되어 현재 국내 1 만 여명의 회원과 함께 양심수 석방, 고문방지, 사형제도 폐지, 여성폭력추방, 무기거래통제, 이주노동자와 난민보호, 최근에는 빈곤에 대한 인권적 접근을 시도하며 국제적 연대를 통한 인권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010 년 12 월에 발족하여, 헌법의 평등이념을 실현하는 인권기본법이자 포괄적인 차별금지를 실현하는 실체법으로써 차별에 대한 공적담론을 제시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자 노력하는 연대체입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가단체 및 개인(2011 년 1 월 5 일 발족기자회견 기준)
가족구성권연구모임,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다문화가족협회, 당사자주의가 아닌 또 다른 퀴어 활동을 위한 웹진 TQueer.com,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박건, 반차별공동행동,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인종차별반대공동행동,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인권단체연석회의,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문화실천모임 맥놀이,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신당,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교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연구집단 카이로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인권센터, 향린교회 여성인권소모임

# 1강. 모욕감과 무시로 바라보는 차별

## – 차별 피해자의 입장에서 파악한다는 것의 의미

■ 강사: 박건(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 1. 차별을 이야기한다는 것

□ 차별은 사회과학적 사유의 산물 – 보편적 시민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태동한 이후에 발명된 언어. 따라서 고정된 개념과 정의에 대한 것은 잠시 꺼두셔도 좋을 듯.
(차별의 개념은 인간을 자연적 환경에 따른 수동적 존재로 여기지 않으며 인간 사이의 차이가 사회적, 환경적 영향의 결과로 생길 수 있음을 인정함으로부터 출발. 차별의 시작은 사회적 불평등이 존재함을 전제로 함.

□ 차별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약한 수준의 정당하다고 믿는 윤리, 사회적 가치가 배경에 놓인 것.
(사례) "여자 아나운서로 성공하려면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는 성희롱 발언으로 아나운서에 대한 집단모욕죄 처벌 – 강용석의원은 개그맨 최효종을 집단모욕죄로 고소(국회의원 조롱)

- "모욕죄 – 형법 제311조에서는 모욕죄에 해당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 주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인격을 모독하는 경우에 해당

➢ 다양한 형태로 반론이 가능하겠지만, 차별의 개념으로 본다면 차별언어 자체가 태동한 배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즉 소수자의 관점과 내용으로 차별의 틀을 가져가야 하고, 기존 사회의 권력배치도에서 상위집단을 점유하고 있으며, 조롱 따위는 개소리로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해당하기는 어려운 언어라고 일반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
따라서 강용석의원의 경우 스스로 '차별받았다'고 보는 것은 단어의 과도한 착취.

□ (인종)혐오죄

- 미국에서는 소수민족, 장애인, 여성 등에 대한 모욕성 발언을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혐오성 발언이 동반된 범죄는 가중 처벌한다.
- 독일은 집단혐오죄와 유태인 학살부인죄
- 프랑스는 국적 인종 종교적 혐오발언을 처벌
- 호주의 경우, 인종혐오행위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이 보거나 듣는 곳에서 또는 일반 공중이 방문하거나 접근하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발생하여야 하고, 단순한 경멸 이상으로 불쾌하게 하고 모욕하고 굴욕감을 느끼게 하고 위협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함.

□ 혐오죄와 모욕죄의 차이

혐오죄는 모욕죄와 달리 '차별의 금지'를 목표로 삼고 있다.

1) 차별을 당하여왔던 취약계층만이 혐오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2) 사회적 약자가 당한 차별에 이용된 특정 문구만이 혐오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1]

## 2. 차별을 다르게 이해한다는 것의 의미

□ 모욕과 무시의 사례들

"엄마가 이삿짐하시니까 땀을 하루 죙일 흘리고, 이제 비도 맞고 하다보니까 쫌, 솔직히 말해서 냄새가 좀 심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깐, 그 택시 아저씨한테, 그 9단지라고 얘기했는데, 택시아저씨가 그러셨대요. 내리라고, 거지동네 안 간다고" (청소년A)

"돈이 있는 애가 절 보면서 그래요. 야 쟤 그지잖아, 쟤랑 놀지마. 이러고 나랑 놀자 PC방비 내가 내줄게. 그럼 저는 달려가서 얼굴치고 부모님 달려와서 호로새끼 니네 엄마가 없어가지고 그런 거잖아 그러고." (청소년B)

□ 반차별 공동행동에서 말하는 괴롭힘(모욕과 무시의 경험이 반영)의 입법례

괴롭힘
성별 등을 이유로 그 사람의 의사와 상관 없이
- 인간적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
-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것
-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환경과 분위기를 만드는 것
- 성적언동 등으로 불쾌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것

[1] 2010년 성 · 인종차별반대공동행동 자료집

3.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
제2조(정의)
10. "괴롭힘"이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존엄성을 해치거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을 야기하거나 적대적 · 위협적 · 모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모욕이란 무엇인가?[2]

- 모욕은 인간을 인간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 사람들을 인간이 아니라 단순한 물건이나 도구, 동물, 인간 이하 혹은 열등한 인간에 불과한 것처럼 대우하는 것이다. (137)
- 거부를 뜻하는 모욕은 가해자의 관점을 강조하는 반면 통제력의 상실을 의미하는 모욕은 모욕당하는 자의 입장을 강조한다. (131)
- 모욕에는 실존적 위협이 포함되는데, 가해자가 피해자가에게 권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며, 모욕하는 주체가 제도일 때는 이러한 강도가 더 크다. (138)

□ 모욕이나 굴욕이 왜 중요한가?

1) 모욕이나 굴욕은 무시 또는 불인정의 경험
: 한 인격체 전체의 자기 정체성을 파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특정 주체로 하여금 타인과의 완전한 상호작용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제도적이고 문화적인 차원의 문제임. 따라서 심리적인 문제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판단하여야 함.

2) 모욕과 무시의 경험을 이해한다는 것은 차별 가해자의 입장이 아니라, 차별 피해자의 입장에서 차별행위와 경험을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 경계하고 싶은 2가지

- 한방에 해결? 차별이해의 다른 방식과 내용을 고민하는 것이며, 보완적인 상태에 있다고 봐야 할 것임.
- 차별의 언어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여 현재 한국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 어려움.

[2] 마갈릿(2008), 『품위있는 사회』

# 3. 차별이해하기

□ 우리가 차별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

1) 차별상황이 발생하게 된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여성에 대한 고용차별이 발생했다고 할 때, 노동시장진입의 문제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진입에 한 여성이 도달하게 되기까지의 전 과정과 사회적 맥락을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

2) 차별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개인의 차별의 경험을 이해하는 것
'객관적' 차별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동일한 강도와 순간에 차별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며, '애매한' 차별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차별의 경험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 따라서 결과로써의 차별판단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만큼 구체적 경험을 공론화하고 사회화시키는 과정으로서의 차별경험이해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3) 차별을 이해하는 것은 차별행위의 직접적인 가해자나 범죄행위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의 피해자나 피해상황을 중심으로 이해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왜냐하면, 차별은 차별의 가해자와 차별의 피해자의 상호적 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이며, 차별경험에 대한 핵심적 이해는 차별의 가해자가 아니라 차별 피해자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판단되어지는 것이기 때문. 따라서 차별판단의 기준이 차별행위자의 특정 행위가 기준을 위반했는가 혹은 일탈했는가에 여전히 머무르는 한, 차별이 발생하는 상호관계적 맥락을 완전히 상실하게 됨과 동시에 차별 피해자의 상처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것과는 다소 거리가 먼 상태에 놓일 수 있음.

□ 인정과 차별

1) 차별이해의 방식

- 차별행위를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는 가는 차별경험을 사회적 역사적으로 맥락화시켜내어 차별해소방안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임.
-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으로 나타나는 평등권의 위반여부에 대한 심사는 차별심사와 동일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그러나 분배적 정의론에 입각한 현대의 평등주의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 차별만을 평등의 이념인 사회정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봄.
- 차별을 인정 패러다임과 연결시켜 분석하는 경우에는 차별을 경험하는 개인(혹은 집단)이 상호작용 속에서 당연히 인정받으리라고 하는 기대의 무산 및 거부로부터 발생하는 무시의 경험으로 판단함.
- 특정행위나 사건에 대한 개인의 서사구조를 통해 이해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각 개인 자신의 서사구성에 준거가 되는 특정집단의 경험이나 서사를 통해 개인의 경험을 해석. 따라서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그동안 관계 맺고 있었던 사회적 구조로부터 판단.
- 개인이나 집단이 타인과의 상호적인 관계망에서의 위치와 그것의 거부를 통해 이해

2) 차별이해의 논리(문법)

- 상호성을 요구하는 인정관계는 차별행위를 가해자의 시선이 아니라 피해자의 시선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패자'의 논리에서 출발
- 사회적 상호작용과정에서 배제된 주체들이 반작용하게 되는 동기를 상호작용의 파트너(제도나 개인, 혹은 집단)가 당연히 자신에게 가져다주리라는 긍정적 기대의 붕괴 속에서 파악하는 것이 인정관계의 출발. 따라서 차별을 경험한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고 있었던 인정의 원리와 내용을 재구성하여 차별이해에 다다르는 것이 가능함.

3) 차별해소의 전망

- 참여의 문제의식은 차별해석을 풍부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차별해소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불인정이나 오인정의 종속적 조건을 극복하고자 하는 인정패러다임의 구체적 전망에서 참여의 문제의식 찾음
- 프레이저의 참여적 등권의 문제의식은 상호작용을 가로막는 제도적 물질적 제약의 해체 및 재구성과 관련됨. 불인정은 '제도가 참여의 등권을 방해하는 문화적 규범에 따라 상호작용을 구조화할 때 발생'하며 정당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가로막는 제도적 문화적 조건의 해체와 이를 통한 등권적 참여를 요구할 수 있게 됨.

앞서 살펴보았듯이 차별이해는 독자적이거나 고정적인 기준으로부터의 일탈을 규정하는 측면으로만 규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님. 개인 혹은 특정 집단이 어떤 서사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경험을 통해 개인의 개별성이 구축되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찾고자 했던 인정의 내용을 둘러싼 해석이 차별이해의 핵심적 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 또한 인정과 분배의 관점이 서로가 서로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이해의 방법론적 완결성을 위한 재구성이라는 점, 그리고 상호대칭적 인정의 실패와 왜곡의 경험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할 때 가장 빈번하고 강력하게 만나게 되는 차별의 경험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인정 패러다임의 틀을 통한 차별해석은 경험적 해석을 풍부하게 할 수 있을 것.

## 4. 무시와 모욕의 경험의 사회제도적 형식

□ 인정의 원리의 훼손과 형성

-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초가 되는 도덕적인 제한을 폭로하여 사회적 부정의 양식과 내용을 추적하여 무시와 모욕의 경험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맥락을 추출
- 제도화된 일상질서로서의 가족, 사회, 국가의 3가지 영역으로의 구분을 통하여 사회적 상호작용의 작동원리[3]

[3] 호네트(1996), 『인정투쟁』

1) 가족/사랑-필요

- 개인의 발달사에서 개인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상호인정관계는 애정에 근거한 관계, 즉 가정적 유대(어머니와의 관계, 가족관계, 그 외 감정적 결속으로 이루어진 원초적 관계)
- 정의의 원칙으로는 필요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음. 가족에서 필요원칙은 애정에 기반하고 있지만, 가부장적 가족상황에서 가족 내 가부장적 관계의 실천은 가부장의 가족내에서 애정의 한 방식으로 이해되었음.
- 그러나 근본적으로 가족구성원의 필요는 애정에 근거하고 있었고, 이러한 것은 더 많이 요구하고 보살핌이 필요한 자에 대한 관심으로 드러남. 그러나 가족내에서 업적의 원칙이 통용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

2) 국가/평등

- 대표적 차별해석의 논리는 권리에 대한 문제제기 형식을 취함. 과거 신분제적 질서에서 각 개인에게 얼마만큼의 권리를 인정하는 가의 여부는 사회의 위계질서에서 각 개인이 어느 위치에 속하는 가에 따라서 결정됨. 이처럼 개인의 속성보다는 집단의 속성에 고착된 연결고리가 깨어지게 된 것은 사회 구성원의 일반화 가능성이 보편적 원칙으로 정립하게 된 이후.
- 더 이상 어떤 특권을 집단성이라는 질서를 통해서 특정개인에게 부여하지 못하게 되었고, 각각의 권리 인격체들은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서 법규범의 준수의 기대라는 상호성을 가지게 됨.
- 권리주체를 서로 인정한다는 것. 즉, 주체는 정당한 권리주장을 위하여 도덕적 규범에 따라 행동하는 추성적 능력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필요한 정도의 사회적 생활수준을 유지해야 함.
- 권리의 인정을 통해서 자신의 행위를 타인의 존중을 받는 자주성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과 권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능은 사회적으로 인정된 요구들을 제시할 수 있다는 뜻이며 동시에 권리주체가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

3) 회사/업적

- 인정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가치부여'의 상황. 개인들은 자신의 독자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회적인 가치부여'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짐.
- 전근대에서는 신분적 질서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근대 사회에서는 사회적 목표를 실현하는데 각 개인성의 사회적 '가치'가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개인에 대하여 주어지는 일종의 가치평가체계임.
- 근대 이후 개성화된 주체가 사회전면에 등장하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명예를 집단이나 신분이 아닌 개인에게 고착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구체적 개인은 사회적 목표를 자기실현을 통해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사회적 인정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사회적 목표를 지배하는 해석이 중요하게 됨. 따라서 이것은 해석행위를 둘러싼 문화적인 장기투쟁

□ 모욕이나 굴욕 같은 무시나 불인정의 감정은 위의 3가지 영역에서 발생하게 되는 자기실현관계를 모조리 훼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수준에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님.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완전한 상호작용이 가능할 수 있기 위한 사회적, 문화적, 제도적, 경제적 재배치가 요구됨.

# 5. 인정과 차별

□ 장점

1) 사회의 모든 성원이 타인과 동료로서 상호작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사회적 배치를 요구할 수 있게되며, 물질적 자원의 재분배와 제도화된 문화적 가치의 재의미화를 요구

- 불인정의 상황은 제도가 사회적 삶에 동료로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문화적 규범에 따라 개인 혹은 집단 간의 상호작용을 구조화할 때 발생.[4] 이런 경우 특정 문화적 규범은 해당 시기 특정 사회적 행위자의 기준을 체현하는 도구로서 기능하며, 이러한 도구기준에 적당하지 않은 것은 열등하거나, 기이한 것으로 여겨지며, 이는 사회의 일부 성원에 대한 사회적 부정의 성격을 띠게 됨. 따라서 이러한 정당한 사회의 성원으로서 동등하게 참여할 수 없게 만드는 제도화된 가치나 물질적 조건의 미비 등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뿐더러, 현재의 차별적/종속적 조건에 대한 문제제기를 비교대상자를 설정하는 것 없이 할 수 있음.

2) 무시와 모욕의 경험을 사회적/역사적 맥락에서 포착할 수 있음.
기존 분배 패러다임은 모욕이나 무시 같은 경험을 환원적 형태로 이해. 즉, 편견이나 고정관념으로부터 발생하는 차별대상자에게로 향하는 감정적 공격 정도로 이해하거나 혹은 공정하지 못한 물질적 재화의 분배로부터 발행하는 것이라는 입장.
그러나 서로와 자신들로부터 우리를 격리하는 오인정, 무시, 편견 등의 장벽을 제거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상호인정의 형태가 항상 모든 사회실재 속에서 제도화되어 있으며, 무시에 대한 경험 역시 이미 권리 부정에 대한 경험에서처럼 역사적 변화과정과 연동.

3) 집단적/개인적 정체성이 차별적 행위로부터 훼손당하는 것을 사회적 불의의 차원에서 접근가능.

- 무시에 대한 경험은 한 인격체 전체의 자기 정체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파괴적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정체성이 집단의 정체성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한, 소수집단이나 특정집단의 정체성에 대한 공격은 바로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짐. 따라서 이런 경우 주체에게 발생하는 심리적 훼손이 가능한데, 이러한 무시의 경험은
  ① 한 개인의 기본적인 자기 믿음을 파괴하는 신체적 학대에 대한 경험과 관련이 있고,
  ② 한 개인의 자기존중을 훼손하는 굴욕에 대한 경험이 있으며,

[4] Fraser(2002), 『Recognition and Difference』

③ 각 개개인이나 집단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정과 관계가 있는데, 이는 가치평가적 무시형태임.

- 이와 같은 무시의 경험은 자기결정과 자기계발을 현실화할 수 없는 장애물로 기능하며, 사회적 불의의 경험의 한 범주를 구성하며, 정체성의 문제뿐 아니라 사회적 정의의 훼손의 경험으로 재현

4) 사회적 차별받고 배제당하는 각 개인 및 집단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실현되거나 또는 실현가능해야만 한다는 사실의 중요성 각인.

- 예를 들어 업적 및 성취중심의 원리가 관철되는 영역에서의 무시의 경험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가치를 실현하는 것 혹은 각각의 상이한 가치들에 대한 배제와 억압의 경험과 연관됨. 왜냐하면 근대적 형태의 권리의 인정과는 달리 사회적 가치부여를 통해 인정하는 것은 인간의 개인적 차이를 특징짓는 특수한 속성들이기 때문.
- 따라서 특정 목표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사회적 방향틀이 특정 사회에 내제되어 있다면, 각 개인성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는 개인이 "사회적 목표를 실현하는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 평가". 이때 부여되는 개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부여의 과정과 결과는 반드시 특정 집단과 개인성의 가치를 배제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나타남. 따라서 이러한 개성의 존중과 실현은 특정 개인이 억압받지 않을 수 있는 조건임.

5) 차별행위가 상호인정 관계망을 통해서 발생한다는 것을 입증함으로부터 차별시정에 있어서 상호인정이 관계망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

- 왜냐하면 차별행위는 절대로 맥락화되지 않은 조건에서 일어나는 행위가 아님.
  예를 들면 차별의 경험으로 특정 대상에게 다가오는 수치나 모욕은 주체가 자신의 이상적 자아상에 따라 되고자 하는 어떤 인간상을 타당한 것으로 만드는 도덕적 규범을 상호작용 상대자가 훼손했기 때문에 발생.
- 이것은 타인을 그 자체로 자신과 동등한 소통관계의 상대자로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며, 그 자체가 이미 차별행위가 발생하는 전제조건임.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차별에 대한 시정은 단순하게 상황을 전환하는 것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며, 특정 상호작용 상대자의 근본적 인식전환까지를 요구할 수 있음.

## 6. 차별경험의 법제화 혹은 사회화?

□ 우리 사회내의 차별받는 집단이나 개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긍정적 사회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주객관적 조건을 마련.

- 물질적 자원의 분배는 참여자의 독립과 목소리를 보장
- 제도화된 문화적 가치는 모든 참여자에게 동등한 존경을 부여하고 사회적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
- 특히 자신이 가치가 사회적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
  자신의 가치가 사회에서 전면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믿음, 사회적 수준에서 결정된 것

이 항상 수정가능하며 오류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고통의 신념을 공유하는 것 등은 불인정의 경험이 영원히 불인정의 경험으로 남지 않으리라는 인식과정으로 전환된다는 측면에서 중요함.

□ 차별시정기구는 참여 민주주의적 담론의 토대 위에서 작동.
- 법치주의라는 틀 속에서 스스로를 가두고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폭넓은 사회적 자원과 맥락을 동원하여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적극적 전략을 구사
- 나아가 개별 차별피해자의 경험을 법의 언어와 질서로 대리적으로 구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언어로 재구성할 수 있는 소통과 참여의 구조를 발전

□ '합리적' 차별의 '합리성' 조차도 법원이나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기대지 말 것
- 그러한 판단기준이 전적으로 법관의 가치관이나 현재의 지배적인 사회통념에 의존된다는 것은 차별판단의 기준 자체가 지배적인 가치체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한계를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 의미.
- 개인 및 집단의 사회적 상호작용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차별행위를 새로운 시각으로 인식하고, 기존의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가치체계로 인하여 고통받고 상처받았던 차별피해자의 경험을 재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 가치체계나 평가체계를 극복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가치체계의 도입 그리고 전체 사회의 담론구조의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

□ 법치주의적 정당성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국가인권위의 변화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도, 인권위 내에서 조정과 중재의 역할을 새롭게 재정립하자는 시도도, 결국 차별의 피해자가 사회의 정당한 성원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제도적, 물질적, 문화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고도의 '언어의 유희'가 될 수 밖에 없음.

## [참고] 평등과의 비교

샌드라 프레드먼(2008, 인권의 대전환)은 평등의 4가지 목표를 주장.

첫째, 평등은 모든 사람의 동등한 존엄성과 가치를 증진. 이를 통해 어떤 소외집단에 속해있다는 이유로 겪게 되는 낙인, 고정관념, 모멸, 포격 등의 문제를 해결함. 성희롱, 인종차별, 노인에 대한 모욕, 학교에서 동성애자 괴롭히기 등은 모두 존엄성에 근거한 평등을 적용해야 할 사례들임.
→ 국가가 특정 개인이 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 의무 실천

둘째, 평등은 사회 내 특정 집단의 고유한 정체성을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인정하며 북돋워줘야 함
→ 인정이라는 영역의 평등은 서로 다른 정체성을 수용할 적극적 의무를 발생

셋째, 평등은 소외집단과 관련된 불이익의 사슬을 끊어야 함
→ 재분배와 관련된 적극적 의무를 설정(인정과 재분배라는 양대 목표를 통합)

예를 들어, 재분배조치가 기존의 서열적 사회지위를 강화하지 않도록 해야함(여성은 피부양자)

넷째, 모든 집단이 사회에 온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함.

→ 참여는 증진할 적극적 의무는 적극적 인권보호 의무의 핵심.

# 2 강. 차별금지에서 혐오범죄가 갖는 의미[1]

■ 강사: 몽(언니네트워크/차별금지법제정연대)[2]

한국에서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범죄들[3]이 발생한 요 며칠 사이, 차별금지법을 고민하며 중요한 주제로 모욕감, 혐오/증오와 같은 단어들을 떠올렸을 때를 다시금 생각해본다. 2007 년 '누더기 차별금지법 제정 사태' 이후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 동등한 시민으로서 대우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위해 모욕감과 혐오/증오라는 키워드로 이야기해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던 이유는, 차별현상이 가진 '역사성'과 '권력의 문제'를 드러낼 수 있는 적합한 (그렇지만 충분히 이야기되지 않은) 주제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가시적인' 혐오범죄가 실제로 등장하고 있는 최근의 가슴 아프고 분노스러운 상황을 볼 때 더욱 그렇다.

이 글에서는 혐오범죄가 어떻게 법을 통해 명문화되고 규정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한다기 보다, 혐오범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서 혐오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혐오/중오를 이야기하는 것이 차별해소와 차별감수성 증진을 위한 개입과 헌신의 실천으로 구성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

[1] 이 원고는 [반차별공동행동]이 연속 개최한 '올바른 차별금지법을 위한 쟁점포럼 – 차별금지법, 여섯 가지 이유있는 걱정' 중 2번째 쟁점포럼인 "차별금지에서 혐오범죄가 갖는 의미"에서 발표했던 '혐오/혐오범죄의 의미와 필요성 –왜 혐오를 이야기해야 하는가'이라는 발제문에 약간의 수정만 가한 것입니다. 전체적인 혐오범죄 논의를 살펴보고 싶으신 분은 [반차별공동행동]의 홈페이지(http://chachacha.jinbo.net)에서 해당 자료집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2] canicular67@gmail.com

[3] 2011년 10월과 11월 5일, 종로 3가 인근에서 게이 커플이 3명의 남성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
[참고] 김조광수, '야만의 거리, 분노하는 오늘', 한겨레, 2011년 11월 11일자.

# '왜' 혐오를 이야기해야 하는가

**혐오(嫌惡)**는 어떠한 것을 공포, 불결함 따위 때문에 기피하는 감정으로, 그 기피하는 정도가 단순히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정도가 아닌 감정을 의미한다. 혐오는 주로 미각에서 기인하고 때문에 미각과 관련 된 사건과 잘 연합 된다.

**증오(憎惡)**란 좋아하지 않는 감정 즉 반감이 강한 상태를 말한다. 특정 음식을 싫어할 때와 다른 사람을 증오하는 데 이르기까지 여러 맥락에 걸쳐 두루 나타날 수 있는 상태이다. 사람에 대한 증오의 극단적인 예로 역사상 특정 인종 집단에 대한 증오가 인종차별주의로 나타나기도 했다.…일반인들도 증오는 대체로 오래 지속된다고 보기 때문에, 일시적인 감정 상태라기보다는 태도나 개인의 기질로 여겨진다.

– 위키백과

'혐오'와 '증오'라는 용어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거의 없고 체계적으로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차별행위를 더 잘 이해하고 표현하기 위한 용어로 무엇이 더 적합한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혐오식품'이라는 말처럼 혐오가 주로 어떤 대상에 대한 호불호를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단선적이지 않고 지속성인 특성을 가지면서 가치판단을 전제한 태도와 감정을 표현하는 증오가 차별행위를 드러내기에 더 적합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기피의 '감정'이 차별행위의 중요한 요소(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기피가 특정영역에서의 배제를 가져오는 경우 등)이기도 하다는 점, 차별행위가 명확하게 행위자에게 차별로 인지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발생하고 기피가 반감을 전제하기도 한다는 점, 그리고 사회적으로 체감되는 정도가 각기 다르다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4]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차별의 원인 혹은 결과로서 혐오/증오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의미화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다.

[4] 이 글에서는 Hate Crime이 대체로 '혐오범죄'로 표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혐오'로 대표해 표기한다.

'혐오범죄' 혹은 '증오범죄'라는 용어의 적합성 측면에서, 다음 참고자료를 읽어보기를 권한다.
[참고] 가람(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활동가), '혐오범죄, 그 폭력의 구조', "한국사회, 혐오를 말하다" 특집, 세상을 두두리는 사람 49호, p.55~66.

가람은 "이 범죄유형이 기본적으로는 사회 집단 또는 정체성 등의 차별적인 위계에 의한 것으로서 비하나 멸시 등 특정 존재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것이 개입되는 권력적인 개념이라는 점, 몹시 미워한다는 증오의 감정상태에 이르지 않고서도 특정집단에 대한 범죄가 발생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혐오범죄'가 이 유형의 범죄를 보다 잘 아우를 수 있고 'hate crime'의 개념에 좀 더 가까운 용어라고 생각된다"고 말하고 있다.

정치인으로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괜찮지만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싫다

다큐멘터리 〈레즈비언 정치도전기〉, 2009
최현숙씨의 국회의원 출마에 대한 한 남성의 인터뷰

부천 중부경찰서 계남지구대 소속 경찰은 가해자인 박씨에게 "양복까지 입고 좋게 생기신 분이 왜 여기서 힘들게 사는 사람한테 그랬어요?"라고 말한 반면, 후세인에게는 "어떻게 1982 년생이 연구교수가 되냐. 정확히 무얼하는 사람이냐"고 하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결국 후세인 등은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한겨레. 2010. 07. 14. "인권위, 경찰 · 공무원에 "말조심""

사건이 있은 지 한 달 후 두 사람은 사건을 맡은 담당검사 앞에서 다시 만났다. 한 달 전 그에게 욕을 퍼붓던 사내는 자신의 실수였다며 매우 정중하고 예의바르게 그에게 사과했다. 후세인 교수 역시 사내를 처벌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지만 고소를 취하하지는 않았다.

레이디경향. 2010. 10.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첫 기소 사례 만든 보노짓 후세인 교수"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결코 혐오하지 않습니다. 유사(有史) 이래 동성애 현상이 있어온 것과 많은 동성애자들이 사회적 냉대로 고통을 겪어온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의 광고로 인해서 마음을 다친 동성애자들과 많은 관련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 동성애에 관한 많은 사실적 의문에 대해 모든 사람들을 설득할 만한 해답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굳이 답한다면 우리는 평범한 상식을 갖고 있습니다. … 무엇보다 "상식"이라는 단어조차 비상식적으로 도전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상식이 여러분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때로는 등대와 같이 갈 길을 밝혀 주고, 때로는 화로와 같이 춥고 떨리는 삶을 덥혀줄 것을 믿고 있습니다.

바른 性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2010 년 10 월 8 일,
[성명서] "오해! 우리는 결코 동성애자를 혐오하지 않습니다" 중

그 기사들이 다루고 있는 것은 특정한 사람인 한 인간의 살해가 아니라 어떤 계급에 속한 구성원의 살해였다. 나는 이것이 린치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 나는 내 앞에 서 있는 어떤 흑인을—**이** 흑인을—보지 않는다. 나는 하나의 검둥이를 본다. 혹은 아무것도 보지 않고, 흑인이 존재한다면 서 있을 그 공간에 내가 보고 싶은 것이나 보아야 할 것을 투사한다.

데릭 젠슨, 2008, 〈거짓된 진실〉

모든 발화, 모든 행위는 단순한 설명이나 묘사가 아니라 사회적 위치와 관계 위에서 이루어지는 협상적 발화와 행위라는 점에서, '혐오/증오'는 일시적이고 분절된 상황에서, 특정한 개인에게 목격되는 개별적인 감정으로서'만' 존재하지 않는다. 혐오의 중요한 특징은 타자에 대한 폭력과 분노, 기피와 반감의 감정을 관통하는 '연속성'과 '역사성', '집단(정체)성'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들이 드러날 때에 어떻게 '의도'없이 차별로 '인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별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혐오가 어떻게 특정한 집단과 이데올로기를 지속시키는 중요한 기제로 기능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

문제는 혐오를 사회문화적 맥락과 역사에 따라 집합적으로 형성되는 정치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개인의 감정적, 정서적인 것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차별의 해소와 해결방법에서 특정한 효과를 갖는다는 점이다. 혐오가 개별적인 것, 감정적인 것, 단선적인 것으로 '탈정치화' 될 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개인적인 윤리의 실천 차원(매너, 배려, 예의, 관용 등)에서 해결 가능한 것으로 대체되고, 차별을 방지하는 방식은 불쾌함이나 반감을 느끼는 개인이 그것을 불러일으키는 타인의 존재를 참거나, 용인하거나, 포용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 (참거나, 용인하거나, 포용하지 못하는 불쾌함을 느꼈을 때에는? 타자에 대한 폭력이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정당화한다.[5])

혐오가 등장하게 된 배경과 혐오의 감정을 '누가' '누구에게' 갖게 되는가를 조건 짓는 권력 관계를 배제할 때, 차별해소의 요구는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인 투쟁이 아니라 (법으로서 제정될 필요 없는) 도덕적으로 지켜야 할 어떤 원칙에 대한 요구가 된다. 2007 년 차별금지법 제정 당시 7 개의 차별사유가 삭제된 상황에 대해 수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던 이유가 7 개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차별행위를 유사한 방식으로 '뭉개려는' 의도 때문이었다는 사실은 차별금지에서 '혐오'를 어떠한 방식으로 의미화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부분 발췌

**혐오범죄의 특성: 권력과 집단의 맥락**

혐오범죄는 성폭력과 같이 언제나 권력적 맥락에서 발생한다. 또한 혐오범죄는 지위가 불균등하게 배분된 집단 사이에서 한 집단의 다른 집단에 대한 폭력과 공격, 그리고 이를 통한 '메시지 전달'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혐오범죄는 다른 범죄와 구분되는 몇 가지 특성을 가지게 된다.

첫째, 혐오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더욱 폭력적인 경향을 지닌다.
둘째, 혐오범죄의 피해자는 대체가능성이 있다.
셋째, 혐오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집단범죄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넷째, 가해자는 피해자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다섯째, 가해자의 인구학적 특성으로서 가해자는 십 대에서 이십 대 초반의 연령대에 집중되어 있고 피해자의 성별과 관계없이 거의 대부분이 남성이다.
일곱째, 피해자들은 21 세 이하의 남성에 집중되어 있다.
여섯째, 가해자는 혐오범죄집단에 소속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집단에 대해 강한 결속감과 자부심을 가진다. 이들은 상징물을 동원하여 집단성을 공유하고 권위주의를 지향한다.
여덟째, 피해자들은 다른 범죄에 비해 자긍심 · 자존감에 대한 손상을 크게 입는데, 이에 대한 방어행위로서 가해집단에 대한 증오와 적대감을 동원하기도 한다.

**피해자, 표적집단, 전체 사회에 대한 위해(危害)**

위와 같이 혐오범죄의 특성으로 인해 혐오범죄는 피해자 개인, 표적집단, 전체 사회에 대해 가중된 위해를 가하게 된다. 먼저 피해자 개인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면 혐오범죄의 피해자들은 다른 범죄의 피해자들보다

[5] 동성애차별금지법안 저지 의회선교연합은 2007년 10월 기자회견 자료에서 "차별이란 개념은 광범위한 것이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을 차별해야 하느냐 안해야 하느냐'라고 묻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차별이 적정한가?' 하고 묻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런데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은 … 어떠한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을 주어서는 안되고, 혐오와 편견을 교육내용에 포함시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혐오나 편견을 '실천'하는 것은 '해서는 안되는' 일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참거나 포용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된다.

이는 바른 性문화를 위한 국민연합이 2010년 10월 8일 "오해! 우리는 결코 동성애자를 혐오하지 않습니다"라는 성명서를 통해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결코 동성애자를 혐오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막고 동성애 확산을 저지하려는 것일 뿐이다'라는 주장이 양립 가능한 근거가 된다.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노출된다. 신체적 피해의 정도와 상관없이 극도의 모욕감을 경험하고, 그 후유증으로 우울증, 불안, 무력감, 고립감,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소수자에 대한 혐오범죄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편견과 폭력의 역사, 억눌러왔던 '열등함' 에 관한 문화적 가르침을 떠올리게 하고 범죄피해를 굴종의 표식으로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소수자가 더욱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만든다. 또 피해자는 자신을 피해자가 되게끔 만든 그 특성을 바꿀 수는 없으므로 더 큰 두려움과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폭력을 동반한 낙인찍기를 경험함으로써 자신이 실패할 것이라는 예상을 영구적으로 보유하게 되기도 한다.

또한 혐오범죄의 피해는 피해자 개인을 넘어 표적집단 전체로 확산된다. 가해자는 표적집단의 표식 자체를 노린 것이기 때문에 표적집단 내부의 다른 사람들은 피해자에 대해 동정이나 공감을 느끼는 것을 넘어, 자기 자신이 피해를 경험한 것처럼 느끼고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표적집단의 공포는 공동체로부터의 이탈, 이주 또는 고립을 추구하는 심리로 이어져 공동체가 붕괴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

가람, 2011, '혐오범죄, 그 폭력의 구조', "한국사회, 혐오를 말하다" 특집,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 49 호

## 혐오'범죄'라는 명명의 의미와 효과

혐오로 동기화된 차별에 반대하는 것이 단순히 도덕적인 요구가 아니라 사회정의와 평등에 대한 요구라는 점은 혐오'범죄'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개입, 제도적 정의의 필요성을 드러낸다. 대부분의 차별과 관련된 국제규약들은 실제로 혐오범죄에 대한 국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처벌 사례의 수치나 통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구체적인 행동프로그램을 제도로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제 20 조 2 항에서는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더반 선언문〉(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철폐를 위한 세계회의 채택 문건)은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에 대해 국가, 지역, 및 국가차원에서 예방, 교육, 보호를 위한 행동규범이나 자기규제와 같은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6] 또한 〈표현의 자유와 평등에 관한 캄덴 원칙〉에서는 '차별을 조장하거나 평등과 문화 간 이해를 해치는 발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공식적 행위 규범에 명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표현의 자유와 혐오발언에 대해서도 '차별과 적대감 또는 폭력 선동을 구성하는 혐오를 금지하는 법률'을 채택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7]

하지만 혐오범죄(Hate Crime)과 혐오발언/언론(Hate Speech) 처벌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보여주듯, 차별금지법에서 차별행위로서의 혐오를 어떻게 규정하고 처벌[8]/구제할 것인가, 그리고 그와 관련된

[6] 국가인원귀원회 번역 발간, 〈더반선언문 및 행동프로그램〉(Documents of the World Conference against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2009.

[7] 류은숙. 2009. 7. 1. "[인권문헌읽기] 표현의 자유와 평등에 관한 캄덴 원칙" . 인권오름 제159호. 〈표현의 자유와 평등에 관한 캄덴 원칙〉(The Camden Principles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Equality) 참고

[8] 여기에서의 처벌은 구체적인 법에서 형사상의 처벌이 아니라, 차별의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공적이고 제도적인 규제

국가의 책무를 어느 수준까지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존재한다. 이는 혐오가 단순히 법적 범주에서 범죄 행위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현상'으로 차별과 범죄의 정의와 경계를 지속적으로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특정한 혐오의 양상을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구분하는 것 그 자체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 차별행위로 규정되는 혐오의 양상

국제규약의 경우, 혐오가 '차별'이 아니라 단순히 '인간의 고통에 대한 예의'로 환원되지 않기 위해 기본적으로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나 폭력을 선동, 조장할 수 있는 경우(타인의 권리 뿐 아니라 존재를 심각한 수준으로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9] 이는 실제로 각 국가의 차별금지법이나 혐오관련법에서 '혐오범죄'를 어떤 방식으로 정의하고 규정하는가에서 차이를 보인다. 혐오가 표출되는 양상을 '범죄'로서 명명하는 것의 의도는 우선적으로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처벌과 구제의 필요성을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에, 이때의 혐오를 명시적인 차별행위로서 구성하는 기준은 좁고 엄격하게 구성될 수 밖에 없다.[10]

미국의 경우, 최근 혐오범죄방지법안 [11] 이 통과되면서 성정체성으로 인한 혐오범죄를 주 차원에서(혐오범죄 관련 법안이 마련된 45 개 주 중에서 성적 취향이 포함된 주는 32 개 주) 기소할 수 있었던 것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기소할 수 있도록 되었는데, 기소권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신체적 상해(bodily injury)를 입힌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 2000 년에 개정된 영국의 인종관계법(Race Relations Act)에서는 한국의 차별금지법 제정에서도 논쟁이 되었던 '괴롭힘'을 명시하면서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파괴할 목적으로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하거나, 협박(intimidate)이나 적대적(hostile)이거나, 격하(degrade)하거나 창피(humiliate)를 주거나 모욕(offensive)을 주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대부분의 공적, 사적, 그리고

---

와 조치(ex. 조정례)라는 의미로 사용했다.

[9] 〈더반선언문〉의 경우,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이와 관련된 불관용(Related Intolerance)를 각각 별도로 명기하고 있다.

[10] 아래 이어지는 국가의 법률의 경우, 개별 차별금지법이나 혐오방지법에서 다루고 있는 혐오범죄 조항을 열거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혐오범죄의 규제나 구제방법은 실제로 각 국가별 혐오범죄에 대한 사법처리나 형법상의 처벌 및 구제 이외의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운영, 구체적인 시행령, 경찰의 역할을 규율하는 법령의 유무, 혐오범죄 관련한 주 법률 및 시 조례 등과 같은 지역사회 내 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문제이다.

영국의 혐오범죄 구호단체인 Stop Hate UK는 영국에서 불법행위로 정의되는 혐오범죄 형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혐오범죄 혹은 혐오사건은 장애, 인종, 종교, 신앙 혹은 신념, 성적 지향, (트랜스젠더와 트렌스섹슈얼 혹은 을 크로스 드레싱을 즐기는 사람들이 가진) 성정체성에 대한 증오에 의해서 발생된, 누군가가 계획한(think) 어떤 행위입니다. 혐오범죄는 언어 학대, 욕설, 집단적 따돌림 혹은 괴롭힘, 때리기, 침뱉기, 누군가에게 물건을 던지는 행위를 포함하는 물리적 학대, 그리고 물건 던지기나 창문 부수기, 밖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와 같은 기물파손, 쪽지나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서 낙서나 다른 글을 남기는 것, 방화, 성폭행, 살인 등을 포함해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혐오범죄는 용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불법행위입니다."

[11] Matthew Shepard and James Byrd, Jr. Hate Crime Prevention Act. 2009년 10월 22일 상원을 통과했다.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이 모두 혐오범죄의 근거로 명시되어 있다.

임의기구가 인종차별을 하는 것을 불법화하고 있다.[12] 하지만 피부색이나 국적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는데, 피부색이나 국적이 넓은 의미의 인종이나 민족에 해당한다고 고용중재위원회가 판단할 경우에 실제 차별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본다. 호주의 인종혐오법[13]의 경우, 차별과 혐오범죄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데, 주로 공적인 영역에서의 차별행위를 규정하던 '인종차별법'(1976)의 보호범위를 확장해 '모든 상황에서 그 개인 또는 그룹을 불쾌하게 하고 모욕하고 굴욕감을 느끼게 하고 위협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고소를 허용하는 '인종혐오법'(1995)을 추가 제정했다. 이는 '혐오'라는 차별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공적영역에서 피해자를 구제하고 사회적 소수자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영역과 방법을 확장한 것이기도 하지만, 한 사회가 차별의 피해영역의 하나로서 사회적 소수자의 '감정과 상처'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논의할 수 있는 공적인 틀을 마련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 혐오로 인한 차별'인 것'과 '아닌 것'의 구분

호주의 인종차별법과 인종혐오법이 제정되는 맥락을 볼 때, 실제 제도적으로 혐오로 인한 차별행위를 형사상의 처벌이 가능한 '범죄'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를 우선 차치하고, 일상적인 삶에서 그러한 차별행위를 '범죄'라고 명명될 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고[14]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 이유는 혐오범죄가 단순히 법적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사회 현상이기도 하다는 점, 따라서 혐오, 혐오범죄, 혐오로 인한 차별행위 등 모든 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라는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사회에 '무엇이 범죄화/차별이 될 수 있는 혐오인가? 무엇이 혐오로서 '인정'되는가?'의 문제가 지배문화의 논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어떤 혐오는 종교의 문제로, 관용의 문제로, 취향의 문제로, 경제문제로 탈정치화된다. 혹은 비가시화 된다. 또 한편으로 어떤 혐오는 공통된 사회적 분노를 자아내는 비일상적이고, 일탈적이고, 특정한 개인에게 특정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끔찍한 범죄로서 탈정치화 됨으로써 비가시화 된다. 혐오가 제도적으로 차별행위로 인지되고 규제될 수 없는 상황 자체도 문제적이지만, '어떤' 혐오, '누구'에 대한 혐오가 혐오로 인정되고 무엇이 혐오로 인정되지 않는지에 대한 사회적 구분 그 자체가 갖는 의미와 효과에 대해 이야기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차별금지법이라는 제도가 담보해야 하는 혐오가 무엇이고 실천 가능한 정치적 기획이 무엇인지, 어떻게 규정하거나 규제하기 어려운 혐오의 양상을 개인의 취향, 성향, 기질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감정의 문제, 권력의 문제로 해석할 수 있는 논의구조를 만들고 인권감수성을 환기시킬 수 있는지를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12] 국가인권위원회. 2006. 〈차별판단지침에 대한 외국사례(출신국가·출신민족·인종·피부색)〉 p.44)

[13] 국가인권위원회. 2006. 〈차별판단지침에 대한 외국사례(출신국가·출신민족·인종·피부색)〉 p.110–115) 이 자료집에서는 인종혐오법(Racial Hatred Act)을 '외국인 혐오법'으로 명기하고 있으나, Racial Discrimination Act가 인종차별법으로 해석된 만큼, 인종혐오법으로 바꿔 표시하였다.

[14] ( '아웃팅은 범죄' 라는 슬로건이 성소수자 운동 진영에서 등장했을 때, 모든 맥락에서 아웃팅을 범죄화하고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제한되어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이성애중심주의가 강력한 사회에서 왜 '특정한' 아웃팅이 심각한 '범죄적' 행위로 이해되어야 하는지 그 조건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그들은 어떤 사람을 때려서 죽일 수 있었다.
그렇게 하면서도 그들은 완전히 정상이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바로 그 점이다.

- 폴란드 유대인 수용소 생존자

유머는 무기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의 무기이다.
유머는 억압받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상황에서조차 웃도록 만든다.

- 사이먼 비젠탈

# 3 강. 차별금지법의 쟁점, LGBT 바로 알기

■ 강사: 병권(동성애자인권연대)

## 동성애 혐오, 차별 조장하는 세력의 논리

우익 기독교와 재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
학력, 가족형태·가족상황,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
보호처분 전력, 성적지향' 등 7 개 영역 삭제

"동성애가 옳지 않다고 교육해도 처벌할텐가"
"동성애 차별을 형법으로 다스리면 노사갈등이 생길 것"

이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이다.

## 동성애 혐오, 차별 조장하는 세력의 논리

카트리나 참사는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동성애자들은 대체로 불쌍하다.
짧은 연애, 우울, 지속되지 못하는 관계
–김원평 부산대 물리학 교수

에이즈가 동성애자들의 병을 고쳐놓는다

동성애자들의 인권존중과 자유를 허가하더라도
국가가 앞장서 동성애를 지원하는 경우는 없다
–청소년문화사역단체 낮은울타리 신상언 대표

동성애 혐오 조장 세력의 실체

## 기독자유민주당 창당

**기독자유민주당 김충립 대표 서울시장 출마의 변 중**
둘째,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금 지난 10 년 동안 지속되었던 것과 같은 좌파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막으려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년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회가 되지 않도록 하고, 대선에서도 좌파정권이 서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기독자유민주당 당면과제 10 대 정책 중**
친북 · 종북 · 좌파 척결로 국가 정체성 확립
대학 등록금 0% 대책 강구
인터넷 아이디 실명제 도입, 휴대폰 수신자 동의법 제정
수쿠크법, 동성애법,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자연보호법 저지
대졸자에게 창업자금 대여, 청년 직업 100% 창출
세계를 이끌어 갈 새로운 정신문화 창달(국민인식 개선) 등

## 동성애 혐오, 차별 조장하는 세력의 의도는?

과거에는 '빨갱이, 좌파' 혐오를 우익 동원 이데올로기로 활용했다면 오늘날에는 이를 동성애 혐오와 연결시키면서 현대화에 성공한다.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하면 군 기강이 해이해지므로 이는 김정일의 음모'라고 말하면 상식적인 사람들은 코웃음 치지만 일부 신자들은 현대 사회 악의 한 축인 '동성애'와 '빨갱이, 좌파'를 연결시킨다. 근본주의 교회들의 '빨갱이, 좌파' 혐오 선동은 현대 사회 먹히지 않더라도 '동성애'라는 고리를 통해 진보를 공격할 근거를 찾고, 보수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 대학공간에서의 호모포비아

성소수자가 기본권을 위협을 받는 것은 아니기에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성소수자를 꺼려하는 학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소수자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기 때문에 LGBT 인권위 설립은 반사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양대 LGBT 인권위원회(준)에 딴지거는 총학생회 후보

## 무상급식에 딴지거는 세력들

꼭 읽으세요! 급해요! 곽노현교육감
〈학생인권조례안〉 통과되면
1) 미션스쿨에서 종교 교육과 채플이 선택 과목되고 전체 외부 종교 행사 못함: 미션스쿨 무너지고
2) 동성애 허용: 초중고생 동성애 충만해지고
3) 초중고생 정치활동 허용: 초중고생 정당활동 한다며 광우병 때처럼 시청 앞에 뛰어나가 시위대의 전위부대가 됩니다 교회가 깨어나 기도하고 일어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무너집니다 8/24 꼭 투표해서 곽노현 교육감 물리칩시다 이 메세지를 20 명에게 꼭 전달해주세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학생인권조례를 흔드는 세력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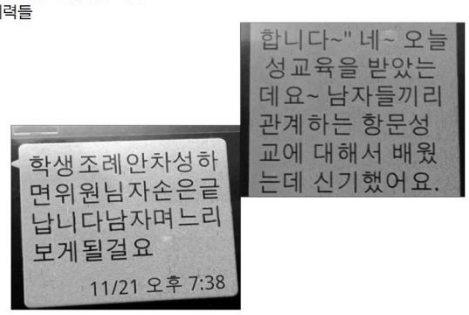

학생인권조례를 흔드는
세력들

## 동성애 혐오, 차별 조장하는 세력의 의도는?

성별 정체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란 글귀를 악용해 동성애 조장론을 주장하는 것은 병원을 신설한다고 환자를 조장한다고 말하는 격

이들은 '특정 종교 교육 강요 금지' 등이 들어간 학생인권조례안 전체를 반대하기 위해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 왜곡 선전을 하고 있다

## 2003 년 4 월 그들이 죽인 동성애자 호모포비아의 가장 큰 피해자 청소년

일선 학교에서 동성애를 비판하거나 동성애의 비윤리성을 교육하기 어려워 질 것
– 2007 년 차별금지법안 발표 당시 이를 반대한 우익들의 주장.

그러나 이런 동성애혐오로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쫓겨나고, 심지어 자살을 시도한다.

70%이상의 청소년 동성애자가 자살을 생각해본 경험이 있고, 이 중 실제 절반 가까이 자살을 시도한다. 지금도 청소년 인터넷 카페에는 자살 상담글이 끝없이 올라온다.

## 게이니까 밟아도 돼! 호모포비아의 가장 큰 피해자 청소년

청소년 동성애자인 나는 졸업앨범을 찍을 때
반 아이들의 발에 밟히며 모욕을 감수해야 했다.
나는 결국 학교를 자퇴할 수 밖에 없었다.
학교의 생활기록부에는 단지 "게이 블로그"라고만 적혀 있었다.
아무도 내가 왜 자퇴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다만 자퇴를 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2 주간 무단결석한 문제아가 되어
학교를 나와야 했다.

–2010 년 10 월 6 일 바성연
규탄기자회견에서 한 청소년 동성애자의
발언

## 국제사회의 요구

성적 취향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참조하여,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한다.
–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한국 정부의 제 7 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 권고문, 2011 년 7 월 29 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서의 차별금지에 부합하는 모든 차별사유를 명확히 규정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신속히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 최종 권고문, 2009 년 12 월 17 일

위원회는 당사국의 차별금지법안이 2007 년 12 월 국회에서 심의 없이 폐기되었던 것과, 이 법안에서 차별금지의 정의에 성적 지향과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신속히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 취약하거나 소수자로서의 상황에 처한 아동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인식개선과 공공교육캠페인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 아동권리위원회 최종권고문, 2011 년 10 월 6 일

## 거리에서 만납시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행동

12 월 10 일 OCCUPY SEOUL – 학생인권조례 캠페인
12 월 15 일 저녁 촛불 문화제 – 서울시청 별관
12 월 16 일 기자회견 및 촛불 문화제 – 서울시청 별관
12 월 19 일 기자회견 및 촛불 문화제 – 서울시의회

2012 년 1 월 14 일 LGBT 인권포럼

# 4강. 복합차별 사례를 통한 차별금지의 이해

■ 강사: 진경(장애여성공감), 신기루(한국여성민우회)

## 복잡한 차별, 낯설면서도 익숙한 이야기[1]

진경(장애여성공감)

### 1. 복합차별에 대한 논의의 시작: 이중차별에서 복합차별로

복합차별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떠오르나요? 복잡한 차별이 발생한다는 것인지 차별이 섞여있다는 것인지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복합차별은 아직까지 한국에서 낯선 개념입니다. '개별사유에 의한 차별'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자신이 가진 1 개 이상의 정체성이나 조건으로 인해 차별을 받았을 때 이런 상황을 설명할 만한 마땅한 용어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과 관련하여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는 말은 '이중차별(double discrimination)'입니다. 한국에서 이중차별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 해온 온 집단 중에 장애여성이 있는데 장애여성이 겪는 이중차별에 대한 연구가 몇 차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2] 이중차별 이라는 용어는 장애여성 운동이 본격화

[1] 이 글은 2010년 반차별공동행동의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연속 쟁점포럼' 4차 '복잡한 차별 현실, 차별금지법에 담기'에서 발제했던 글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2] 「여성장애인과 이중차별」(오혜경, 2000)「사회구조적 불평등에 기인하는 여성장애인의 이중차별에 대한 연구」(이진숙 외, 2005), 「노동시장의 여성장애인 이중차별구조」(강동욱, 2002) 등 다수의 관련 연구가 있었다.

되어가면서 좀 더 대중화되었고, 이주여성, 비정규직 여성 운동으로 퍼져나갔으며 언론에서도 취약하고 열악한 상황에 놓인 집단은 '이중차별을 경험한다'고 관용적으로 쓰게 되었습니다.[3]

하지만 정작 장애여성 운동의 일부 진영에서는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초기에 이중차별이라는 용어는 장애여성이 처한 열악한 상황을 드러내면서 운동에 효과적으로 작용한 면이 있을지 모르나, 시간이 지날수록 고정화 되어갔던 용어의 한계점과 부족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여성의 경험은 여성 의로서의 경험과 장애인 의로서의 경험의 '단순한 합'이 아니라 장애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고유의 경험임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장애여성'의 문제는 장애인이고 여성이어서 겪는 '이중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여성이 겪는 경험 자체가 '새로운' 차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성 경험에 귀 기울이는 여성주의 안에서 더 깊고 넓게 볼 수 있습니다. '장애여성'이라는 말에는 여성주의에 대한 우리의 지향이 담겨있으며 '장애를 가진 여성'이라는 ***통합된 관점***을 요구합니다. (「공감」 6 호, 2003)

그리고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차별 사례 연구를 통해 이런 용어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중차별'이라는 용어가 장애여성의 차별경험을 드러내는데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여성장애인이 겪은 차별경험 중 '이중차별'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는 과정에서 여성장애인의 차별경험은 계속 '여성으로써의 경험'과 '장애인으로써의 경험'으로 분리되었고, 이 과정에서 여성장애인의 경험은 축소되거나 왜곡되었기 때문이다. '이중차별'에 대한 개념규정이 명확히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여성이면서 장애인으로써의 이중적 위치에 있는 여성장애인의 경험은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두 가지 정체성에 의해 분리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다. (2002 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보고서 「여성장애인차별에 대한 사례연구–고등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차별을 경험한 장애여성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사례를 분석하는 작업에서 갖게 된 문제의식이기도 하며 그 당시 연구 및 자문 과정에 참여한 장애여성 활동가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 2. 복합차별에 대한 고민: 용어의 한계와 교차차별의 양상

한국에서 이중차별이 쓰이는 맥락은 그 사람이 가진 복잡한 차별의 현실을 드러내기보다는 비교 대상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음을(장애남성에 비해 장애여성이 혹은 비정규직 남성에 비해

[3] "여성비정규직 '이중차별' 에 운다"(경향신문, 2009), "결혼이주여성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궁핍한 가계를 위해 이주노동자로서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작업장에서의 국적과 성별의 이중 차별 역시 한국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실감하게 해준다" (참세상,2009)

비정규직 여성이) 강조하는 차원에 머물러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여성으로서 차별 받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으로서도 차별받고 여성으로서도 차별받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며 '이중'이라는 말 때문에 그 사람의 정체성이 두 가지로만 한정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용어의 한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유럽과 영미권에서는 multiple discrimination 이라는 용어가 보편화 되었는데 한국어로는 복합차별 혹은 다중차별로 옮길 수 있습니다. 복합차별의 양상도 무척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 교차차별(intersactional discrimination)을 복합차별의 한 가지 형태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4]

교차차별은 서로 분리될 수 없으며 연결되어 있는 두 가지 이상의 영역에서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특히, 연령과 젠더는 다른 차별과 교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백인남성은 물론이고 백인여성이나 흑인남성은 진급을 하는데 흑인여성이 진급을 하지 못할 경우 인종과 젠더가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하게 '여성이어서' 혹은 '흑인이어서'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흑인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일하던 남성 동성애자가 HIV 양성 판정을 받게 된 후에 해고를 당한 사례를 고민해봅시다. 이 역시 교차차별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럴 때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HIV 감염인에 대한 차별로 분리되거나 혹은 이 두 가지가 더해지는 차원이 아니라 'HIV 양성인 남성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5]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HIV 감염인에 대한 차별이 교차차별로 드러나는 형태는 한국에서도 혐오발언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차별에 대한 이야기 자체가 아직 풍성하지 않고, 복잡한 차별 현실을 드러낼 수 있는 용어가 아직 자리 잡지 못한 상황이라 앞으로 많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런 현실과 상황을 하나의 용어로 정리하는 것이 가능한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차별의 개념을 확장시키는 차원에서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3. 복합차별에 대한 대응: 법과 제도의 틀

유럽을 중심으로 서구에서는 2000 년대에 들어서 복합차별에 대한 담론과 관련 연구가 활발해졌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의 정체성은 단일하게 묶을 수 없게 되었고, 복합차별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은 관련 활동가, 연구자들에게 합의된 지점입니다. 특히 젠더와 연령처럼 다른 차별 사유와 접점이 많은 경우는 구체적인 상황 및 차별사례들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6]

---

[4] 「Multiple discrimination–problems compounded or solutions found?」(Gay Moon, 2006) Gay Moon은 복합차별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고 그 중의 하나를 교차차별로 설명한다.

[5] 「Multi–dimensional discrimination: Justice for the whole person」(Equality and Diversity Forum, 2008)

[6] 「Multiple discrimination in EU law」(The european network of legal experrs in the field of gender equality, 2009)는 젠더와 다른 차별 사유들이 만나는 복합차별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보여주면서 EU법과 각 국가별 법이 이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분석하고 있다. 「Age and ...multiple discrimination and older people」(Age Reference Group on Equality and human rights, 2005)는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흑인 및 소수인종이 각각 나이가 들었을 때 고용,의료,

하지만 복합차별의 해결책은 아직 뚜렷하게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라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겠지만 대개의 경우 인종, 젠더, 성적지향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법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별 사유에 의한 차별은 적용할 수 있지만 복합차별을 법적, 제도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주요 관심사입니다. 앞의 예시에서 이야기한, 진급이 되지 않는 흑인 여성의 사례에서 차별금지법을 적용해본다면 인종차별금지법에 걸릴까요, 아니면 성차별금지법에 걸리는 것일까요? 만약, 인종차별금지법만 제정되어 있는 국가라면 그 여성은 자신이 흑인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진정/고소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성차별금지법만 있는 경우라면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두 개의 개별법이 제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본인이 어떻게 그 상황을 보고 있는지는 상관없이 법률 전문가에게 두 개의 차별 사유 중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을 하나 '선택'하라고 조언을 받을 것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고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한국의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실제로 장애여성이 자신이 '장애인이어서'가 아니라 '장애를 가진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은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다 하더라도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진정을 하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들이 '왜 내가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가' 분노하고, 억울해서 싸우려고 할 때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법적인 근거와 힘이 될 수 있지만, 개별법만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복잡한 정체성과 경험은 단일화 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생각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자신이 왜 차별을 받았는지 생각하게 될 때 법과 제도는 차별의 경험을 해석하는 틀이 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 4. 복합차별을 이야기하는 것의 의미

한 사람의 정체성이 복합적이고 차별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고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실의 사례들을 보아도 차별이 인권위법에서 열거한 사유 중 하나에 명확하게 걸리는 것이 아니라 매우 복잡한 양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현실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알리기 위해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차별을 경험한 당사자들조차 스스로의 정체성을 복합적으로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소수자 운동일수록 하나의 명확한 정체성에 기반 한 경우가 많으며 복합차별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회적인 영향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법과 제도가 만들어낸 한계에 자신의 경험을 맞춰야만 하는 탓도 있습니다.

복합차별을 이야기하자는 것은 도식적으로 이 차별은 '젠더와 인종이 합쳐진 것이다' 혹은 '연령과 장애가 교차 되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분석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누가 가장 차별받는 집단인가를 따져보자는 것도 아닙니다. 차별이 복합적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한 사람의 정체성이나 경험이 분리되지 않은 채 전체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

사회적 관계들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어떻게 차별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이야기한다.

복합차별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관련 활동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주여성, 비정규직 여성의 차별 경험들을 지속적으로 알려왔던 것도 그런 맥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이 만 65 세가 넘으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이 되어서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이제한 지침을 폐지하라는 목소리도 장애 운동 안에서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장애인이었다가 하루아침에 ‘노인’으로 분류시켜버리는 제도는 ‘장애인으로 나이가 들어가는’ 정체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며 ‘장애인’ 아니면 ‘노인’으로 살아가는 한 가지 정체성만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운동의 성과로 올해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했으나 등급외 판정을 받아서 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성소수자 운동에서 10 대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차별을 이야기해온 것도 매우 의미 있는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인이 아니면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힘든 한국 사회에서 10 대 성소수자의 경험은 ‘연령에 의한 차별’과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로 분리할 경우 온전히 이해하기 힘든 것입니다.

앞으로 복합차별을 좀 더 가시화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높이는 과정이 있을 때 차별금지법 뿐만 아니라 차별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에서 새로운 시도들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차별의 현실 '잘'담아내기, 복합차별로써의 성차별

신기루(한국여성민우회)

여성주의 운동은 성차별에 대한 대응활동을 통해 한국사회의 '차별'개념을 구성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1982 년 전화교환원의 정년차별 사건[1]을 통해 최초로 차별의 의미와 개념을 구체화했고, 1987 년부터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 및 개정 활동에 개입하면서 성차별의 현실과 법 규범 사이의 간극을 오갔다. 법제화 운동을 통해 성차별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실효적인 수단을 갖추어 가는 동시에 차별의 의미와 경계를 고민하고 차별을 인식하는 관점, 차별을 규명하는 방법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은 복합차별의 개념과 논리를 성차별[2]을 중심으로 다루면서, 실재하는 차별을 어떻게 하면 보다 잘 드러낼 수 있을지, 차별을 경험하는 여성의 경험을 사회적으로 잘 소통할 수 있을지를 궁리한다.

## 1. 복합차별로서의 성차별 고찰의 필요성

### (1) '개별 사유'중심 차별인식의 한계

개인의 존재는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정체성의 집합이라 할 수 있다. 차별이 발생하는 맥락 또한 하나의 요인으로, 하나의 정체성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나, 현재까지 차별로 이슈화되고 사회적으로 인정된 사건의 경우 차별의 당사자는 총체적인 경험의 일부를 개별적 '성차별'로 편집하고 그 결과, 본질적 '여성'으로 환원된다. 차별을 인정받기 위해 단일한 여성이라는 정체성만을 부각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다양한 인종, 계급, 나이 등에 따라 질적으로 다른 여성의 경험을 개별사유인 '여성'차별로 단일화할 경우 개념의 지나친 포괄성도 문제이지만, 인종과 계급, 나이 등은 부가적인 요건이 될 뿐 복합적인 요인들의 상호작용 '결과'로서의 차별을 인지하지 못하게 된다. 정체성을 분리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본질주의의 한계는 분명해 진다.

---

[1] 1982년 체신부의 전기통신업무가 한국통신으로 이관되면서 교환직렬 직원의 정년을 43세(일반직은 55세)로 했고, 82년 12월 31일 여성교환원은 43세 정년에 달해 퇴직하게 되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상의 남녀평등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아 처분무효확인소송을 한 사건. 88년 대법원은 여성전용직종을 이유로 한 차별을 인정했다.(박주영, 2006)

[2] 복합차별에 관한 논의에서 영국과 유럽의 경우 '여성들이 복합차별의 가장 큰 희생자' 라고 서술하고 있다. ( www.edf.org.uk) 실제 복합차별이 발생하는 사례를 보면 젠더와 결합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 것을 말한다. 이 글에서 다루는 성차별은 '성별' 에 기초한 개별차별이 아닌 한 가지 이상의 차별 사유가 부가되거나, 교차하거나, 중첩되는 복합차별로서의 성차별이다.

예를 들어 흑인여성의 채용이 거부된 사건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백인 여성을 채용했다면 성차별이 아니고, 흑인남성을 채용했다면 인종차별이 아니게 된다. 나이든 여성을 해고한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로 고령 남성을 계속고용했다면 연령차별을 면하게 되고 젊은 여성을 채용했다면 성차별을 면하게 된다.[3] 이렇듯 사업주는 개별사유들의 허점들 사이로 빠져나갈 수 있게 된다.
비정규직 여성의 차별의 경우 이것은 비정규직 차별로 정의해 남성비정규직이 겪는 경험과 동일시 될 때 여성으로서의 고통과 불이익은 시정될 수 없다. 다시 이들을 여성으로 환원해 비정규직이 된 것도 결국은 여자이기 때문이라고 하면 비정규직으로서의 고용불안과 차별을 해소할 수 없다. 하나 이상의 사유들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과 그러한 상호작용을 발생시키는 구조에 대한 접근 없이, 매우 다양한 구체적 '여성'을 간과하게 된다.

### (2) '이중차별', '소수자 속의 소수자'관점의 한계

차별 사유의 중첩으로만 복합차별을 인식할 경우의 도식적으로 차별피해의 가중성만을 고려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중차별'의 피해자라는 이름붙이기는 여전히 개별사유를 세는 방식으로 차별을 인식하는 한계가 있다. 개별사유에 의한 차별인식에서 이러한 경향이 나나타나는데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복합차별을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 제 5 조(차별판단) ① 차별의 원인이 2 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본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다룰 수 있는 차별의 범위가 '장애'를 넘어설 수 없으므로 주된 사유가 '장애'여야 함은 일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주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교차적으로 결합하는 사유들은 부수적인 요인으로 위계화 되며, 문제제기를 하는 자 또는 변호사 또는 법원에 의해 차별의 현실은 파편화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고졸장애여성이 채용에서 탈락했을 경우 복합차별에 대한 개념이나 판단기준, 지침, 법리가 없는 상황에서 당사자는 학력차별, 장애차별, 성차별에 관해 각각 문제제기를 하고 대응을 해야할 것이다. 당사자의 선택에 의해 장애차별로 진정을 한다고 해도 개별법에서 다룰 수 있는 차별의 영역의 한계로 인해 총체적인 차별은 드러나지도, 해소되지도 않는다. 더구나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인과관계의 입증 등으로 차별의 인정이 어려운 한국의 현실에서 주된 사유가 장애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차별의 구제는 기대하기 어렵다. 소수자 속의 소수자 관점 또한 개별사유들을 부가해서 쌓는 방식으로 차별을 사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 중의 피해자를 가릴 필요는 없을뿐더러 가장 불쌍한 사람을 정하는 것보다는 교차적 횡단적인 차별요소들을 두루 고려해서 구체적인 차별 판단을 하는 것이 더욱 유용하다고 본다.
개별 사유별로 세부적인 차별판단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복합차별에 대한 접근 없이 개별화될 경우 본질주의의 오류, 구체적인 차별 피해의 구조 간과, 총체적 차별의 시정이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

[3] 여기에서 비교대상 자체를 단일한 정체성으로 두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된다. 백인남성이나 젊은 남성이 그 비교대상이 될 때 이들의 차별을 총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게 된다.

# 2. 사례를 통해 본 복합차별

한국에서 복합차별 사례로 가시화된 사건은 거의 없고, 성인종차별대책위원회의 활동 속에서 복합차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위원회의 활동은 논외로 하고 다음에서는 대표적인 성차별 사건에서 복합차별로 볼 수 있는 사건들을 평가하고 각 사건의 대응과정에서 드러난 쟁점을 통해 차별의 인식과 규명방법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고자 한다.

## (1) KTX 여승무원에 대한 차별

### ① 사건개요

이 사건은 여성만을 간접고용계약직으로 뽑아 외주화한 사건으로 모집채용, 고용 시 정규직과의 임금, 해고에서의 차별이 발생한 사건이다. 한국철도유통(이후 KTX 관광레저)은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로 2003. 12. 31. 위탁계약을 맺어 KTX 승무원들을 채용했다. 이들은 고객서비스 업무에 여성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승무원 모집시 지원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해 비정규직으로 채용했다. 사실상, 승무원들은 철도공사가 직접 본인들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외주화 계약에 따른 고용전환을 거부하고 2006 년 3 월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과 농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5 월 19 일 280 명의 승무원들이 정리해고를 당했다. 이 사건에서는 모집채용에서의 여성만을 분리해서 뽑아 성차별적으로 외주화 한 것이라는 쟁점이 있었고, 간접고용계약직 노동자로서 철도공사의 실질적인 사용자책임을 확인하는 불법파견 인정여부를 다투는 사용자가 누구인가라는 쟁점이 있었다.

철도공사는 여승무원 업무에 있어 신장과 나이의 제한이 업무상 필요하다는 입증이 없음에도 '서비스 업무에 적합한 용모의 여성'을 채용하도록 요구했다. 신규직원 응시자의 경우 21-25 세, 경력직 응시자의 경우 21-35 세, 용모는 신장 162cm 이상으로 제한하고 했고, 신장 170~173cm 의 경우 20 점 만점, 166~169cm 의 경우 15 점, 174~177cm 와 162~165cm 의 경우는 각 10 점이라는 면접기준이 공개됐다. 나이는 출생년도가 1982. 1. 1.~1983. 12. 31.의 경우 10 점 만점, 1980. 1. 1.~1981. 12. 31.의 경우 7 점이 부여되었다. 이러한 채용 및 심사기준의 결정에 철도공사는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고, 철도공사 간부들은 면접과정에도 참여, 100 점 중 65 점에 달하는 용모, 태도 등의 항목에 대한 평가를 담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4] 이를 근거로 2006 년 9 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사건을 '성차별'사건으로 판단하며 여승무원들에 대한 성차별적 외주화를 중단하라는 결정을 했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이를 시정하지 않았고 민사소송을 통해 철도공사를 차별의 행위자이자 시정의무자로서 실질 사용자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진행했다. 2010 년 8 월 26 일 서울중앙지법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인 승무원들에 대한 승소 판결을 했다.[5]

---

[4] (국가인권위, 2006)

[5]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최승욱 부장판사)는 26일 코레일의 자회사인 철도유통에서 해고된 KTX 여승무원 오모씨 등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2008가합118219)에서 원고승소 판결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고된 여승무원들이 KTX 승객서비스 업무를 위탁받은 철도유통에 채용돼 노무를 제공한 외관을 갖

### ② 차별 판단 쟁점

❍ 성별 분리채용, 여성직군 외주화는 성차별이다.

KTX 여승무원은 방송시스템 취급, 승강문 취급 및 이례적인 사항 발생시 조치 등 고속열차 승무업무의 본질적인 업무 대부분을 수행하였으며, 열차승무 업무는 성별을 진정직업자격[6]으로 하거나 성별이 필수적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는 여승무원이 고객서비스 업무만을 담당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그 어떤 경우든 여성을 특정하여 분리 채용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고객서비스를 부가가치가 낮은 단순.반복적인 업무로 보아 이를 여성들에게 전담시키기 위하여 분리채용한 것은 성차별적 편견에 근거한 차별행위라고 보았다.[7]
한국철도공사는 의도적으로 젊은 여성노동자들의 성별화된 서비스를 목적으로 젊고 예쁜 여성들을 채용함으로써 이 여성들을 통해 공사의 상품과 서비스를 홍보하고자하는 전략에서 젊은 여성노동자들이 '상품화'한 것일 수도 있다.[8] 철도공사는 고객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철도공사의 사업중 공사의 사업의 핵심적인 업무에서 주로 여성노동자들에 의해 수행되어왔던 '서비스' 부분을 '주변업무'로 분리해 내면서 여성노동력을 저임금 단기노동자화 하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 외주화는 중립적인 기준이지만 여성들만 해고된 것은 간접차별

직무를 기준으로 한 외주화는 중립적 조건 기준을 충족하는데 간점차별의 판단기준에 의해 '직무'라는 외주화 기준은 성별에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하도록 했을지라도 직접적으로 차별적인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그 조건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성차별적 고정관념이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외주화 조건에 의해 불리한 대우를 받은 사람이 100% 여성이다. 간접고용형태의 승무업무에 남성비율이 현저하게 낮다는 사실(당시 0%), 그리고 정규직 승무원(열차팀장)의 3.5%만이 여성이라는 사실은 이 사건을 여성에 대한 간접차별로 볼 수 있다.[9] 조순경은 공사측이 차별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여승무원업무의 외주화의 필요성 외주위탁업무를 선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이 사업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외주화하지 않으면 사업수행이 근본적으로 어렵다거나 외주화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이 사건은 고용형태에 의한 간접적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본다.

---

추고 있지만 철도유통은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코레일의 일개 사업부서로 기능하거나 노무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고 오히려 코레일이 채용과정부터 임금수준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을 정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직접 피고가 원고들을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했다" 고 밝혔다. (2010.8.26.서울신문)

[6]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격이나 요건(BFOQ Bona Fide Occupational Qualification)

[7]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단체, 차별연구회(2006)

[8] 최혜영(2008), '여성노동자의 집단행동과 임파워먼트'

[9] 조순경(2006), 'KTX 여성승무원 간접고용과 철도공사에 의한 간접차별' 「KTX 여승무원 직접고용, 왜 필요한가?」

❍ 외모, 신체조건, 나이, 고용형태, 성별로 인한 복합차별

이 사건은 모집, 채용단계에서 특정한 나이와 키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하였으므로 키 작은 여성, 나이가 많은 여성이 채용에 탈락하는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이는 복합차별로 볼 수 있다. 채용 이후에는 승무원들은 철도공사에 직접고용된 정규직 남성팀장과 비교하여 열차운행에 필수적인 업무인 안전업무를 수행하면서 고객서비스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정규직남성과의 임금 차별이 존재한다. 외주화로 인한 해고는 대상선정에서 차별이 발생해, 채용에서 외주화까지의 전 단계에서 차별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KTX 여승무원에 대한 분리채용, 외주화는 외모, 신체조건, 나이, 고용형태, 성별로 인한 복합적인 차별인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경우 국가인권위의 '성차별' 판단에 대한 사업주의 회피를 방어할 수 있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KTX 는 여승무원을 성별 분리채용하고 불리한 고용조건을 형성한 것은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결정하면서 공사 사장에게 "여승무원들의 노동에 대하여 정당한 고용조건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성차별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10] 그러나 철도 공사측은 KTX 의 승무원직에 남성을 몇 명 채용했다는 것을 이유로 성차별이 이미 개선되었다고 주장하며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차별만으로 이 사건을 판단했을 때 남성을 채용했다는 것이 차별해소의 수단이 되어 성차별 결정의 실효성, 차별을 시정할 수 없다. 나이어린 간접고용기간제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로 판단했을 때 차별의 시정은 나이든 직접고용정규직남성과 비교하여 채용, 임금, 고용보장에서의 차별대우, 불리한 효과를 제거했을 때에 가능하다.
또한, 차별의 존부는 동일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는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 사건의 민사소송 확정결과에서와 같이, 간접고용이라 할지라도 실질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업주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 수 있다.[11]

## (2) 한국전기공사협회 조기직급정년 차별

### ① 사건개요

이 사건은 한국전기공사협회의 직급정년에 의해 40 세에 정년퇴직을 하게 된 여성노동자가 협회의 직급정년제는 성차별에 해당하고 따라서 정년퇴직은 무효하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J 씨는 1985. 12. 5.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입사할 당시 6 직급으로 배치되었는데 남성은 5 직급에 채용됐다. 협회는 입사 후 곧바로 전원 여성으로 구성된 6 직급을 신설하고 이 직급은 승진이 불가능한 상용직제로 재편하여 10 년 동안 해당직급 여성들을 묶어두었다. 그 후, 1996. 11. 15. 여성들의 상용직 직제를 폐지하면서 6 직급 여성들을 다시 종전 행정직 6 직급으로 환원했다. 결과적으로 J 씨는 남성이

[10] 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 등은 이행강제금 등 처벌효과가 없어 사실상 사측이 해당 권고를 거부할 경우 뾰족한 대안이 없다.
[11] 원고측을 대리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정부의 경영합리화 요구에 따라 경상비 절감을 위해 자회사를 통한 외주화라는 탈법적인 고용행태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 이라며 불법파견에서 원청사업주의 책임을 인정하는 사례로서 의미에 평가의 비중을 더하고 있다.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입사 후 처음 배치되는 5 직급으로 승진하기까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15 년이 걸린다.
한국전기공사협회는 "5~6 직급 40 세, 4 직급 45 세, 3 직급 50 세, 2 직급 55 세, 1 직급 60 세"라는 직급별 정년규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국전기공사협회의 정년규정은 이미 산업자원부의 감사를 통해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타 유사기관보다 심각하게 불합리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특히 그 불합리한 정년규정의 피해는 채용시부터 누적되어 온 성차별로 승진이 지체된 여성노동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2006, 한국여성민우회). J 씨는 5 직급 40 세에 정년제에 의해 원하지 않는 사직을 하게 되고 법적대응을 하게 된다. 이후 고등법원에서 처음으로 차별을 인정받은 이후 2006 년 대법원에서 차별을 인정받고 원직에 복직했다. 대법원은 사업장에서 여성만 존재하는 6 직급을 10 여 년간 승진이 제한되는 상용직으로 직제변경하고, 15 년 만에 5 직급으로 승진하여 40 세 정년으로 퇴직한 것은 '결과적으로 여성근로자인 원고의 승진 및 정년을 차별'한 것이라고 하여 부당해고를 인정했다(2006 두 347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그러나 대법원의 부당해고 인정 판결 이후 2006. 8. 한국전기공사협회에 4 직급으로 복직하였으나, 복직한 지 4 개월 만에 한국전기공사협회는 또다시 "4 직급은 45 세 정년"이라는 규정을 들어 다시 해고했다.
이 사건에서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직급정년제도에서 직접적인 성차별을 하거나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성차별적인 채용과 승진지체를 통해 여성노동자는 조기에 퇴직을 할 수밖에 없도록 정년규정을 설정하고 있다. 즉, 남성은 4 직급으로 평균 3 년여, 여성은 5 직급까지 15 년의 기간이 소요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4 직급의 45 세 정년으로 인한 피해는 여성에게 돌아가도록 있어 결과적인 성차별에 해당한다.

### ② 차별 판단 쟁점

❍ 간접차별의 시정방법과 연령차별

이 사건은 성별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보이는 직급정년 제도에 대한 시정 없이는 개인에 대한 보상만으로 차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승진차별로 인한 불이익을 인정하지 않은 행정법원 판결에서는 직급별차등정년제가 차별에 영향을 주었음을 언급하지 않는다.

> 여러 사정과 함께 참가인협회의 고용비용증가와 이에 상응한 생산성 저하, 담당인력의 고령화방지와 신진대사 촉진의 필요성을 고려한다면, 참가인 협회에 있어 취업규정상 5,6 직급의 정년이 4 직급과 비교하여 5 년간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근로자의 신진대사 촉진과 젊은 층의 취업기회 보장 및 연령구성상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한 취지로서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성질, 내용, 근무형태 인정구성의 조화, 협회의 특수성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한 것라는 점에서 이러한 참가인 협회의 직급별 차등정년제가 남녀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서울행정법원.2004.4.16.선고 2002 구합 39750 판결)

직급과 정년간의 합리적 연관성, 업무의 필요성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직급정년제는 성차별의 원인이 되는 '중립적으로 보이는'제도이기도 하지만 이 제도 자체는 나이를 위계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12] 그러나 아직까지 법원은 직급정년 자체의 부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연령차별금지법 상에서도 정년은 연령의 차별로 보지 않는다.

> 원래 정년제도는 근로자자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그의 능력이나 의사에 상관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로서, 이는 종신고용제하의 연공급을 전제로 하는 노무관리상 업무의 성질이나 내용에 걸맞지 아니하는 고임금, 고연령 근로자를 배제하고 인사의 신진대사를 제도적으로 확보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고, 젊은 근로자가 상위 직급을 맡는 경우 조직의 위계질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할 것이므로 참가인 협회의 취업규칙의 정년에 관한 규정 중 하위직급일수록 조기에 정년이 도래하도록 규정한 부분 자체는 여성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 (서울고등법원 2006.1.12.선고 2004누8851 판결)

회사측은 법원의 판결을 이렇게 적용하면서 제도 자체의 차별성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을 인용해 하위직급의 조기정년 규정은 성차별로 볼 수 없으며, 단지 승진에 있어서만 차별을 인정한 것이라며 직급정년제를 종전대로 유지한다. 이에 따라 결국, 사건 당사자는 5 급에서 4 급으로 승급해서 발령을 냈으나 4 직급 정년 45 세에 적용되어 또다시 해고되기에 이른다.

❍ 복합차별 적용 가능성

이 사건의 경우 정체성의 차원에서 하위직급에 포함된 여성의 차별이 존재하지만 차별 상황에 대한 중첩 또한 발생한다. 성차별을 시정한다고 해도 연령차별이 해소되지 않으므로 연령별 직급정년제 자체의 차별성은 간과하게 된다. 직급정년제도에 의한 간접차별을 해소하여 직급에 성별이 고르게 분포한다고 해도 특정한 연령에 이르러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직에 이르게 되므로 여전히 차별이 존속하게 된다.

### (3) 기타 상담사례

유럽의 경우 성별과 결합해 다양한 요소의 교차성을 드러내는 복합차별의 사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유럽의 경우 젠더와 인종의 혼합이 가장 빈번하며 젠더와 가족상태 및 상황, 고용형태의 결합이 그 다음으로 빈번하게 나타나고 이어서 나이와 젠더, 젠더와 고용상의 지위로 드러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 예로 아시아 여성을 성매매 여성이라고 생각해 호텔 숙박거부를 한 사례, 넓은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에 대해 도둑질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해 매장 입장을 거부한 사례 (노르웨이), 덴마크 백화점에서 히잡 쓴 여성이라서 해고된 사례[13]를 들고 있다.

---

[12]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정년제가 연령차별에 해당하느냐의 논의가 있었지만, 전통적으로 법원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유효하게 정년제를 규정하고 정년에 도달함을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로서 그 정년연령이 사회적 합리성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정형옥, 2008)

[13] Multiple discrimination in EU Law

보다 일상적인 차원에서 한국의 복합차별 현실을 고민하기 위한 사례를 살펴보았다. 〈사례 1〉의 경우 흔히 접하는 모집, 채용 광고에서의 차별을 보여준다. 40 세 이상으로 연령을 특정하고 성별에 따른 용모기준의 설정 및 종교에 대한 차별도 드러난다. 40 세 미만의 정상성의 틀에서 벗어난 용모를 가진 비기독교인은 이 공고에서 복합적인 차별을 경험하게 된다.

〈사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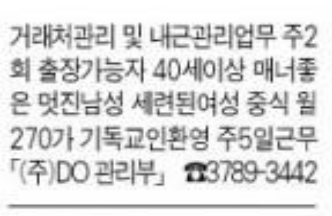
거래처관리 및 내근관리업무 주2회 출장가능자 40세이상 매너좋은 멋진남성 세련된여성 중식 월270가 기독교인환영 주5일근무 「(주)DO 관리부」 ☎3789-3442

〈사례 2〉는 학력, 고용형태, 혼인상태 등에 따른 복합적인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례 3〉 또한 파견직, 비조합원, 성희롱 요구를 거부하면서 구성되는 여성의 복합적인 차별조건을 알 수 있다.

〈사례 2〉

저는 1986 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취직을 하여 이십년이 넘게 근무하고 있는 40 대 직장여성**입니다. 시골출신이 도시에 와서 대기업에 다니는 게 너무 좋았고 어려운 가족들 도울 수 있어서 돈 버는 재미로 회사에 다녔습니다. 하지만 생소한 비정규직이라는 단어가 생기면서 2003 년 6 월 저희 회사도 **고졸여사원을 대상으로 아웃소싱이 됐습니다. 사무실에 근무하는 고졸 여사원은 모두 대상이 되었고 당시 대리 직급인 강요에 의해서 퇴직원을 쓰고** 아웃소싱된 회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비정규직 기간 제한 때문에 2005 년 6 월에 다시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전원 채용을 하였고 비정규직 법안으로 시끌시끌했던 2006 년에 또다시 업무에 따라서 3 등급으로 나눠서 1 등급은 사무지원 2,3 등급은 계약직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부서 특징, 업무중요도에 따라서 인사, 회계, 구매, 기획은 사무지원이란 직급을 만들어서 운영 하고 나머지는 계약직으로 계속 유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아서 인지 저한테 퇴사를 시키라는 말이 인사에서 있었나 봅니다.
부서장은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서 어떻게 할 거냐? **여자가 결혼 안하면 퇴사해야 한다. 똥똥하다 관리 좀 해라 등의 온갖 말을 하면서 퇴사를 강요 했습니다.** 우리 직급은 승진급에 관련이 없어서 저도 더 다녀야할 입장이라 아무 말도 못하고 다녀야 했구요.(승진은 없고 연수에 따라서 호칭만 사원,대리,과장) 퇴사 강요를 받고 내가 반응이 없자 2006 년에 고과를 낮게 주고 2007 년에는 최하위 점수인 D 등급을 주었습니다. 인사에서도 면담 요청이 오더군요. 고과가 낮다 그럼 퇴사해야 한다고요. 회사 인사기준에 2 년 연속 D 등급을 받거나 3 년 평균 C 등급이면 퇴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거 차별 아닌가요. 처음에 회사다닐 때는 결혼 하면 퇴사해야 한다고 해서 결혼도 뒷전으로 미뤘는데...(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2009.02.10.)

〈사례 3〉

파견직으로 사무보조로 입사해서 1 년 넘게 일했고 총무, 임원비서를 맡았다. 12 월말부터 과장의 지속적인 **성희롱 요구를 거부했더니 해고를 당했다. 부장이 '여자' 라는 이유로 나나 다른 여직원들한테 기대하는 역할이 있다. 음담패설은 기본이고 여사원을 '아가씨' 라고 부른다.** 외모로 평가하는 것은 일상화 돼 있고 남자친구가 있냐고 물어보기도 한다. 내가 이건 성희롱이다라고 문제제기 한 적도 있지만 시정이 안 됐다. 각 부서에 한두명 씩 파견여사원이 있는데 이 파견직 여성들한테 안마를 요구하기도 하고 여자로서의 서비스를 기대하는 것이다. 불경기에 일자리를 잃을까봐 두려워 수당 없이 시간외 근무를 하고 밤 11 시까지 남아서 일을 마무리하고 가고 그랬다. '여자' 역할도 하느라고, 사무시간에 빵도 사다주고 술도 마셔주고 노력하는 시늉을 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이 통하지 않았고 성희롱한 과장이 결제도 안 받고 폭언을 했다. 결제판을 던지기도

했다. 그래도 내발로 안 나가니까 여사원들이 왕따를 하도록 만들었다. 8 월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부서로 강제발령을 냈다. 같은 동료니까 여사원들은 용서도 해보고 노조도 찾아가 봤다. **노조는 여성 대표도 없고 비정규직은 가입도 안 되는 곳이다.** 노조에서는 과장을 제지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당장 도움을 주기는 어렵다고 했다. 나는 정신적으로 공황상태였고 이런 압력을 인정할 수도 없었다. 이대대로 나갈 수 없다는 마음으로 계약기간이 5-6 개월 남은 상태를 버텼다. 노동청에 문의했더니 비정규직으로 계약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도와줄 수 없단다. 직장내 성폭력, 회사에서의 따돌림, 집단적 모함에 시달렸는데도 증거가 없고 녹음도 없다. 여직원들의 따돌림은 점점 더 심해졌다. 비아냥거리고 어깨를 치면서 "너 안 나가냐?"이런다. 술도 마셔보고 나도 비정규직이라며 설득도 해봤지만 통하지 않았다.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2009.2.23.)

# 3. 나가며

## (1) 복합차별 개념 도입의 필요성

하나이상의 사유로 인해 차별을 받았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 현재 국내 법 하에서 그 들의 정체성 중의 하나의 측면만으로 경험의 전체를 적절히 설명할 수 없다. 차별의 요소 각각이 분리할 수 없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할 때 이것들을 분리해서 분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가능한 차별의 모든 범위를 보여주고자 할 때 복합차별은 유효하다. 경험의 실제를 인식하고 차별개념을 풍부화 하는 데 이 개념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차별개념에 대한 공적인 인식틀을 제공한다는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법제화의 오류중의 하나는 차별행위만을 주목하는 단면성에 있다. 차별사안이 수면위로 드러나기 전 그 사건의 발생에 영향을 준 요소들을 연속적으로 종단, 횡단에 걸쳐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별 차별법이 사유별로 차별을 심화, 구체화하는 데 기여한다면 복합차별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내에 위치하면서 현실의 차별을 충분히 드러내고, 당사자의 언어를 풍부화하며, 차별의 실질적인 해소에 유용하다고 본다.

## (2) 차별시정기구에 대하여

2005 년 6 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부, 노동부 등에 흩어져있던 차별사안을 일원화여 차별시정업무를 통합했다. 차별시정업무 일원화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는 '복합차별'을 다루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들었다. 그러나 실제 사건판단과 운영에서 개별사유별로 사건을 해석하고 판단하면서'복합차별'에 대한 판단은 사실상 부재하다. 따라서 차별을 판단하고 규명하는 주체 중의 하나가 될 시정기관은 복합차별을 판단지침으로서 견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차별 행위자에 대해서는 복합차별이 정하고 있는 차별의 실질적 해소가 가능한 비교대상자의 설정 및 사용자의 차별하려는 의도 없음 또는 보다 좋은 것(인사적 편의, 선호)에 대한 불인정 등의 원칙으로 보다 엄격하게 작동할 필요가 있다.

# 5강. 대담:권력관계를 통해 한국사회의 차별 보기

## ■ 배융호(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박진옥(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단체의 의미와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장애물이 없다'는 '누구나 상관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구요, '생활환경'에서 환경은 '생태환경'과 '생활환경'으로 나뉩니다. 생태환경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녹색운동이고 생활환경은 도시, 건물, 교통 이런 것입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는 '장애, 비장애, 연령, 성별 등 누구나 쉽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자'라는 의미이며, 시민운동을 통해 이를 실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여기 지하2층까지 들어오는데 수직형 리프트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었으면 저는 오늘 여기에 내려오지 못 했을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휠체어를 들어서 내려올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인간다운 방법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다 혼자 힘으로 도움받지 않고 내려오지요? 저는 도움을 받아야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은 제가 여기를 나가고 싶을 때도 도움을 받아야 나갈 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한 번 들어오면 나갈 수 없는, 이곳은 저에게 하나의 섬이 되는 것이겠지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없애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물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라는 이름에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 '장애물이 없다'는 것은 장애인 인권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엘리베이터, 장애인 화장실이 인권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것을 복지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나 저희는 처음부터 이것이 '인권의 문제다'라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은 하루에 화장실을 몇 번이나 가십니까? 대부분은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답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이지요. 언제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요즘도 어디를 나갈 때 화장실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을 해야합니다. 만약에 내가 갈 곳에 화장실이 없다고 하면 그 전날부터 물도 마시지 않고 그곳에 가서도 아무것도 안 먹

지요. 화장실을 가지 않기 위해서요. 이것이 단지 불편함의 문제일까요? 이것이 더 나아가면 나는 학교를 다닐 수도 없고, 친구를 만날 수도 없고, 연애를 할 수도 없는, 모든 활동에 있어서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활동과 참여를 못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장애는 사회와 동떨어져서 외톨이가 되는 것이죠, 시설로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분리돼서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접근하고 이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불편하다거나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와 연결된 문제다', '인권의 문제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회복지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인권운동이었네요. 보편적인 인권운동을 하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인권운동을 시작한 계기는 무엇입니까?

일단 저부터 외출하는데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17년 전에 비가 오는 날 제 친구의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전동휠체어가 없었고 누가 밀어줘야 갈 수 있는 수동휠체어를 탔습니다. 수동휠체어를 타고 혼자 나가서 택시를 잡는데 2시간 동안 택시가 안 잡히는 거예요. 택시가 없어서가 아니라 저를 보고 도망가 버리는 상황인 것이지요. 그 당시에는 지하철에도 엘리베이터가 거의 없었구요, 계단이 없는 '저상버스'도 장애인콜택시 이런 것들도 없었던 때입니다. 내가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 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계기로 이런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던 차에 저희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고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 차이와 차별에 대한 사회적 맥락

차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당사자이자 활동가로서 차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요?

차별이야기 하기 전에 장애에 대한 정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것을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차별을 이해하는데도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국에 '분리에저항하는신체장애인연합(Union of Physically Impaired Against Segregation: UPIAS)'라고 하는 장애인 단체가 1970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단체는 70대에 '장애란 동시대 지배조직에 의해서 장애인이 동등한 사회활동과 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이것은 장애가 단순히 몸이 불편하다는 것이 아니라, '동시대 지배조직에 의해서 참여활동을 막는 것이 장애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이클 올리버라는 영국의 사회학자는 '장애란 그 사회의 다수에 의해 저질러지는 무지한 억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정의가 장애에 대한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정의입니다. 여기서 장애에 대해 다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장애에 대해서 차별하고 억압하는 것이 장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특징이 장애가 아니라 동등한 사회활동과 참여를 막고 무지한 생각에서 억압하고, 경제활동 사회활동을 억압하는 것, 이것이 장애다, 즉 그 사회의 차별이 장애다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장애라고 하면 지배계층에 의해 차등되어지는, 높은 계층이 낮은 계층에 대해 불리한 대우

를 하는 것이 차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이가 차별을 만들지만, 이 차이라는 것을 만들고, 차이를 순서상으로 배열하고, 높은 순서가 낮은 순서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 이것이 차별이지요. 여기는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하나는 다수의 지배계층이 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장애인 등록비율은 전인구의 3.4% 정도가 됩니다. 3.4%가 되는 사람들이 절대다수라고 믿는 96%의 사람들을 차별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96%가 3.4%를 차별할 수는 있습니다. 지배계층은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비장애인들이겠지요. 성차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 권력 또는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남성이라는 계층이 그 권력을 갖고 있지 않거나 적게 갖고 있는 여성을 차별하는 것이지요.

두번째는 불리하게 대우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차별은 아니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전용기를 타고 다니지만 왜 나를 차별하느냐라고 하지 않듯이 말입니다. 유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하지 않지만,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합니다.

## 반차별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평등이라 긍정적인 말을 쓰지 않고, 반차별이라는 어휘를 쓰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 해답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네요. 평등의 반대가 뭘까요? 불평등이죠. 평등의 반대는 차별이 아니라 불평등입니다. 차별의 반대는 반차별이구요. 그러니까 평등이라는 개념과 차별이라는 개념은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평등이라는 개념은 처음부터 차이가 있음을 두지 않는 것이지요, 이것은 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이 차이가 아니라 기본적인 대우를 받아야하는 차이를 보지 않는 것이 평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차이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지요. 2007년에 우리나라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만들어졌고, 일본은 현재 추진 중인데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연령차별금지법도 있구요,

다른나라에 보면 굉장히 많은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최근 스웨덴, 영국에서는 차별금지법을 모아서 평등법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2010년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성차별금지법 등을 모아서 이미 평등법 하나로 만들었구요. 이러한 과정은 단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은 동등한 기회를 주고 동등한 출발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결과의 평등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동등한 기회와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별금지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완전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평등법을 만들고 평등권으로 가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기회만 주자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결과까지도 평등하게 만들어가자는 내용이 담겨져있죠.

우리나라도 현재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사회에 워낙 차별이 많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해소된 다음에는 평등으로 나가게 되겠지요. 차별이 금지됐다고 해서 그것이 평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차별만을 없앤 것입니다. 입사의 기회를 동등하게 줬다고 해서 누구나 평등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듯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기초단계에 있는 것이고 향후에는 평등의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요.

차별의 정의를 말하시면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사람들은 차이라고 하면서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능력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은 정말로 무엇을 금지하는 것입니까?

차이와 차별은 다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청소부와 의사가 있습니다. 이 두사람의 노동의 가치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노동의 가치가 같으면 이 두 사람은 동등한 소득을 얻어야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이 다름에 대해서 우리사회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환경미화원이 의사보다 적게 받는다고 불평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환경미화원이 밤낮 없이 일하고 화장실도 없는 곳에서 몇 시간밖에 자지 못하면서 소득은 의사의 몇 분에 일에 불과한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미화원은 공부를 안 해도 되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의사는 많은 공부를 하고 자격증이 있고 고부가가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요. 여기서 사람들은 노동의 가치가 다르다고 생각하고 소득의 불평등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지요. 스웨덴의 경우 환경미화원이나 의사나 노동의 가치를 같다고 봅니다. 하는 일만 다를 뿐이지 노동의 가치는 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같은 것에 대해 사회가 불만이 없습니다. 우리사회에서 필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차이로 돌아와서, 우리는 환경미화원일 수도 있고 의사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차이예요. 그것으로 인해 환경미화원은 돈을 조금 받아도 되고, 의사는 많이 받아도 된다? 그것은 차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각각 개성을 갖고 있죠.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것으로 인해 불평등한 대우를 받거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사회는 차이를 가지고 차별을 하는 것이죠.

차이를 가지고 차별을 하는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배계층의 경우 좀 더 많은 권력을 갖고자 피지배 계층에 대해서 차별을 가하죠. 이것은 지배계층을 더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하죠, 왜냐하면 지배계층은 엘리트 의식을 갖고 많은 권력을 취득함으로써 안전성을 유지해가는 거겠죠. 한편 피지배계층에게는 복지라는 당근을 주면서 무마시킵니다. 이런 것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라는 권력을 갖게되면 더 많은 권한과 재산을 부여하며 동기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가 유지가 되도록 하는 것도 사회의 어찌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가 갖고 있는 맹점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냐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복지라는 방식으로 해결해나가려 하는 것인데, 경제위기를 맞게되면 복지국가는 날아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자유시장경제체제로 갔다가 또 복지국가로 왔다가를 반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차이는 무가치입니다. 가치를 가질 수 없는 것인데, 차별은 이 차이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지배계층의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우리는 자본주의 경제구조에서 시장성을 더 갖고자하는 의미로 '차별화'라는 말을 흔히 씁니다. '차별'과 '차별화' 이 용어의 혼란에 빠지지 않기 위해 이것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차별화 전략의 차별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없는 특징을 더 갖는다던가 뛰어나게 한다던가 등 차등을 둔다라는 개념입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붙지는 않습니다. 어떤 제도를 두고 말하는 것이지 차람에게 '차별화'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컨셉을 두고는 차별화라고 하기도 합니다. 요즘 아이돌 가수가 많은데, 다른 아이돌 가수와는 다르게 '차별화' 전략을 쓰자라고 하는 것, 이 때 차별화는 전략을 두고 하는 말이지 사람에게 하는 말은 아닙니다.

## 차별의 역사적 맥락

예전에는 노예제도 있었고, 여성에 대한 차별도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예전보다는 차별이 줄어들지 않았냐라고도 합니다. 정말 차별이 줄었을까요?

차별이라는 것은 사회가 존재하는 한 계속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도 학생인권조례와 차별금지법 제정에 있어 '성적지향'이라는 것이 쟁점이 되듯이 차별은 완전히 사라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아지고 좋아지려고 하는 성향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차별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사회에 차별이 줄었다고 해서 인류의 차별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전세계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차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차별이라는 것은 문화와 역사와도 관계가 깊은데요, 유엔에서 장애인권리협약을 만들 때 가장 어려웠던 것이 그 나라의 문화와 충돌할 때입니다. 예를들어 여성에게 차도르를 쓰게 하거나 외출을 못하게 하거나 교육을 못 받게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게 그 나라의 문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나라의 문화를 말살하는 것이지요. 삼자가 보기에는 그런 반인권적인 문화는 없애야하는 것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지만, 한나라의 문화는 역사와 전통이기에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리협약 5조에서는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라고 명시합니다. 그것을 안 하면 많은 나라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사회도 문화와 전통이 있습니다. 그 문화와 전통 속에서 가해지는 차별이 있기도 합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성숙한 시민사회가 된다는 것은 문화와 전통 가운데서 반인권, 반차별적인 것을 어떻게 바꿔가느냐를 말합니다. 그것이 그 사회의 성숙지표라고 보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사회에 차별의 요인이 몇가지나 있는지 아시나요? 국가인권위법에 의하면 19가지 차별사유가 있다고 합니다. 외모, 학력, 지역, 종교, 장애, 병력, 정치적 성향 등 19가지에 의한 차별이 과연 한꺼번에 사라질 수 있을까요? 우리사회는 '차별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아직도 많은 차별이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에 바꿀 수는 없지만 조금씩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사회에서 인식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 끝까지 남아있을 차별로 성적지향과 장애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들은 사회가 발전할수록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더라도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 두가지는 우리사회의 문화와 전통 안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최근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우리사회 고려시대, 신라시대 기록을 봐도 장애에 대해 차별했다는 역사적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조선왕조 특히 후기에 들어오면서 조금씩 등장했다가 근대사회에 넘어오며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대에 와서 차별이 심화됐다는 것은 자본주의의 생산양식과 연결되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차이가 있으니까 차별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별하는 것일까요?**

차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와 문화 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사회는 차이에 대해 더 낯설어 합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문화와 접촉한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중국의 문화, 일본의 문화가 대부분이지 다양한 문화가 들어오고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공유되는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사회는 차이에 대한 경험이 적고, 낯설고 서툽니다. 차별에 대한 연구를 보면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방에 대해 우호나 비우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사시대 때부터 그랬다고 하는데, 우호감을 갖게되는 사람은 자신에게 안전한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위험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비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비호감을 갖게되는 대상은 당연히 자신과 다른 사람이겠지요. 다름이 크면 클수록 더 적대감이나 불안감, 위협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낙인을 찍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인종, 피부색, 태도에 대한 낙인이 있습니다. 태도는 "뚱뚱한 사람은 게으르다" 등의 낙인을 찍는 거지요. 그리고 그 낙인에 대한 차별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은 자신을 보호하고자 차이를 두고 그리고 그것을 낙인 찍고, 이 낙인에 대해서 차별하는 것입니다. 우리사회는 그 차이를 경험한 기회가 적었고 그래서 어떤 작은 차이에 대해서도 더 많은 낙인을 찍는 것이지요. 내가 갖고 있는 편견이라는 것이 얼마나 뿌리 깊은가, 이는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있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한 세대 인식이 바뀌는데 흔히 30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우리사회는 빨리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의 편견이 바뀌는데는 한 세대가 걸릴 것입니다

**인류는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차별에 대해 투쟁해왔습니다. 반차별 투쟁에서 우리가 주요하게 인식해야 할 지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차별과 인권에 있어서는 시민권 운동이 가장 대표적인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프랑스대혁명, 영국의 대헌장 등이 대표적으로 꼽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너무 오래 전에 일이라 잘 와닿지 않잖아요.
가장 최근의 사건으로는 미국의 인종차별운동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피부색에 의한 차별은 존재하지만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죠. 선진국일수록 교묘하게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차별이 있습니다. 주요사회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지요. 미국의 대표적인 흑백차별의 운동은 '버스타지 않기 운동'입니다. 그당시 미국에는 앞에서 여덟번째 줄까지는 백인이, 그 다음부터 흑인이 타도록 되어있었습니다. 앞에 자리가 아무리 비어있어도 흑인이 앞으로 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백인의 경우에는 앞에 자리가 다

차면 뒤에 앉은 흑인에게 비켜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흑인 여고생이 백인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버스기사까지 소리를 지르며 내리라고 했지만, 여고생은 거부하고 결국 경찰까지 동원돼 여고생을 끌어내립니다. 이를 계기로 미국의 흑백운동이 시작되고 거의 일년간을 흑인들이 버스타기를 거부했습니다. 처음에는 버스회사에서도 게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버스를 타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흑인이었고 버스회사가 재정난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불씨가 돼어 미국의 흑백운동의 촉발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유엔의 권리협약을 보면 차별이 제거되어온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유엔의 권리협약이 원래는 9개가 만들어졌습니다. 비준돼서 활동하는 것은 8개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한 개는 비준의 요건을 못 채웠습니다. 그것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이주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협약에 비준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협약은 현재 만들어져 놓기만 한 상황에서 효력을 발휘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것이 장애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는 인류의 역사에 있어 차별이 제거되어온 순서를 보여주는 것인데, 인종 민족 피부에 대한 차별은 아직도 많은 인류가 거부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고, 장애인 차별에 대한 권리협약이 마지막에 만들어졌다는 것은 결국 끝까지 존재한 차별은 장애가 아닌가라는 것이지요.

## 한국인의 가치체계와 차별

한국인의 가치체계를 이야기할 때 권위주의와 집합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한국인의 가치체계 안에서 우리는 차별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을까요?

권위주의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차별유형은 연령차별입니다. 어리다고 무시하고 반말하고 막내에게는 허드렛일을 시키고, 그러다 나이 들면 또 무시당해서 내쫓기는 거지요. 우리사회의 권위주의가 갖는 폐해는 굉장히 큰데, 사실 이보다 더 심각한 차별의 근거로 저는 '울타리문화'를 봅니다. 이를 집합주의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 울타리를 치고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은 내편,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은 남입니다. 내 편은 고향, 지역, 학교 등 커넥션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철저히 무시하고 배척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체면문화, 겉치레문화가 심한 것도 차별을 양산합니다. 우리는 남들 보다 잘 보이고 싶지만 또 눈에 띄지는 않으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남들과 같아야 하는데 우리집에 장애인이 있거나 성소수자가 있다면 '모나 보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사회의 독특한 문화를 우리가 얼마나 인지하는 것 중요합니다. 모르면 바꿀 수 없으니까요. 인지하고 바꾸기 위해 노력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우리'나라, '우리'집이라는 것이 울타리 문화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한국사회에서는 예절, 윤리 속에서 차별을 정당화 하기도 합니다.

내 가치관과 종교적 신념에 의해 용납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차별에 있어 혐오감의 문제와 지지의 문제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성소수자를 지지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모두가 성수수자가 되거나 적극지원에에 나설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소수자에 대해 혐오감을 갖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혐오감은 결국 낙인을 찍게 되고 이는 결국 차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차별하지 않아, 단지 혐오할 뿐이야"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혐오감은 멀리하고 싫어하는 것이니까요.
장애인 차별문제에 있어 사람들이 장애인의 외모와 태도에 대해 혐오감을 갖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싫어하고 멀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까이하기 싫은거지요. 그러나 거기서부터 차별이 시작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소수자와 장애인을 지지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해서도 안 됩니다. 지지하지 않는 것과 반대하고 혐오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혐오감 자체가 이미 내 안에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이고, 편견은 곧 차별이라는 것으로 밖으로 나타나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혐오감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혐오감은 교육에 의한 것, 경험에 의한 것이지 절대적인 진리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윤리 또한 절대적인 진리일까요? 그러면 시대마다 바뀌는 윤리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결국 윤리와 도덕은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시대, 문화, 상황에 따라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진리는 시대가 변해도 절대적인 것이죠. 내가 가진 윤리와 도덕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으면, 그로인한 편견과 차별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전에 강의에서도 혐오감이라는 주제가 나왔는데요, "성소수자가 차별받아서는 안 되지만, 나는 성소수자가 싫어"라고 하는 것을 '우아한 호모포비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차별하지는 않지만, 익숙하지 않음을 싫어하는 것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영화를 보다가 충격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굉장히 비싼 식당에 백인들이 앉아서 우아하게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흑인이 초대받아 갔는데요, 식당에 들어간 흑인들에게 우아한 백인이 "아, 종업원이세요?"라고 묻습니다. 흑인은 종업원이 아니면 여기 들어올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또 다른 일도 있습니다. 흑인이 뭔가 물어보고 계속 말을 거니까 백인들이 아주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답해줘요. 그리고 흑인이 가니까 뒤돌아서 "더러운 것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들이 차별을 하나요? 직접적인 차별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들어내놓고 하는 차별만 차별이냐, 내 마음 속의 차별은 차별이 아니냐라는 거죠. 결국 이런 것들이 차별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흑인이 식당에 오는 것을 싫어할 것이고, 불편해하고, 다음부터는 그 식당에 가지 않게 될 거니까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혐오감이 있다면 그 존재를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차별의 시작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혐오감을 받아들이면, 이는 편견이 되고, 차별을 낳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의 혐오감일 인정하고 그것이 차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인권을 이야기할 때 '관용'이라는 말을 씁니다. '똘레랑스'의 관용과 혐오감을 갖는 것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똘레랑스는 프랑스에서 나온 것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가 러셀에 대해서 "나는 당신의 정치적 견해나 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의 글 때문에 당신이 불이익을 받는다면 나는 당신을 위해 변호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똘레랑스는 생각의 다름의 차이지 혐오감은 아니라는 것이죠. 똘레랑스는 작가가 러셀에게 동의하지 않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혐오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똘레랑스는 서로 다른 생각의 차이이고 견해이지 이것에 미움, 혐오감, 싫음이라는 가치관이 담긴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한국사회도 장애인, 여성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적극적 우대조치에 대해서 '역차별'이라고 하는 사회적 논리도 있습니다. '역차별' 논리는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미국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고 할 수 있는 ADA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이 제정된 이후로 역차별에 대한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대학에 입할 할 때 유색인종을 위한 할당이 있습니다. 이때 백인 학생이 적극적 조치 때문에 진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것이 역차별이 아니라고 판결을 냈습니다. 그 이유는 '소수계층은 지금까지 억압과 불이익을 받아왔고, 그 불이익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그래서 어느정도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그 불이익은 영원히 해소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역차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로 기득권 세력이 역차별을 주장합니다. 기득권층이 나의 작은 권리를 빼앗긴 것을 문제삼지만, 적극적 조치로 보호받는 계층은 어쩌다 권리가 뺏기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차별받고 불평등을 당하는 계층입니다. 그 계층에 대해서는 불평등과 차별이 해소될 때까지 법이나 제도로 보호해주지 않으면 그것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저는 '역차별'은 기득권층의 지나친 자기권리 주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데 힘쓰셨습니다. 그러나 법이나 제도가 있음에도 여전히 장애인을 시혜대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법 제정 이후에 장애인 인권이 신장되기 위해 어떤 과제가 있을까요?**

사실 제도가 먼저냐, 인식이 먼저냐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인식이 먼저라고 믿는 나라입니다. 일본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아직 만들고 있지 않은 이유도 사회적 인식이 따라가지 않으면 여전히 차별은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의 분위기를 먼저 만들어가자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제도를 먼저 만들면 인식은 따라가는

쪽으로 봅니다. 우측통행하는 것 보세요. 우리는 그동안 쭉 좌측통행을 해왔지만, 우측통행을 실시한 1년 만에 모두가 이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차별문제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이것은 장애인 차별에 대한 특수성에 있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 연령차별의 경우 어느 시기만 차별을 받습니다. 여성도 차별 대상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여성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해서는 혐오감을 갖고 두려움,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은 전생애를 거쳐 차별을 받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가족에게도 차별을 받습니다. 이런 문제로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인식수준이 이에 따라가고 있지 않아서 사실은 아직도 국내법 중에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법이 50개가 넘고 지방자치단체 규약의 경우에는 몇 백개가 넘으며 지역과 현장에서 일어나는 차별은 수없이 많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들어오는 진정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이 바로 그 증거겠지요. 첫 해는 약 690건, 이듬해에는 700건, 작년에는 1600건까지 그 수가 증가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사회 인식이 따라가 줘야하고 굉장히 오랜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된 지 20년이 돼서야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20년이 지나야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을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차별은 나쁘다'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한편으로는 나 혼자 한다고 해서 바뀌겠느냐라는 무기력함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상황에 따라 내가 차별의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이기도 한 내 안의 차별,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차별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차별을 하고, 차별을 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권감수성 교육과 같이 차별민감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차별에 대한 민감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차별을 하고 차별을 당하고 삽니다. 그래서 먼저 차별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듯이 차별에 관해서도 어떤 행동이 차별을 하는 것인지, 어떤 행동이 차별을 당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인권침해라는 것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을 하는 곳이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을 하는데, 그것은 원하는 사람에게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다른 하나는 우리나라의 외모지상주의도 문제입니다. 외모지상주의의 분위기에서 장애인은 호감의 대상이 아닙니다. 외모를 중요시하는 우리나라 분위기에서 차별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교육과 인식개선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안의 차별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차별을 받았는가를 먼저 정리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억울했던 일, 속상했던 일, 차별이라고 했던 일을 적어나가기 시작하면 반대로 자신이 가해자가 됐던 일도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애인권교육을 실시하는데요, 그 프로그램 중 하나가 휠체어를 타고 외출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쇼핑, 식사, 화장실 다녀오기는 꼭 해야하는 미션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사람들의 장애인에 대한 시선을 느끼고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해 이상하게 쳐다보고, 신기하고 불쾌하게 쳐다보는 시선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예전에 그러지는 않았을까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은 내가 차별을 하지는 않았을까부터 고민하는 것은 쉽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차별부터 민감해지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인권을 이야기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권도 중요하듯이 남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가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 기초는 내 인권을 깨달아야 그것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내 인권은 모르고 남의 인권을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저는 강의에 나가서 차별은 당해본 적 없냐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차별을 당해본 적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차별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모둠 프로젝트

- 가족상황 차별과 가족정책의 방향
- 우리는 노동력을 불렀다, 그런데 사람이 왔다.
- 당신은 왜 동성애를 혐오하는가
- 인공임신중절 혹은 낙태에 관하여
- 장애인 접근권

# 가족상황차별과 가족정책의 방향[1]

## 1. 들어가며

□ 최근 이혼율 급증, 저출산, 노인문제, 한부모 가족 등 가족과 관련된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어 '가족의 위기'와 가족의 변화는 가족 이데올로기에 대한 조망을 요구하게 됨.[2]

□ 한국가족은 사회의 변화와 맞물려 상당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음.[3] 사회의 일각에서는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의 움직임도 강해지고 있으나, 국가는 정책적 측면에서 아직도 가족해체론, 가족위기론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몇 년 전 "가족의 탄생(2006)"이라는 영화에서는 혼인과 혈연 등의 아무런 끈으로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어 가족을 구성하는 문제가 다루어졌으며, 최근 "인생은 아름다워(2010)"라는 드라마에서는 동성애 문제를 가족의 이야기 속에서 다루어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었음. 그러나 위 드라마는 종교단체 및 사회단체, 어머니회 등으로부터 많은 비판과 비난을 받았음.

□ 이러한 문제는 가족구성을 둘러싼 다양한 변화라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함으로써 사실혼, 동거, 동성커플 등 제도 밖의 생활공동체를 비정상적 가족으로 간주함.

□ 따라서 다양한 가족의 등장을 가족의 해체로 보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볼 것인지, 전통적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통해 수용해야 할 문제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 현실의 가족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사회적 인식과 제도는 혼인과 혈연을 중심으로 한 핵가족을 정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차별의 원인 되고 있음. 따라서 우리 모둠에서는 가족형태의 변화상과 현재 우리가 바라보는 가족의 의미를 살펴보고, 전통적 가족 이데올로기로 인한 차별의 상황을 드러내고자 함. 그리고 더 나아가 가족이 우리 사회에서 국가의 가족 정책과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기능해야 하는 지 고민해보고자 함.

---

[1] 모둠 구성원: 조명기, 윤재훈, 박진, 정상은

[2] 정진, 「가족영화의 영상적 특징과 시각언어의 상징성」

[3] 김애화, 「가족 형태의 변화가 던지는 질문 : 핵가족 제도! 가장 오래된 사회제도를 들여다 보기」,새세상연구소, 2011.07.13

# 2. 현대 가족 유형의 변화 및 변화를 바라보는 시각

## 1) 현대 가족의 유형 변화[4]

□ 핵가족의 감소

- ❍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전통적인 핵가족(전국 통계)은 2000년 전체 가구의 48.2%를 차지하였으나 2011년 현재 전체 가구의 41.1%까지 감소함.
- ❍ 2030년에 즈음해서는 전체 가구의 약 1/3 정도만이 전통적인 핵가족의 형태를 띨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1인 가구의 증가

- ❍ 1인가구는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0년 전체 가구의 15.6%를 차지하였던 것이 2011년 현재에는 20.3%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5가구 중 1가구 이상은 1인가구로 구성되었음을 의미함.
- ❍ 2030년에는 23.7%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이할 수 있음.

□ 한부모 가족의 상당한 비중

- ❍ 한부모 가족의 경우 2011년 현재 전체 가구의 8.7%로 나타나 이 역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함.

(단위 : 가구, %)

| 구분 | 계 | 부부 | 부부+자녀 | 한부모+자녀 | 1인가구 |
|---|---|---|---|---|---|
| 2000 | 14,507,010 (100.0) | 1,786,087 (12.3) | 6,987,478 (48.2) | 1,136,366 (7.8) | 2,261,550 (15.6) |
| 2005 | 15,971,010 (100.0) | 2,267,915 (14.2) | 6,743,687 (42.2) | 1,376,021 (8.6) | 3,187,151 (20.0) |
| 2009 | 16,916,966 (100.0) | 2,530,730 (15.0) | 7,032,014 (41.6) | 1,471,961 (8.7) | 3,415,121 (20.2) |
| 2010 | 17,152,277 (100.0) | 2,602,624 (15.2) | 7,091,857 (41.3) | 1,495,223 (8.7) | 3,473,415 (20.3) |
| 2011 | 17,379,667 (100.0) | 2,673,492 (15.4) | 7,147,076 (41.1) | 1,517,201 (8.7) | 3,531,424 (20.3) |
| 2020 | 19,011,815 (100.0) | 3,360,429 (17.7) | 7,215,406 (38.0) | 1,636,839 (8.6) | 4,109,276 (21.6) |
| 2030 | 19,871,144 (100.0) | 4,112,353 (20.7) | 6,709,402 (33.8) | 1,618,055 (8.1) | 4,713,083 (23.7) |

자료 : 통계청, 「2007년 장래가구 추계」

〈표1〉 전국 가구 구성별 변화 추이 (2000~2030년)

□ 재혼가족의 증가

- ❍ 〈표2〉는 혼인 종류별 구성 변화에서 재혼가족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줌.
  - 1999년 이후 2009년까지 다소의 등락은 있으나 5%p 안팎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음.

[4] 양정선, 「가족의 변화, 어떻게 볼 것인가?」,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1.3.

- 전국 통계에서 볼 때 1999년 남성의 결혼 중 12.8%를 차지하던 재혼은 2009년에는 17.4%까지 증가하였으며, 여성의 경우 1999년 14.0%인 재혼의 비중이 2009년 19.0%까지 증가함.

(단위 : %)

| 구분 | |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
| 전국 | 남자 | 초혼 | 87.0 | 86.8 | 85.1 | 84.4 | 83.1 | 81.2 | 80.3 | 82.8 | 83.1 | 82.5 | 82.6 |
| | | 재혼 | 12.8 | 13.1 | 14.7 | 15.4 | 16.5 | 18.3 | 19.0 | 16.8 | 16.6 | 17.5 | 17.4 |
| | 여자 | 초혼 | 85.8 | 85.3 | 83.3 | 82.6 | 81.2 | 78.9 | 78.0 | 81.5 | 81.7 | 80.7 | 80.9 |
| | | 재혼 | 14.0 | 14.5 | 16.4 | 17.2 | 18.4 | 20.6 | 21.2 | 18.0 | 18.0 | 19.2 | 19.0 |
| 경기도 | 남자 | 초혼 | 87.2 | 87.0 | 85.4 | 84.9 | 83.5 | 82.2 | 81.2 | 83.5 | 83.6 | 82.4 | 82.5 |
| | | 재혼 | 12.8 | 13.0 | 14.4 | 15.0 | 16.3 | 17.4 | 18.0 | 16.1 | 16.3 | 17.6 | 17.5 |
| | 여자 | 초혼 | 85.7 | 85.1 | 82.9 | 82.9 | 81.2 | 79.5 | 78.5 | 81.5 | 81.6 | 80.1 | 80.4 |
| | | 재혼 | 14.3 | 14.8 | 16.9 | 17.0 | 18.6 | 20.0 | 20.6 | 18.0 | 18.1 | 19.8 | 19.5 |

주 : 1) 미상을 포함한 전체 계에서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 통계청, 「2007년 장래가구 추계」

〈표2〉 혼인 종류별 구성비 변화 (전국: 1999~2009년)

□ 이상의 내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늘날 사람들이 선택하는 가족의 유형은 매우 다양함. 가족을 둘러싸고 보여지는 행동은 전통적 핵가족의 감소와 다양한 가족의 증가라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2) 가족의 의미에 대한 인식

### 가. 의식조사

□ 설문「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에 따르면 미혼남녀(26~44세)는 '결혼에서는 개인보다 가족 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남성의 79.8%, 여성의 74%가 찬성하여 결혼에 대한 가족주의적 성향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남.

❍ 위 조사에서 드러난 이혼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게 낫다'는 견해에 대해, 남성의 61.4%, 여성의 66.9%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혼에 대해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보다 긍정적인 입장을 보임.

❍ 2005년 자료와 2009년 자료를 비교한 결과(진미정, 2009: 여성가족부, 2010에서 재인용[5])에 따르면 결혼관이나 성역할관은 다소 보수적으로 변화한 반면 동거와 이혼에 대한 태도는 보다 허용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임.

[5] 여성가족부, 「2010년 제2차 가족실태조사」, 2010

□ 2007년 실시된 비혼 1인가구의 선행연구[6]에 따르면, 가족은 '조상을 같이하는 피로 맺어진 사람들'이라는 정의에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으며(32.6%),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27.4%), '서로 도우며 사는 사람들'(16.0%)의 순으로 나타나 가족은 혈통의 계승에 큰 의미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2010년 경기도의 미혼남녀 1인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7] 결과에 따르면 '가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가장 많은 조사대상자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응답(48.3%)하였으며, '서로 도우며 사는 사람들'(18.5%), '조상을 같이하는 피로 맺어진 사람들'(17.3%)의 순으로 나타나, 표본의 크기와 지역적 편차가 있음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가족의 의미가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음.

❍ 또한 위의 조사에서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 요소로는 '가정의 안정과 행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48.7%), 그 다음으로 '자신의 일에 대한 성공(33.7%)', '권력과 재산을 얻는 것(11.3%)'이라는 결과가 나타났음.

□ '가정'의 개념에 대해서는 학자 간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의미에서 가정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로 정의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1인가구 역시 자신의 현재 가족유형과는 무관하게 가족 간의 관계와 기능에 기초한 생활공동체의 안녕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가족의 의미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는 많은 변화가 있음이 사실이지만 그 변화의 방향이 진보 혹은 보수, 또는 가족 혹은 개인주의라고 단정짓기 어려우며,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는 선택 및 행동의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신들이 희망 하는 모습과는 다른 유형의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사랑을 중심으로 가족의 의미를 인식하고, 결혼이라는 관습과 제도 안의 가족을 지향하고 있음. 외형적으로는 대안적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순수한 자발적 의지라기 보기 어려우며, 추구하는 삶은 가족과 더불어 있음.**

## 나. 영화 속 가족

□ 영화, 드라마 등의 영상에서는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을 4 인 가족 또는 전통적 대가족의 형태로 그리는 경우가 많음.

드라마 「오작교형제들」[8] 에서 중심이 되는 이상적인 가족 형태는 조모, 부모, 네명의 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6] 김혜영 외, 「비혼 1인가구의 가족의식 및 생활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연구보고서-10
[7] 양정선 외, 「저출산 대책마련을 위한 경기도 1인가구 연구」, 2010
[8] 「오작교형제들」35회, 기민수, 이정선, KBS2, 2011

모두 이성과의 결혼, 혈연으로 맺어진 자녀를 지향하고 있음. 그 외는 부모와 1 자녀 또는 2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 대부분이며, 1 인 가족, 이혼가족, 남편과 사별한 채 자녀와 사는 가족 등을 결핍의 이미지로 그려냄. 이들이 보편적인 가정형성을 지향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가족의 형태를 통해 행복을 찾는다는 주제를 형상하고 있음.

□ 한편 최근에는 동성혼에 대한 차별을 문제 삼는 내용이 등장함.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9]에서는 동성커플이 결혼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반대와 편견을 그려냄으로써 동성혼과 나아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문제를 제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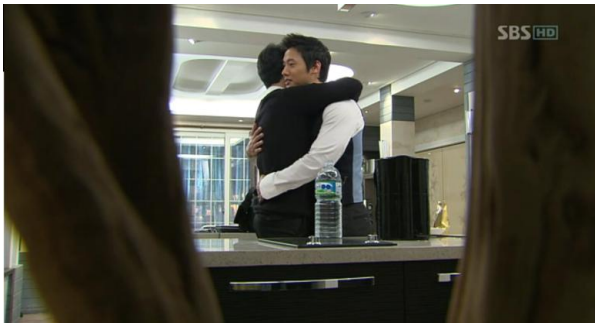


### 다. 미술 속 가족

□ 회화 속에 나타나는 가족에서는 가족구성원들 사이에 발생하는 다양한 관계의 맥락을 세대와 경험, 표현매체와 표현방식을 달리하고 있는 작가들의 독자적 시선을 통해 통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지금 내가 속하고 있는 가족의 모습을 진단하게 한다. 가족을 이루는 개체이자 구성원으로서의 '나'와 집단정체성으로서의 '가족'으로 대비해서 관찰해보아도 좋을 것이다. '가족'이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 화두임에 틀림없는데 회화작품을 통해 작가들은 가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으며 그 범주나 차별사례, 우리의 편견 등에 대해 생각해 보자.

## 3) 가족의 변화를 바라보는 시각[10]

□ 가족의 변화를 바라보는 시점과 견해는 다양하고 통합적 시각을 갖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가족의 현실 변화가 '현실 자체'에 대한 이해는 물론 그러한 현실에 대한 '가치 판단'이라는 해석상의 문제를 내포하기 때문임. 똑같은 현실이 '해체' 혹은 '변화'로 달리 이해되어 왔으며, 또 변화로 이해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평가는 '자연스러운 변화' 혹은 '위협적인 변화'로 상이하게 나타났음.[11]

- ❍ 가족해체론의 경우 이혼, 동거, 한부모, 무자녀 부부, 자녀 돌봄의 위기, 출산율 하락, 결혼 연령의 상승 등의 현상을 가족의 위기와 쇠퇴로 인식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간주함.
- ❍ 한편 가족 변화론의 경우 가족의 위기와 쇠퇴는 '가부장적 가족'의 위기와 쇠퇴일 뿐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획기적이 삶의 변화를 가져온 것처럼 패러다임적 전환을 하고 있는 중이며, 최근의 변화는 근대적 성별분업과 가부장적 핵가족의 쇠퇴로 간주함.[12]

---

[9] 「인생은 아름다워」 63회, 정을영, 김수현, SBS, 2010
[10] 양정선, 「가족의 변화, 어떻게 볼 것인가?」,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1.3.
[11] Morgan(1975): 김혜경(2005), 「건강가정기본법의 재개정을 둘러싼 담론에 대한 연구」, 『여성과 사회』 참조
[12] 이지경(2007), 「한국 가족변화의 특성과 쟁점」, 『가족복지의 정책과 실천』 참조

□ 오늘날의 변화는 이전의 가족이 담당해왔던 노동력 재생산, 피부양자 보호, 가족원간의 정서적 유대감 등 가족 기능에 변화가 생기고 있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개별단위의 가족이 욕구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줌.

□ 시각적 차이는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을 둘러싸고 가족에 대한 학계 간 큰 입장의 견해 차를 보였음. 가족과 가정의 개념, 가족의 범위, 건강가족, 정부의 역할,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관련된 제반 사항 등 가족을 둘러싼 모든 것에 의견 차가 첨예하게 대립하였음.

- ❍ '국가-가족의 관계'에 대해 가정학계에서는 가족위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정의 기능약화와 이로 인한 사회문제의 증가는 국가 및 사회의 유지·발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가정의 건강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주장함. 반면 사회복지학계(및 여성학계)에서는 가족위기의 원인을 사회·경제적 요인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즉 가족의 변화에 국가와 사회가 대응하지 못한 결과였으며, 건강가정지원법은 국가가 가족을 지원하기 보다는 통제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어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주장함.
- ❍ 여성학계의 시각에서 가족은 억압과 차별은 근원지이며 역기능적인 제도임. 가족의 재생산 기능은 미화된 모성을 창조할 뿐이므로, 그보다 앞서 여성의 자유와 평등 추구를 주장함. 또한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가족의 정서적 기능을 '신화와 환상'로만 보는 입장에 대해서는 반박하며, 가족은 변화하지만 출산, 사회화, 애정은 가족의 본질을 이루는 중요한 기능으로서 영원함을 주장함.
- ❍ 가정학자들이 건강가정기본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정부로부터 지지를 얻었던 것은 가족이 갖는 기능과 특성 중 가족은 사회 문화적인 단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생물학적 단위라는 점을 인정하기 때문임.
- ❍ 요약하자면, 정부는 가족의 변화를 사회적 안녕을 위협할 수 있는 가족의 해체, 즉 위기로 인식하였고, 여성학자는 여성의 교육수준과 취업률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개인의 선택과 변화로 인지하였으며, 가족관련 학자(가족옹호론자)는 변화는 있지만 보편적 제도로서의 가족의 기능은 영원함을 주장함. 이러한 정부, 학계간, 학자간의 입장 차이는 가족을 바라보는 입장과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됨.

□ 영화 속 가족차별의 예시

- ❍ 드라마 「신기생뎐」 속에서는 등장인물 '아수라'는 여주인공 '단사란'이 업둥이인데다 길러준 어머니까지 돌아가신 후 계모와 길러주신 아버지, 계모의 자녀와 함께 자라온 주인공의 가정환경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갖췄다" "코미디" 라며 비꼬고 있다. 더불어 그러한 가족상황, 불우한 성장배경을 근거로 여주인공과 자신의 아들이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13]

[13] 「신기생뎐」 35회, 손문권, 이영희, 임성한, SBS, 2011

❍ 드라마「정글피쉬2」에서는 교사가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이혼한 가정에서 자란 학생('안바우')을 "길바닥 쓰레기"라 칭하며 매사 편견을 가지고 대했으며 폭력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도 일방적인 가해자로 몰아 결국 자퇴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안바우'의 친구들마저도 그의 가볍고 속된 언행에 과민반응하고 "너도 그러다 인간 쓰레기 돼" 라며 막말을 한다. 한편 '안바우'가 폭력사건으로 연루되자 형사는 피해자와 합의하기위해 보호자가 필요하다며 부모가 와야한다고 강요하고 집에 전화를 하지만 부모가 거부하자 "친부모 맞냐" 고 하며 가족상황에 대한 편견을 은연중 드러낸다. '안바우'가 적막한 심정으로 길거리를 터벅터벅 걷는 장면에서는 거리의 단란한 보통의 가족, 남녀연인을 부러워하는 심리를 그리면서 이상적인 가족형태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14]

❍ 드라마「정글피쉬2」에서 등장인물('이라희')이 고등학생인 상태에서 임신을 하자 교사, 학급 친구들, 부모마저 편견을 가지고 차별하는 사례가 나타난다. 그녀는 그녀의 엄마에게 "엄마가 되는데도 학력이 필요하냐" 항의한다. 학급 친구들은 성적인 농담으로 그녀를 희롱한다. 입덧을 하자 "더럽다" "자퇴해라" "너 때문에 반 분위기도 엉망이고 공부에 방해된다" "배불러오면 우리 무서워서 학교 어떻게 다녀?" 라며 비난한다. 교사는 "다른 학생에게 끼칠 영향을 고려해서라도 임신한 학생이 절대 학교를 다녀선 안된다" "안낳는다면 몰라도 배부른 상태로는 못다닌다" "다른 애들 물들인다" "네가 학교를 계속 다니면 다른 학생에게 뭐가 옳고 그른지를 어떻게 가르치냐"며 복장, 수업태도 등을 일부러 트집 잡아 벌점을 잔뜩 매겨 강제로 퇴학시킨다.[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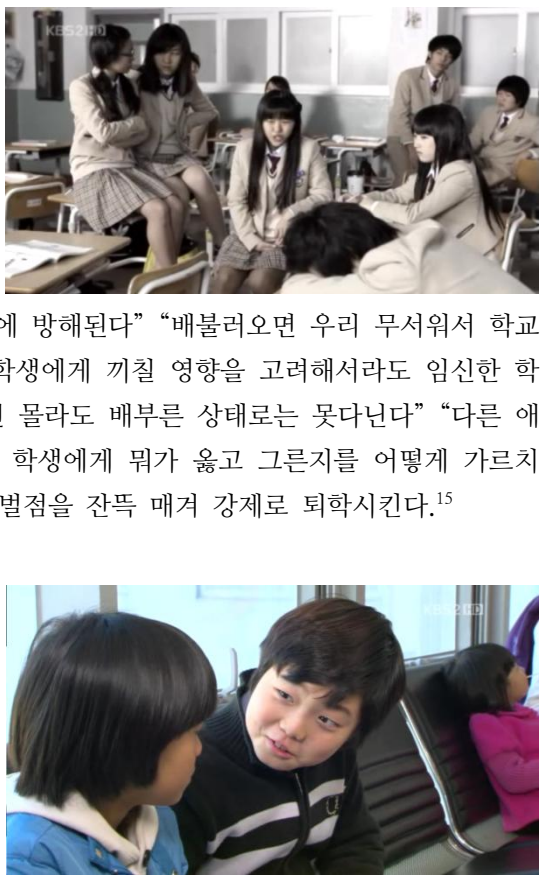

❍ 드라마 「오작교형제들」에서 비혼부이자 혼혈아들을 두고 있는 등장인물('황태식')을 그의 직장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리고 노골적으로 비난한다. 아들('황국수')의 그의 직장에 찾아 온 날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아이가 "아프리카 둥둥" 이라고 놀리자 아들과 싸움이 벌어진다. 놀린 아이의 엄마와 직장사람들 모두 '황국수'를 탓하고 부모를 데려오라며 책망한다. 한편, 혼혈아들을 둔 것에 대해 '황태식'의 조모마저도 "나는 아직도 쟤만 보면 가끔 깜짝깜짝 놀란다"며 피부색이 다른 가족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시한다.[16]



14 「정글피쉬2」 3회, 김정환, 민두식, 서재원, 김경민, KBS2, 2010
15 「정글피쉬2」 5회, 김정환, 민두식, 서재원, 김경민, KBS2, 2010
16 「오작교형제들」34회, 기민수, 이정선, KBS2, 2011

# 3. 규범으로서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및 차별의 양상

## 1) 규범으로서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17]

□ 우리는 가족 규범으로부터 이탈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만 '가족 규범 자체'는 문제 삼지를 않음.

❍ 우리가 가족이라는 강력한 '문화적 틀'안에 갇혀 있기에 "가족이 왜 그래야만 하는가?" 혹은 "가족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 차원의 문제를 제기하기 보다는 주어진 가족 현실을 일단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음.

❍ 흔히 사람들은 가족을 '실체'를 가진 하나의 고정된 사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상 가족은 사람들이 가진 하나의 사고방식으로 현실에서 끊임없이 구성되고 해체되고 재구성되는 것임.

□ 근대 이전에는 오늘날 중시되는 가족 내 애정이나 심성적 애착보다는 혈연적 유대와 가족 내 복종과 의무가 보편적이었고 결혼관계도 정서적 관계가 아닌 경제적, 생산적, 재생산적 관계가 보편적이었음.

❍ 그러나 근대 자본주의의 부상은 가족의 이미지와 해석에 새로운 장을 열어놓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가족에 일어났던 변화와 비교하면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음. 근대 이후 가족 담론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보다도 '가족의 사적 이미지'와 가족에 대한 '심성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음.

□ 근대적 가정중심성은 가족 안에서의 책임을 일차적으로 여성에게 부과하고 있음.

❍ 공사영역의 이분법은 가족과 사회를 좌우대칭에 둠으로써 가족은 무자비한 세상 속의 천국이요 가족 관계는 사회와는 달리 이타적이고 비경쟁적이라고 보고 나아가 가족은 자족적 집단이요, 독립적 실체이면서 사회로부터 자유롭고 고고함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제도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가족은 부적절한 가족으로 비판과 우려의 대상이 되기도 함.

□ 가족의 사적 이미지와 함께 현대 가족을 규정짓는 중요한 담론은 가족에는 사랑, 공감, 애정과 같은 '심성'이 가족관계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점임.

❍ 근대 가족은 아동 지위의 향상, 자애롭고 집중적인 모성의 창안, 가족을 단위로 한 사생활권(privacy)의 발전, 가정 중심성 등을 통하여 애정과 친밀성의 측면에서 독특한 중요성을 가진 우애적 가족(companionate family)으로 인식되어 왔음.

□ 정상가족은 다양한 형태의 통제 즉, 규범적 통제, 해석적 통제, 공식적 통제 등을 통해 이데올로기로 작동.

❍ 여기서 규범적 통제는 특정 가족을 자연적, 보편적, 이상적, 도덕적이라고 간주함으로써 이것

[17] 김소임, 『인정패러다임에 비추어 본 가족상황차별 담론 분석– 가족 관련 법 및 신문기사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미간행), 2007.

이 다양한 세팅 즉, 인간서비스, 행정, 기업 등에 주입되고 이용됨.

- ❍ 해석적 통제는 가족 이미지를 '일탈과 정상', '질병과 건가'등의 해석으로 가족을 통제함.
- ❍ 공식적 통제는 정책결정이나 서비스 제공 등의 공식적 영역에서의 의사결정에 가족이미지가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가하는 통제를 의미함.

## 2) 가족 현실과 규범의 불일치[18]

□ 현재 한창 변화하고 있는 가족의 실재와는 달리 이러한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 실제 양육 미혼모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미혼모의 존재를 제도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미혼부의 양육비 지급 책임을 제도화는 논의가 우리 사회에서 아직 시의 적절하지 않다는 국회의 입장으로 법안이 사장되기도 하였음. 이는 '정상'이라고 규정된 가족의 틀에서 벗어산 삶의 방식이나 가족의 형태 자체를 인정하는 제도를 만들 수 없다는 의미임.
- ❍ 그리고 성인 장애여성의 혼인에 대해서는 타인이나 사회 뿐 아니라 가족조차 금기시 하는데 정상가족의 '정상'이란 잣대에 담긴 가치평가가 '정상가족'에게 주어진 여성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장애 여성을 덜 떨어진 사람으로 비하하는 등 장애여성의 가족구성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 ❍ 또한 비혼의 성인 장애인들(혹은 비장애인들)끼리 같이 살고자 해도 혼인과 혈연의 관계로 구성된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공임대주택에 함께 입주할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
- ❍ 그리고 20여 년을 함께 살았던 동성 커플의 혼인 관계(사실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거나, 2004년 최초의 남성 동성애자 공개 혼인 후에 관할 관공서에 제출한 혼인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하였음.
- ❍ 게다가 독신가족이나 무자녀(childlessness)가족을 국가적 인구기획에 반하는 비애국적인 행위자라는 진단 하에 법적 혼인을 독려하고, 이혼을 제도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무자녀가족에게 불이익을 감수토록 하고, 심지어 독신에게 세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었던 것이 사실임.

□ 가족의 변화 혹은 다양성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이고 역사적인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제한적으로 규범적으로 내가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가족구성권리를 사회적으로 충분히 인정하지 않는 현실임.

□ 다음 〈표 3〉를 통하여 가족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볼 수 있음.

| 상황 | 사례내용 |
|---|---|
| 비혼 | "결혼한 사람들은 비혼인 나에게 결혼의 장점, 아이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가르치려 한다. 결혼 안한 것 자체에 대해 무시하는 것 같다. 비혼은 불완전한 것, 결혼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나 보다. 그냥 나를 가만히 놔뒀으면 좋겠다." (28세, 비혼, 이성애자, 여성, 사무직, 서울) |

[18] 김소임, 『인정패러다임에 비추어 본 가족상황차별 담론 분석– 가족 관련 법 및 신문기사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미간행), 2007.

| | |
|---|---|
| 비혼 | "결혼하면 결혼 휴가, 출산하면 출산 휴가, 애 낳으면 육아 휴직, 이성애 가족을 꾸리는데 참으로 부여되는 것이 많다. 비혼에게도 휴가를 달라. 비혼도 힘들다. 몇 세 이상이 되면 비혼 휴가를 달라."(34세, 동성애자, 비혼, 여성, 사무직, 서울) |
| 동거 | "직장 동료들이 애인과 함께 사는 것은 그리 좋지 않다며, 빨리 결혼하고 아이 낳으라고 한다."(25세, 이성애자, 비혼, 여성, 서비스직, 서울) |
| 동거<br>(비법률혼) | "남편과 2년 동안 동거하고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혼인신고를 하자고 남편이 계속 나를 설득했던 이유가 몇 가지 있다. 첫째, 내가 대학원 재학 중이었는데 법적 부부가 아니면 등록금 소득 공제가 안된다는 이유였다. 혼인 신고를 했을 경우 약 200만원/년 이 돌아 온다고 하였다. 둘째, 친정 부모님이 병원에 자주 가고 나이가 67-8세라 질환 걱정이 많이 되는데, 혼인 신고를 하면 회사에서 장인, 장모까지 의료비용혜택 및 크고 작은 수술 비용이 전액(회사에서 보험을 그렇게 들었다고 함)지원된다고 했다. 결국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로 그동안 엄마의 수술비, 입원비, 아빠의 진료비 모두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것이다."(28세, 기혼, 여성, 경기도) |
| 동성혼 | "레즈비언 커플은 아무리 오래 같이 살아도 어떤 법적 제도적 혜택은커녕 인정조차 받지 못한다. 배우자도 양쪽 가족에게 소개시킬 수 없고,...결혼도 안했다고, 부모님은 성인으로 인정도 안 해 주고."(23세, 비혼, 동성애자, 여성, NGO활동가, 서울) |
| 사별독신 | "내 어머니는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자 아이 셋을 키우셨다. 어머니는 식당 등 자영업을 하셨는데 '여자 혼자' 장사한다는 것, 남편이 없다는 것 때문에 주변의 아저씨들과 사실이 아닌 관계에서 오해를 사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31세, 기혼, 여성, 서울) |
| 한부모 | "아버지 없이 자란 엄마나 내 친구는 항상 '애비 없는 자식'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규제하는데 익숙해져 있다. 남의 시선에 자기의 삶은 재단하는 게 일상화되어 있다."(29세, 비혼, 여성, 학생, 서울) |
| 한부모 | "모임에서는 여러 형태의 가족 환경을 가진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친정 엄마는 언제나 조심성 없이 이야기를 한다. '저 여자는 혼자 산다더라', '저 여자는 남편이 없다더라', '저 아이는 아빠가 없다는 구가' 같은 처지인 딸을 배려하지 않는 그 말투가 내 가슴에 비수를 꽂는다."(40세, 사별, 여성, 주부, 광주) |
| 보살핌책임 | "장애가 있는 자녀가 그 집에 생겼을 때, 그 몫이 전적으로 엄마 책임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 쟁애 있는 자녀가 있으면 그 엄마에게는 완전 그게 형벌이 되는 거예요. 형벌.. 장애 있는 자녀가 생겼을 때 두 부부가 같이 머리를 대고 저 아이의 앞날에 대해 우리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얘기를 하는 게 바람진한 거 잖아요. 오로지 엄마 몫이야."(장애, 여성) |
| 공동체가족 | "남자 친구는 그룹홈에서 살았던 장애인이다. 그런데 그룹홈이 이사가던 날 미운 시선을 받았다. 집 값이 떨어진다고, 교육에 좋지 않다고 그룹홈을 반대한 것이다."(30세, 비혼, 장애, 여성, 사무직, 서울) |

〈표3〉 가족상황 차별의 실례

### 3) 가족상황 차별이란[19]

□ '가족상황'은 가족에 대한 개념 정의와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함. 일반적으로 '가족'은 가족의 형태나 가족 공동체에 대한 의식과 관련하여 고정된 모습으로 존재하기 보다는 역사적으로 변화해 왔으며 특정한 사회와 문화에 따라 '가족'이라고 이름 짓는 것의 내용이 달라지기도 하였음.

- '가족상황'이란 일반적으로 '가족구성의 형태, 가족의 구성원 그리고 가족에 대한 책임과 관련한 상황'을 말함. 즉,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등의 형태와 부모, 남편, 아내, 또는 자녀라는 가족 내의 위치와 가족 구성원에 대한 책임 등으로 정의할 수 있음.[20]
- 가족상황은 가족 구성의 권리와 더불어 가족의 역할과 관련되는데 정상가족은 여성이 가사와 양육을 담당하고 남성이 생계를 담당하는 것으로 인식.
  -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혹은 환자 등 가족 내의 보살핌이 필요한 가족원에 대한 보살핌 노동은 일차적으로 가족에게 책임이 있고 가족 내에서도 특히 여성에게 거의 전적으로 책임이 주어짐.
  - 여성은 성별분업에 의해 자녀, 노인 등에 대한 보살핌이 강제되고 보살핌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공적 영역 특히 고용상의 차별을 받음.[21]
  - 이와 같이 고정된 성별분업이 여성의 일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리며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낮은 임금과 낮은 지위를 발생시키며 더불어 여성의 노동권을 제한한다는 인식에 따라 UN과 ILO[22] 등에서는 가사와 양육이 여성만의 일이 아니라 남·녀 혹은 사회가 담당하여야 하는 일임을 명시하고 있음.[23]
  - 현재 우리나라는 가족 형태나 가족 역할로부터 기인하는 가족상황차별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2호에 가족상황(family status)에 의한 차별을 평등권 침해 행위로 규정[24]하여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홍콩, 호주, 캐나다 등지에서도 '가족책임(carer's responsibility)' 또는 '가족상황(family status)'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

---

[19] 김소임, 『인정패러다임에 비추어 본 가족상황차별 담론 분석– 가족 관련 법 및 신문기사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미간행), 2007.

[20] 가족상황차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족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가족적 책임을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 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차별의 개념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처럼 가족의 범위와 가족적 책임의 범위도 유동적인 점을 감안하면 그 범위를 점차적으로 확장시키는 것이 필요하다(정인섭 외, 『국가인원위원회법 해설집』, 국가인권위원회, 2005, p386).

[21] 정인섭 외(2005), p.387.

[22] 1981년 '가족 책임을 가진 남녀 근로자의 고용기회와 평등에 관한 ILO 협약' 등이 대표적이며, 이 밖에 1995년 '세계여성행동강령' 등은 여성과 남성간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여성의 임신, 출산, 수유와 같은 모성 기능을 고유하게 가진다는 것을 중심으로 강조되고 있다(차별연구모임, 2002:170)

[23] 차별연구모임(2002), pp.169–173.

[2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의 1항은 "평등권 침해의 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병력을 이유로 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이다.

□ 가족상황에 근거한 차별을 가족상황차별이라고 할 때, 이는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가족 유형이나 가족의 역할과 관련하여 행해지고 있음.

❍ 법적 부부 중심의 이성애적 핵가족을 정상가족으로 간주하여 이외의 가족에 대하여 공식적·비공식적 제도와 정책, 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음.

- 예를 들어 '한부모가족'은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없어서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정상가족에 비해 결핍되거나 문제가 있다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이나 편견[25]과 차별의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가족상황이며, 동성애 가족의 경우 정상적인 가족형태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
- 또한 혈연 가족이 아닌 입양 혹은 공동체 가족에게 이러한 가족상황을 이유로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나 불리하게 처우 혹은 폭력을 행사하는 것 역시 가족상황차별로 설명될 수 있음.
- 차별연구모임에서 제시한 예시에 따르면 치매 노인을 보살펴야 하는 사람을 지원이나 채용에서 배제는 것 역시 가족상황차별임.[26]
- 그리고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규칙, 정책, 관행, 기준, 규정, 자격 요건 등이 모든 가족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 효과에 있어서 가족상황에 따라 불평등한 효과를 가져 오는 것 역시 간접적인 가족상황차별임.
- 또한 직장이나 공공 시설, 공공 장소에서 가족상황과 관련한 농담, 경멸적인 말을 하는 행위 등도 차별적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폭력(harassment) 의도의 여부와 상관없이 어떠한 언어나 행위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폭력으로 간주하며 차별로 설명할 수 있는 것임.

□ 개인은 다중의 정체성이나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어느 하나에 초점을 맞추어 차별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고 종종 중복적으로 차별 현상이 나타나는 중첩 차별을 겪음.

❍ 가족상황 역시 일부 특성이기 때문에 실제 동일한 가족상황이라 할지라도 '성별', '계층' 혹은 '인종' 등에 따라 차별이 다르게 나타남.

- 예를 들면 가족은 근본적으로 젠더화 되어 있어서 동일한 가족상황이라 하더라도 여성에게 보다 부정의하게 규정되기 쉬운데, '미혼모'의 경우 '미혼부'에 비해 훨씬 강한 사회적 경멸을 겪어야 하고, '이혼' 역시 여성을 제도적으로 배제하여 재산이나 양육의 권리 측면에서 남성에 비해 차별이 존재함.
- 그리고 계층에 따라 가족상황차별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가령 젊은 고학력·전문직 비혼자는 '우아한 싱글'이라고 칭하면서 문화적으로 과장된 부러움까지 받는 반면 저소득층 비혼자는 사회적 무시나 폄하뿐 아니라 원치 않는 동정까지 부여받기도 함.
- 하지만 다중적 정체성/지위에 의해 차별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뿐 미혼이나 이혼 등 가족상황에 의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님.

□ 이와 같이 동일한 가족상황이라 할지라도 차별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뿐 아니라 다양한 정체성이나 지위가 결합되어 동시에 차별 현상이 빚어지기도 함.

---

[25] 고정관념은 '특정 집단의 모든 성원들은 어떤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과장되게 일반화시켜 믿는 신념들의 집합' 이며, 이 고정관념이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동반할 때 그것을 편견이라고 한다(Allport, 1954; Aronson, Wilson, and Akert, 1999).

[26] 차별연구모임(2002), p.174.

- ❍ 가족상황차별 현상이 가난한 한부모가족, 필리핀 엄마를 둔 혼혈 아동 가족, 장애인을 포함한 가족, 비정규직 이혼 가족 등의 사례처럼 계층 차별, 인종 차별, 민족 차별, 장애 차별, 사회적 신분 차별 등 여러 차별영역과 중첩되어 나타남.
  -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가족상황'뿐 아니라 '성별', '혼인 여부', '성적 지향', '임신 여부'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가각 금지하고 있고, 실제 국가인권위원회는 '돌보아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지원자의 대다수가 모집과 채용에서 배제되었고 그 성별이 여성이었다면 이는 가족상황차별이자 동시에 성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정의한 바 있다. 하나의 차별 현상을 성차별로도 가족상황차별로도 임신차별로도 해석할 수 있는 중복성이나 모호성에서 나타나듯이 이들은 완전히 독자적인 차별 사유로 분리되기 어렵고 개념적으로 현실적으로 명백하게 분류되지 않는 분석적이 개념임.
  - 그러나 일부 중복되거나 모호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차별 영역이나 요인으로 완전히 환원되기 어려운 특징이 있기 때문에 분석적으로 구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27]
- ❍ 사람은 한 가지 정체성으로 환원할 수 없는 다중적 주체인데도 성별이나 피부색을 기준으로 '여성', '흑인'으로 환원하여 규정하는 것이 성차별주의, 인종차별주의[28]라고 할 때, 이와 마찬가지로 가족상황을 근거로 '결혼도 못한', '레즈비언 커플인', '남편 없이 여자 혼자', '아버지 없이', '이혼한', '계모의' 등으로 환원하여 규정하면서 부당하게 처우하는 것이 바로 가족상황차별임.

□ 현실에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나 가치를 가진 가족들이 '다른' 가족이 아니라 '틀린' 가족이 되고, 그 '차이'가 '차별'이 되는 것이나 가족과 관련된 책임이 또 다른 사회적 차별의 근거로 작용하는 것 역시 가족상황차별임.

□ 다시 말하면 가족 구성의 권리, 가족의 다양성, 가족 내의 성별분업 등을 포괄하여 "가족상황차별이라 함은 합리적 이유 없이 가족의 형태나 가족의 구성 과정, 가족의 구성원, 가족에 대한 책임감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정의.[29]

- ❍ 구체적으로 보면 가족상황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 교육시설, 직업훈련 기관의 이용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뿐만 아니라(직접 차별), 정책, 규칙, 기준, 관행, 자격 요건 등이 특정한 가족형태·가족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결과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간접 차별)까지 포함함.
- ❍ 또한 직장이나 공공시설, 공공장소에서 특정한 가족형태·가족상황에 있는 사람을 불쾌하게 하거나 공격하는 등 어떠한 형태로든 괴롭히는 행위, 그와 관련된 별명, 농담, 비하, 조롱 등을 하는 행위도 차별 행위를 구성.[30]

---

[27] 소수자 운동을 연구한 윤수종은 이주노동자 여럿이 모여 한 집에서 공동생활을 한다든가, 장애인들이 자립 생활을 위한 공동체를 만든다든가, 동성애자들이 이성애 가족과는 다른 커플이나 집합적 가족을 만드는 경우, 국가의 직접적인 압박이나 억압보다는 오히려 표준적인 삶의 형식을 강요하는 다수자적인 분위기와 이웃 사회와의 관계를 풀어가는 것이 문제가 된다(윤수종, 2005)고 지적한 바 있다. 여기서 언급된 소수자의 예를 생활공동체(혹은 그룹홈)나 동성혼인이라는 가족 상황에 초점을 두어 볼 때,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사회적으로 인정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가족상황차별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8] 정희진(2006), p.168.

[29] 차별연구모임(2002), p.173.

[30] 국가인권위원회(2005), p.387.

### 4) 국내에서 가족상황차별[31]

#### 가. 조세와 사회보험

□ 결혼제도 밖의 생활공동체들은 세제감면이나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사회보험에서 경제적 혜택의 배제 등을 공통적으로 경험. 특히 우리나라 조세제도에서 근로소득세의 경우, 과세단위는 개인이지만 각종 공제제도는 일정한 가족구조를 전제하고 있음.

❍ 인적 공제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 또는 이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데, 이 경우도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등에 국한됨.

- 혼인이나 혈연으로 연결되지 않는 사람은 함께 거주하며 생활공동체를 구성해도 부양가족이 될 수 없는 것임.
- 그리고, 경로자, 장애인, 6세 이하의 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공제를 해 주고 있는데, 이 또한 혼인·혈연을 통한 관계에 국한됨.

❍ 무엇보다도 이러한 제도 설계는 부모와 그들의 아이로 구성된 이른바 '정상가족'을 기반으로 하는 전형적인 가족 모델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제도 밖의 다양한 공동체적 결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차별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저는 학원 강사를 아르바이트로 하거든요. 자영업으로 분류되는데, 아무것도 혜택 같은게 전혀 없죠. 예를 들면 부양가족으로 들어간다거나. 아무튼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세금 환급이나 소득 공제 등은 하나도 없죠. 동일 수준에서 내는 4인 가족 사람들 보면빠지는 게 많고 환급받는데 저는 더 내거든요. 그게 그런 거 보면… 건강보험료도 아무튼 많이 내죠.
>
> – 이성애자 동거 커플
>
> 출처: 「대안적 가족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집」,2008 에서 재인용[32]

□ 사회보험의 경우도 결혼제도 밖 생활공동체들은 여러 가지 혜택으로부터 배제되고 있음. 사회보험 중에서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유족연금이나 피부양자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결혼제도 밖 생활공동체들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음.

❍ 그러나 사실혼의 경우에는 사실혼 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 법률상 다른 배우자나 18세 미만의 자녀가 없으면 수급권자가 받던 연금의 40~60%를 받을 수 있음.[33] 건강보험의 직장피부양자 자격 역시,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으면 인정됨.[34]

---

[31] 박선영 외, 「가족의 다양화에 따른 관련법제 정비연구」, 『2008연구보고서-14 : 여성인권보장 및 차별해소를 위한 관련법제 정비연구(Ⅱ)』, 2008

[32]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 『대안적 가족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집-담론/제도/사례연구』, 2008.

[33] 「공무원연금법」제3조 제2항의 1.가에 의하면, "배우자(재직당시 혼인관계에 있었던 자에 한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사한 규정으로는 「국민연금법」 제3조 제2항. 가, 「군인연금법」제3조 제1항 4,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2조 제1항 2.가 등이다.

[34] 국민건강보험공단, Q&A에 의하면 배우자란 혼인으로 결합된 남녀, 즉 부부관계에 있는 남녀를 서로 배우자라 하며,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나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경우, 자녀의 부모란에 혼인당사자임이 입증되고 주민등록등본상 동거하고 있음으로써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음이 입증(친인척과 통반장의 인우보증 포함)될 경우에는 배우자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부양자자격이 인정된다고 한다.

내 파트너는 나의 직장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로 따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것도 계산하면 150여만원이다. – 허여씨 게이커플

출처: 「동성애자가족구성원자료집」,2006 에서 재인용[35]

□ 민간보험의 경우도 보험수혜자를 피보험자가 선택하기 보다는 보험회사의 약관 등에 의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보험료를 함께 납부하더라도 이후에 상대 배우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음.

❍ 사례B의 경우 이러한 점을 지적하면서 자신이 아는 오래된 커플의 사례를 얘기했음. 사례B의 인터뷰에서 드러나듯이 피보험자가 보험수혜자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과정들이 부가된다는 것임.

개인보험의 경우도 같이 들어도 나중에 이 친구(파트너)한테 줄 수도 없고, 누구한테 지정하는 경우에도 레즈비언 커플의 경우 쉽지 않고. 제가 아는 한 십년된 커플의 경우, 친한 레즈비언 보험설계사가 있어서 아주 여러가지 어려운 것들을 해가지고 한 사례를 봤어요.

– 인터뷰 사례B 중에서

□ 이처럼 결혼제도 밖 생활공동체들은 혼인한 커플에 비해 제도적으로 경제적인 불이익을 경험하고 있었다. 결혼제도 밖의 생활공동체들은 비슷한 규모의 소득·지출 수준인 혼인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경향이 있음.[36]

### 나. 재산 관계

□ 가족을 경제적 공동체로 가정하고 재산과 부를 누구에게 얼마나 분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주요한 가족이슈 중의 하나임. 상속과 관련된 법 규정은 상속 범위에만 한정되지 않고 가족구성이나 가족관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누구에게 상속할 것인가는 바로 누가 가족이고 누가 가족이 아닌가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법적 질서로 표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임.[37]

❍ 현재 우리나라의 법원은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유추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커플이라 해도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아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 더구나 동성커플의 경우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기 못하기 때문에 더더욱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게 됨.

---

이 경우에도 법적 배우자가 따로 있고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민법」제810조(중혼의 금지)에 의거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35]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동성애자 가족구성 발표대회–스피크아웃 정리』, 동성애자 가족 구성권 자료집, 2006.

[36] 김원정, 앞의 글

[37] 김소임, 『인정패러다임에 비추어 본 가족상황차별 담론 분석– 가족 관련 법 및 신문기사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미간행), 2007.

(A)씨가 2006년 사망한 남편을 만난 것은 지난 1992년. 당시 70세였던 남편은 전 처를 먼저 보낸 뒤 홀로 어렵게 지내던 터였다. 이를 탁하게 여긴 지인이 사망한 남편과 (A)씨를 '연결'해줬고 이후 두 사람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렇게 14년을 함께 살던 두 사람에게 일이 닥친 것은 지난 2006년이었다. 당시(2006년) 84세의 고령이 된 남편은 건강이 계속 악화되자 자신이 사망할 경우 (A)씨가 사실혼 관계로써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 14년 동안의 동거에 대한 보상으로 현금 1억원을 건낸 뒤 사망했다. (A)씨는 이 돈을 은행 빚 갚는데 사용했다. 그런데 국세청이 사망한 남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사망 전 (A)씨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넨 사실을 파악한 뒤 이를 '증여'로 간주해 1,300여 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38]

출처: 〈조선일보〉, 「어느 노부부와 세금 1,300만원」, 2008.9.16.

소송을 제기한 여성은 42세의 레즈비언으로, 상대 여성과 20여 년간 여느 이성애자 부부와 다를 바 없이 함께 생활해 왔고 재산을 함께 모으고 관리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대가 휘두르는 폭력으로 인해 관계 해소를 원했으며, 이에 따라 파트너 여성을 상대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낸 것이다. 법원은 이들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출처: 여성주의저널 일다 「법원이 동성애자 차별과 폭력 조장하나」, 2004.8.2.

Q: 15년 동안 동거하다가 헤어졌을 때 재산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떠했나?
A: 문제가 많았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았고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었다. 마흔이 넘었는데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했다. 법적인 보장은 전혀 없었다.

– 레즈비언 김명우

출처: 「동성애자가족구성원자료집」(2006)에서 재인용,[39]

- ❍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에 있어서, 대항력을 갖는 임차인은 본인과 주민등록에 포함된 배우자나 자녀 등으로, 일시적으로 임차인이 주민등록주소를 옮기거나 동거하지 않아도 배우자와 자녀가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음.[40] 그러나 비혈연관계의 '동거인'인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한 세대를 구성했을지라도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대항력을 상실하게 됨. 또한 임차인이 사망할 경우 임차권 상속에 있어서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41] 그에 해당하지 않는 '동거인'은 자신이 살던 임대주택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음.
  - 아래의 사례C는 바로 이러한 법적 보호로부터 배제되어 있음으로써, 관계의 악화가 불안감이나 막막함으로 이어진 경험을 갖고 있었음.

[38] 부부가 이혼한 뒤 배우자로부터 받은 이혼 위자료에 대해서는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다.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소득)위자료란 "위법한 행위에 의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39]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앞의 책.
[40] 김원정, 앞의 글.
[41] 사망 당시에 자녀 등 상속권자가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배우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촌 이내 친족과 공동으로 임차권을 승계한다. 따라서 자녀가 일방적으로 집을 비우라고 할 수 없다. 전세계약이 끝난 뒤 전세보증금 중 자신들의 몫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 친구(파트너) 명의의 집에 제가 같이 살고 있는데, 만약에 이 친구한테 문제가 생길 경우에 저한테 그게 저에게 임대관계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작년 연말쯤 남자친구랑 관계가 되게 악화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굉장히 심각하게 헤어질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집이 이 친구의 명의로 임대가 되어 있어서 만약 헤어지게 되면 나는 이 전세금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막막하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부부관계였다면 그래도 전혀 권한이 없는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 인터뷰 사례C 중에서

□ 이와 같이 법·제도적으로 배우자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커플들은 위기상황에서 법적 보호를 받기가 어려움. 그러므로, 위의 사례C처럼 관계 악화 및 해소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배우자의 경우 심각한 경제적·심리적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것임.

### 다. 의료서비스 이용

□ 일반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한 개인이 어떤 치료를 받을 것인지 결정권을 가지고 환자의 상황에 대해 들을 권리, 입원 시 면회할 수 있는 권리, 수술시 동의하고 보증할 수 있는 권리, 임종시 입회할 수 있는 권리 등은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혈연관계의 가족에게만 주어지고 있음. 그러나 남녀간의 결합으로서 사실혼/동거의 경우, 무리 없이 배우자로 인정되지만, 동성커플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이용시 직접적인 불편을 겪게 되는 것임.

❍ 이처럼 인터뷰 사례 A, B는 공통적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시 차별적 경험을 가지고 있었음.

제가 한번 입원을 한 적이 있는데, 수술을 한다든가, 누가 아파서 입원을 할 때 보통 가족들에게만 이 사람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수술 동의서에 싸인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게 안 되니까. 당연히 제 파트너는 저랑 같이 살고 있고, 제 생활을 이 사람과 같이 하니까 이 사람이 동의를 해야 되고 또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병원에서는 그거를 인정 안하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부모님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 부모님 지방에 계시는데, 무슨 수로 해요. 결국 전화로 저희 큰 형님한테 동의를 받아가지고 하게 됐어요.

– 인터뷰 사례A 중에서

얼마 전에 작은 근종 같은게 있어서 산부인과를 갔는데, 의사가 레즈비언에 대한 인식이 좀 있어서.그 의사는 괜찮은데, 간호사라든가, 같이 온 다른 이성애 커플 같은, 나머지 사람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해요. 다행이 근종 같은 수술은 동의서가 없이도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았으면, 사실은 좀 아찔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 인터뷰 사례B 중에서

□ 사실 수술동의서, 입원동의서 등 의료적 처치에 대해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어떤 법·제도상에도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그야말로 '관행'임.[42] 그러나 즉각적인 의료행위가 필요한 상황에서 당장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동성커플에게 이러한 경우는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며, 이는 이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줄 수밖에 없음.

[42] 김원정, 앞의 글.

### 라. 고용상의 가족 관련 혜택

□ 결혼제도 밖 생활공동체는 가족수당, 경조사휴가와 같이 기업에서 자체 시행하는 제도에서도 법률상 커플이 아니거나 또는 자신의 가족상황을 당당히 밝힐 수 없는 여건 때문에 배제됨.

> 저희가 결혼을 했는데, 이성애자 직원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의 결혼 휴가가 주어지잖아요? …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이라는 거, 결혼을 하면 양쪽 집안의 확대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구성원으로서. 그러면 저는 제 파트너의 아버님이 편찮으시면 제가 간호사기 때문에 가족 간병 휴가비도 얻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집안의 경조사가 있을 때 제가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휴가를 전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
> – 한국여성민우회 남성동성애자 동거커플
>
> 출처: 김원정, 2008. 에서 재인용[43]

> 나의 직장에서 다른 이성결혼을 한 사람들은 배우자 수당을 월 3만원씩 받는다. 나는 그것을 받지 못했고 지금까지 받지 못한 것을 계산하면 141만원이다.
>
> – 허여씨 게이커플
>
> 출처: 「동성애자가족구성원자료집」, 2006에서 재인용[44]

□ 결혼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이성애에 기반한 가족제도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혜택들이 있음. 이른바 관혼상제에 따르는 직장 및 국가에서 주어지는 각종 휴가 및 지원금들로부터, 결혼제도 밖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배제되고 있는 것임.

### 마. 입양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실혼이나 동거 중인 커플이 입양을 하고자 할 경우 「민법」이나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다만 「민법」상 입양을 할 경우 부부의 공동입양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45] 그럼에도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는 사람이 입양을 하기는 쉽지 않음. 이는 입양기관에서 요구하는 절차적 기준에 부합하기가 어렵기 때문임.

> (독신자로서 입양을 하려면) 내 부모님이 살아 계셔야 하고, … (입양한 아이에게) 내 부모가 양육자가 되고 제가 부양자가 되는 개념이더라고요. 그쪽(입양기관)에서는 그리고 오히려 생각보다 재산상의 요구는 많이 하지 않는데 …황당했던 게 내가 10년 정도를 같이 산 남자친구가 양육자가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 나는 원천적으로 아이 입양을 못하는…. 사실 70대 노인네들보다 훨씬 더 부양 능력, 양육 능력이 큰데. …힘들 거 같긴 하더라고요, 입양은.
>
> – 가족구성권연구모임 이성애자동거커플
>
> 출처: 김원정, 2008. 에서 재인용[46]

---

[43] 김원정, 앞의 글.
[44]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앞의 책.
[45] 김원정, 앞의 글.
[46]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앞의 책.

□ 위의 사례와 같이 입양기관이 법·제도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준을 제시하는 관행이 매우 일반적인데, 이는 이성애적 가족제도를 바탕으로 입양시 절차 및 요건을 사고하는 경향이 지배적이기 때문임. 입양기관의 재량이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입양의 장벽을 높이게 됨.

□ 우리 사회는 혈연중심주의가 공고하기 때문에 (국내)입양이 활성화되지 못해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 제도 및 관행으로 인한 장벽을 만나게 됨으로써 입양이 지나치게 제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임. 물론 사람을 양육하고 돌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적정한 기준과 요건이 요구됨. 그러나 혼인을 하지 않았음이, 동성커플이라는 것이 아이에 대한 양육이 불가능한 조건이나 상태라고 판단하는 것은 문제임.

### 5) 외국법에 나타난 가족상황차별의 정의[47]

□ 현재 우리나라는 가족 형태나 가족 역할로부터 기인하는 가족상황차별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2호에 가족상황(family status)에 의한 차별을 평등권 침해 행위로 규정[48]하여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외국의 경우에도 '가족책임' 또는 '가족상황'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입법례를 살펴보면 홍콩, 호주, 캐나다 등에서 가족상황(family status) 혹은 돌봐야 할 사람이 있는 자의 책임(carer's responsibility)을 이유로 한 차별 등이 있음.

#### 가. 호주

□ 호주의 『반차별법(The Anti-discrimination Act).』에 명시된 '돌봐야 할 사람이 있는 자의 책임'과 관련된 가족상황은 주로 가족 구성원 가운데 보살핌과 지원이 필요한 어린이나 가족원에 대한 챔임감과 관련된 것.

❍ 호주에서 인정하는 '가족'의 개념에는 이성애 가족과 동성애 가족, 사실혼과 법률혼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직계 가족의 구성 범위 역시 매우 다양하며 광범위하게 설정.

□ 또한 호주는 가족상황이나 가족 책임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 불법임을 1984년 『동등기회법(The Equal Opportunity Act)』을 통해서도 명시.

❍ 이 법은 '가족 책임'을 의존적이든 아니든 간에 누군가를 보살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는데, 그 사람을 보살피는데 돈을 지불받는 사람은 제외. 여기서 '가족상황'의 의미는 특정한 친척이 되는 지위 혹은 특정한 사람의 친척이 되는 지위를 일컬음. 친척이 된다는 것

47 김소임, 「인정(認定) 패러다임에 비추어 본 가족상황차별 담론 분석」, 2007.

48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의 1항은 "평등권 침해의 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병력을 이유로 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이다.

은 혈연, 혼인, 인척(affinity) 혹은 입양을 의미하며, 특정한 사람에게 완전하게 혹은 주되게 의존하는 사람들이나 그 사람의 가구의 구성원을 포함.

- 가족상황의 직접 차별(direct discrimination)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황 속에서 특정한 가족 책임이나 가족상황을 가진 누군가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덜 우호적으로 처우할 때 일어나고, 간접 차별(indirect discrimination)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조치나 조건이나 실천이 누군가가 가족 책임이나 가족상황 때문에 누군가에 불공정한 영향(결과)을 미쳤을 때 일어남.[49]

□ 호주의 『동등기회법』과 관련하여 '가족책임'에 기반한 차별의 실례를 보면 다음과 같음.

- 고용주가 사업에 손해가 없는 한도에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가진 여성이 자녀양육 일정으로 인해 일을 양립할 수 없는 상황을 강제.
- 한 직장에서 10년 근속한 남성이, 배우자가 간헐적으로 입원하여 그녀를 보살피기 위해 일을 잠시 중단하였는데, 내부 승진 면접 동안, 배우자가 발병했고 그는 결국 승진을 하지 못함.

□ '가족상황'에 근거한 차별의 실례

- 전과를 가진 남편과 결혼한 것 때문에 한 여성의 고용이 거부.
- 가족 구성원이 이미 같은 조직에 고용되어 있기 때문에 한 남성의 고용이 거절.

□ '혼인상황'에 근거한 차별의 실례

- 사실혼 커플이 전세를 원했으나, 집주인은 기혼의 부부에게만 전세를 주겠다며 이를 거부.
- 운수회사는 사무실 관리직에 응시한 미혼 여성을-그녀가 가장 나은 후보자였음에도 불구하고-거절하였는데, 인력담당자가 이 여성이 미혼인 상태가 성희롱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
- 금융회사는 최근 이혼한 여성을 주거 불안정성을 이유로 들어 유자 지원을 거부. 여기서의 주거 불안정성이라 함은 그 여성이 융자를 되갚은 능력이 있는가에 근거하기 보다는 최근 이혼한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된 것임.[50]

□ 호주에서는 '돌봐야 할 사람이 있는 자의 책임'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를 규정하여 가족 구성원을 돌봐야 하는 여성들이 이를 이류로 하여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강조하고 있는 추세.

### 나. 뉴질랜드

□ 뉴질랜드는 『인권법』에서 성별, 혼인 상황, 종교적 신념, 윤리적 신념, 피부색, 인종, 출신 민족, 장애, 연령, 정치적 의견, 고용 상황, 가족상황,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위법한 차별임을 명시.

[49] http://www.equalopportunity.wa.gov.au/discrimination.html. 이 법에서 '혼인 상태'에 근거한 차별에서의 '혼인 상태'는 비혼, 기혼, 별거, 과부 혹은 사실혼의 관계 ' 등을 의미함.
[50] http://www.equalopportunity.wa.gov.au/discrimination.html.

□ 뉴질랜드에서 가족상황차별로 진정·처리된 몇 가지 사례[51]

❍ 재화와 용역 제공에 있어서 가족상황차별로 배우자가 일하는 식당에 출입을 거부당한 남성이 가족상황 차별에 대한 문제를 제기.
- 특히 배우자가 일하지 않는 시간에 방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입을 제지당한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식당 측에서는 고용된 배우자와 방문한 상대가 잡담을 하는 등 직장에서 흐트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정책을 상용하였다고 항변.
- 실사 이후, 불만처리부서에서는 이러한 식당 정책이 『인권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그러나 식당은 고용인들이 과업을 잘 수행하게 훈련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에 방문 배우자가 식당에 와서 무례하게 굴거나 음식을 주문하지 않고 장시간 들어와 있을 경우엔 그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결정.

❍ 공공장소와 시설에 접근에 있어서 간접적 상황차별로, 한 여성이 공원에 둘러친 울타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
- 원래는 오토바이 출입을 금지하기 위해 만든 울타리가 유모차의 진입을 곤란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는 아이를 가진 가족상황에 따른 간접적인 차별이라는 것(물론 이는 휠체어 진입의 곤란으로 인한 장애 차별 역시 의미).
- 결국 시의회에서는 유모차(휠체어 역시)가 들어 갈 수 있도록 울타리를 조절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데 동의.

❍ 고용에 있어서의 가족상황차별로, 남편과 별거한 여성이 고용주로부터 그녀가 계속 별거상태로 남아 있는 한 고용이 보장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던 것에 대해 진정한 사례.
- 고용주는 조정 모임을 통하여 사과와 함께 배상금으로 3,600달러를 지불하고 그 여성을 재고용.

### 다. 홍콩[52]

□ 홍콩에서는 노동 시장에서의 여성 증가와 최근 10년간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가족 책임을 가진 노동자의 요구를 주장하는 사회적 필요성의 증가에 따라 이 법을 만듬.

❍ 이 법에서 말하는 차별이라 함은 직접 차별과 간접 차별 두 가지를 이름.
- 직접 차별은 가족상황에 근거하여 다른 사람에 비해 덜 우호적으로 처우 받는 사람이 있을 때 발생.
- 간접 차별은 정의로울 수 없는 조건이나 전제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만 실제로는 특정한 가족상황을 가진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발생.

□ 홍콩에서 가족 차별 사례

❍ 직접 차별의 사례로, 자녀 출산 이후에 어떤 여성이 좋지 않은 직무로 이전되었는데 왜냐하면 고용주가 유아를 가진 여성은 출장을 갈 수 없다고 판단해서 임.

❍ 간접 차별의 사례로, 회사가 모든 피고용인들에게 야근을 지시했는데, 보살펴야 할 어린 아이를 가진 한부모 남성은 이 조건을 따를 수가 없었고 이에 회사는 그를 해고 함.

[51] Human Rights Commission(2001).
[52] www.eoc.org.hk/EOC/

### 라. 캐나다[53]

□ 캐나다 역시 『인권법(Canadian Human Rights Act)』에서는 인종, 출신 민족, 피부색, 종교, 연령, 성(임신 포함), 성적 지향, 혼인 여부, 가족상황, 신체장애, 정신장애(알콜중독과 약물중독 포함), 사면된 전과를 이유로 한 차별은 위법한 차별임을 규정.

- ❍ 차별은 사람을 불평등하고 편견에 의해 처우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이 특정 집단에 속해있다는 이유로 인하여 체벌하거나 서비스 및 고용을 거절하거나 괴롭히는 행위 등임.
- ❍ 이 법에서의 '가족상황'은 배우자, 형제자매, 인척, 삼촌·숙모, 조카, 사촌 등 사이의 관계 뿐 아니라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간에 혼인, 혈족, 법적 입양, 조상 관계의 유대로부터 발생되는 상호관계'를 의미함.

□ 캐나다의 차별 사례

- ❍ 3명의 자녀를 가진 한 여성은 자신보다 경험과 경력이 부족하지만 자녀가 없는 미혼 여성이 승진한 것을 보고, 직장 상사가 자신이 아이들 때문에 직장에 전념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그녀를 승진에서 제외한다고 믿음. 이는 가족상황에 근거한 고용 영역에서의 차별을 의미.
- ❍ 한 커플이 예약한 숙소에 도착했을 때 사장은 그들의 성(姓)이 다른 것을 알아 차렸고, 그는 결혼하지 않은 커플(unmarried couples)에게는 방을 빌려 주지 않는 원칙이 있다고 알려줌. 이는 혼인 상황에 근거한 숙박 시설 영역의 차별을 의미.

□ 또한 캐나다의 『인권과 시민권, 다문화주의 법(Human Rights, Citizenship and Multiculturalism Act』에서 차별은 "인종, 종교적 신념, 성별, 신체·정신적 장애, 혼인 상태, 가족 상태, 수입원, 연령, 조상, 출생지, 성적 지향 등에 기반하여 의도와 무관하게 부당한 실천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종종 개인이나 집단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며, 혼인 및 가족상황차별을 언급.

- ❍ 여기에서의 '혼인 상태'는 배우자와 같은 사람과의 관계를 포함하며, 혼인, 비혼, 이혼, 과부, 별거 등과 무관하게 배우자 유사 관계로 확장하여 차별로부터 모호함을 명시.
- ❍ '가족상황'은 전형적으로 부모-자녀 관계와 관련이 되지만, 이 역시 다른 가족적 관계로까지 확장되며, 일부 상황에서 형제·자매, 인척, 삼촌과 숙모, 조카, 사촌 등 사이의 관계가 가족상황 근거 안에 포함.

### 마. 기타

□ 캘리포니아의 Sonoma county의 주거 차별과 관련된 법 역시 가족상황차별과 련.

- ❍ 연방과 주(State) 법은 인종, 성별, 종교, 국적, 장애, 가족상황 등을 이유로 하여 주거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덧붙여 캘리포니아 법은 혼인 상태, 성적 지향 등에 기반하여 주택을 세 놓거나 대여하지 않거나 팔지 않거나 혹은 유용하지 않는 주거를 제시하는 등의 차별을 금지.

[53] http://www.gov.pe.ca/humanrights/

□ 국제인권단체인 『Human Rights Watch』는 공적·사적 영역 둘 다에서 혼인 및 가족상황에 근거한 고용과정상 여성에 대한 차별이 있음을 조사연구에서 보여준 바 있음.[54]

□ 그 밖에도 미국의 노동자 권리 보장·촉진을 위한 비영리단체인 Workplace Fairness에서 문제제기한 '부모상황차별'[55] 등도 있음.

### 바. 종합

□ 가족상황에 대한 외국의 입법 동향은 가족 구조 혹은 결혼 형태, 가족 책임 등의 다양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되, '가족 내에서 보살핌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인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행해지는 구별, 배제, 제한 또는 폭력을 가하는 것'에 보다 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가족상황'이라 함은 '가족 구성의 권리를 포함한 가족 형태, 가족의 구성 과정, 가족의 구성원,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관련한 상황'이라는 개념적 정의가 가능하고,[56] 이에 근거하여 직접 차별과 간접 차별 혹은 폭력 등을 차별의 내용으로 삼음.

## 4. 차별해소를 위한 제언 : 가족 위기의 본질

### 1) 가족 위기의 본질[57]

□ 앞서 살펴본 가족을 둘러싼 변화와 이를 해석하는 학자들의 견해 차는 국가의 가족 정책 및 저출산·고령화 정책 기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사회 현상의 이해, 가설의 정립, 실증적 연구의 수행, 경험적 결과의 누적, 이론의 정립 과정에 있어서, 학자는 경험적 사실을 각설로 유도하거나 이끌어가는 논리의 비약이 없었는지 언제나 신중하게 자문해야 할 것임.

□ 가족의 변화에 대한 학자들의 반응에 대하여 Skolnick & Skolnick(2009)은 3가지 문제점을

---

[54] http://www.hrw.org/about/

[55] '부모상황에 따른 차별' 은 부모상황 예를 들면 생물학적 부모, 입양 부모, 일시 양육부모, 계부모, 법적 후견인, 대리 부모, 입양 · 법적 보호 등과 같은 부모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차별을 의미한다. 부모상황차별은 다른 형태의 차별 즉 혼인 상황이나 성차별에 수반되어 나타나기 쉽다. 가령 회사는 유자녀 여성이 자녀 때문에 긴 시간 근무하거나 출장 가는 것을 꺼릴 것이라 생각하여 승진에 제한을 두거나, 아이를 양육하는 미혼모를 희롱하거나, 혹은 미혼인 사람의 경우에는 자녀가 있는 사람을 보충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이 강요되기도 한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자녀가 있는 기혼자에게는 자녀를 위한 건강보험을 지불하지만 비혼자 등에게는 자녀를 위한 급여를 지불하지 않는다(Workplace Fairness 홈페이지).

[56] 차별연구모임(2002), pp.169-173.

[57] 양정선, 「가족의 변화, 어떻게 볼 것인가?」,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1.3.

지적함. 첫째는 가족은 변화하고 있지만 변화의 의미에 대한 견해에 불일치가 있으며, 둘째, 변화를 바라보는 학문적 관점에 차이가 있고, 셋째,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정도를 과장하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함. 특히 과장의 문제는 현재 한국가족의 특성과 상황을 해설할 때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주의 깊은 숙고를 요해야 함.

□ 앞서 제시된 경기도의 1인가구 실태조사에서 지금 현재 독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한 때 이성과의 동거 경험이 있었던 응답자가 전체의 약 1/3이었음. 남성의 경험이 여성보다 두배 가까이 더 많았으며, 40대의 경우 과반수 이상이 동거의 경험을 갖고 있었음.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원가족, 동거가족, 1인가구 등의 가족유형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태도와 인식의 조사에 있어서는 결혼과 출산의 규범을 중시하는 보수적이 가치관이 깊이 있게 드러남. 실태조사 분석에서 드러난 다양한 결과에 따르면, 1인가구가 결혼이나 출산을 기피하여 독신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보기 어렵고, 보편적인 가족 형태를 벗어나기 위해 또는 기존의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에 회의를 느껴 전혀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한 가족의 유형이라고 보기 어려움. 결혼과 출산의 기대를 가지고 있고, 보편적인 가족유형을 부러워하고, 자신의 노후를 결혼하여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집에서 보내고 싶어하는 전형적인 가족 지향적 성향에 근본을 두고 있으나, 적절한 시기에 배우자를 찾지 못한 채 독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삶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고 해석함.

□ 자신만의 자유를 추구하고, 구속을 지양하며, 제도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도시적 분위기의 전문직 독신 여성과 남성이 오늘날 디지털 시대의 문화와 소비를 주도하는 새로운 아이콘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그들은 인구 모집단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며, 1인가구 혹은 동거가족의 사실적 모습과는 큰 차이가 있음.

□ 오히려 1인가구의 다수는 기존의 가족규범 속에서 살아가면서 성인기에 치루어야 할 통과의례처럼 여겨지는 결혼의 준비가 되지 못한 사람들, 또는 준비가 되었지만 자신이 원하는 의례처럼 여겨지는 결혼의 준비가 되지 못한 사람들, 또는 준비가 되었지만 자신이 원하는 준거집단의 상대에 의해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그러나 자신의 준거집단을 현재의 자신의 처지로 낮추는 하향조정을 하지 못한 사람들일 수 있음.

□ 오늘날 보여지는 다양한 가족의 유형은 사람들이 가족을 둘러싸고 표출한 행동의 결과이지만 그 행동은 일부 학자들이 지적하였던 제도, 관습, 전통의 거부에서 비롯되는 대안적 라이프 스타일로만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즉 개인의 순수한 의사결정과 자발적 선택에 따른 행동의 결과로만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따름.

□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다양한 가족의 유형이 개인의 자율적 선택과 의지임을 강조하며, 결혼과 가족에 대한 사람들의 희망을 '가족에 대한 환상 혹은 신화'로 간주하여, 시대착오적인 '전통적 핵가족의 이데올로기'를 옹호하는 견해로 일축해버리는 문제가 있음.

□ 또한 일측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이 가족과 가족을 둘러싼 최근의 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가족에 대한 사회·심리적 위기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

기도 함. 또한 본 법 제8조 1항에 제시된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에 대해 국민을 계도하고 교육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명시된 것이라고 많은 반박을 보였음.

□ 그러나 정부는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의 증가가 장기적으로 성장동력을 약화시키는 심각한 국가적 문제를 초래하는 것에 대하여 대국민적 인식을 불러일으킬 의무와 책임이 있음.

□ 동시에 국민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는 점에서 볼 때, 국가는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이 파악해야 하며, 그를 위해 어떠한 정책과 사업이 필요한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함.

□ 가족의 변화냐, 해체(위기)냐의 전문가적 해학보다는 국민들이 지향하는 가족의 가치를 인지하고 현 시점에서의 가족에 대한 가치정립을 통해 가족 정책을 큰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임.

□ 경기도의 1인가구를 비롯한 다양한 실태 조사에서 드러난 것은, 가족의 유형과 의미는 변화하고 있지만 학자들의 진보적인 해석이나 주장과는 달리, 사람들은 실제로 결혼과 출산을 원하고 있고, 행복한 삶을 위한 최우선 순위를 가정에 두고 있음.

□ 이혼율의 증가, 핵가족의 감소, 한부모의 증가가 국가적 위기 상황이 아니라, 진정한 위기는 결혼과 출산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취업과 고용안정, 주거마련, 보육의 문제 등으로 인해 자신이 원하는 가족유형을 선택할 수 없는 사회적 맥락이 위기임을 지각해야 함.

□ 국가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구체적인 서비스 지원을 통해 결혼과 출산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가능성을 열어주어야 할 것임. 또한 동시에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공존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인 제도의 보완과 편견의 배제가 필요함.

□ 학자들이 언급하는 '전통적 핵가족의 이데올로기 붕괴'는 이제 식상하기까지 한 어구가 되어버렸지만, 가족을 원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것은 '전통적 가족에 대한 환상 혹은 신화'라는 견해로 일축할 수 있는지, 또한 결혼이라는 선택의 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돌아서게 만들 만큼 학자들이 말하는 전통적 핵가족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회의와 거부가 뿌리 깊은 지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숙고해 보아야 할 것임.

□ 사람들이 지향하는 가족 가치는 옳고 그름이 없으며, 시대를 앞서거나 역행한다 말할 수 없고, 누구도 함부로 일축할 수 없는, 가족 정책이 추구하는 진정한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임.

### 2) 다양한 가족 형태의 의의(여성의 지위 향상과 권리 향상의 측면에서)[58]

□ 여성 억압의 가장 근본적 메커니즘인 가부장제를 세습하게 하고 개인과 가족과 사회안에 남/녀 성역할 고정관념(성별화된 노동, 공/사 영역의 분리)을 강화시켜주는 사회적 장치로서의 '가족'은 제도로서든 이데올로기로서든 혹은 현실에서는 이미 전세계적으로 도전받고 있음.

□ 따라서 이성애 핵가족을 전형으로 하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균열이 나면서 실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다양한 가족형태(공동체)를 지지하고 보호한다는 면에서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법 제도화는 그 의의가 있음.

□ 또한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법 제도화는 "양성평등한 가족"이라는 현 정부의 여전히 구시대적인 가족 담론의 한계를 넘어서 양성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다양한 가족(독신 가구, 한부모 가족, 동성애자 가족)뿐 아니라, 혈연과 성적결합의 여부를 떠난 다양한 자발적 공동체로까지 가족 개념의 범주를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 3) 한국의 담론 소개와 외국 사례가 주는 시사점[59]

□ 다양한 공동체 및 가족에 대한 제도화 주장이 단순히 현재의 가족제도에 자신들을 끼어 맞추어 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관점이라면 이는 '정상 가족' 및 '정상적성' 이데올로기에 편입 복종하는 것에 그치고 말 것임

□ 민주노동당 안팎의 가족 관련 연구 활동가들의 모임인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에서는 외국의 다양한 법제화 사례에 대한 검토와 함께 현재 우리 사회복지제도(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와 공공주택 제도 등에서 드러나고 있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의 구체적 내용들을 분석하면서 다양한 공동체와 가족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보호를 위한 한국 현실에 적합한 법제도 마련을 준비하고 있음

□ 한국 사회의 유교적 전통 문화와 뿌리 깊은 가족주의를 거론하면서 가족 제도 주변의 변화된 다양한 현실과 요구를 법제화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음

□ 또한 이미 십 수 년 전에 제도화되어 재개정의 요구들이 확산되고 있는 서구의 법제도들을 겨우 답습하기에 그치는 것 역시 또 다른 시대적 역행에 머무는 것일 수 있음

---

[58] 최현숙, 「동성 파트너십 제도화의 해외동향 :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를 위한 국제적 움직임」, 한국여성개발원, 2007.05.23

[59] 최현숙, 「동성 파트너십 제도화의 해외동향 :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를 위한 국제적 움직임」, 한국여성개발원, 2007.05.23.

□ 물론 이러한 제도 마련 이전에 선행되어져야 할 것은 이성애/남성 중심의 가족이데올로기의 해체와 함께 현재의 사회 전반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족”의 개념을 ‘실질적인 친밀감과 돌봄 및 시민들의 자발적인 공동체“로까지 확장하는 것이라 하겠음.

❍ 또한 미국의 동성혼 제도화 과정에서 보여 지고 있는 사회 전반의 역보수화 현상은 우리의 다양한 가족구성권 제도화 운동이 사회 변혁의 다양한 진영들과의 긴밀한 연대와 지지 속에 진행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음.

# 우리는 노동력을 불렀다, 그런데 '사람'이 왔다[12]

## 1. 제도적 측면

### 1) 유입국에서 바라본 이주노동자

#### 가. 한국의 이주노동자 관련 제도변화

□ 제 1 단계(1987 년~1991 년 10 월): 정책 부재 시기
관광객 또는 친지방문자의 형태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이 미등록노동자(undocumented workers)로 정착하는 것을 방관한 시기이다.

□ 제 2 단계(1991 년 11 월~2003 년 10 월): 외국인 산업연수제 시기
1991 년 당시 노동운동권에서 외국인력 수입에 반대하였기 때문에, 국내 노동운동의 반대를 극복하기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라 '학생'에 가까운 '산업연수생'을 수입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노동조합의 저항을 극복하고, 기업에 외국인력을 공급하는 편법을 취했다. 명칭은 산업연수생이지만 실제 강의실에서 교육을 받은 기간은 2 박 3 일에 불과하고, 나머지 기간은 오로지 '노동'에만 종사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산업연수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외국인력 정책의 세 가지 기조 중 두 번째 인 '균등대우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산업연수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신분이 아니므로 차별적 저임금을 강요 받고, 노동법 적용과 사회복지제도의 혜택에서 배제되었다.
이 당시 총 40 만 명에 이르던 이주노동자 중에서 무려 80%에 이르는 사람들이 미등록 신분이었다. 체류하는 이주노동자 5 명 중에서 4 명이 미등록 상태였다면 한 나라의 출입국관리체계가 완전히 무너졌거나 아예 없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 제 3 단계(2003 년 11 월~):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 병행 시기

[1] 모둠 구성원: 이미옥, 김시내, 정다예
[2] 막스 프리쉬(Marx Frisch), 『호모파버』의 저자, 기계인간 등 인간의 노동에 대해 연구

□ 제 4 단계(2007 년~): 편법적 산업연수제 폐지, 고용허가제 전면 실시
고용허가제는 외국인노동자에게 노동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할뿐 그들에게 가해져 온 각종 차별이 철폐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 2) 해외 이주노동자 선진제도: 독일을 중심으로

'일반노동허가'는 단시간 취업을 예정하는 외국인노동자에게 발부되는 것으로, 외국인노동자는 특정의 직종, 사업장의 취업에 대해 적당한 독일인이나, 이에 동일시되는 자가 없는 경우에 발급된다. 이에 반해 특별노동허가 제도는 사실상 독일에 정착한 외국인노동자가 기간, 지역, 직종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체류기간을 5 년, 또는 무기한 허용함에 따라 '교체순환원칙'이 붕괴됐으며, 그 결과 외국인노동자의 정착이 시작됐다. 독일이 특별노동허가 제도를 채택한 이유는 고용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고용주들은 숙련노동자를 귀국시키고 미숙련노동자를 받아들여야 하는 교체순환원칙[3]에 반발하며 외국인노동자의 체류 연장을 요구했다. 정부는 고용주들의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특별노동허가'를 발급할 수밖에 없었다.
새로운 형태의 교체순환정책: 외국인노동자 중 우수 인력을 선별하여 재고용 또는 영주하는 길을 터 놓음으로써, 업계의 숙련인력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노동자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었다.

## 2. 송출국에서 바라본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하에서 아직도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브로커를 통하여 한국에서의 고용의 기회를 얻고 있다. 이들은 브로커 비용 때문에 가족, 친구, 혹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입국 전부터 빚을 지게 된다. 이주노동자들은 인천공항에 도착하기 전부터 인권침해에 노출된다. 브로커들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알선해준 일의 성격과 임금에 대해 종종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때문에 이주노동자는 해외에 나가서도 더 큰 착취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 부채를 갚아야 하므로 돈을 모을 수가 없고 때문에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비자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할 결심을 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된다. 미등록신분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은 더 큰 착취와 인권침해의 위험에 놓이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주노동자는 브로커에게 취업 알선 수수료를 낸다. 정부가 취업알선 수수료의 상한선을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취업알선업체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출국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한다는 법적 의무를 지고 있으나 이루어 지지 않는

[3] 교체순환정책(rotation policy) : 일시적 노동력 활용 정책
일정 기간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를 반드시 내보내고, 그 후 새로운 외국인노동자를 받아들임으로써, 외국인노동자의 영구정착을 방지 하려함.

경우가 많다. 원래는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이주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목적국에서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주어야 한다.
고용계약서의 세부 내용이 정확한지 혹은 정확하게 번역되었는지에 관한 감독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이주노동자들과의 면담에서 드러났다. 고용허가제는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외국 인력 정책인 만큼 정부는 노동부를 통하여 송출 과정을 감독할 책임이 있다. 이것은 출신 국에서 고용주가 약속한 업무 내용과 임금을 명시한 계약서가 이주노동자들의 입국 후에 지켜지도록 부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착취적인 송출 관행에서 자신들을 보호하고 사업장 변경을 위해 고용주와 협상할 수 있는 권리가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일부 이주노동자들은 합법적인 취업을 포기하고 미등록 노동자로 일자리를 찾게 된다.

"내가 필리핀에 있었을 때, 나는 튜브 피팅을 테스트하는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고 왔어요. 그런데 2005 년 4 월 입국하고 나서 나는 CNC(금속부품생산) 공장으로 보내졌어요. 나는 이 일이 내 계약서 상에 명시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이 당황했어요. 최소한 내가 그 사람들한테 들었던 그 일이 아니었어요. 업무 내용이 계약서에 한국어로 적혀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아요."

## 3. 이주 노동자에 대한 문화적, 사회적 인식

"국적자가 아닌 이들, 특히 이주민, 난민들에 대한 혐오증은 현대 인종주의의 주된 흐름 중 하나이다."
– 더반선언 및 행동계획 16 절, 2001 년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에 관한 세계회의에서 채택

정치인, 관료, 미디어가 이주민 문제를 다루는 방법은 이주민과 이들의 권리에 관한 대중의 인식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대중의 두려움을 이용하거나 각종 사회 문제의 희생양으로 이주민들을 이용하는 것은 차별, 인종주의, 외국인 혐오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

### ❍ 보이지 않는 사람들

비정규 이주민들, 특히 인신매매되거나 노역계약을 맺었거나, 강제 노동에 묶인 사람들, 그리고 가정에 고용된 가정부들은 공식적인 통계에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신분 증명서를 고용주에게 빼앗겨서 없는 경우가 많고 당국과의 접촉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비정규 이주민들은 확인하기도, 찾아내기도 어렵다.
'숨어 버린' 이주민들은 착취와 폭력의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되어있다. 법적 지위나 증명서가 없다는 사실은 자신들의 권리 주장을 지극히 어렵게 만든다. 악덕 고용주들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주민들은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으며 종착지 국가의 사회적 네트워크로부터도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 고립은 그들을 착취와 폭력의 위협에 처하게 할 수 있다. 비정규 이주민의

경우 고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사회적, 지역적 복지를 요구하다가 당국의 관심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체포나 추방을 당하게 될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그들은 더 깊숙이 숨게 된다.

### ❍ 이주여성

예술 흥행비자로 입국해 일하고 있는 전체 여성 이주노동자의 84%는 필리핀 출신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다. 기지촌의 나이트클럽이나 바에서 일할 가수로 고용된 많은 필리핀 출신여성들은 입국 전 필리핀에서 매니저나 고용주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다. 한국에 도착함과 동시에 이들은 실제로 자신들이 하게 되는 일이 미군들에게 서빙을 하거나 음료를 파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며 미군들은 종종 이 여성들의 동의 없이 더듬거나 키스를 하기도 한다. 몇몇 곳에서는 고객과의 성관계를 강요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점을 깨달았을 때 여성들은 이런 환경 속에서 계속 일을 해야만 할 수밖에 없다고 느끼게 된다. 왜냐하면 이미 고용주에게 항공료, 비자 발급비, 숙식비에 대한 빚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돈을 벌고 본국의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기 때문에 그들은 별다른 선택의 여지없이 한국에 남아서 일을 할 수밖에 없다.

> 가난한 사랑 노래
>
> 신경림
>
>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
>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 두 점을 치는 소리
> 방범대원의 호각소리 메밀묵 사려 소리에
>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
>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 어머님 보고 싶소 수없이 뇌어보지만
> 집 뒤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 새빨간 감 바람소리도 그려보지만.
>
>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 내 볼에 와 닿던 네 입술의 뜨거움
>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네 숨결
> 돌아서는 내 등뒤에 터지던 네 울음
>
>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 참고문헌


- 그림자 속의 삶 – 이주민 인권 입문서, 2006, 국제앰네스티
- 일회용 노동자 –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2009, 국제앰네스티
- 소수자와 한국사회, 후마니타스, 박경태, 2008

# 당신은 왜 동성애를 혐오하는가?[1]

## I. 과제의 주제와 방법

본 과제는 동성애 혐오의 유형을 알아보고 혐오를 갖게 한 비합리적 원인을 찾아 잘못된 편견·혐오를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동성애에 관한 인식조사를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잘못된 인식의 원인을 찾고 이를 해결할 자료조사를 실시하였다.

## II. 의식조사 및 혐오유형 분석

### 1. 설문조사와 인터뷰

#### 1) 설문조사

동성애에 대한 인식 조사 및 차별 사유를 알아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10가지 문항으로 무작위로 뽑은 12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1〉 설문조사지

저희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슈를 고민하는 엠네스티 인권대학 학생들 입니다.
이 설문지는 동성애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해소하고 동성애자의 인권증진을 목적으로 동성애자에 대한 인식조사를 위한 설문입니다.
각 문항에 솔직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나이: · 성별: · 종교:

○ 그렇다 — △ 잘 모르겠다 — X 아니다

[1] 모둠 구성원: 김무진, 박은경, 조인영

1. 당신은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이해한다 ② 관심 없다 ③ 싫어한다

1-1. 동성애를 싫어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① 종교적 신념 ② 질병에 대한 공포 ③ 전통적 가족해체 야기 ④ 기타

2. 동성애 인구가 전체 인구의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① 5% 미만 ② 10% ③ 30% ④ 50% 이상

3. 당신의 주변에 동성애자가 있습니까? (○, X)

3-1. 주변에 동성애자가 있다면 누구입니까?
① 가족 또는 친지 ② 친구 또는 직장 동료 ③ 기타

4. 동성애는 학습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 X)

5. 동성애는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X)

6. AIDS 감염의 주요 원인은 동성간의 성교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X)

7. 동성 결혼을 합법화 하면 가족해체 및 출산율 저하를 야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X)

8. 당신은 겉모습으로 동성애자를 구별 할 수 있습니까? (○, X)

## 2) 설문조사 결과

조사결과 남녀 비율은 6: 4정도로 남성이 비율이 높았으며(그림1) 종교는 무교, 기독교, 불교 순으로 나타났고(그림2) 조사 연령은 19세 이상 60대 이하였다.

〈그림1〉 설문조사 성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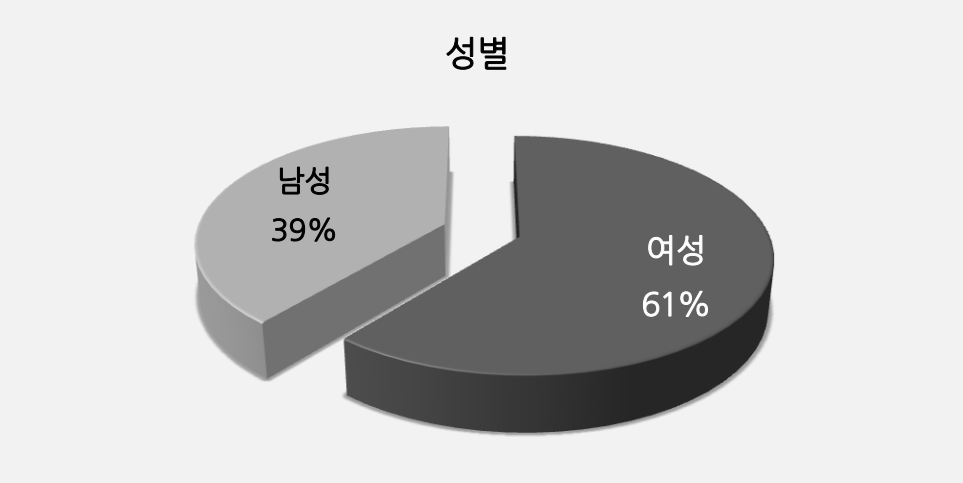


〈그림2〉 설문조사 종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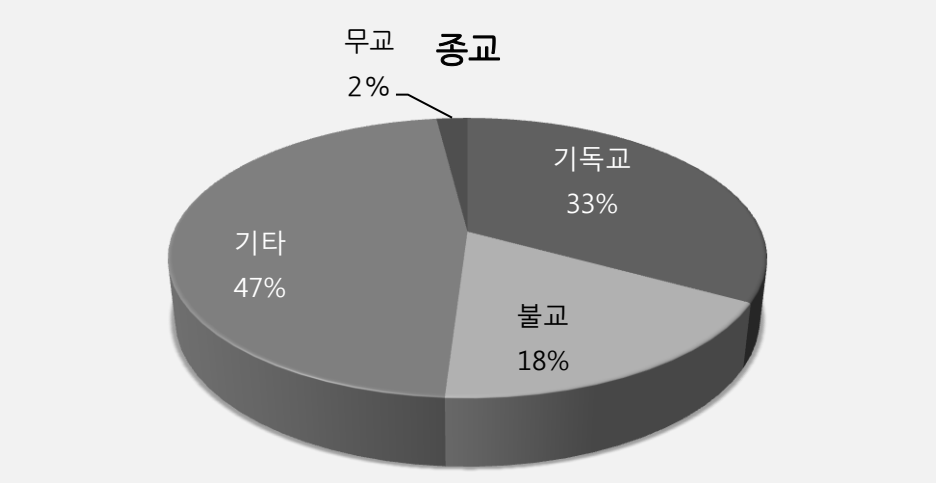


각 항목에 대한 조사결과는 1번 문항에 대해 44%가 동성애를 이해한다고 대답했으며 관심없다 31% 싫어한다가 25%가 나타나 명백하게 호모포비아임을 드러내는 비율은 25% 정도였다(그림3). 동성애 혐오의 이유는 종교적 신념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가족의 해체와 질병에 대한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의 의견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혹은 관심이 없어서라는 답변이 있었다(그림4). 반면 동성애에 대한 직접적인 혐오를 드러내지 않더라도 4번~7번으로 연결되는 항목에 대한 대답을 보면 동성애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가 부족하고 또한 동성애를 배운다거나 동성애가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아 동성애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5). 2번 문항에 대해서는 61% 가량이 동성애 인구가 5% 미만일 것이라고 추정했으며 30% 정도가 10%로 추정하여 동성애 인구가 극히 낮다고 예상하고 있었다. 3번 문항에 대한 답으로 주변에서 동성애자를 접해보지 못한 비율이 82%였고 동성애자가 주변에 있는 18%의 경우 가족이나 친지 또는 친구나 동료와 같이 가까운 관계는 10%에 불과 했고 주로 직접적 관련이 없는 관계거나 타인을 통해 동성애자라고 듣거나 추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본 조사는 표본집단이 충분히 크지 못하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동성애를 이해하고 차별 없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비율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동성애를 혐오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일정 부분에서 차별적 시선을 갖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동성애에 대한 무관심, 무지에서 오는 혐오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것에서 오는 오해나 편견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림3〉 설문조사 동성애 이해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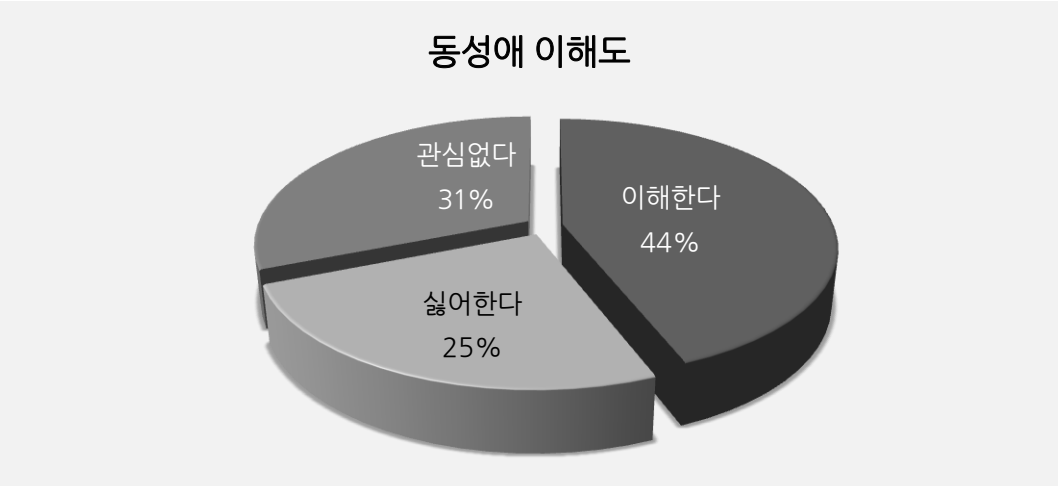


〈그림4〉 설문조사 혐오이유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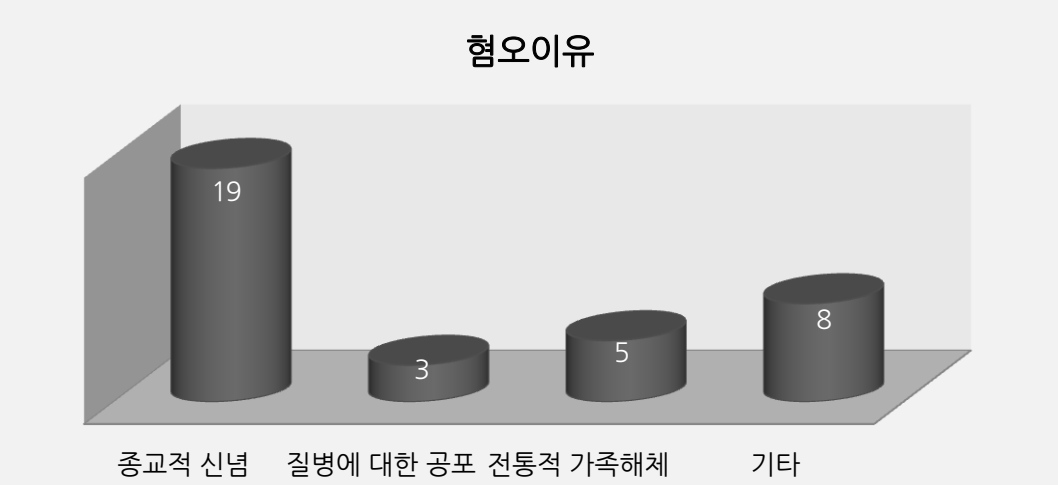

〈그림5〉 설문조사 동성애 이해도 항목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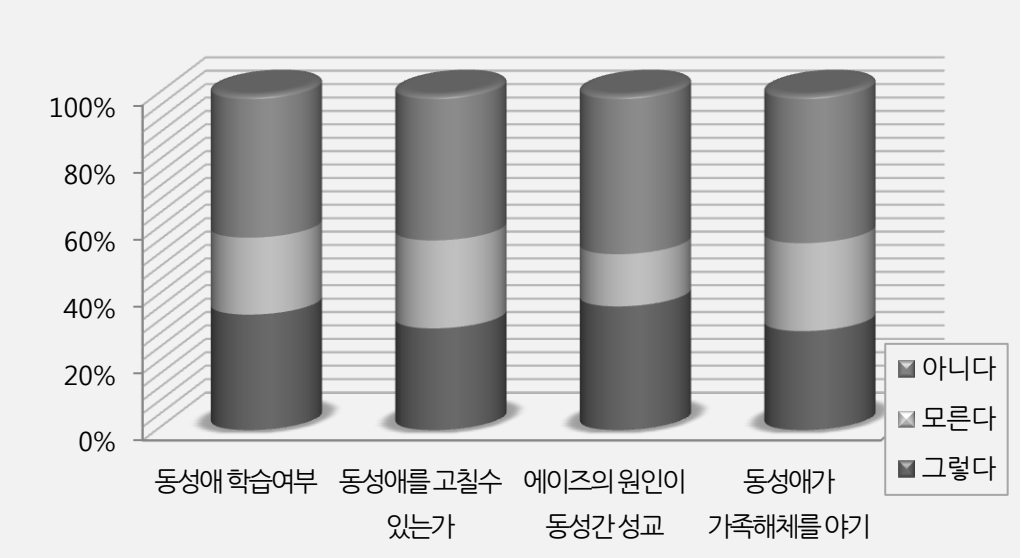


### 3) 인터뷰

이성애자 4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해 동성애에 대한 생각, 궁금증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 하였다.

〈표2〉 인터뷰를 통해 나타난 편견

"남자끼리 잔다는 생각밖에 나지 않는다."
"동성애자에 위해를 가하는 호모포비아는 아니지만 가족이나 친구가 동성애자라면 인정할 수 없다."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성행위를 하는지 궁금하다."
"게이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잘생긴 게이커플 보는 것은 좋다."
"동성애는 정상이 아니다."
"게이들은 여성화된 남성이다."
"동성애자는 변태이다. "
"동성애는 유전자 때문이다."
"동성애는 어머니 탓이다."
"동성애자는 치료될 수 있다."
"동성애자들은 성욕을 억제하기 힘들다."
"에이즈는 동성애자들이 걸리는 병이다."
"항문성교는 반자연적이다."
"동성애자들은 특정 지역에 모여서 지낸다."
"동성애는 종교에서 금지하는 악이다."
"동성애자 자녀를 갖는 것을 끔찍한 일이다."
"아이에겐 아빠와 엄마가 필요하다."
"동성애자들만 우글거린다면 이 세상은 끝이다."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으나 주로 동성간의 성행위에 대해 궁금해 했으며 타인의 생활에는 관계하지 않지만 가족이나 친구가 동성애자일 경우 인정할 수 없거나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여성의 경우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잘생기고 패션감각이 뛰어난 남성동성애자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외에도 다양한 편견(표2)이 나타났는데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주로 혐오의 이유로 생각되는 4가지 편견 성, 종교(윤리), 가족, AIDS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 2. 혐오 유형분석

설문조사와 인터뷰 그리고 동성애에 관한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혐오 유형을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는 동성애에 대해 무조건적인 혐오와 차별을 나타내는 호모포비아, 두 번째로는 본인은 동성애를 혐오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특정 부분에서 동성애에 편견을 가지고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가 동성애자일 경우 인정하지 못하는 선택적 이해론자(우아한 호모포비아)로 구분하였다. 인터뷰와 설문을 통해 의외로 많은 수가 선택적 이해론자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호모포비아 뿐만 아니라 선택적 이해론자들이 존재하는 한 동성애자의 인권은 지켜질 수 없다고 생각하여 아래 조사를 통해 숨겨져 있는 선택적 이해론자들이 '내 안의 차별과 혐오'를 알고 고칠 수 있기를 바란다.

# III. 동성애의 역사

동성애는 예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언제나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왔지만, 역사 전체를 통해서 본다면 어느 시기에나 언제나 존재해 왔다. 단지 역사적으로 다른 형태로 존재하고 그에 따라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봐 왔을 뿐이다. 그러나 동성애에 대한 거부와 탄압을 주도하는 잘못된 편견과 고정관념은 언제나 동일하게 존재한다. 이러한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이 수천 년 동안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이유는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비난과 무지에서 비롯된 금기의 결과이다. 그리고 이러한 편견들에 대하여 정확히 검토해보는 것이 동성애에 대한 긍정과 부정 사이의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다.

12 ~ 13세기 흑사병
14 ~ 15세기 매독
20세기 에이즈 등등

12세기에 동성애자는 유럽을 휩쓴 흑사병 주요 전염의 원인으로 생각되어 박해를 받았다. 또한 14세기에는 매독의 원인으로 생각되어 많은 동성애자들이 이유 없이 사형에 처해졌다. 1800년대에는 유명한 오스카 와일드 사건을 비롯하여 여성적인 남성들은 사회분열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강제 수용되기도 했다. 1,2차 대전시기에는 모든 동성애자는 상대국의 스파이로 치부하여 고문과 사형에 처했으며, 1930년 공황 때에는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이러한 동성애 박해의 역사는 동성애 행위를 자연의 섭리를 벗어난 기이하고 변태적이며 반자연적이고 비정상적인 행태로 간주하는 생각에서 발전했다.

동성애자들의 존재는 동성애를 다룬 작품, 즉 문학, 예술 등에서 사회에 대한 강한 호소력으로 인해 점차 눈에 띄어 감에도 불구하고, 반동성애자들의 편견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특히 동성애에 대한 무의식적인 적대감은 국가, 교회, 경찰, 사법부 등 전통적인 제도들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대중적인 성격의 신문들이 그 뒤를 떠받치고 있었다. 1920년대 익명의 대도시들이 동성애자들에게 약간 너그러워지긴 했지만, 1930년대에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미국과 유럽에 불어 닥친 총체적인 위기상황 속에서 동성애자들은 다른 소수집단들과 마찬가지로 가련한 희생양이 되었다.

동성애는 단순히 반자연적인 행태로만 인식되던 것에 비해 근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범죄자 이미지가 강하게 형성되었다. 범죄자 동성애자라는 유형은 '젊은이들을 타락시키는 자' '끊임없이 새로운 희생양을 찾아 다니는 색마'라는 이미지를 바탕으로 19세기 말에 형성되었다. 이와 같은 이미지는 끊임없이 음탕한 행각들이 암암리에 성행하는 타락의 용광로인 대도시에 대한 불신, 계층 간의 이동으로 총체적 변혁의 시기를 겪고 있던 사회에 대한 불안감 등 당시 군중들이 느끼고 있던 두려움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신문과 잡지에서는 여러 가지 사회 내부의 불신 풍조를 환기시키는 글을 썼으며, 이러한 사건들은 일반 대중들에게 비굴하고 뒤에서 술수를 부리며, 파벌을 조성하고 나아가서는 음모를 일삼는 추악한 동성애자들의 이미지를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19세기 말부터 일기 시작한 전투적인 동성애 운동, 그리고 클럽과 사교장을 중심으로 동성애와 관련된 하위문화가 구축되어가자 불안감은 더욱 고조되었다. 1920년대로 접어들면서부터는 동성애를 혐오하는 비난은 약간 수그러들었지만,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여전히 계속되었다. 특히 1924년 독일 하노버에서 여러 명의 청소년들을 잔인하게 연쇄 살인한 하르만 사건은 동성애자가 흉악한 유아 성폭행범이자 '젊은이들을 타락시키는 자'라는 환상을 다시 한 번 불러 일으켰다. 그리고 독일 보수파가 이끌던 '복음교회협회'에서 사회적인 불안에 맞서 낙태, 성병, 매춘, 동성애의 위험을 경고하는 '쓰레기 및 기타 오물들 척결' 투쟁의 선봉에 서기도 했다. 이러한 사회적인 공포심은 영국에서는 타인에 대한 지나친 관심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동성애자들의 유혹을 경계시켰던 청소년 성교육 책자에서 나타났다.

문명의 가치 기준들을 내부로부터 잠식하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피해의식은 양차 세계대전 사이에 무엇보다도 적의 진영에 분란의 씨앗을 뿌릴 것을 겨냥하는 정치, 종교, 인종차별주의적 공격을 통해 표출되고 있었다. 영국에서는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꽤나 인기를 끌었던 옥스퍼드 쪽의 활동들이 주로 공격 대상이었다. 프랑스에서는 툴루즈나 르아브로같은 항구에서 남창 행위를 하던 선원들이 경찰의 감시 대상이었다. 그들은 공산주의 프로파간다를 퍼뜨린다고 의심받았기 때문이다. 즉 동성애가 정치적 보복수단이 되었으며, 동성애 혐오론자들의 공격은 사회적 분위기에 휩싸여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1928년~1932년까지 모임을 가졌던 초현실주의자들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다음과 같은 신랄한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점차 체계화되어 가는 내가 존중해 마지않는 모든 신념들을 마비시키는 정신적, 도덕적 결함을 수용하라고 퇴폐 남색가들이 우리 지고한 인간의 자비심에 대해 강요하고 있는 사실을 나는 고발한다."

– 앙드레 브르통

동성애는 역사적으로 자연의 섭리를 벗어난 반자연적이고 비정상적인 행태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동성애는 최근에 생겨난 새로운 현상이 아니며 오직 인간에게만 나타나는 현상도 아니다. 미국의 생물학자 브루스 베주밀은 450종의 동물에게서 동성애 행태를 관찰해내기도 했다.

문제는 동성애 자체가 아니라 동성애에 대한 두려움이다. 사람들이 어째서 동성애란 말만 들어도 피하려 들고 증오심을 드러내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기오케넴, 『동성애의 욕망』 중에서

이제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명백한 불확실성의 원칙을 설정해야 할 때가 되었다. 오로지 '인간의 성'만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 이렌테리 (사회학자)

의학계는 1970년대까지 동성애는 정신질환이며 변태행위로 규정했다. 그리고 이러한 반대론자는 생식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성적 욕구, 즉 가학적 성애, 노출증, 소아애호증, 동물성애, 자기애욕증 등과 함께 동성애를 변태행위로 분류했다.

자연의 목적, 즉 생식에 부합하지 않는 성적 욕구가 외면화한 거의 모든 형태를 변태행위로 규정한다.

– 크라프트 에빙, 『성적 정신질환』 중에서

그러나 이러한 의견들이 의학계 전반에 걸쳐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예로 프로이트는 변태와 비정상의 문제를 병리학적 맥락과 상관없이 파악했다. 프로이트는 임상을 통해 "가장 정상적인 성행위에서조차 이른바 변태성이라 일컫는 일탈의 씨앗을 엿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동성애를 변태성의 범주에 넣어 분류하긴 했으나 결코 질병으로 간주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프로이트는 자기 아들을 치료해달라고 부탁하는 어느 미국 여인에게 1935년 4월 9일에 보낸 편지에서 동성애자가 신경증을 앓고 있지 않은 한 치료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저는 부인의 편지를 읽으면서 아드님이 동성애자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전 부인께서 아드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이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무척 놀랐습니다. 어째서 부인께선 이 말을 그토록 회피하려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동성애가 자랑은 아닙니다. 하지만 동성애는 결코 병이 아닙니다. 저희는 동성애를 성적 발달의 한 양태라고 생각합니다.

프로이트의 편지 중에서

그리고 이러한 견해는 1973년 비로소 공식화된다. 미국정신의학협회는 3년에 걸친 열띤 토론과 표결 끝에 동성애를 정신이상의 범주에서 삭제하고,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교범' 항목에서 제외한다. 1992년 세계보건기구헌장에 서명한 모든 가입국은 동성애를 정신이상의 범주에서 삭제한다.

# IV.미디어와 동성애 혐오

## 1. 방송

많은 미디어 매체들이 동성애와 관련 된 내용을 삽입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실제 작년에 방영되었던 SBS '인생은 아름다워', KBS 드라마스페셜의 '클럽 빌리티스의 딸들' 등은 동성애 장면을 적나라하게 방송하였다는 이유로 일부 기독교 단체, 시청자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들었다(표3).

〈그림6〉 드라마 '클럽 빌리티스의 딸들'

〈표3〉 KBS 드라마스페셜 시청자게시판 항의글

"이렇게 허용될 수 없는 성관계를 미화하고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은 가족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빌리티스의 딸들'은 동성애와 가족의 해체를 미화하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 보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동성애자가 된다거나 가족이 해체된다면 공영방송인 KBS가 책임지겠습니까?"

"이 동성애 드라마는 말 그대로 큰 조직을 만들어서 하나의 정치 권력화 되는 그런 국가 차원의 동성애 합법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드라마 같다"

"공감되지 않는 대사들, 마지막 그들이 춤추며 동성애자들을 만들려고 부추기는 뉘앙스가 절절하네요. 그

렇지요 구미가 당기는 소재 꺼리를 써야 하는 작가나 PD 심정 이해 갑니다. '19세 미만 관람불가'라고 화면에 올리면 청소년들이 안 보나요? 유해 드라마를 얼마나 아름답게 묘사했는지 레즈비언 다니는 바와 살고 있는 집들은 인테리어 잡지책에서나 볼 만한 배경 깔고 말이 19세 미만 관람불가라고 해 놓고 고등학생이 교복입고 나와서 함께 바에 등장하는 어이없는 풍경들 역겹습니다."

"어찌 수많은 시청자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드라마를 방영하게 되었는지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문화가 사방에 산재해 있어 아이들 키우기가 걱정스럽고 염려가 되는데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성정체성 혼란을 야기 할 수 있는 내용을 공영 방송에서 보게 될 줄 몰랐습니다! 공영 방송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지 마십시오!"

"(항의 전화) 공영방송에서 동성애 관련 드라마를 방영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에도 그런 내용을 담아 글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상담원님께서 저의 의견을 잘 전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많은 항의 전화 때문에 지금 사장님과 여러 사람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저는 방영이 취소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방영이 됐네요. 이것을 통해 kbs의 입장을 표명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동성애를 미화하며 동성애를 지지하는 공. 영. 방. 송이라는 것을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공영방송 kbs라..."

위의 댓글과 광고에서 공통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의견은 '자라나는 1O대들에게 이러한 유해한 영상이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였다. 그런데 10대들이 과연 이러한 유해매체를 보고 이들의 이야기처럼 동성애에 빠져드는 것인가? 반대로 이와 다른 의견을 내놓는 10대 블로거의 글도 볼 수 있었다.

〈표4〉 '인생은 아름다워'를 본 10대 블로거의 글

(중략)
경수의 엄마는 남들과는 다른 아들을 고쳐놓으려고 하죠. 태섭이를 찾아가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이제 아들로 보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합니다.

태섭이의 성향을 알게 된 태섭이의 가족들은 그와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들이 처음 내뱉은 한 마디는 '미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 하필 태섭이의 방을 찾아가서 미안하다는 초롱이,
계모로 들어와 내가 사랑을 많이 주지 않아 그런 것이 아니냐며 미안하다는 엄마,
널 이렇게 낳아서 미안하다는 아빠.
그들은 경수의 엄마처럼 태섭이를 질책하기보다는 그의 심정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남들의 따갑고 차가운 시선을 받아야 하는, 외로움 속에서 살아왔던 태섭이를 가족이라도 보듬어주자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김수현 작가는 사회적 논란이 될 만한 '동성애'라는 소재를 통해 따뜻한 가족애를 표현하고 싶었을

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 추측이 맞는다면, 작가의 의도는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성애, 아직 대다수의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남들과는 다른 사랑.
그리고 그것을 정신병으로 틀린 것으로 몰고 가는 우리의 사회.
다른 사랑이 우리의 작은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인생은 아름다워〉같은 드라마, 영화 등의 문화들이 그 시간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기를 간절히 빌어봅니다.

## 2. 신문

방송과 달리 신문의 경우에는 각 신문사의 보도 성향에 따라 동성애에 관련된 옹호, 비판적 논조가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다. 최근에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되었던 '학생인권조례', '차별금지법'도 주 관심사가 인권 보장이 아닌 동성애에 초점을 맞춰지면서 비난적인 논조의 기사(표 5)와 옹호하는 기사(표6)을 볼 수 있다.

〈표5〉 '크리스쳔투데이'의 학생인권조례 관련 기사

"학생인권조례, 학생들의 동성애와 임신 조장"
시민단체연합, 서울시의회서 성명서 발표 후 탄원서 제출

▲30여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신태진 기자

바른교육교사연대·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나라사랑학부모회 등 교사와 학부모들로 구성된 30여개 시민단체 회원들은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동성애를 조장하는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후 2만5천장의 탄원서를 교육위원회(김상현 위원장)에 제출했다.

시민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안은 순수한 주민발의가 아닌 전교조를 비롯한 소수의 세력이 주동한 조직적인 발의안"이라며 "본 단체들은 한 달여의 짧은 기간 동안 시민들로부터 2만장이 넘는 탄원서를 받았으며 이것이 진짜 주민의 소원이 반영된 주민발의안"이라고 소리 높여 외쳤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시의회를 점거하고 있던 일부 동성애옹호단체들과의 물리적 충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내부로 진입하여 탄원서를 제출했다.

시민단체 대표로 성명서를 발표한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 정성희 본부장은 "초등학생들을 동성애자 만들고 임신출산 조장하는 학생인권조례안은 즉각 폐지하라"고 성토한 후, "학생인권조례안에 찬성하는 일부 민주당 및 전교조 의원들은 임신한 여자 초등생과 아빠가 된 남자 중학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에 기재된 '성적지향'이라는 용어는 동성애는 단순히 기호에 따른 지향점이기에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동성애옹호론자들이 즐겨쓰는 표현"이라며 "초등학생들이 존중받아야 할 인권이 다른 무엇보다도 '성적지향'인가. 결국 학생에게 왜곡된 성인식을 부추기고 성 문란을 조장하자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조례는 아이들이 마음대로 임신하고 출산해도 된다는 성생활의 자유보장 논리로 발전할 수 있다. 결국 교사가 학생들이 임신하지 않도록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도 잘못이 된다"며 "이는 어린 학생들의 앞날을 망치고 성 윤리와 도덕의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입법 시도"라고 덧붙였다.

이어 학생들의 정치활동 합법화 내용이 담긴 발의안 16조와 관련, "진보세력의 핵심인 전교조는 광우병 촛불집회 때 학생들을 시위의 전위부대로 이용해 물의를 일으켰다"며 "특정 정치적 성향을 선동하는 전교조 활동을 서울시 학부모와 교육자들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배하면서까지 초등학생들에게 정치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일부 세력들의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전했다.

특히 정 본부장은 기독사학들의 건학 이념을 부정하는 주민발의안 15조와 관련, "종교과목 외에 대체과목을 개설함으로 종교사립학교들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는 위헌적 요소"라며 "이는 종교사학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기독교학교에 대한 탄압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종북세력들은 반공의 전통을 고수하고 있는 기독교를 가장 큰 걸림돌로 여기고 있으며, 여기에 일부 진보세력들이 동조하여 기독교의 확산을 막고 있다. 진보세력이 밀어준 곽노현 교육감이 만든 조례안과 진보세력이 추진한 주민발의안의 내용이 거의 흡사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정 본부장은 "서울시 교육청은 종교사학의 설립 취지를 부정하고 학교 존립을 위협하며 사회• 윤리적 타락을 초래하는 조례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종교교육에 대해서는 학생이 학교선택권을 갖거나 학교가 학생선발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 사립학교들의 자율을 보장하는 사학진흥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공립학교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사립학교가 담당함으로 교육의 다양성이 확보되도록 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들이 제출한 탄원서는 초중고생 동성애 및 임신• 출산 허용(제6조), 정당정치 활동 합법화(제16조), 미션스쿨의 건학이념 부정(제15조) 등의 독소 조항들을 지적하고 있으며, 시민단체들은 "주민발의안이 통과되면 우리 자녀들은 동성애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고, 학교는 AIDS의 온상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내용이 담겼다.

〈표6〉 BBS의 학생인권조례 관련 기사

학생인권조례는 "동성애 허용"?? 괴담수준의 거짓말
차별금지 조항을 의도적으로 왜곡... "동성애 허용한다"고 억지

개신교 계열 사학의 강제 종교교육 유지가 본심

오늘(16일) 처리예정인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최근 벌어진 여러 건의 논란들이 그렇듯 학생인권조례 역시 진보와 보수의 대결 양상을 기본으로 "동성애"라는 다소 황당한 논란거리도 덧붙여졌다.

보수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추락시키고 교사들의 생활지도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던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학생인권 조례가 학생들의 임신과 출산을 부추기고 동성애를 조장할 것"이라며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개신교 측에서도 '학생인권 조례가 미션스쿨(기독교계 학교)의 존재 가치를 부정할 것'이라며 반대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허용한다'거나 '임신과 출산을 조장한다'는 주장은 명백히 "괴담"이다. 학생인권조례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것들을 '허용한다'라고 쓰여진 부분은 없기 때문이다.

사실 보수단체들이 문제삼고 있는 조항은 학생인권조례 제7조 '차별 받지 않을 권리' 부분이다. 이 조항은 학생의 성별이나 종교, 나이 출신지역, 장애, 용모를 비롯해 임신이나 출산, 가족형태, 피부색, 정치적 견해 등 어떤 이유로 든 차별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조항에는 당초 '성적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니까 원래 의미는 "어떠한 경우라도, 설령 학생이 동성애자라고 해도 차별하지 말라"는 취지였는데, 그것이 엉뚱하게도 "동성애 허용"이라는 이야기로 변질된 것이다. 말 그대로 괴담이다. 심지어 고의적인 조작이 아닌가 싶은 의심까지 든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이상한 괴담(혹은 고의적 조작)이 발생하고 번지게 된 것일까?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 18조를 살펴봐야 할 듯싶다. 아마도 이 조항 때문에 모든 비이성적인 반대가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는 18조에서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면서 학생들에게 강제로 종교교육을 한다거나 교사 혹은 학교가 특정종교를 선전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물론 학생에게 종교행위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못박고 있다. 쉽게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앞으로는 기독교계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고 해도 채플시간에 반드시 참석하지 않아도 되고, 교목의 설교나 관련 과목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물론 학교마다 사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이 조항은 개신교 계열 학교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활동 중인 보수단체들이 개신교 측의 영향권을 많이 받고 있고, 지금까지 적극적인 반대에 나선 곳이 주로 개신교 측이라는 점을 볼 때,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반대의 실제 목적은 '동성애 반대'가 아니라 '종교강요 금지'를 무력화가 아니겠느냐 하는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오늘 서울시의회에서 다뤄질 학생인권조례는 사실 세계인권선언에 기초한 가장 보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동성애자라거나 어린 나이에 아기를 낳았다고 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 역시 기본적인 인권개념

이고 '글로벌 스탠더드'이다.

글로벌 스탠더드는 '자유무역협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인권은 그 보다 먼저 글로벌 스탠더드, 국제 표준에 맞춰야 하는 것이다. 오늘 서울시의회에서 부디 합리적인 합의와 결론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장용진 기자 / ohngbear@bbsi.co.kr]

특히 조선일보와 크리스천투데이 등 보수, 기독교 관련 신문의 경우 과거 동성애자였던 사람의 고백을 담은 '어느 동성애자의 양심고백'을 게재하여 큰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추후 바성연 등 일부 보수 단체 등은 이 기사를 빌미로 국회의원들에게 동성애에 관련된 의견서를 보내서 서면으로 그 답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또한 '바른 성문화를 위한 전국연합' 등 보수 단체에서는 SBS의 〈인생은 아름다워〉 방영이 더 많은 게이들을 생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광고를 신문 하단에 싣기도 하였다(그림7). 이 광고에서처럼 동성애에 대한 뚜렷한 편견과 혐오를 아무렇지 않게 드러내고 동성애자의 인권이 무시되는 사태가 공공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7〉 신문에 난 '바른 성문화를 위한 전국연합' 광고

〈인생은 아름다워〉 보고 '게이' 된 내 아들
AIDS로 죽으면 SBS 책임져라!

국가와 자녀들의 앞날을 걱정하는 '참교육 어머니 전국 모임' • 바른 성문화를 위한 전국 연합

# V. 혐오 사유 그리고 바로잡기

## 1. 성(gender)

### 1) 남성성, 여성성에 대한 생각

현대의 사람들은 동성애에 대한 무수히 많은 잘못된 편견과 고정관념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대화를 나누다가도 동성애가 화제에 오르면, 여러 가지 고정관념과 편견에 휩싸여 비이성적인 대화를 전개하게 된다. 왜냐하면 동성애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은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우리의 내밀한 공간, 즉 상상력이 마음껏 날개를 피는 은밀한 영역 안으로 침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남성성과 여성성이란 근본적 지표를 혼란케 하므로 이성적인 대화가 불가능해진다. 그 중에서도 남성 동성애를 이성애의 '역전'된 형태로 착각하는 경우도 다수 있다. 바로 이런 잘못된 이해로부터 여러 가지의 오류가 비롯된다. 남성간의 항문성교를 삽입/피삽입으로 이해하는 대신에 지배/피지배, 적극적/소극적, 남성/여성의 대립으로 파악하려는 의도가 대표적이다. 그러므로 남성성, 여성성에 관한 재정립은 곧 남녀 간의 투쟁 관계에서 탈피하려는 노력이다. 동시에 이러한 노력은 남성 자신으로서는 남성적 우월성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반대론자 대다수는 남성동성애를 여성성과 같은 부류로 분류하기를 서슴지 않는다. 그러나 애초에 성이란 존재는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사회적인 개념일 뿐이다. 즉 남성성, 여성성이란 사회적으로 부여되고 성립된 개념일 뿐이다. 그러므로 먼저 성에 대한 재정립이 이루어져야만 우리는 동성애에 대한 두려움을 탈피할 수 있을 것이다.

### 2) 여성해방운동과 동성애 해방운동

레즈비언은 일반적으로 범죄자로 간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위상이 게이와 다르기는 했지만, 일반 대중들이 보여주던 집요한 편견은 19세기 말과 1920년대에 특히 격렬했던 레즈비언 반대 캠페인을 진행시켰다. 또한 동성애와 마찬가지로 추악한 레즈비언 이미지는 여성해방운동 확산으로 더욱 고조되었던 자립적인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우려를 반영했으며, 사회적인 사건들로 인해 정신이상자 레즈비언이라는 편견까지 형성되었다. 그러나 레즈비어니즘과 트랜스베스티즘은 당시까지 제한적으로는 용인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는 하였다.

> 남성에게는 일말의 관심도 없이 오로지 여성에게만 마음이 끌리는 여성들은 유아기적 이성거부 반응단계에 머물러 있는 여인들이다. 이는 두말 할 것도 없이 1914년~1918년 전쟁 이전에 있었던 여성 참정권 투쟁운동의 원인이 되었다. 그들 가운데 몇몇 여성 리더들은 남성을 증오했다.
>
> – 레니 매컨드루

대체로 레즈비언들은 언제나 보편적인 기준으로부터 이탈해 여성 고유의 특성과 전통 도덕관념을 거부하는 반항아들로 간주되었다. 실제로 레즈비어니즘을 다루고 있는 문학을 보면 당대의 유명한 레즈비언들을 가명으로 등장시켜 이들이 특히 지성인 행세를 할 때 그 신분 상승 욕구를 조롱하였다. 레즈비어니즘과 페미니즘 사이의 연관성은 동성애 문제를 더 분명하게 규명하고자 하는 여성해방운동가들의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난 받았다. 미국에서 1830~1840년대에 배포되기 시작한 페미니즘 반대, 동성애 혐오 내용을 담은 유인물들을 살펴보면 여성운동가들의 '남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일반인의 눈으로 볼 때 여성 고유의 특징을 모두 잃어버린 듯 보였다. 그리고 전후 사회는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데 중점을 두었다. 사회는 여성들에게는 가정으로 돌아올 것을 그리고 개인들에게는 정조관념을 소중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도덕관념이 지배하는 가운데 레즈비언들은 사회를 파괴하는 위협으로 간주되었다.

"만약 누군가가 정신적으로 병들었다면… 그는 도덕적으로도 앓고 있다. 한쪽이 병들었다면 다른 쪽도 병들었다는 얘기다. 성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투적 성격의 운동들로부터 시작되었고 매스미디어를 통한 게이와 레즈비언들의 새로운 등장으로 완성된 동성애 해방운동은 차별과 부당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법적 차원에서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차별적 성격의 법안들을 점차 폐지해나가는 성과를 거두었다. 대표적인 예가 1989년 덴마크에서 시작되어 특별법을 거치거나 혹은 부부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립을 거쳐 1990년대에 유럽 각국으로 퍼져나간 동성애자 결혼에 대한 인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성애자 입양권 문제는 아직까지도 민감한 사안으로 남아 있다. 입양 반대론자들은 자연적 가족이라는 인류학적 논거를 내세우며 그와 같은 환경이 아이의 행복에 해가 될 것임을 경고함과 동시에, 학교를 비롯한 외부와의 접촉 시 아이가 겪게 될 '심리적 충격'이라는 전통적인 논리를 내세웠다. 그러나 과거의 이성애 관계에 의한 것이건 또는 개인적 노력의 소산이건 간에 많은 동성애자 커플들은 이미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은 아이들의 행복을 저해할 무책임한 존재로 자신들을 규정하는 부정적인 논리를 거부하고, 편부나 편모를 둔 가정과 재결합한 가정 등으로 가족의 구조 자체가 현격하게 달라졌고 성과 출산 사이의 관계가 상당히 희박해진 현대사회에서 온 전한 부모가 될 수 있는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한다.

오늘날 동성애는 과거와는 달리 사회적으로 일부 인정을 얻고 있다. 하지만 동성애 문화가 점차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고, 여러 운동선수, 정치인 등이 해마다 여러 게이 프라이드 행사에 참여하면서도 가족, 이웃, 동료의 눈길이 두려워 '커밍아웃'을 단행하기는 아직까지는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재의 동성애 문화는 지난 수 십 년 동안 동성애자들 스스로 일구어온 창조물이다. 그러나 분열과 긴장, 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게이 혹은 레즈비언 분리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퀴어 이론의 추종자들, 공동체주의나 동화를 옹호하는 사람들, 그 모두가 동성애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게 하는 데 일조했다. 따라서 동성애 혐오론자들의 편견이 여전히 사회적으로 만연하다 할지라도 동성애자들 스스로가 창출해낸 이미지를 제시함으로써 얼마든지 그에 답할 수 있을 것이다.

## 2. 종교

앞선 설문조사나 미디어 부분에서 언급했듯이 종교집단에서는 동성애를 죄악시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성경'에 같은 뿌리를 두고 있는 개신교나 카톨릭의 경우 동성애가 죄악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하고 성서에서 말하는 일부 구절을 증거로 동성애를 배척하고 혐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조사는 종교가 신의 이름을 앞세워 동성애자 인권을 탄압하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기 위함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인 동성애자와 아무 근거 없이 본인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동성애를 혐오하게 된 안타까운 기독교인, 그리고 기독교가 차별하는 하는 종교라고 단정짓게 되는 비기독교인 모두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과연 어떤 성경구절이 그들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반박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할 것이다.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의 반응 〉
"성애는 음란의 끝, 성도들이 분노 가져야 한다." – 박성규 목사
"동성애는 한 인간이 직면할 수 있는 가장 큰 시련이지만, 결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
– 교황 베네딕토 16세
"나는 동성애자였지만 은혜로 고칠 수 있었다" – 이요나 목사

### 1) 신명기 23장 17절 -18절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WHORE)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SODOMITE)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의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 임이니라.

이 구절은 특히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동성애를 정죄 구절이다. 기독교에서는 '미동'이 남성 동성애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를 앞 구절의 창기와 동일시 하여 성적의미를 담아 죄악시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대한 히브리 단어의 오역이 있다. 여성형인 카데샤는 여기서 창기로 번역되었지만, 남성형은 '남창이나 몸을 파는 남자'라는 번역 대신 얼굴이 예쁜 남자아이나 남성 동성애자를 떠올리게 하는 '미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다. 사실상 이 구절의 정죄 대상은 여자는 창기와 남자는 동성애자가 아니라 남녀 모두의 성매매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는 언약 말씀이며 그 중에서도 23장은 전쟁 중에 '모든 악한 일'을 멀리하고 깨끗한 정절을 요구하여 승리를 하기 위한 내용이다.
즉, 현대사회에서 말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이 있는 동성애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건 여자건 돈을 주고 사는 행위와 이런 행위가 이교도적 주술에서 비롯한 것임을 비난하는 내용이다. 또한 남창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미동'이 실제적으로 남자에게 성을 판 것인지 여자에게 성을 판 것인지조차 알 수 없다.

### 2) 소돔과 고모라

사사기 19:22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비류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know)하리라.

유다서 6-7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going after strange flesh)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베드로 후서 2:4, 6-8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니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 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unlawful deeds)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성서에서 말하는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으로 타락하고 범죄가 만연한 지역으로 대표되며 이 때문에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고 멸망한다.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는 성적 타락의 중심에 동성애를 두었으며 이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에 행해졌던 하나님의 심판을 현대의 동성애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에스겔 16:49-50에서 말하기는 성적인 것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에서 비롯한다.

에스겔 16: 49-50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abomination)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또한 신학박사 Bailey는 소돔 이야기의 해석에 도움이 되는 많은 고대 문서들의 연구를 통해 동성애적 행위가 소돔 멸망에 대한 해석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B.C. 2세기부터라고 한다.
즉 반동성애적 시각은 초기 성서와는 다르게 이후에 덧붙여진 해석인 것이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분노한 것은 누구를 성적파트너로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그네, 가난한 이, 과부, 고아로 대표되는 당시의 소수자를 학대하고 등한시 했기 때문이다. 이 구절을 읽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린 진노의 마음을 이해하는 기독교인이라면 이웃이 되는 동성애자를 혐오하고 차별하는 행위는 얼마나 큰 죄악인지 알 것이다.

### 3) 레위기 18:22, 20:13

'너는 여자와 교합함과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거룩함의 계율'로 알려진 부분으로 성결한 삶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앞선 18장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하고 20장은 이를 어겼을 때의 형벌을 나타내고 있다. 이 구절은 기독교인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동성애를 금하는 것으로 인용되며 동성간의 성행위가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율법은 구체적으로 이교적인 다신숭배를 하는 민족들에 둘러 싸여서 신앙적 문화가 오염될 위기에 처해있던 당시의 이스라엘인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레위기 18장에도 나타나듯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신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런 계율이 필요했다. 때문에 이 구절에 나타나는 '가증한 일(abomination)'로 번역되는 토예바라는 단어는 이교도적 행위를 지칭하는 것이지 특정한 성행위를 지칭한다거나 현대에서 말하는 동성애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남자간의 교합은 다른 민족의 이교도적 행위였으며 이는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죄악으로 구분되는 것이었다.

또한 레위기는 주로 의식법(제사법, 성결의 법, 종교적 예식)을 취급하는 성경으로 구약시대에 지켜졌던 법이다. 그렇지만 신약 시대를 지난 현대 기독교인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레위기에서 지칭하는 의식법에 얽매이지 않으며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나타나는 정신을 깨달아야 하는 것임에도 오직 동성애를 죄악시하기 위해 위의 두 구절의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동성행위를 악으로 지정하는 것은 예수가 지적한 바리새인과 다를 바 없다.

### 4) 남색하는 자

> 고린도 전서 6:9
>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effeminate)나 남색 하는 자(abusers of themselves with mankind)나…

> 디모데 전서 1:10
> 음행 하는 자며 남색 하는 자(them that defile themselves with mankind)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슬리는 자는 위함이니…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이 두 구절에서 나오는 탐색하는 자와 남색 하는 자가 동성애를 지칭하므로 죄악이라고 칭한다. 이 두 구절은 모두 그리스어로 된 편지구절인데 여기서 나타나는 탐색 또는 남색하는 자의 단어들이 당시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학자들은 이 두 단어가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바가 남자들 간에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뜻하거나 항문성교(이는 동성과 이성을 구분하지 않는다)를 지칭하는 말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는 현대의 동성애(Homosexual)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또한 고린도서나 디모데서 모두 바울이 다른 교회로 보내는 서신으로 교회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책망하거나 바로잡기 위한 내용이다. 이를 볼 때 위의 구절도 동성애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물건으로 취급하여 이용하고 모독하는 행위가 교회를 와해시키게 되므로 이를 바로잡고자 함에서 나온 것이다.

### 5) 로마서 1:26-27

>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the natural use)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against nature) /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

고(leaving)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 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that which is unseemly)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느니라.

오랫동안 로마서의 이 구절이 여성과 남성의 동성애를 모두 지칭하며 이 죄악의 결과가 에이즈라고 설명되어왔다. 그러나 앞선 구절들과 마찬가지로 이 구절에서 뜻하는 역리로 쓰거나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하는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은 동성애를 지칭한다기 보다는 무분별한 성행위와 성적 정직성에 대한 비판이었다. 더 깊은 부분에는 당시 유대교와 달랐던 로마의 문화에 대한 거부감과 이방신에 대한 우상숭배에 대해 죄악시 하는 부분이 있다.
결과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어떤 구절도 현재 우리가 말하는 동성애를 죄악시 하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성경을 핑계 대고 동성애를 비난하는 것은 동성애를 단순히 성행위로만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에서 비롯한다. 성경은 이성애와 동성애의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 존중이 없는 인간관계에 대한 정죄와 더불어 인간을 성적으로 이용하고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비난하고 있으며 이는 인간 관계를 성행위로만 바라보는 잘 못된 시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구약에서 신약까지 성서의 바탕에는 '사랑'이 있다. 이 사랑을 기본으로 하는 인간관계가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관계이며 이 점을 명확히 한다면 성경을 바탕으로 동성애를 혐오하는 것이 얼마나 기독교적 신념에 위배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기독교는 동성애를 비롯한 성적지향을 악으로 규정하고 희생양 삼아 성에 윤리적 잣대를 만들어왔다. 이로 인해 기독교적 사관 아래서 성적지향은 논의 될 여지도 없었으며 예수가 말한 사랑의 가치들은 묵살되었다. 기독교에서 자행하는 동성애 혐오는 단지 동성애자만 겨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성서 그 자체와 기독교인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오독과 악용으로 성소수자를 탄압하는데 성서가 사용되는 것은 그 자체로 죄악이며 기독교 스스로 예수가 완성한 율법의 철폐를 다시 되돌리는 것이다. 신의 이름을 앞세워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이들은 다시 한 번 성경을 읽고 묵상할 필요가 있다.

## 3. 가족해체

가족해체란 가족집단이 이혼, 가출, 유기 등에 의해 가족구성원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가족구조가 붕괴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가족해체는 넓게는 결속감, 소속감, 충성심, 합의, 가족단위의 정상적 기능 등의 파괴를 의미하고, 협의로는 별거, 이혼, 유기, 사망 등으로 갈등 혼인관계가 파괴되거나 또는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장기간 혹은 영구적으로 부재하여 결손가족이 됨으로써 가족이 구조적, 기능적으로 불안정하거나 불완전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가족해체의 원인으로 동성애를 보는 시각에는 가족 집단을 부모와 자식으로 보는 전통적 가족관이 바탕이 되어 있으며 자식을 낳지 못하는 가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식이 있다. 때문에 동성애가 가족해체의 원인이라고 할 때 가장 공격하는 부분은 출산율 저하이다. 과연 동성애자 커플이 많으면 출산율이 저하될까? 흔히 동성애자를 전체 인구의 10퍼센트 정도로 가정한다면 나머지 90퍼센트의 이성애자들을 제치고 동성애자가 인구 감소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2011년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합계 출산율217위로 출산율 하위국가에 속한다. '미혼율의 상승과 초저출산에 대한 대응 방향'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현재 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인 초저출산국가이며, 여기에는 경제적, 사회적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다. 부동산을 비롯하여 교육비용까지 경제적 부담이 크고 보육환경이 열악하며 특히 여성이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고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 등 출산율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산재해 있다. 이처럼 사회적·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저하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동성애를 악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처사이다. 또한 〈표 7〉에서 보듯이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국가 중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낮은 나라는 없으며 이는 동성애나 동성의 결혼이 출산율과는 무관함을 알 수 있다.

〈표7〉 2011 출산율 현황

**합계 출산율 하위 국가 현황**

| 순위(*) | 국 가 | 합계출산율 |
|---|---|---|
| 217 | 한 국 | 1.23 |
| 218 | 일 본 | 1.21 |
| 219 | 대 만 | 1.15 |
| 220 | 싱가포르 | 1.11 |
| 221 | 홍 콩 | 1.07 |
| 222 | 마카오 | 0.92 |
| OECD 34개국 평균 | | 1.74 |

* 전 세계 222개 국가 중 순위

〈자료:CIA World Fackbook 2001, 한국개발연구원(KDI)〉

**동성결혼 허용국가 출산율 현황**

| 순위(*) | 국 가 | 합계출산율 |
|---|---|---|
| 135 | 프랑스 | 1.98 |
| 165 | 덴마크 | 1.74 |
| 173 | 스웨덴 | 1.67 |
| 174 | 네덜란드 | 1.66 |
| 184 | 캐나다 | 1.57 |

가족해체나 출산율 저하의 문제를 전통적 가족관에 기대어 해결하려고 하면 아무런 답을 기대할 수 없다. 가족이란 신뢰, 애정, 결속감, 소속감, 충성심, 합의 등을 공유하는 집단이다. 현대의 가족개념은 혈연집단이 아닌 독신자, 동성 가족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가족의 개념은 국가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선택할 문제라는 사회적 이해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가족의 해체, 구성, 조립은 모두 인간의 기본 권리에 해당하며 이러한 권리를 성적지향이나 기타 다른 사유로 저해할 수 없다. 동성애가 가족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새로운 가족 형태를 이루기 위해 동성 결혼이나 입양에 대한 기회도 박탈해서는 안 된다.

# 4. 에이즈(AIDS)

## 1) 에이즈(AIDS)-HIV는 무엇인가?

### ① HIV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는 인체의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바이러스로 크게 HIV-1과 HIV-2로 나눌 수 있다. 계통학적으로는 원숭이에게서 면역결핍증을 야기하는 SIV(simian immuodeficiency virus)와 근접해 있다. 현재 전 세계적 유행은 HIV-1에 의한 것이고, HIV-2는 서부 아프리카의 일부에서 유행하고 있다. HIV는 생물학적 특성상 변이가 쉽게 일어나며 이러한 변이가 질병의 치료와 백신 개발에 큰 걸림돌이 된다. HIV가 세포에 침입하면 자신의 RNA를 뼈대로 해서 DNA를 생성하고(이를 역전사라 한다), 이렇게 생성된 DNA가 감염된 세포의 핵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역전사를 매개하는 것이 HIV의 역전사효소(reversetranscriptase) 이다. 역전사효소(reverse transcriptase)에 의한 유전물질 복제는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HIV 유전물질 전체가 복제될 경우 1회 당 대략 5건 정도의 오류가 발생하며, 이러한 불안정성에 의해 HIV는 쉽게 변이하게 된다. HIV의 주요 표적세포(감염되는 세포)는 helper T cell 또는 inducer T cell이라 불리는 CD4+ T cell로 이는 면역반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HIV는 바로 이 면역 T세포에 기생하는 바이러스로 감염 후 갑자기 증식하여 HIV가 T세포를 파괴시키면, 인체를 침입자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면역시스템이 망가지게 되고 결국 작은 병균의 침입에도 방어하지 못하게 되면서 질병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8> HIV의 유전자 구조와 단백질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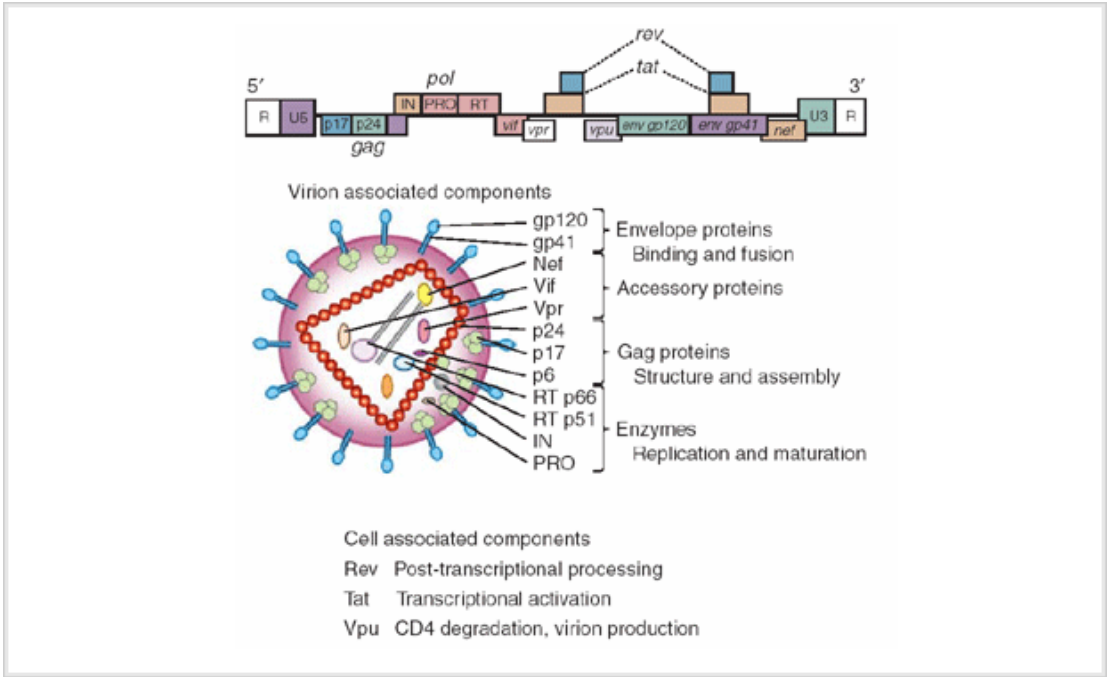

**※ HIV 감염 경로**

상대방을 감염시킬 수 있는 체액은 감염인의 혈액, 정액, 질 분비액, 모유이다. 이런 체액을 통해 HIV에 감염되는 주된 경로는 다음과 같다.

- HIV감염인과 성관계를 통해 상처로 질 분비액이나 정액이 흘러들어 갈 경우
- 감염인이 사용한 주사기, 주사바늘을 같이 사용할 경우
- HIV에 감염된 혈액을 수혈 받을 경우
- 감염된 산모의 임신이나 분만 도중에, 혹은 감염된 엄마의 수유를 통해
- 의료 행위 중의 사고 (오염된 주사바늘에 찔리기 등)

### ② 에이즈(AIDS)

AIDS란 이름을 풀어보면 Acquiredo(후천성) Immune(면역) Deficiency(결핍) Syndrome(증후군) 이란 뜻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건강한 인체 내에서는 활동이 억제되어 병을 유발하지 못하던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기생충 등이 병원체로 재활하거나 새로운 균이 외부로부터 침입, 증식함으로써 발병하는 일련의 모든 증상들을 총칭하는 말이다. 즉 AIDS라는 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HIV에 의해 다른 병에 걸린 상태를 뜻한다.

1993년 개정된 미국 CDC의 HIV classification system에 의하면 AIDS를 다음과 같은 정의하고 있다.
HIV에 감염된 환자중에서
△ 혈중 CD4+ T cell이 200/ul 이하이거나, 전체 T lymphocyte중 14% 이하일 때
△ 에이즈 정의질환(AIDS surveillance case definition)을 가지고 있는 경우
CDC에서는 HIV 감염환자에서 Clinical Category를 A, B, C로 분류하고 있고, 이중 Category C에 해당하는 질환이 에이즈 정의 질환이다. HIV의 Clinical Category는 다음과 같다.

<HIV 감염과 에이즈 카테고리>

| | |
|---|---|
| Category A | Asymptomatic HIV infection<br>Persistent generalized lymphadenopathy<br>Acute (primary) HIV infection with accompanying illness or history of acute HIV infection |
| Category B | Bacillary angiomatosis<br>Candidiasis, oropharyngeal (thrush)<br>Candidiasis, vulvovaginal; persistent, frequent, or poorly responsive to therapy<br>Cervical dysplasia (moderate or severe)/cervical carcinoma in situ<br>Constitutional symptoms, such as fever (38.5 C) or diarrhea lasting greater than 1 month<br>Hairy leukoplakia, oral<br>Herpes zoster (shingles), involving at least two distinct episodes or more than one dermatome<br>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br>Listeriosis<br>Pelvic inflammatory disease, particularly if complicated by tubo-ovarian abscess<br>Peripheral neuropathy |

| | |
|---|---|
| Category C | Candidiasis of bronchi, trachea, or lungs<br>Candidiasis, esophageal<br>Cervical cancer, invasive<br>Coccidioidomycosis, disseminated or extrapulmonary<br>Cryptococcosis, extrapulmonary<br>Cryptosporidiosis, chronic intestinal (greater than 1 month's duration)<br>Cytomegalovirus disease (other than liver, spleen, or nodes)<br>Cytomegalovirus retinitis (with loss of vision)<br>Encephalopathy, HIV-related<br>Herpes simplex: chronic ulcer(s) (greater than 1 month's duration); or bronchitis, pneumonitis, or esophagitis<br>Histoplasmosis, disseminated or extrapulmonary<br>Isosporiasis, chronic intestinal (greater than 1 month's duration)<br>Kaposi's sarcoma<br>Lymphoma, Burkitt's (or equivalent term)<br>Lymphoma, immunoblastic (or equivalent term)<br>Lymphoma, primary, of brain<br>Mycobacterium avium complex or M. kansasii, disseminated or extrapulmonary<br>Mycobacterium tuberculosis, any site (pulmonary or extrapulmonary)<br>Mycobacterium, other species or unidentified species, disseminated or extrapulmonary<br>Pneumocystis carinii pneumonia<br>Pneumonia, recurrent<br>Progressive multifocal leukoencephalopathy<br>Salmonella septicemia, recurrent<br>Toxoplasmosis of brain<br>Wasting syndrome due to HIV |

## 2) 동성애≠에이즈≠죽음

### ① 동성애와 에이즈를 연결시키게 된 역사적 원인과 통계적 상관관계

에이즈가 대중에게 알려진 것은 1981년 첫 환자가 사망하면서부터이다. 1981년 6월 샌프란시스코의 남성 동성애자 5명은 면역력이 약해진 환자만 걸리는 주폐포자충폐렴(Pneumocystis carinii pneumonia)과 카포시 육종(Kaposi's sarcoma)이라는 희귀 폐질환에 걸렸고 이 중 2명이 사망했다. 한 달 뒤 26명의 남성 동성애자가 같은 질병과 치료약의 부작용으로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질병의 발생은 구체적인 원인을 모른 채로 공포를 심어줬고 게이커뮤니티만의 질병으로 구분되어 동성애로 인한 성병으로 잘못 인식되었으며 이름도 지어진 것이 없이 게이관련면역결핍증후군(GRID) 혹은 게이암으로 불렸다. 훗날 이 질병의 원인이 HIV-에이즈(AIDS)라고 정정되었고 동성애와 무관하게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알려졌지만 HIV-에이즈의 위험은 고스란히 동성애와 연결되어 '동성애=에이즈'의 공식이 만들어졌다.
또한 HIV에 대하여 비교적 많이 알려진 현재도 남성동성애자는 HIV-에이즈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 하는 증거라며 매번 동성애자의 에이즈 환자의 통계수치를 내고 있다. 2011년 3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HIV 누적 내국인 감염자 수는 7,835명이고 이 중 1,393명이 사망하여 현재 6,442명이 생존해있다. 성별 및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이 7,198명(91.9%), 여성이 637명(8.1%)으

로 11:1의 감염비율을 나타내며 연령분포로는 20대 1,744명(22.3%), 30대 2,414명(30.8%), 40대 1,856명(23.7%), 50대 1,074(13.7%) 이다. 감염경로가 확인된 6,213명 중 성접촉에 의한 감염이 6,158명(99%)이며, 수혈/혈액제제에 의한 감염이 46명(0.8%), 수직감염이 7명(0.1%), 마약주사기 공동사용으로 인한 감염이 2명으로 나타났다. 성접촉으로 인한 감염인의 이성간의 접촉은 59.7%, 동성간의 성접촉은 39.3%로 조사되고 있다(2011.3 질병관리본부). 통계수치로 보아서는 이성간의 성접촉으로 인한 HIV감염인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전체 인구대비 동성애자의 비율이 작으므로 동성애자의 감염비율이 높기 때문에 '동성애자=AIDS'라는 주장이 되풀이 되면서 동성애와 에이즈 관계를 지적한다. 이 때문에 에이즈가 대중에게 알려진 이후 동성애를 혐오하고 차별하는 가장 큰 원인의 하나로 에이즈가 자리잡게 되었다.

### ② 동성애 ≠ 에이즈

먼저 최초의 에이즈가 동성애자였기 때문에 에이즈와 동성애를 연결시키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실제 최초의 에이즈 환자는 이보다 더 이전의 일로 동성애와는 무관하다. 현재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HIV는, 1930년대 원숭이에게 기생하는 바이러스로부터 진화된 것으로 보이며, 이후 HIV는 아프리카를 시점으로 전세계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워싱턴대학의 토우푸 주 박사는 시카고에서 열린 제 5차 레트로바이러스-감염가능성 회의에서 1959년 콩고민주공화국의 킨샤사에서 살던 반투족 남성이 에이즈로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이 남성에서 채혈한 혈액에서 HIV 감염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상기의 사례가 현재까지 확인된 최초의 AIDS 사례로 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이 HIV가 동성애자를 통해 전파된다거나 동성애자가 HIV의 원인처럼 생각하는 것은 무지에서 비롯한 것이며 HIV에 대해 자세한 이해 없이 80년대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HIV-에이즈-동성애로 연결되는 공식을 그대로 답습한 결과에 불과하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기존에 최초라고 불려졌던 80년대 샌프란시스코 동성애커뮤니티에서 발생한 카포시육종이나 주폐포자충폐렴이 HIV와 무관하다는 연구논문들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레트로바이러스(HIV는 레트로바이러스의 일종)의 1인자라고 불리는 피터듀스버그 박사의 2008년 논문에 의하면 아밀기아질산염을 동물에 주입한 결과 면역세포를 파괴하였으며 반면 HIV 독자적으로는 면역세포를 파괴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면역세포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아밀기아질산염은 80년대 게이커뮤니티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 '포퍼'라는 최음제의 기본구성물이다. '포퍼'는 한때 에이즈의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하였으나 로버트갤로의 HIV-AIDS가설에 밀려 사장되었다. 듀스버그박사는 최음제를 조금만 사용해도 면역세포가 파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 즉, 80년대 죽어간 동성애자들은 '포퍼'로 인하여 면역력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검증의 기회도 없이 HIV-에이즈로 분류되었고 이것이 그대로 미디어 노출되면서 에이즈와 동성애자의 연결고리가 지금까지 이어져온 것이다.

두 번째로 동성애자의 에이즈 통계를 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숫자의 오류에 빠진 위험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다. 유엔에이즈(UNAIDS)에 따르면 전 세계적 HIV-에이즈 분포의 67%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집중되어 있고 아시아 및 남아메리카의 빈곤지역에 에이즈 분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그림 9). 이처럼 에이즈가 가난한 제 3세계 지역에 집중되어있는 것은 제 3세계에 동성애자가 많다는 기이한 가설을 떠올리기 보다는 에이즈의 최대 원인이 가난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다. 생각해보면 에이즈는 HIV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없다고 하더라도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이를 극복 할 수 있으면 죽음과는 무관하다. 즉 깨끗한 환경, 적절한 영양, 꾸준한 치료만 있다면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제 3세계의 가난은 영양은커녕 깨끗한 물 조차 부족한 실정이므로 HIV가 아니더라도 언제나 면역결핍에 의한 죽음에 직면해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제3 세계에서 발생하는 에이즈 환자의 60% 이상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나는 실태를 볼 때 남성동성애자를 에이즈의 주범인양 보는 태도는 과정에 대한 이해 없이 미리 만들어진 답을 끼워 맞추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반대로 굳이 동성애와 에이즈를 연결시킨다면 이러한 사회의 통념이 동성애자를 에이즈 고위험군으로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여 통계적 수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일례로 국내 에이즈단체에서는 동성애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에이즈 홍보와 검사창구를 확대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한 우리의 인터뷰에서도 나타났지만 이성애자는 에이즈에 대해 생각조차 해보지 않지만 온라인 동성애 커뮤니티에서는 종종 에이즈에 대한 이야기가 올라오곤 한다. 이러한 요건들이 이성애자보다 동성애자가 HIV 검사를 더 많이 받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것은 통계 수치에 영향을 줄 충분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통계의 수치를 해석하면서 원인을 정해두고 끼워 맞추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애초에 어떤 질병에서도 동성애와 이성애를 구분하여 통계를 내는 경우는 없는데 유독 에이즈에 관해서만 동성애와 이성애를 구분하여 질병 발생에 대해 통계를 내고 수치화 하는 것은 관계도 없는 원인을 만들어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처사이다.

〈그림9〉 전 세계 HIV 감염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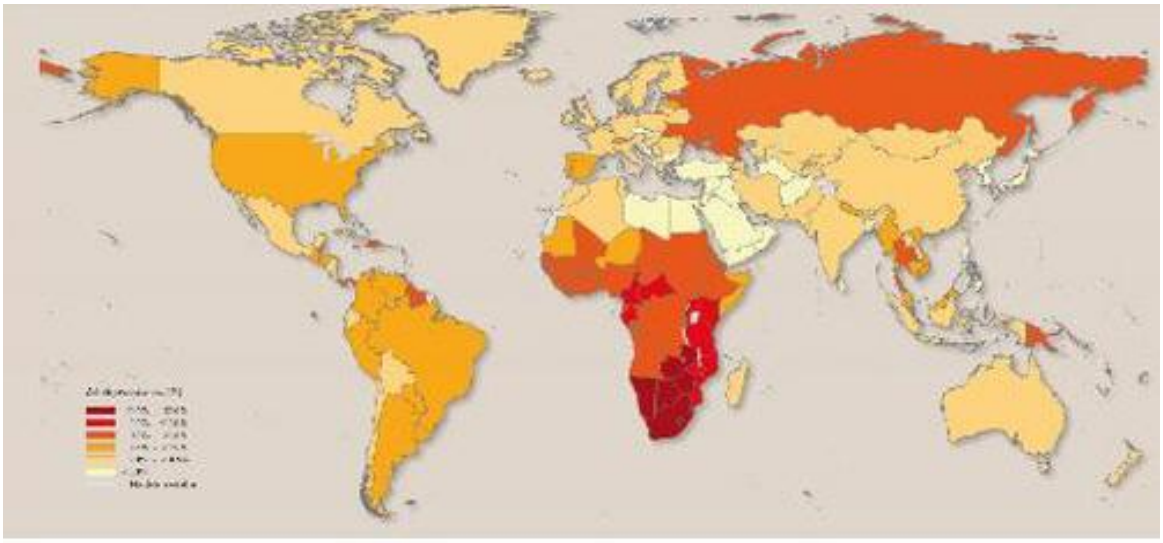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HIV는 바이러스이고 어떤 바이러스가 특정한 성행위나 성적지향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황당한 이야기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설사 성행위의 특이성이 바이러스의 전달을 촉진한다고 하더라도 HIV가 주로 성관계에서 정액을 통해 傳達된다고 볼 때 이 성 관계를 동성과 이성을 구분하는 건 무의미하다. 정액의 이동을 막고 싶다면 콘돔의 사용을 강조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더욱이 1번의 성행위를 통한 HIV 감염 확률은 0.1% 미만으로 다른 전염성 질병과 비교할 때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③ 에이즈≠죽음

20세기 들어서 에이즈는 만성질환이 되었다. 과거처럼 반드시 죽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치료와 약물을 통해 죽음에 이르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여러 국가에서 에이즈 환자=죽음이라는 공식에서 벗어났으며 에이즈감염인의 사망률은 자연사망률과 비슷하다.우리나라 최초의 HIV 감염자 남성은 1985년 확진을 받은 이래 현재까지 건강하게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에이즈로 죽는다는 제 3세계 사람들은 깨끗한 물, 먹을 음식, 청결한 환경만 보장되어도 그 수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결과적으로 에이즈는 더 이상 죽음을 동반하는 공포의 존재가 아니다.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역사적으로나 통계적으로나 어떤 이유를 붙여도 동성애와 에이즈는 연결할 수 없으며 더욱이 동성애와 에이즈와 죽음을 하나로 엮는 생각은 용납 해서는 안 된다.

### 3) HIV-에이즈(AIDS)에 대한 색다른 시각-반체제에이즈

앞선 내용들은 주류의학계에서 통용되는 HIV-에이즈 체제에 기반하여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지금부터 에이즈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여 동성애와 에이즈의 오해 관계를 다른 관점에서 재조명 해보고자 한다. HIV-에이즈에 체제에 대한 검증의혹과 논란은 30년 동안 계속 되었으며 지금도 HIV-에이즈 체제에 반대하고 재평가 해야 한다는 반체제에이즈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 과학의 기본 특성상 아무리 좋은 이론을 만들어도 절대적인 이론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모두 잠정 적으로 사용 가능한 이론일 뿐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반체제에이즈를 주장하는 비주류 의견 또한 한가지 가설로 주목 할 필요가 있다.
반체제에이즈를 주장하는 학자들 사이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HIV가 에이즈를 일으킨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아직 미약함에도 HIV를 에이즈의 원인으로 규정하는 것의 배경에는 정치적·경제적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80년대 동성애 커뮤니티에 면역질환이 발생할 당시 미국 질병관리센터는 소아마비의 감소와 더불어 줄어드는 연구 자금 때문에 새로운 질병이 필요한 시기였다. 새로운 질병이나 바이러스의 공포가 클수록 많은 연구자금이 유통되며 이 중심에는 정부와 제약회사 등의 거대 자본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때 동성애 커뮤니티에서 발생한 면역질환은 자금 유통의 좋은 기회가 되었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레이건 정부가 동성애자들을 억압하고 제어하는 수단으로 에이즈와 동성애를 연관시켰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동성애커뮤니티의 생활양식이나 동성애 자체를 공격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부적절함을 피할 수 없고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동성애의 공격을 죽음까지 도달하는 바이러스성 질병과 연결시킨다면 정치적으로도 매우 안정적으로 발언할 수 있으며 실제로 매우 효과적으로 동성애커뮤니티에 타격을 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정치적·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에이즈라는 면역질환증상이 HIV 때문이라는 발표를 하게 된다. 미국에서 이 발표를 한 사람은 로버트 갤로라는 과학자로 이 발표 당시 로버트 갤로는 HIV-에이즈에 대한 논문을 단 한편도 낸 적이 없었고 오로지 프랑스 파스퇴르 연구소의 몽니에르 박사가 발표한 HIV(리트로바이러스)에 대한 논문을 바탕으로 자의적으로 발표했을 뿐이다. HIV-에이즈 가설은 과학자들의 검증을 통하지 않았고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정치적 이유와 미디어의 도움으로 HIV-에이즈 가설은 확고한 지위를 갖게 되었으며 막강한 제약회사를 기반으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검증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

고 있다. 반체제 에이즈를 주장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몽니에르의 논문의 HIV 분리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의견도 있고 HIV 자체는 있으나 AIDS와는 무관하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현재 나와있는 어떤 논문도 HIV와 에이즈의 관계를 규명하지 못했으며 리트로바이러스가 단독으로 면역질환을 일으킬 수 없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주장은 현재 HIV 감염을 판별할 수 있는 어떤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주로 사용되는 HIV 판별은 ELISA 방법과 westernblot 방식인데 ELISA 방법은 위양성율이 매우 높은 검사로 단독으로 HIV 감염을 진단 할 수 없다. 반면 Western Blot 검사는 좀 더 정밀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으로 각기 다른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10개의 밴드를 이용하는데, 그 단백질은 오직 HIV에만 존재한다고 생각되는 이른바 HIV의 항원이다. 항원이 존재하면 밴드가 나타나는 것인데 문제는 나라마다 혹은 키트를 만드는 회사마다 이 기준이 다르며 반드시 HIV 관련 단백질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는데 있다. 즉, 어느 방식도 HIV를 명확히 진단 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검사를 혼합하여 HIV가 감염을 측정하는 것이다. 반체제에이즈 학자들은 세계의 어느 누구도 당신이 HIV가 있는지를 명백하게 말해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HIV검사의 오류에 대한 일례로 미국의 헤비급챔피언 토미모리슨은 1996년 HIV 양성판정을 받고 링을 떠났으나 계속적인 의혹을 제기하며 드디어 2007년 재검을 통해 HIV음성판정을 받아 다시 권투를 할 수 있게 된 일도 있었다(그림 10).

더욱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같이 빈곤한 국가에서는 ELISA, westerneblot 검사와 같은 방법마저 온전히 사용할 수 없다. 위의 두 가지 방법은 비용 면에서 저렴한 편이 아니므로 빈곤한 국가나 국민들이 이를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사가 에이즈 증상에 맞는 몇 가지 항목에 일치하면 HIV 감염여부와 상관없이 에이즈 진단을 내릴 수 있는 방구이 정의가 사용되기도 한다. 때문에 에이즈 발생률이나 통계가 부풀려지기도 하며 UNAIDS에서도 방구이 정의와 관련하여 통계의 부정확성을 지적한 일이 있었다. 에이즈와 관련된 약으로 벌어들이는 제약회사의 돈은 천문학적이며 에이즈기금 또한 어마어마한 수치로 매년 늘어나는 실정이다. 저개발국가에서 에이즈기금으로 받는 비용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므로 통계 수치를 조작하는 고상한 부패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가와 기관, 회사들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에이즈라는 질병은 과학적 이슈가 아니라 자본이 엮여있는 정치적 아젠다라고 보는 시선이 많다.

〈그림10〉 HIV 양성판정을 받고 11년 후 재검사를 통해 음성판정을 받은 토미모리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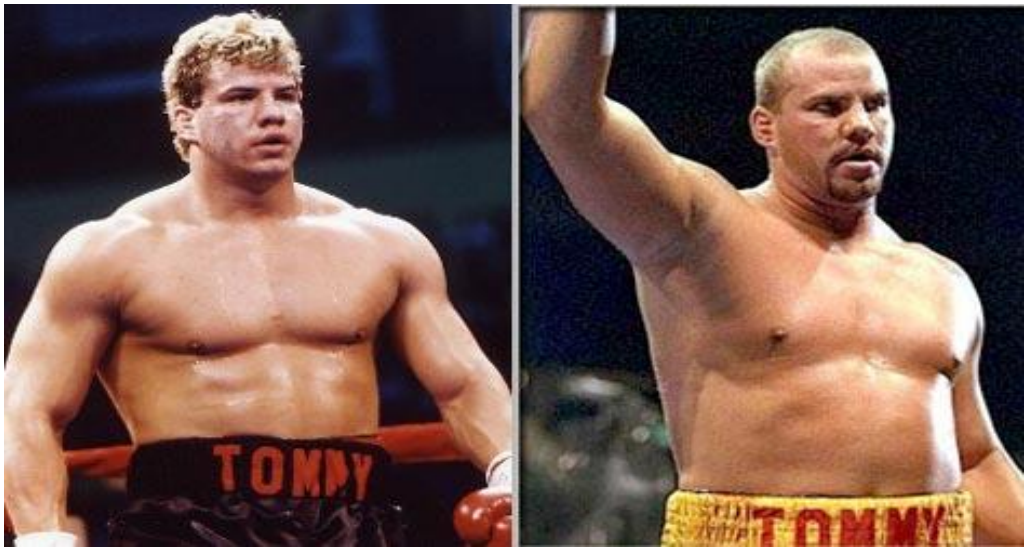


또한 반체제 에이즈 학자들은 HIV-에이즈 가설의 부정확성뿐만 아니라 에이즈 관련 약제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 이 학자들에 따르면 과거에 사용되었던 에이즈 약제 ATZ는 약을 먹을수록 면역결핍상태가 되고, 그 약으로 인하여 에이즈 증상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ATZ의 부작용이 알려지고 최근에 사용되고 있는 고효능 항리트로바이러스 요법(일명 칵테일 요법)도 처방 약을 먹으면 천천히 면역력이 저하되어 천천히 죽어간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에이즈 약을 안 먹으면 정상인처럼 수명을 다할 수 있으며 건강한 면역 체계를 갖추고 있다면, 인체가 HIV를 자연적으로 몇 주 만에 제거하고 가난한 국가의 감염인의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면, 그들은 자연적으로 HIV를 제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체제에이즈 학자들의 주장도 HIV-에이즈 가설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해명되지 않은 가설에 불과하다. 그러나 어떤 가설을 과학적으로 지지하느냐와 관계없이 에이즈를 둘러싼 자본과 정치적 이슈를 알 필요가 있다. 특히 동성애를 포함하는 에이즈와 관련된 수많은 차별과 인권문제를 생각할 때 반체제에이즈와 같은 다양한 시각은 우리에게 질병에 대한 이해를 돕고 무조건적인 공포를 제거하여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어떠한 가설을 지지하든 과장된 에이즈의 공포와 동성애를 연결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질병과 성적지향을 연결시키는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 또한 에이즈 예방과 에이즈 환자의 인권을 위하는 각종 단체 및 기관에서도 에이즈와 동성애를 연관시키며 동성애자를 잠정적 에이즈 환자나 위험집단으로 규정하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지 되새겨봐야 할 것이다.

# VI. 결론

인간은 다른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자신의 두려움을 합리화 하기 위하여 갖가지 이유를 만들어 혐오를 나타낸다. 동성애자는 이성애자에 비해 소수이며 다르다는 이유 하나로 오랜 기간 터부시 되고 차별 받아왔다. 그러나 동성애를 차별하고 혐오하는 그 이유들을 하나씩 풀어보면 위 보고서에서 나타나듯이 비과학적이고 사실과 다른 것이 대부분이며 지배계층이나 자본의 농간에 의해 만들어지고 이용당한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내 안의 뿌리깊은 차별과 혐오는 무지와 왜곡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별에 맞서서 정직하게 바라보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본 과제를 진행하면서 알게 된 것은 동성애는 오랜 차별의 역사에 비하여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차별 이슈에 비하여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어떤 이슈보다 혐오의 강도가 높으며 무엇이 차별인지 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혐오나 차별 행위가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 이는 동성애 인구가 소수인 것뿐만 아니라 성적지향이 겉으로 드러나거나 쉽게 알 수 있는 주제가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많은 수의 동성애자가 커밍아웃을 하고 동성애자의 인권에 대해 말한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나는 동성애자 입니다"하고 이야기 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차별과 혐오의 문제는 해결 될 수 없다. 이 과제를 통해 동성애에 대해 바로 알고 내 안에 혐오와 차별을 제거하는데 성공했다면 이를 바탕으로 성적지향이 개인의 정체성의 일부분임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다음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교육에서부터 학교까지 성교육 파트에 성적지향의 다양성을 배우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을 학습해야 한다. 더불어 기존에 팽배한 혐오와 차별 사유들을 고쳐나가고 각자 인식의 전환을 할 때 성적지향에 따른 인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성애를 취약집단으로 생각하여 공공의 적으로 만들려는 종교나 사회의 압력을 제거해 나가는데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Ⅷ. 참고문헌 및 참조

동성애허구4-전통과 가족해체구도 〈http://www.mediamob.co.kr/sinbiga/Blog.aspx?ID=157570〉
네이버 지식사전 '가족해체'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68447〉
김영철, KDI(한국개발연구원), CIA World factbook, 2011, 보고서 「미혼율의 상승과 초저출산에 대한 대응 방향」
게이총각, 개인 블로그 '이 남자 게이야', 「동성애 강의실#35. 이슬람(중동)에서의 동성애와 관련 정책」 〈http://crazygeno_kr.blog.me/120113501500〉
가톨릭신문, 2008, 「한국 가족의 형태 변화…해체인가, 새로운 가족인가」 1월 13일 [online]. [cited 2008.01.13]. 〈http://www.catholictimes.org/view.aspx?AID=162728&S=한국 가족의 형태 변화〉.
크리스천투데이, 2011, 「"학생인권조례, 학생들의 동성애와 임신 조장"」 12월 16일 [online]. [cited 2011.12.16].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52302〉.
BBS불교방송, 2011, 「학생인권조례는 "동성애 허용"?? 괴담수준의 거짓말」 12월 16일 [online]. [cited 2011.12.16]. 〈http://www.bbsi.co.kr/news/inside_view.asp?nIdx=537990〉
크리스천투데이, 2010, 「김정현 씨의 '동성애자의 양심고백'」 11월 10일 [online]. [cited 2010.11.10].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42243〉.
크리스천투데이, 2010, 「'동성애자의 양심고백'에 대한 한 동성애자의 반박'」 11월 13일 [online]. [cited 2010.11.13].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42335〉.
포털사이트 다음 성소수자 카페 RATEEN. '나는 성서를 왜 말하는가? ' 제 1편 – 제 6편 일부 발췌, 대표 출처 〈http://cafe.daum.net/Rateen/l7zn/92〉
테드제닝스 특별강연 http://www.youtube.com/watch?v=zUYBUHBp6p0
공자그 드 라로크, 『동성애』, 웅진지식하우스, 2007
플로랑스 타마뉴, 『동성애의 역사』, 이마고, 2007
다큐맨터리 〈House of Numbers〉, 2009
다큐맨터리 〈We were Here〉, 2011
다큐맨터리 〈The Other Side Of Aids〉, 2004
실리아 파버 『아주 중요한 거짓말 』, 2010
실리아 파버 『마르코루지애르의 무지개 저편』, 2010
한국에이즈재평가를 위한 인권모임 NOAIDS http://www.noaids.co.kr/
동성애자에이즈예방센터 http://www.ishop.or.kr
에이즈정보센터 http://www.aidsinfo.or.kr/
서울대학교 감염내과 http://www.iddoctors.org/Page.aspx?MenuID=ClinicAIDS
UNAIDS http://www.unaids.org/
칵테일요법 관련 http://www.healtoronto.com/cocktail.html
반체제에이즈 http://www.virusmyth.com/aids/index.htm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대 http://cafe.naver.com/ascis
캐리멀리스(노벨상 수상자) 인터뷰 http://www.virusmyth.com/aids/hiv/cfmullis.htm
F Barre-Sinoussi et al., (May 1983). "Isolation of a T-lymphotropic retrovirus from a patient at risk for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AIDS)." Science 220, no. 4599: 868-871
HIV의 발견 역사 http://en.wikipedia.org/wiki/Luc_Montagnier#History_of_the_discovery_of_HIV
http://www.avert.org/origin-aids-hiv.htm
Montagnier L (November 2002). "Historical essay. A history of HIV discovery". Science 298 (5599): 1727-8.
Gallo RC et al. (May 1983). Isolation of human T-cell leukemia virus in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AIDS). Science. 20;220(4599):865-7.

Gallo RC (November 2002). Historical essay. The early years of HIV/AIDS. Science 298 (5599): 1728-30. doi:10.1126/science.1078050.
Gallo RC, Montagnier L (November 2002). Historical essay. Prospects for the future. Science 298 (5599): 1730-1.
Catsoulis, Jeanette (September 2009). AIDS Seen From a Different Angle. New York Times
CDC Fact sheet on HIV transmission January, 1994 http://www.cdc.gov/hiv/resources/factsheets/
Charles A. Thomas Jr., Kary B. Mullis, & Phillip E. Johnson(June 1994) "WHAT CAUSES AIDS? It's An Open Question"
Bialy, Harvey, (2004). Oncogenes, Aneuploidy and AIDS : A Scientific Life & Times of Peter H. Duesberg, Published by The Institute of Biotechnology of the Autonomous National University of Mexico, Cuernavaca, Mexico and North Atlantic Books, Berkeley, CA
Thierry Huet et al. (June 1990). Genetic organization of a chimpanzee lentivirus related to HIV-1 Nature 345, 356 -; doi:10.1038/345356a0
. Leng, J. et al.(October 2008). Elisa and Multiplex Technologies for Cytokine Measurement in Inflammation and Aging Research. J Gerontol a Biol Sci Med Sci 63 (8): 879-84. PMC 2562869. PMID 18772478.
ELISA 방법 http://en.wikipedia.org/wiki/ELISA
Westernblot http://en.wikipedia.org/wiki/Western_blot

# 인공임신중절 혹은 낙태에 관하여[1]

## 들어가는 말

기타조의 주제는 인공임신중절 혹은 낙태입니다.
본문에서는 편의상 주로 낙태라고 표현하긴 했습니다만 낙태라는 용어 자체에서부터 다소 편향적인 시각이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어 인공임신중절과 낙태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본격적인 보고서 작성에 앞서 몇 가지를 미리 설명하자면 기타조 보고서의 기본적인 방향은 단순히 인공임신중절 혹은 낙태 (이하 낙태라고 표현)가 옳은가, 그른가에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오랜 시간동안 낙태의 옳고 그름에 대한 수많은 토론과 논쟁이 있어왔지만 여성의 재생산권과 태아의 생명권으로 대표되는 양 측의 논리는 접점을 찾기 힘든 평행선상의 자기 주장에 그치곤 했습니다. 의견을 같이하는 사람들에겐 설득력이 있을지 몰라도 애초에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겐 설득력이 거의 없는 절대로 끝날 수 없는 논리가 아니었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사회가 낙태에 대한 끝없는 논쟁을 계속하는 동안에도 분명한 것은 어딘가에선 낙태로 인해 고통받고 차별받는 사람들이 분명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기타조가 주목했던 것은 낙태의 옳고 그름을 떠나 지금 현재 이순간 실존하고 있는 낙태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조명해보고 기존의 이분법적인 시각이 아닌 또 다른 관점에서 낙태에 대해 접근해보고자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이분법적인 논리로는 낙태를 둘러싼 사회의 광범위하고도 복잡한 구조와 작용 양상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1000가지 낙태에는 1000가지의 사연이 있습니다. 그 어떠한 낙태도 모두 동일한 상황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낙태 하나하나가 나름의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낙태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낙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고서 안에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4가지의 섹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인공임신중절 혹은 낙태에 관한 기존의 쟁점들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요약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단순히 기존의 쟁점들을 답습하는데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간략하게나마 기존의 쟁점들을 요약해서 이전에 어떠한 쟁점들이 있는가를 살펴보려 했습니다.

[1] 모둠 구성원: 가을, 다음엇지, 은정, 지환, 혜진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낙태와 관련된 다양한 사연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낙태를 선택한 여성들의 실 사례를 살펴보면서 낙태라는 것이 얼마나 다양한 상황과 맥락 속에서 벌어지며 당사자들은 어떠한 생각들을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례집의 내용은 민우회에서 발간했던 책자를 참고했음을 밝힙니다.) 세 번째로는 한국 사회의 낙태에 대한 시선과 차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위에서 1000가지 낙태에는 1000가지 사연이 있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단순히 낙태는 모두 개별화된 파편에 불과하니 그것을 보편적으로 포괄하는 차별이나 문제점들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2번째 섹션에서 개별 사례들을 살펴보았다면 3번째 섹션에서는 한국 사회가 큰 틀에서 가지고 있는 낙태에 대한 시선과 고정관념, 차별과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 섹션에서는 낙태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복합차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3번째 섹션과 다소 중접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만 세 번째 섹션이 주로 문제점과 차별을 언급하는데 집중하였다면 네 번째 섹션은 낙태를 둘러싼 다양한 차별이 복합차별로 이루어지며 그것이 어떠한 요소들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기타조 보고서에는 주석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추구했던 것은 다양한 주석을 달아 낙태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제시하고 체계적인 논리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낙태를 둘러싼 기본의 이분법적인 관점들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비생산적인가에 대한 우리의 고민을 담고자 했던 것이었기에 자연스레 주석이 거의 없는 형태의 보고서가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후의 글들은 대부분 편의상 평어체를 사용했습니다.

# 1. 임신중절에 관한 기존 쟁점

도덕철학적인 낙태 논쟁에서는 태아에게 성인과 같은 생명권을 인정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룬다. 여기에서는 대개 “언제 인간의 생명은 시작되는가?”, 또는 “태아는 어떠한 도덕적 지위를 갖는가?”라는 형식이 선호된다. 낙태의 논쟁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생명’과 같은 개념은 본래 문제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권리에 대한 물음 형식이다. 여기에서 ‘도덕적인 지위’에 더 나아가 권리, 의무, 가치 등의 개념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미결정으로 남겨 놓는다. 이 의문에 대해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의문을 재구성하며 다양한 답변을 제시하고 있다. 이제까지 제시되었던 논거 6가지가 있다.

1) 정당방위 논거(자기 방어권)
2) 종의 논거
3) 잠재성 논거
4) 인격체 논거 혹은 이익 논거
5) 연속성 논거
6) 정체성 논거

위에서 거론된 논거들의 주요한 쟁점에는 항상 '태아'의 생명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입장이 뒤바뀌고 있다. 각 논거들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 1) 정당방위 논거 (자기 방어권)

태아에게 성인과 같은 생명권이 인정된다면 낙태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할 무렵, 주디트 톰슨(Judith Thomson)은 새로운 시각으로 이의를 제기한다. 그는 1971년, '죽음의 위험에 처한 바이올리니스트'의 예를 통해 임신 중절의 당위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려 했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나는 어느 날 잠에서 깨어보니 낯선 병원 안에 어떤 유명 바이올리니스트와 혈액순환이 연결된 상태로 놓여 있다. 신장이 훼손된 바이올리니스트를 살리기 위해 그의 추종자들이 나와 혈액 순환을 연결하여 혈액 투석이 가능하게 만들어 둔 것이다. 나는 이런 불합리한 처사에 항의했고, 다행이 그 병원은 상식이 통하는 곳이었기에 병원장은 즉시 사과, 떠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떠날 수 있게 조치해 주겠다고 말했다. 단, 내가 떠나게 되면 그 즉시 바이올리니스트는 사망하게 된다고 이야기 한다. 하지만 9개월 동안 자리를 지켜준다면 바이올리니스트의 신장은 재활할 시간을 갖게 되어 그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여기서 나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내가 머무르는 것을 선택한다면 관대한 선택, 혹은 영웅적 선택으로 비춰질 수 있다. 하지만 떠난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이와 같이 톰슨은 낙태 문제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영웅적 입장'이 아니라 '최소한의 예의바른 사마리아인'의 입장을 지향하면 된다고 말한다. 그는 예문에 거론된 바이올리니스트를 태아에 빗대서 바이올리니스트에게 자신의 생명 유지에 필요한 모든 도움을 받을 권리가 없는 것처럼, 태아에게도 그런 권

리가 없다고 이야기한다. 결국 그는 생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선택은 임산부의 자율에 맡길 수 있고 그것이 도덕적으로 그릇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낙태가 허용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간추리자면, 낙태에 대한 보편적인 원칙을 제시하는 대신, 개별적인 결정에 맡기는 것이다.
하지만 그의 의견과 비유에 대해 낙태 반대론자들은 죽음을 '방치'하는 것과 직접적인 '죽임'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고 반박한다. 설사 자궁에서 태아를 무탈하게 적출하여 죽도록 방치한다고 해도 이는 바이올리니스트 예와는 달리 의도된 '살인'이라는 논거이다. 한 마디로 바이올리니스트의 방치가 '간접적' 살인이라면 낙태는 어떤 시각으로 봐도 '직접적'인 살인이라는 것이다. 톰슨의 견해가 원칙적으로 정당방위에 대한 극단적인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낙태반대론자들은 임신에 대해서 임산부도 책임이 있기에 그 책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편다. 하지만 톰슨은 강간에 의한 임신의 경우는 예외로 두어 임산부의 자기 방어권 행사를 인정해야 함을 주장하지만 이에 대해 낙태 반대론자들은 강간범과 태아는 구분된 생명이므로 무고한 생명인 태아에 대한 낙태는 용인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2) 종에 속함

낙태 반대론자들이 가장 많이 주장하는 논거는 바로 태아 그 자체가 '종에 속한'다는 것이다. 태아 그 자체가 인간이 될 유전적 속성을 모두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수정시점부터 인류의 성원으로 보고 권리 역시 성인과 동등하게 누려야 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거에 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들의 논거는 태아가 인격체임을 확인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단순히 생물학적으로만 '존중'의 잣대를 만드는 관점에서 탈피, 종에 속함을 뒷받침해주는 것은 지능, 의식, 언어, 감정, 관심, 행위능력에서 온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 차이에서 오는 쟁점들은 또 다른 견해를 낳게 된다.

### 3) 잠재성

잠재성 논거는 '종의 속함'논거에서 낙태 반대론자들의 논거를 강화한 것이다. 즉, 태아 이전에 정자와 난자 역시 생명으로의 잠재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함부로 할 수 없다는 논거이다. 이 논거는 일전에 황우석 박사의 생명 복제 시험에서 인간의 난자를 사용한 것을 강하게 비판한 보수 카톨릭의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 4) 인격체 – 이익 논거

인격체 논거는 '종의 속함'파트에서 낙태 찬성론자들이 주장하는 논거 중 하나이다. 이 논거는 인격체가 가지는 특성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권리의 인정을 주장한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격체 개념은 로크의 개념으로, 인격을 자의식에 대한 능력과 동일시한다. 인격체로서의 인간은 자의식과 체험능력이 있고 이에 따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목적 지향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따라서 희망과 소원과 이상, 생활계획 및 생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밖에도 인간에게는 인격체로써의

특수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단순히 생물학적 종에 속한다는 것만으로는 도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고 한다. 싱어와 툴리는 '사람(Mensch)이라는 것'과 '인격체(Person)라는 것'을 구분하여 인격체에만 존엄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인간 존엄성에 대한 불가침성은 모든 사람이 아닌, 인격체인 사람에만 국한된다고 본다. 그래서 낙태 찬성론자들은 이러한 견해를 근거로 낙태를 찬성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인격체로 존중받던 사람이 코마에 빠지게 되면 더 이상 인격체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 없냐는 원론적인 반문을 던진다. 그들의 논거의 전제 자체에 대한 의문도 있다. 그들이 정한 인격체의 정의가 온당하냐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태아가 인격체라면 당연히 살해가 금지되겠지만 태아가 인격체라는 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태아의 인격체 여부는 말 그대로 '미결정'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다.

### 5) 연속성 논거

간단히 이야기 하자면, 연속성 논거는 태아의 인간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도덕성에 대한 문제제기, 신생아는 분명히 무고한 인간 존재라는 전제, 그래서 신생아를 죽이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신생아와 출생 직전의 태아를 극단적으로 달리 대우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중요한 차이가 없음을 강조, 출생 직전 태아 역시 죽임을 당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는 논거를 편다. 이와 마찬가지로 출생 직전의 태아와 수정 시점 이후 어느 시기이든 태아를 죽이는 것은 모두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그 존재의 가치를 태아 발달 과정 전체로 확장시킨다.

### 6) 정체성 논거

잠재성 논거의 확장 개념으로써 태아는 이미 확고하게 결정된 인간의 개체성과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 그렇기에 태아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태아와 성인의 생명 가치는 불가분성을 띄고, 이로 말미암은 보편적 의미의 동일성은 그 어떤 예외도 허락하지 않는 완고한 입장을 견지한다. 하나의 인간은 하나의 몸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몸은 바로 자신의 유전자의 소지자이며 그로써 자신과 유전적 동일성을 지닌다고 여긴다. 이러한 인간의 자기목적성은 항시 그 자체 때문에 존중되고, 다른 것을 위해 단지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있는 그대로 천부적 권리에 의해 인간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인간의 혈통을 지닌다는 특징만이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전통적 낙태 논의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사안은 태아의 도덕적 지위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낙태를 '살인행위냐, 아니냐'를 증명하기 위한 논리적 쟁점이 오고 간다. 하지만 지금의 논쟁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은 큰 개념으로 '의무론'과 '결과주의'간의 대립양상이 되었다. 의무론자들은 여전히 태아의 지위 문제를 거론하며 잠재성 원칙을 옹호, 낙태를 반대하고 있으며, 결과론자들은 이익 논거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절대적인 생명의 존중 원칙고수와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견해 대립의 고착상태인 것이다. 다만 상황의 특수성에 따른 낙태의 경우엔 과거부터 지금까지 예외적인 용인이 되어왔다. (이를테면 강간에 의한 임신이나 태아로 인해 산모의 목숨이

위험해 졌을 때 등)
하지만 지금의 낙태 논의는 산모와 여성의 인권문제로 대두된다. 이 경우 임신에 대한 여성의 상대적 책임을 물어 도덕성을 비난하거나 생명 경시 태도를 문제 삼는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여전히 산모가 겪게 될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그리고 태아의 생명권이 존중되어야 할 중요한 인권이라면, 이를 위해 산모의 기본권은 일방적으로 무시될 수 있는가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생물학적, 기성적 윤리관만으로 우리 시대의 낙태를 단정 짓긴 힘들다. 현실 속 현상은 보다 복잡하며 단편화 할 수 없는 양상을 띤다. 만약 태아도 산모도 동등한 인격체로써 인권이 있다고 본다면 어떤 한 쪽의 인권만이 절대적으로 옹호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기존의 쟁점들이 주목하지 못한 부분, 즉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산모들의 현실적 문제와 배경들에 대한 조명이 함께 논의에 포함될 때 우리는 또 다른 시각에서의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 2. 낙태를 선택한 한국 여성들의 실 사례[2]

[사례19]
낙태라는 단어 선택도 잘못되었고 일단. 너무 거부 반응 들게 해놨고요. 낙태라고 하잖아요. 아이 떼러 간다.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낙태는 살인이라 하지 말고 낙태 = 원치 않는 임신 이라고 부제만 바꿔 줘도 좋겠어요. 원 타이틀 하고 부제가 중요하잖아요. 부제가 살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원치 않는 임신, 또 다른 방안이라든지 다른 고급스러운 단어들이 있을 것인데 굳이 살인자라고 하면 말이 되냐고. 어쩔 수 없이 잠깐의 실수로 인해서 원치 않는 상황, 낳을 수 없는 상황 그런 것도 있고 자기의 흥분감에 못 이겨 임신했다고 해서 지웠다고 해서 그 사람보고 살인자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에는.

[사례21]
그것도 그렇고 또 아버지 건강이 되게 안 좋으셨는데 겨우 좋아지던 타이밍이었는데 제가 사고를 치면 아무래도 가족이 전체다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서… '솔직히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깐 급하게 결정을 했었거든요.

[사례12]
그 때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게 저는 참 지금도 아쉬워요. 만약에 저희 엄마가 참 그런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조건이었으면 내지는 제가 할 수 있는 조건이었으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말을 했을 때 엄마가 받을 충격에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지금도 말 못 하고 있지만 충격 받으실 거고 너무 걱정 많이 하실 거고 그렇게 됐을 때 분명히 결혼하라고 하실 것 같고.

[사례16]
낙태가 살인 이라는 생각은 안 들고요. 그거는 건강하지 않은 죄책감이잖아요. 우선 나도 살아야죠.

[2] 작성: 혜진

(웃음) 그러니까 죄책감을 덜어내는 방법은 그런 불필요한 용어 사용이나 불필요한 상상력으로 내 자신을 내가 자꾸 조이면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걷어치울 수 있는 힘도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중요 한 것 같아요. 그런 단어들을 잘 배제하고 그러면서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 **옛날에 제가 낙태 경험이 없었을 때는 저보다 나이 많은 언니 오빠들 앞에서 낙태도 살인이니까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막 철없이 얘기하고, 그럴 때가 막 떠올라요. 왜냐하면 나는 그 때는 대학생이고, 아무 문제없이 성생활도 안했었고, 너무 어렸으니까 세상을 아무렇지 않게 도덕 교과서처럼만 생각했어요.** (웃음) 이 하나의 문제에 수많은 변인과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제 위주로만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제는 더 쪼개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저보다 이 사람이 더 못 배웠다면, 직장이 없다면, 파트너가 더 저질이라면, 병원을 구할 수 없다면… **지금처럼 그런 많은 것들에 대해서 고통의 차원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게 참 나한테 위로도 되고. 위로되면서도 교만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도 해요.** (웃음)

[사례14]
막말로 처녀가 애를 낳던 할머니가 애를 낳던 누가 애를 낳던 그 아이는 너무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냐는 말이죠. 바로 재 결혼 했어 안했어? 이런 색안경 쓰고 말만 하잖아요. 그리고 애 낳으면 누가 키워줘? 나도 임신했을 때 '네가 낳기만 해라' 이럴 사람은 우리 집에 아무도 없었고 우리 사회 분위기에 누가 낳으려고 하겠어요. 최근에도 뭐 여자 재수생이 영아 버리는 일 있었잖아요. 오죽하면 버리겠어요. 그 여자의 혼인 상태라던가 뭐라도 상관없이 어떤 방식으로 임신해서 낳은 아이는 정말 누구라도 소중하다는 인식이 있으면 누가 그렇게 하겠냐고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뭐 이렇게 그 아이의 부모가 누군지 부모가 어떻게 임신했는지, 혼인여부, 성적취향, 학력 등등 애가 태어나자마자 이제 차이를 느끼잖아요. 아이가 축복받지 못하고 차별과 편견 속에서 자랄 거라고 생각이 된다면 누가 낳으려고 하겠어요.** 이렇게 뭐 갖다 버리는 방법을 오죽하면 썼겠어요. 그 여자들이…

[사례11]
돌이켜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웃기는 게 남자친구 여동생이 저를 데리고 만나서 낙태하라고 설득을 했어요. 그니까 여동생이 보기에는 **오빠나 자기 집안은 괜찮은 거 같은데 상대적으로 언니 될 사람이 학벌이나 경제적인 조건이 딸리고, 제가 oo공단에서 공장에 다녔으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사람이 못돼먹지는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또 모질지도 못하고 멍청하기까지 해서 동생 얘기 듣고 그런가보다 하고 그랬어요. **임신을 한 상태에서 결혼하면 자기 어머니가 굉장히 싫어할 거니까 일단은 애기를 지우고 결혼을 해서 다시 애는 또 가질 수 있지 않겠냐고 그랬어요.** 자기도 결혼해서 애 낳아보니까 이런 저런 어려움이 있고 애가 또 아프면 돈 들어가야지, 쉬운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는 아무튼 오빠랑 언니가 경제적으로 아직 자립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 같으니까…

[사례1]
결혼을 했는데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선택은 대부분 낙태거든요? 그리고 만일에 남자친구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랑 했어. 낙태거든? 정말로 내가 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결혼한 상황 말고 별로 없잖아요. 결혼을 했거나 아님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인정된 어떠한 가족의 시스템이 아니면 인정을 할 수 없잖아요. 그니까 저는 저출산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가 가족주의를 흔드는 거에 대한 공포가 있는

것 같아요. 위험한 인간들이 생기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피임 했냐, 안 했냐, 이런 질문은 뒷부분만 얘기 하는 느낌이에요. 그 사람들을, 관계를 인정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부터 해야 하는 거죠.** 낙태도 결국은 가족주의 자체, 결혼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고민을 하고 있으니 제가 결혼해서 산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웃음)

[사례11]

**그 때 나이가 마흔이었을 거예요. 나이도 있고 술 담배 많이 했었고. 내가 임신해서 제왕절개하고 이런 문제가 걱정 되는 게 아니고, 애가 건강하지 않을까봐 가장 걱정이 되었어요. 경제적인거야 뭐 애를 낳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간에 키울 순 있을 것 같은데 애가 건강하지 않을까봐 너무 걱정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가 건강하지 않은 애에 대한 어떤 보장이 너무 안 돼 있고 복지가 안 돼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언젠가는 죽을 건데, 그 애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사실은 다른 거 없고 그거예요. 그 다음에 부차적으로 좀 더 고민되는 거는 내가 일을 못할 것 같아서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막 일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임신을 하면 매일 애 데려다주고 어쩌고 해야 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자신 없고 일에 대한 내 욕심도 좀 있었던 거죠. 정말 난 애를 좋아하고 애를 낳고 싶긴 하지만 싫었어요.

[사례7]

그리고 그 상황이 있기 전에 동생이 신랑을 잃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신랑을 잃고 그 달에 출산을 했어요. 근데 신랑죽고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애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낳아봐야 알지만 좀 이상이 있다 해가지고 심장이랑 머리 쪽 이상이 있다 해가지고 태어났는데 진짜로 이상이 다 있는 거예요. 난치성 희귀질환이라고 하더라고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애가 건강한 것도 아니니까 동생이 절망 속에서 모든 걸 받아드려야 하는 상황을 보면서 정말 건강한 아이를 낳은 나는 다행이구나 싶은 거예요. **그때 나도 정말 아픈 애를 낳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더 이상 아이를 낳기가 무서웠어요.** 그런 상황에서 건강한 아이를 낳을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동생한테 그런 일이 생기니까 건강한 애를 당연히 낳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진 않았어요. **나이 때문에 항상 고위험군이라고 하잖아요.**

[사례23]

병원에 갔더니 임신이래요. 그런데 큰 애를 낳았던 병원에 가니까 의사선생님이 애기 낳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 낳은 지가 몇 개월인데 또 낳느냐고…안 된다고… 이건 본인 몸을 상하게 하는 거고 죽을 수도 있다고 지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가는 즉시 제가 못 지웠어요. 처음으로 낙태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기를 지워야 한다는 사실이…그리고 (장애 때문에) 자세가 안 나오니까 병원에서도 가는 곳마다 반대를 했어요. **그 병원에서도 왜 자꾸 왜 애를 갖냐고 혼내는 거예요.** 솔직히 낙태 해보신 분들 얘기 들어보시면 그 소리가 다 들려요. 긁는 소리가… (한숨 쉬고) 그냥 하나의 점인데… 솔직히 따지면 아직 아기는 아니잖아요. (하반신 마비 장애가 있어)마취도 없이 긁어내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밑이 빠진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 그렇게 지우고 나서 마음이 아픈 상태에서…또 임신을 했어요. 낙태를 하러 혼자 갔는데 욕되게 먹었어요. 아니 본인의 몸이 애가 잘 들어서는 몸이면 조심을 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누가 조심 안하고 싶어서 안했나. **내가 무슨 섹스에 환장한 여자로 찍히는 거에요. 야단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냥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계속 그랬어. 그런데 죄송하다고 하면서도 화가 나**

**는 거야. '내가 왜 죄송해야 되는데?'** 아니 내가 수술하면 여기서 공짜로 수술 하냐고. 내가 수술하면 돈 다 받으면서 자기네들은.

[사례 6]
제가 딸 낳고 그러는 과정에서 시어머니하고 그 관계가 되게 힘들었던 상황이었어요. 제가 셋째 낳고 나서, 시어머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들 낳았다며? 수고했다는 그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딸이었거든요. 그 때는 어머니도 알았던 상황이었는데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때 당시에 서러움에 엄청 울었어요. 이 얘기도 예쁜데… 그러고 나서 셋째에서 끝내자 했죠. 그리고 나서 작년에 애기 생겼다는 그 소리 듣고 나서 저는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애들이 먼저 "엄마 애기 생겼어요"라고 큰 아이가 먼저 얘기를 한거에요. 시어머니가 대뜸 하는 **"딸인지 아들인지 확인해봐라." 그 얘기 듣고부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들이면 어떻고 딸이면 어때? 근데 딸이면…' 되게 힘들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고민하고 있는데 막 시누이한테 전화 와가지고 뭐 생각을 해봐라, 어째라 하고 입덧이 되기 직전이었는데, 막 사방팔방에서요. 친정엄마도 시어머니한테 아들 못 낳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니까 엄마도 걱정을 했던 거죠, 엄마도 아들이면은 상관이 없는데 또 딸이면… 애 보러 오셨는데 친정엄마한테 시어머니가 아들 못 낳았다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줬더라고요. 그걸 나중에서야 알게 됐는데, 자기한테는 어쨌거나 귀한 딸인데, 그리고 자기도 여잔데, 왜 그런 말을 하지? 그러더라구요.
남편이 대기업은 아니어도 중소기업은 다니는데, 한 달에 월급 300, 400정도 버는데요. 근데 애들 커가면서 걔네들한테 필요한 돈이 얼마며,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 안 먹이고 안 입히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공부를 안 시킬 수도 없잖아요. 근데 한 달에, 하다못해 유치원만 보내도 애 한 명 당 26만 원씩 해서 거의 한 달에 오십만 원이 나갔어요. **만약 그 애가 아들이어도 반갑진 않았을 거 같아요. 그 아들한테 제가 이 딸들한테 해줬던, 그 두 배를 잘해줬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위에 있는 딸들은 또 그만큼 행복하지 않았을 거고.** 저희 엄마를 봐도 그래요. 저희 엄마도 2남 3녀인데, 딸들은 고등학교도 대학교도 혼자 갔어요.

[사례 19]
첫째 아주버님이 일찍 결혼하셨어요. 저랑 띠 동갑 이었는데 큰애가 초등학생이고 딸이 둘인데 아들을 못 낳아서 안달인데 형님은 절대 안 낳으려고 하고, 어머니는 계속 낳으라고 하는데 뭐 그게 이제 우리한테 온 거죠. **당시 애 지울 때 아들이었거든요. 완전 시댁에서 난리가 난거죠. 아들 지운다고요. 성별을 알았거든요.**

[사례 20]
제가 어리잖아요. 의사가 처음에 딱 들어가는데. **당연히 미혼인걸 아니깐 낳을 거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바로 지울 거냐고, 남자랑 같이 왔냐고…** 같이 왔다고 하고 상담을 해야 한다고 해서 여자간호사가 들어와서 상담을 했죠. 동의를 받았냐 안 받았냐 해서 안 받았다고 하면은 못하게 되니깐 받았다고 하고, 당사자 남자랑은 안 왔으니깐 전화통화를 하겠다고 그러면서 전화를 했어요. 통화를 해서 연락처랑 주민번호랑 얘기했어요.

[사례23]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고등학생들이 관계를 가졌다고 해요. 어쩌다 불장난 비슷하게 했다고 해요. 그럼 그걸 낙태를 안 시켜요? 그러면 결국엔 미혼모밖에 더 되요? 그럼 그 아이의 미래는 누가 책임지고, 그 아이가 낳은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낙태를 반대를 하더라도 합당하게 하고 어느 순간에는 낙태를 허락을 해야 하는 부분은 허락을 해야죠. 제 딸은 제가 성교육을 시켜요.

[사례9]
**나는 기혼이지만 미혼의 경우에는 혼인 문제가 걸려있고, 생계의 문제가 걸려있을 텐데 미혼의 낙태를 사회적으로 매도하기만 하지 실질적인 부분들이 하나도 확보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인프라도 없고 미혼모에 대한 의식의 변화도 없이 낳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건데. **그거는 한 개인한테 너무 잔인한 일이에요.** 뭐 본인이 원해서 임신했다면 그건 상관없지만 원치 않은 임신을 했을 때에는 안 되지.

[사례 15]
근데 좀 웃긴 건 남자친구가 제가 병원에서 진찰 받고 진료 끝났다. 라고 하는 순간 진찰실에 들어와서는 저를 밖으로 내보내고 의사랑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상담을. 사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둘이 같이 있는 게 낫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제 몸이잖아요. 걔는 이제 뭐 낙태를 하면 부작용이 있냐. 어떤 수술 방법을 선택하느냐. 혹은 출산을 할 경우 어떠한 이점이 이런 게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대요. 왜 혼자 들었냐. 라고 물으니까 내가 충격 받을 수 있어서 라는 대안을 내렸대요. 저는 제가 의사한테 듣는 게 더 나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 **의사는 거의 뭐 낙태를 종용하는 수준이었어요.** 차라리 그게 편하기는 한데요. 뭐 나름 괜찮았어요. 당연히 제 손을 잡고 울어주는 언니 같은 의사는 잘 없기 때문에.

[사례 12]
오히려 남자들은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여자 몸에 대해서 존중을 안 해주고요. 호칭도 막 "어머니, 어머니" 막 이러니까 이 언니는 "내가 나 어머니 아닌데."그러고. **그러니까 '넌 엄마야. 근데 왜 애기를 지워' 막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너무 싫었어요. 분명히 미혼들도 많이 오잖아요.** 그 언니가 엄마라는 말 듣고 마취가 아직 안 풀린 상태에서 "엄마, 이것 좀 잠깐 해 보세요. 비켜보세요." 그랬더니 언니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내가 왜 엄마야!" 막 그랬어요. 이 언니가 원래 소리 지르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마라는 말 하지 마세요. 그 얘기 듣고 싶겠어요?" 그랬더니 "아, 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계속 엄마래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니까요? 지금 환자가 듣기 싫다는데 일부러 그러시는 거냐"고 그랬더니 "네, 죄송합니다." 딱 그러는데 그게 있잖아요. 귀찮아 죽겠다는.

[사례 21]
병원 방문하자마자 그러니까 심장 소리를 들려줬어요. 병원에서는 낙태하지는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나이도 지금이 제일 좋고 뭐 등등… 그러니까 딱 봐도 되게 그냥 학생 같은 차림으로 갔으니까 **다 표정으로 결혼 안한 걸 아는 것 같았는데 어쨌든. 그 나이가 제일 좋다고 심장소리 들려주는데 솔직히 그걸 누워있는 무방비 상태에서 너무 크게 딱 들려줘서 헉! 하는 게 있었는데** 근데 그거는 아닌 거라기보다도 사람에 따라 양해를 구했으면 좋았겠지만 그거 들었던 순간이 아무래도 엄청 자각을 하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초음파 사진이랑 그런 게.

[사례 12]
낙태한 결과 자체를 후회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었어요. 음…그냥 미안하죠. 그러니까 그 생명한테? 그런 건 있지만 원망은 없어요. 근데 **병원에 몰래 찾아가서 하고 나와서 말도 못해야 되는 이놈의 사회는 참 싫어요.** 너무 싫어서 작년에 낙태고발하고 막 그랬을 때 지랄들을 한다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너무 진짜 이거 정말 지랄 맞구나.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 여자들 완전 몰아붙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자 애들을 정말 일 년에 분기별로 성교육을 시키겠다는 그런 생각은 못할지언정 여자한테 낙태를 못하게 한다느니 이게 진짜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막 좀 씁쓸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났어요.

[사례 8]
남자가 연애하는 사람이었고, 결혼까지도 사실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원래는 애기들을 사실 안 좋아해요. 그 때 까지는 아예 애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근처에 오는 것 자체를 싫어해서 결혼은 하되 아이는 안 낳겠다고 항상 주장해왔던 상황이었어요. 너무 어린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그 때는 아기는 안 낳겠다는 게 절실해서 결혼 전제조건이 정관 수술을 하고 와라 그거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했다는 거예요. 그 때는 이렇게 예비군 훈련 같은데서 시켜주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때 가서 했데요. 저는 믿었어요. 그 이후부터는 별로 걱정을 안했죠. 아예 이미 수술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피임을 아예 안했어요. 소설 같은 일인데. 그래서 생겼는데… 그 전부터 몸이 이상을 느끼잖아요. 약간 가슴이 좀 땡땡해 진다든가 좀 미식거리는 것도 같고 막 처음부터 그랬어요. 제가 이후에 애 낳을 때는 입덧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때는 내가 느낄 정도로 그렇게 입덧을 느꼈으니까. 그래서 알게 된 건 아니고 자꾸 불안 한 거죠. 그래서 예정일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정말 수술 한 게 맞느냐고 물어봤어요. 임신인 거 같다는 얘기는 안하고 그냥 진실을 말해달라고 그랬더니 정관수술을 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임신 테스트를 했더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 사람한테 알릴 수도 없었어요. 그때는 딱 내가 정말 원하지 않았고, 나이도 어렸고 내가 결혼을 마음먹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일단 배신감이 들더라구요. 그러니까 속은 거잖아요.… 만난 지 한 4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내가 아이를 좋아한다거나 뭐 그런 게 있었으면 그렇게 쉽게 결정을 안 내렸을 텐데, 그냥 막막한 거예요. 내가 애에 관심도 없었고 좋아하지도 않고 지금 나 살기도 힘들고 **물론 이 사람한테 말하면 책임지고 막 결혼을 서둘러서 하고 그렇겠지만 이미 믿음이 깨진 상태였어요.** 이 사람한테 말을 하면 결혼을 하고 뭐 되겠지만 나는 이 아이를 원하지 않은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 혼자 막 알아보러 다녔어요.

[사례 21]
사귀던 남자가 낳지 말자고 설득을 많이 했었어요. 너도 나도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둘 다 바쁘게 살고 이제 막 시작하는 시기니까 걸림돌이 된다는 생각을 막 주입을 했어요. 근데 사실 잘 생각해보면 그 친구가 주입한 생각 때문에 그럴만한 건 아니었거든요. 제가 설득을 당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애 아빠가 누군지 모른다는 게 컸어요.… 설사 혼자 낳더라도 저는 시선이 두렵고 그런 거는 없었는데요. 그냥 집안 타이밍도 그랬고, 남자친구도 되게 진지하게 만난 친구였는데 **만약에 임신했는데 그 남자애가 아닌걸 알게 되면 모든 관계가 끝이 나니깐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거는 부모님이 아셔도 기절초풍하실 일이고 어디서 용납받기 힘든 일이고… 지금 같이 생활이 넉넉하면 솔직히 외국으로 나가는 걸 생각해본다던가.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든 간에 대출을 받든 간에 성인이니깐 어떻게 뭘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을 거 같은데 그때는 조금…

[사례 18]
그러니까 **우리는 둘 다 지금 이런 세계에서 (웃음) 아이를 낳고 싶지 않고, 이런 조건에서 아기를 키울 만한 충분한 능력이 되지 않고요. 우리가 택하는 삶의 방식 같은 것들이 일반적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기한테 강요할 수도 없고** 뭐 이런저런 생각들 때문에 아기를 낳을 생각은 없었어요. 결혼을 해도. 근데 그 당시 임신 사실을 알 때에는 걔랑 결혼하고 이런 거는 만난 지 몇 개월 밖에 안 되었을 때니까 그런 건 생각하기 이전인데, 그때도 그 애기를 키우는 거에 대해서는 비슷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내가 능력이 되지도 않지만 능력이 되도 키우고, 낳아서 키우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고.

[사례 19]
남자가 결혼하자 하는데 우리 집에서는 반대를 했죠.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돈을 일찍 벌었어요. 스무 살 이었는데 그 때 당시에 160~80 많이 벌었어요. 제가 많이 벌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집에 돈도 갖다 주고 해야 한다고 무슨 남자냐고… 뭐 너무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놈팽이같이 생겼고 좀 되게 학력도 별 볼 일없고, 애가 또 애가 일하는 것도 별로 없고 싸가지 같은 것도 없었고 버릇도 없었고… 아빠가 택시운전을 하시는데 그 동네에서 그 우리 집 소문을 다 알고 있을 정도로. 동네사람이었어요. 아빠는 내가 이 사람 집에서 매일 자고 오는 것도 몰랐죠. 내가 기숙사에서 자고 오는 줄 알고 있었지. 내가 좀 거짓말을 했었어요.
그 때 아빠가 진짜 얼마만큼 싫어했냐면, 골프채를 들고 나 일하는 회사까지 왔어요. 때려죽인다고. 회사 CCTV 다 찍히고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화장실에 숨겨주고 막 그랬었어요. 그랬었는데도 아빠가 엄마랑 결혼 못시킨다고, 애 낳지 말라고 절대 반대를 했어요. 아빠가 걔 술 먹고 꼬장 피우고 여자 끼고 다니는 걸 몇 번 본 줄 아냐고… 그때 내가 아빠 말을 들었어야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남편이랑 이혼하게 되었거든요. 그 때 내가 죽어도 하겠다, 나는 애 안지우겠다고 했는데 엄마랑 아빠가 절대 안 된다고 하다가 12월 달까지 끌고 간 거예요. 그 때도 남자친구 집에 있었는데 그러다가 엄마가 애를 지우는 대신에 결혼식을 시켜주겠다고 합의를 하자는 거죠. **근데 결혼식을 시켜주겠다. 하지만 이 애는 안 된다. 너희들 준비도 안 되었고 나중에 몇 년 뒤에 해라…** 난 어린마음에 이 사람이 내 첫 남자고 내가 이런 몸으로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갈 수 있겠나, 딴 남자 만날 수 있겠나, 그런 순애보 적인 생각에 잡혀있었던 거죠. 너무 착했죠.… 내가 내 스스로 판단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결혼식을 했어요. 2006년도 4월 23일 날. 그때부터 처음 결혼할 때 돈 갚아주고 내 대출받은 걸로 집 얻고… 벌어오면 술 먹고 담배피고 매일 술값 많이 나가고요. 애를 지우고 결혼했다는 이유로 우리 엄마아빠를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이왕 결혼시켜주고 애까지 낳게 하고 하지. 우리 집에서는 이 남자 됨됨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된다. 저희 어머니 쪽이 정말 독실한 크리스천이에요. 정말 보통 기독교에서 안 떼거든요. 그런 우리엄마가 내 손을 들고 병원을 갔을 정도니까…

[사례 9]
둘째 언니가 있었어요. 그 언니가 무척 나를 예뻐하고 내가 대학생활을 할 때 그 언니랑 같이 자취를 하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줬죠. 그 언니가 자살을 했어요. 그 때는 이제 그 때 너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게 이제 낙태를 결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가 되었던 것도 있어요. 언니가 형부와 육아 문제 때문에 갈등이 심하게 되면서 일이 생겼거든요. 음…우리 언니는 굉장히 활발한 성격이었고, 뭔가 사회적으로 자기 역할을 해내려고 되게 애쓰는 스타일이었어요. 아버지가 장애가 있으셔가지고 경제활동을 못하시니까 엄마가 농사짓고 모든 활동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엄마를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딸들이 생활력이 되게 강해요. 8년 동안 언니가 형부를 키우다시피 한 거에요. 그러면서 이제 형부가

대기업에 취직을 했고. 처음에는 아이 둘 낳고 되게 그 생활에 젖어서 되게 행복해했어요. 근데 그 둘째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 큰애가 이제 3학년이고, 그 때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사회활동을 하고 싶은데 남편이 계속 반대를 했고, 그런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언니한테 친구들 만나지 말라고 했는데 만나러 다니면서 갈등이 증폭이 되고, 형부가 폭력도 쓰게 되고. 동생이라 차마 얘기는 못했겠지만, 되게 개인적으로 고민이 되게 많았던 것 같고. 우울증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다 둘이 어디 놀러가서 크게 싸운 거에요. 형부는 언니에 대해 이해를 하기 싫어했고, 와이프를 집 안에만 놓고 싶어 했어요. 그런 갈등이 계속 있었고. 언니가 그날 술도 좀 먹고 싸우다가 콘도에서 뛰어 내린 거죠. **저도 남편과의 그런 갈등들이 이제 두려웠던 거죠. 그게 아이들로 인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나 또한 그 언니처럼 그런 고민을 할 것이고. 성격 상 또 나도 집에서 가만히 못있고 일을 계속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남편하고는 어떤 가치관이 약간 삐거덕거리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남편하고 영원할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낙태하기 전에 언니가 애를 안고 있는 꿈을 꿨는데 그 때는 자기합리화가 필요했어요.

[사례 7]
애기를 낳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상황은 보통 일반인들하고는 다른 거 같아요. 그냥 출산한 사람 감정상태 알잖아요? 굉장히 막 요동치고 쉽게 우울해지고 막 약해져있는 상태 같아요. 저도 출산 하고 우울증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진짜 잠을 못자니까 일단 그런 거 같아요. 또 남편이 내가 힘든 거를 이렇게 완전히 공감해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 저는 두 아이를 키우면서 여태까지 쉼 없이 달려왔잖아요. 완전히 우울증도 장난 아니고 애들을 다 어리니까. 애 어린이집을 보내도 애를 추슬러서 준비시켜서 데려다 주고 오고해야 하고, 날씨가 안 좋고 그러면 애 감기 걸릴까봐 데리고 나가기도 그렇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에 있었어요. **이제 좀 신랑하고 사이 좀 좋아지려고 노력을 좀 하고 싶었는데 신랑하고 이 상태로 가서는 이혼을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서로 대화할 시간도 없고요.** 그렇다고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부부사이도 너무 멀어져 있는 거 같고.

[사례 3]
12월에 결혼해서 첫아이를 그 다음해에 8월에 낳았어요. 그 다음부터 쭉~ 남편은 군대 가고 시어머니 시아버님과 시골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이었고 둘째 아주버님이 2년 먼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었고. 그래서 그 집에서 아이를 키웠어요. 그러고는 인제 남편이 제대를 했어요. 그리고 취업 준비 중에 아이를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깐 첫아이도 시골에서 시부모님이 키워주셨는데 내가 벌어서 내 아이를 키우는 것과 부모의 도움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은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모유를 먹여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분유로 키웠어요. 시골이니까 아궁이에 밥해먹고 불 때가지고 숯불로 물 끓여서 분유타서 먹였을 때 곤로를 쓰면 아버님 어머님이 아까워하시는 느낌이 들어서 그때는 눈치가 보였나봐요. 그런 거 때문에 둘째 아이를 낳을 생각을 못했죠. 분유를 먹이면서까지 아이를 키우는데 또 둘째 아이를 낳으면 부모님한테 신세를 지는 그 느낌 때문에요. 가난하다는 것 때문에… 임신을 하게 됐는데 낳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낙태하려면 보호자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남편이랑 갔어요.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부모한테 도요. 아휴… 지금 같으면 당연히 안하죠. **그때는 너무 어렸고 가난했고, 또 그게 죄라는 게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죄를 지니까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부모한테도 형제한테도 그런 얘기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얘기를 안했어요.**

[사례 9]
애를 연년생으로 출산을 했어요. 그 때 내가 학원을 직접 차려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강의도 직접 하고 그랬기 때문에 아이 둘을 내가 키우고 있지 않았어요. 둘째 아이 낳고 나서 바로 시댁에서 그 갓 태어난 아기를 시댁 형님이 계속 기르고 있었고. 그리고 첫째 아이는 이제 그 때 걔 맡기면서 데리고 왔어요. 첫째는 우리 언니가 키우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두 아이를 내가 제대로 보듬어서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안 돼는 상황에서 일을 또 계속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보육료로만 지급이 되는 게 거의 130만원이고 두 아이에게 들어가는 기저귀, 분유 이런 비용까지 매달 250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러니깐 셋째를 낳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타격이 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키워야 될지 굉장히 난감했죠. 그래서 **또 아이를 낳으면 누군가의 손에 맡겨져야 되는데 지금도 그 두 아이를 보면서도 늘 마음이 아팠는데, 또 그런 과정이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한거죠.

**지금 일하는데 바닥이 좁아서 다 알려질 건데 알려지고 나면 이제 일단은 지금 있는 데는 대기업 인데 대기업에서는 당연히 잘릴 거고요.** 뭐 잘리면 권유당하든 잘리든 그리고 나서 순수하게 능력만으로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제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다 어필해서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현실적으로 살짝 숨기고 맡기고 내가 일을 하는 게 더 좋을 거니까 그래서 외국 나갈 생각 그 때 했었는데, 그걸 듣고도 그냥 그 남자 둘은 무슨 얘기야? 정도의 반응. 저를 그렇게까지… 물론 진짜 마음속에 있는 얘기는… 물론 마음속에 그건 아는데 그래도 제 인생까지 고려해서 당연히 그 스토리를 얘기하죠.

[사례 18]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가장 걱정됐던 거는 솔직히 말하면 내 인생이었고. 내가 아기를 낳는다면 내가 부양할 수 있을 것인가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런 거 생각해봤을 때 정말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리고 더군다나 뭐랄까… **혼전에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는다는 게 얼마나 큰 낙인일거라는 거는 정말 공포스러울 정도로 느껴졌기 때문에 아예 낳을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경제적인 능력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아기를 뭐 똑같이 키울 생각이 없고 내 인생에서 그런 계획이 전혀 없었고 라고 하더라도 내가 부양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다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조금 더 나이를 먹었고 조건이 내가 자립해 있었고 좀 여유가 있으면 조금 더 생각 했을 것 같아요.

[사례 1]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때 애를 낳았으면 걔는 딸이었을까 아들이었을까 그 정도?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고요. 그냥. 근데 주수 높은데 낙태하는 상황을 보면 제가 임신을 했었잖아요. **애를 낳고 나니까 나중에 이제 배가 이렇게 커지고 그 안에서 이제 움직이는 걸 느끼니까 주수 높았을 때 낙태하는 걸 죄라고 느끼기보다 그랬을 때 낙태를 선택을 해야만 하는 그런 데미지? 죄라기보다는 그 선택에 가혹함? 그러니까 그 선택의 무거움? 그 선택의 중압감들이 얼마나 클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뭐 쉽게 애 낳으라고 하는데 나는 화가 나요. 지들이 키워줄 것도 아니면서. 육아는 강아지 키우는 거 하고 달라요. 한 인간이 인간을 키우는 거잖아요. 아이는 정말 끊임없이 요구를 하거든요. 먹고 입혀주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계속 보살핌이 필요해요. 근데 그러면 이 엄마는 자

기 것은 완전히 접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이나 욕구나 접고 가야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자기를 죽이고 가야되는 순간들이 너무 너무 많다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후회한다고 해서 그 걸 입 밖에 낼 수가 있겠어요. 후회해도 내가 애한테 미안해서 그걸 입 밖에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행복해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나는 생각해요. 애가 주는 즐거움은 인정하지만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건데 **그게 뭐 정말 양육이 맞아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내 경험에 의하면 고통스러운 부분도 굉장히 많다는 거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쉽게 낳으라고 하는 건 별 고민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례 15]
저 같은 경우는 상황이 좀 특별했어요. 제가 생리를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정말 일찍 발견을 한 거예요. 정신과를 우울증 때문에 다니고 있었는데 정신과 약 부작용인 줄 알았어요. 가슴도 아프고. 정신과에서 아마 아닐 텐데 한 이삼일 약을 끊어보고 그래도 아프면 산부인과로 가보라는 거예요. 약을 끊었는데 그래도 아파서 산부인과에 갔어요. 의사가 임신 가능성이 있느냐 그래서 그런 가능성 없다고 했죠. **피임했으니까. 네. 배란기 아니었고 콘돔 끼었고 콘돔 낀 상태에서 질외사정했는데 어떻게 임신이 되냐? 별의 별 작은 퍼센트라도 되긴 되더라고요.**

[사례 11]
낙태하고,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난 뒤에 시골집에 엄마한테 갔어요.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고 하니까 "살다보면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다고 생각해라. 얼마나 큰 일이 많은데… 그거 빨리 훌훌 털어버려라." 이러시더라고요.** 임신 사실은 전혀 모르시니까. 한 번도 안 그랬는데 그 때 엄마 앞에서 제가 말 못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막 펑펑 울었어요. 엄마한테 미안하더라고요. 엄마한테 "미안해. 다음에 올 때는 되게 밝은 모습으로 올게. 엄마, 오늘은 도저히 내가 힘들어서 못 있겠다, 서울 가야 되겠다." 이랬더니 엄마가 알았다고 가라고 먹을 꺼 막 챙겨주시는데 아무것도 못 먹겠다고 그랬는데 보통 옛날 노친네들 보통 보면 붙잡고 먹으라고 하시는데 그런 말씀 안 하는 게 그 땐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냥 쟤가 힘들겠거니 뭐 이런 느낌으로. 그 때 생각하니까 또 눈물 나려고 그러네. 그러고 정말 얼마 안 있다가 다시 집으로 좀 밝은 모습으로 갔어요. 내 상처가 다 아물어서가 아니고 엄마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편하게 웃고 놀고. 그 뒤로는 서로 그런 얘기는 안 하죠.

[사례 18]
그때가 제가 섹스를 처음해본 때였어요. 너무 어리고 지식이 되게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기독교인 이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아예 결혼 전이나 그런 때에 성관계를 할 거라는 걸 별로 가능한 상황으로 생각하지 않던 상태여서. **그 때가 저한테 되게 폭풍 같은 시기였는데… 그래서 한 스물 두 살까지 교회를 되게 열심히 다니면서 그런 성적인 거나 피임이라든가 저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만난 친구였어요.** 그때는 그런 거에 대해서 다 떨쳐버린 상태니까 혼전순결이라든가 근데 그런 걸 뒷받침 해줄만한 지식이 없었던 거죠. 그때는 확실히 임신주기 같은 거, 생리주기에서 언제가 배란일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확실히 몰랐고 임신이 이렇게 쉽게 되는 거라는 거를 몰라서 놀랐죠.

[사례 17]
성관계 당시에 자기는 눈앞에 그 충동적이 되고, 자기가 뭘 말하는 지도 모르고 그게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냥 그래놓고서는 나중에 "내가 언제?" 그런 식으로 나오면 참 황당하죠. **우리 부부가 일상적으로 자주하고 막 이런 사이면 오히려 피임을 정확하게 할 텐데 너무나 불규칙했고, 진짜 텀이 진짜 길어요.. 일 년에 한 두 번 할까 말까 이런 식이니까요. 콘돔 쓰다가도 내 생각에 주기로 이렇게 봤을 때 괜찮겠지 하고 방심하고 했을 때 덜컥 생긴 거죠.** 근데 그게 뭐 거의 몇 달 만에 한 번 한 건데 그게 임신, 이런 식이 되니까. 우리 남편도 이제 황당하다, 억울하다 이런 반응이었죠.

[사례 23]
병원에서는 당연히 애를 하나 낳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당연히 피임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꺼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시설에서 자라는 우리들로서는 피임이 뭔지 몰라요.** 전혀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관계하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애를 하나를 지웠어요. 그렇게 지우고 나서 마음이 아픈 상태에서…또 임신을 했어요. 낙태를 하러 혼자 갔는데 욕되게 먹었어요. 아니 본인의 몸이 애가 잘 들어서는 몸이면 조심을 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누가 조심 안하고 싶어서 안했나.

[사례 5]
일단은 피임 얘기가 나왔을 때는 남자가 사실 별로 안 좋아했어요. 콘돔 아니면 먹는 약인데 먹는 약은 후유증 있으니까 신랑이 별로 그런 것은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뭐 콘돔으로 하려냐고 했을 때 이 사람도 그다지 자기는 싫다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자연피임법으로 한 번 한 거죠. 처음 생각은 자연으로 이렇게 하다가 생기면 할 수 없지 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사례 4]
피임은 안했어요. 콘돔을 사오라고 하거나 내가 콘돔을 사는 게 안 되는 거야. 남편도 그 때는 그랬던 것 같아. 결혼 이후에는 한 것 같은데. 미혼 때는 자기도 좀 사기가 그랬겠죠. 그 때는 콘돔을 하고 해야 한다는 말하기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뭐 그 상황에 갑자기 피임을 제안하기가 좀 성관계 염두하고 준비한 것 같은 티가 날까봐. 좀 밝히나? 이런 생각할까봐. 그래서 그냥 자연피임법으로.**

[사례 9]
마음으로 낳는 입양이나 할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내 새끼도 하나 돌보지 못하면서 보상심리로 아이를 데려오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다가 계속 얘기가 되니까 화가 나기 시작 하는 거죠. 씹새끼들, 니가 한 번 낳아봐라, 그 상황 당해봐라 이거야. 그게 뭐 정치적으로 심정적으로 그런 거 떠나서 여자가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그거는 새끼를 지 몸에서 애를 키워보지 않은 남자들이나 하는 얘기야. 종교계에 있는 놈들도, 섹스 안 한대? 개네들도 섹스할 것 아니야. 그러면 똑같은 아빠 입장인데…지 일이 아니거든 그건. 그니까 쉽게 얘기하는 거야.**

[사례 13]
임신 인 거 알고 망설일 이유도 없었고 그냥 알게 됐으니까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결정은 일주일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어쨌든 되게 억울하기는 했죠. 내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닌데 나 혼자 짊**

**어지고 가는 게 짜증나고 굉장히 억울한 거죠.** 하지만 그냥 체념하고 빨리빨리 해치우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걔랑 헤어질 마음이 있었으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상대에 대해 불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사실 그게 공동으로 느낄 수 있는 아픔이나 슬픔이 남다르잖아요. 그런 게 약간 억울하고 서러우니까 다른 방식으로 심통을 부리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좀 관계가 소원해 질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제 헤어지려고하는 입장이었고 걔는 약간 매달리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제 주위에 있었던 선배랑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일이 있었을 때 그 일을 계기로 어쨌든 잘 뭐랄까 대접받고 살아라,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이런 기회에 보살핌을 받아라. 저는 그 당시에 보살핌도 별로 받고 싶지 않았고 빨리 끝내고 싶던 마음이 더 커서 낙태 기억이 크게 남아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례 18]
조금 더 나이를 먹었고 조건이 내가 자립해 있었고 좀 여유가 있으면 조금 더 생각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때는 그게 너무 무서웠지만 지금은 싱글맘에 대해서 그렇게나 공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상태고 또 그런 싱글 맘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졌고 근데 그때는 이십대 초반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때 내가 여전히 그런 죄의식 같은 거 가지고 있었던 거 같아요. 혼전 관계라던가. **아기를 낳아서 데리고 있다는 거는 그거를 만천하에 증명하는 거잖아요. 내가 고백하기 전에는 모르는 내 속에 있는 낙인이지만…**

[사례 12]
당연히 지금도 누구한테도 말 못하는 건 그거잖아요.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진다는 이야기는 서로 어떻게 암묵적으로 알 수도 있지만 임신하면 왠지 **'어 나 원래 섹스하고 다녔어.'** 라는 건데 이게 왠지 이중적이잖아요 그때는 그걸 극복하기가 힘들고…

[사례 8]
낙태한 여자를 처벌하는 거는 찬성하지는 않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도 만약에 그 같은 그 때 스물다섯 살 때 그런 일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불법화 자체가 누구를 위한 불법화인지를 사실 모르겠어요. 가끔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인구가 뭐 어쩌고저쩌고 출산율이 저조하고 그래서 불법으로 하는 거면 사회를 위한거지 그 아기를 위하거나 엄마를 위한 건 사실 아니잖아요. 쉽게 결정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후회가 덜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그 때 당시는 그게 옳다고 생각했으니까 결정을 하겠지만 경험자들은 후회를 또 그만큼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성범죄 같은 거 있잖아요. 전자 팔찌를 채우거나 그런 것 보다 머릿속을 바꿔놓을 만한 교육이랄까?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대안이 있는 식으로 해야죠. 만약에 내가 정말 절실해서 병원을 찾았을 때 이걸 법으로 딱 안 돼. 이런 것 보다 그 사람 마음을 돌릴 수 있게끔 하는 상담이든 일단 그 사람 편에 서서 들어주고 만약에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결정하는 사람들 사정을 들어주는게 필요하잖아요. 도울 수 있으면 돕는다던가. 병원을 딱 찾아갔을 때 조금이라도 이 사람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낙태를 좀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주변에 얘기를 못하는 거는 상대방이 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약점이랄까? 그런걸 보이고 싶지 않겠지만 만약에 내가 모르는 병원을 찾아갔을 때 거기서 어떤 간호사가 됐든 의사 선생님이 됐든 정말 진심을 다해서 내 말을 들어주고 그 사람들이 연계해서 상담을 해줄 수 있거나 해결까지는 아니지만 방안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 있거나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 앞에서 조금 더 달리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례 18]
그 때는 내가 일반적인 길에서 벗어난 사람이라는 생각이 계속 있었는데. 이제 내가 낙태를 한 여자로 뭔가 확인 도장을 찍는다는 느낌 있잖아요. 전 **이제 일반적인 여자가 아닌 길에 확실히 들어서는 사건 같은 느낌? 그런 게 되게 분명했던 거 기억나요. 그런 게 분명히 있었는데 괴롭고 두려웠는데 한편으로는 뭐랄까 내가 가지게 될 어떤 자유 같은 거? 그런 생각도 솔직히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더 좀 막 살 수 있는 자유 같은 거?** (웃음) 이해가요? 그러니까 정숙한 여자로  내가 내면화했던 좋은 여자에 대한 환상이 있잖아요. 너무 쉬운 여자면 안 되고 남자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자기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때가 한참 그런 문제로 내적으로 막 싸우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런 게 너무 싫고 그런데서 벗어나고 싶고… 그래서 낙태를 하고 싶은 건 절대 아니지만 이걸 계기로 나 자신을 옭아매는 그런 걸로부터 자의반 타의반으로 내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례 21]
**그러니까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한 그 생각을 평생 하고 살아야겠다. 뭔가 똑같이 열심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할 때도 느낌이 완전 달라지는 게 엄청 생각하게 되요**. 내가.. 음.. 내가 줄 수 있는 영향.. 사회에 아니면 하다못해 내 친구한테 정도라도 좋은 영향을 주면 이런 일이 달라질 거고 그런 방법을 엄청 많이 고민했거든요. 하다못해 무슨 환경운동까지 했었는데 너무 추상적인 거지만 그것은. 그런데 비이성적인 추상적인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게 힘들었어요. 숙제라는 생각 나한테 책임 있어 진다는 생각이.

[사례 8]
**만약에 내가 정말 절실해서 병원을 찾았을 때 이걸 법으로 딱 안 돼. 이런 것 보다 그 사람 마음을 돌릴 수 있게끔 하는 상담이든 일단 그 사람 편에 서서 들어주고 만약에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결정하는 사람들 사정을 들어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도울 수 있으면 돕는다던가. 병원을 딱 찾아갔을 때 조금이라도 이 사람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낙태를 좀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주변에 얘기를 못하는 거는 상대방이 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약점이랄까? 그런걸 보이고 싶지 않겠지만 만약에 내가 모르는 병원을 찾아갔을 때 거기서 어떤 간호사가 됐든 의사 선생님이 됐든 정말 진심을 다해서 내 말을 들어주고 그 사람들이 연계해서 상담을 해줄 수 있거나 해결까지는 아니지만 방안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 있거나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 앞에서 조금 더 달리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마련되어 있으면 조금 덜 후회하지 않을까요? 이혼 같은 것도 숙려기간 같은 걸 지내면서 마음이 달라지는 사람이 있고 그 것 때문에 정말 다시 살게 됐고, 지금은 행복하다는 사람들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도 내 결정이 옳다고 생각하면 수술을 하겠지만… 꼭 낳아야 돼 라고 결정을 지어주는 도움이 아니라 그냥 산모 입장에서 당장 도움이 되어 줄 수 있는걸 해준다면 달라질 것 같아요.

# 3. 한국 사회의 낙태에 대한 시선과 차별 그리고 문제점[3]

보고서 작성에 앞서 우선 몇 가지를 먼저 밝힙니다.
제가 담당한 섹션은 한국 사회의 낙태에 대한 시선과 차별이며 편의상 평어체를 사용했습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이슈과정 기타 조의 주제는 "인공임신중절 혹은 낙태"입니다.
우리조의 기본적 방향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재생산권으로 대표되는 낙태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낙태의 과정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다양한 차별과 각종 사회문제에 대해 다루고자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낙태에 대해 공공연히 언급하는 것은 일종의 금기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먼저 든다. 한국 사회에서 낙태라는 것은 그것의 옳고 그름 , 실존하고 있는 각종 문제를 논외로 치더라도 사회 깊숙이 묻어두어야하는 무언가 , 언급되어져서는 안 되는 무언가, 공적인 영역에서 언급해서는 안 되는 무언가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비교적 진보적이고 사회가 묻어두려하는 각종 사안에 대해 이야기하길 좋아하는 진보 언론이나 앰네스티를 비롯한 각종 인권단체에서조차 낙태 문제는 가능한 언급하기를 꺼려하는 주제이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앰네스티 인권대학 이슈과정 중 기타조에 속한 우리들이 주제를 "낙태"로 정했을 때 앰네스티 관계자들과 이슈과정 참가자들의 다소 부담스러워하는 혹은 걱정하는 듯한 반응이야말로 한국 사회의 낙태에 대한 시선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부담스러운 무언가... 언급할 수 없는 무언가...

이렇듯 우리는 혹은 한국 사회는 기본적으로 가능한 낙태에 대해 언급하려들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국 사회가 기본적으로 취하는 낙태에 대한 시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가능한 언급하려들지는 않지만 은밀히 존재하고 있는 암묵적인 시선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럼 이제부터 한국 사회의 낙태에 대한 시선을 살펴보겠다.

우선 낙태라는 단어에서도 한국 사회의 시선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다. 낙태라는 말은 떨어질 낙과 아이 밸 태가 합쳐진 단어이다. 아이 밸 태가 붙어다는 이유로 낙태라는 단어의 주체가 임신한 여성이라고 한다거나 혹은 단순히 태아는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낙태란 단어의 해석을 살펴보면 낙태라는 단어의 주체는 태아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3] 작성: 지환

다음은 국어사전에 수록되어있는 낙태의 해석이다.

① 태아(胎兒)가 달이 차지 않은 상태(狀態)에서 죽어서 나오는 것. 반산. 유산
② 태아(胎兒)를 인위적(人爲的)으로 모체(母體)에서 떨어져 나오게 하는 것

두 가지 모두 태아가 주체임을 알 수 있다. 어느 경우에도 임신 여성이 주체이지 않다.

또한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인기도 하지만 한국과 외국의 나이 계산만 보더라도 한국 사회의 태아에 대한 시선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 다들 알고 있겠지만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만 나이가 아닌 태어난 해부터 1살로 보는 나이를 사용한다. 태어난 해에 0살이 아닌 1살이라는 것은 태아 때부터를 나이 계산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는 이 글을 읽는 분들이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에는 한국의 낙태법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대한민국의 형법은 '낙태죄'를 정하여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법에 의해 예외를 인정받는 일부 낙태를 제외한 모든 경우는 낙태죄에 들어가며 이는 낙태가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불법임을 의미한다. 다만 모든 낙태가 살인이라 생각하는 일부 사람들의 사고방식과는 달리 낙태죄는 법에 의해 살인죄와 엄연히 구별된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면 이해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 형법]
한국 형법에서는 태아와 사람의 구별, 즉 사람은 언제 출생하는 것인가? 에 대하여, 분만진통설을 취하고 있다. 즉, 임산부가 출산을 하기 직전에 일으키는 분만진통이 있는 때에 사람은 출생한다고 보고 있다. 태아를 죽이면 낙태죄,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이기에 구별실익이 있다.

[대한민국 민법]
민법에서는 형법과 달리, 전부 노출설, 즉 태아가 자궁 밖으로 완전히 나온 시기, 탯줄을 자르기 직전의 그 전부노출시를 사람의 출생시기로 보고 있다.

형법과 민법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의 법은 태아를 무조건 사람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 물론 이 부분에 관해 도대체 태아를 어디서부터 사람으로 인정할 것이냐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논쟁거리이지만 적어도 이 보고서의 목적은 이분법적으로 낙태가 옳은지 그른지, 태아가 어디서부터 인간인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아니므로 길게 언급하지 않겠다.

위에서 낙태죄에 해당되지 않는 예외가 인정되는 낙태가 있다고 했는데 이제 그것을 살펴보자. 현재 한국은 모자보건법이란 특별법을 만들어 다음과 같은 낙태의 허용 한계를 정하고 있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강간 또는 준 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낙태 찬성론자 중에서 강간 등에 의해 원치 않았던 임신이나 기형아 등이 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낙태를 인정해야 한다는 사람이 많은데 이는 이미 한국의 법에서도 인정하고 있으며 이런 경우는 '낙태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간혹 모자보건법에서 인정하는 낙태조차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모든 낙태를 살인죄로 묘사하곤 한다. 하지만 한국의 법은 낙태죄와 살인죄를 구분하고 있다.

낙태법에 대해 논하기 전에 낙태법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는 의미에서 위와 같이 한국의 현행 낙태법을 살펴봤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의 낙태법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따져 보자.

현행 낙태법은 모자보건법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종류의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여성의 인권과 사회적 지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한국의 현행법은 성인 여성의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율적 선택권보다 태아를 더 우선적으로 존중해야 할 대상으로 인정한다. 다시 말하면 태아가 성인 여성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출산에 관해서는 한국의 성인 여성은 법에 의해 보장받는 자율적 선택권이 없다. 모자보건법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곤 무조건 낳아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어기면 낙태죄를 범한 범죄자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살펴봐야 할 것은 한국 사회가 낙태 문제를 오로지 여성의 문제로 몰아간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성 혼자만의 힘으로 임신이 가능한가? 상식적으로 임신은 남성과 여성의 공동 책임이다. 이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논리적으로 따져 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데 임신이 남녀의 공동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현행법은 낙태를 오로지 여성만의 문제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남성 우위 사회라는 것을 반증한다. 과거에 비해서 여성의 인권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한국은 남성 우위 사회다. 낙태죄가 남성, 여성 모두에게 적용이 돼도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데 현실은 오히려 낙태를 여성만의 문제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가? 하지만 낙태는 오로지 여성의 잘못이지만 아이를 낳은 이후에는 오히려 남성이 주도권을 갖는다. 아이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아버지의 성과 본을 물려받는다. 즉 아이가 부모 중 부에 더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태아를 임신하고도 안 낳으면 엄마만 범죄자가 되고 아빠는 책임이 없는데 낳은 후에는 당연히 아빠의 덕이 된다. 뭔가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참고로 아이가 무조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물려받는 부성주의(父姓主義) 원칙도 2008년 들어서야 겨우 수정된 것이다. 수정된 이후에도 아버지의 성과 본을 물려받는 게 기본 원칙이다.

낙태 문제는 여성의 인권 문제와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국가가 낙태를 금지하고 여성의 자율적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은 채 원치 않는 출산을 강요하는 것은 국가에 의해 자행되는 폭력이다. 여성이 국가의 강요에 의해 원치 않는 아이를 낳았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양육의 문제가 남는다. 그런데 참 묘한 것은 여성의 자율적 선택권을 강제적으로 금지했던 국가가 아이의 양육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것이다. 임신이 남녀 공동의 책임이라면 양육도 남녀 공동의 책임이 되어야 하고 국가와 사회 또한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데 국가는 이것을 거부한다. 일방적으로 임신을 한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한 후 양육마저도 모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다. 낙태를 둘러싸고 사회 경제적 책임 문제가 벌어졌을 때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국가는 이에 대해 분명하고 논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국가가 여성의 출산에 대한 자율권을 부정하려면 아이의 양육을 국가, 사회가 책임져야 하고 국가가 여성의 출산에 대한 자율권을 인정한다면 아이의 양육은 개인의 문제라고 인식해야 최소한 앞뒤가 맞는 것인데 한국은 이것마저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양육에 대한 국가의 무책임이 극에 달했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거나 여성의 출산에 대한 자율권을 인정하거나 하지 않는 한 사회 경제적 이유에 의한 낙태죄 문제는 끝없는 논쟁거리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이 문제는 한국이 과연 얼마나 자유 민주주의인 사회인가의 잣대가 될 수도 있다. 자유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개인에게 자율적인 선택권을 주고 이에 대한 책임도 개인이 지도록 한다. 반대로 (중앙집권적)공산주의는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제한하는 대신에 책임을 국가가 공유한다. 사회주의 혹은 사민주의의 경우는 경우에 따라 각각 다르기에 논외로 치겠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낙태 합법 국가인 이유는 미국이 자유 민주주의적 관점을 존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도 엄밀히 말해 남성 상위 사회고 미국 여성이 적어도 지금의 사회적 지위를 획득한 과정도 결코 순탄치는 않았을 것이다.) 한국 못지않게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은 일본의 경우도 사회 경제적 이유의 의한 낙태를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 , 일본과 마찬가지로 공식적으로 자유 민주주의 국가임을 내세우는 한국이 여성의 자율권은 부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낙태에 관한 한국 사회의 또 하나의 차별은 장애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서 찾을 수 있다. 위에서는 주로 여성이 임신과 출산의 주체이지 못하고 국가 혹은 사회가 강제로 출산을 강요하는 사례에 대해 언급했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암묵적으로 낙태를 강요하는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위에서 언급한 모자보건법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낙태를 허용한다는 조항이 있다. 얼핏 보면 큰 문제가 없는 조항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장애 여성 중에는 임신을 한 경우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위의 권유(?)로 낙태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실태조사(2008)에 따르면 장애여성의 유산 경험은 48.7%였으며, 주위의 권유로 인공임신중절(낙태)을 선택하는 경우가 22.9%로 나타났다.  장애 여성이 임신을 한 경우 임신 자체가 축하받을만한 일이 되기보다는 아이도 장애인이면 어떻게 하냐는 우려와 장애 여성이 과연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편견이 동시에 작용하여 암묵적으로 낙태를 강요하기도 한다.

이쯤에서 한 가지 실제 예를 들어보겠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낸 김양원 목사는 신망애복지재단을 운영할 당시 결혼하는 장애인 부부에게 "이 시설에 들어오려면 불임 수술을 해야 한다"며 불임 수술을 강요했다. 그런데 불임에 실패하자 이번에는 "낙태하라"며 낙태를 요구한 요구했다고한다. (출처 – 에이블 뉴스)

이런 사람이 무려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라는 것도 황당하지만 장애 여성에게 낙태를 은근슬쩍 강요하는 경우가 오로지 김양원 씨만의 문제인지는 좀 더 생각해봐야하지 않을까?

장애 여성의 임신에 대한 시각은 또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지난 2009년 장애여성에게 출산장려금을 주는 방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당시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예산안 통과 날치기 과정에서 출산장려금 예산안이 전액 삭감되었던 전례도 있다. 장애 여성의 출산의 경우 비장애인보다 더 어렵고 금전적으로도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장애 여성을 위한 출산장려금은 적어도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되지 않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낙태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시선 중 하나는 낙태가 하나의 수단으로서 국가가 주도하는 인구 조절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왔다는 것이다. 인구가 넘쳐나 인구수를 줄여야 할 때는 은근슬쩍 낙태를 묵인하고 인구가 부족해 인구수를 늘여야 할 때는 낙태를 줄여 인구수를 다시 늘이는 것이 국가가 낙태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선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당시 연평균인구가 3%수준으로 증가하자 국가에서는 이를 경제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보고 인구 억제 정책을 추진했었다.

- 1960년대에는 3-3-35 운동 – '세살 터울로 세 자녀만 35세 이전에 낳자'
- 1970년대에는 두 자녀 갖기 운동 –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 1980년대에는 심지어 '한 자녀 갖기 운동'이 펼쳐졌었다. –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그러나 2000년대 들어 극심한 저출산으로 인구증가율이 저조해지자 국가는 인구 증가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2009년의 저출산 종합 대책이다. 2009년 11월 25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저출산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저출산 종합 대책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

A. 출산과 육아 환경을 개선하고 국가가 이를 지원한다.
B. 낙태 방지 대책을 세워 인구를 늘인다.

이중 출산과 육아 조건을 개선하고 국가가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출산과 육아 환경의 개선이야말로 저출산 대책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면서 동시에 낙태 문제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해결책이기도 하니까 말이다. 그런데 말은 그럴싸하게 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가 과연 얼마나 출산과 육아 환경 개선에 의지가 있는지는 회의적이다. 2010년 예산을 보면 2009년에 비해 보육 예산이 줄었다. 아니 예산을 늘이기는커녕 예산을 줄였는데 도대체 무슨 수로 출산, 육아 환경을 개선하나?

그리고 낙태를 근절시켜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발상은 비민주적이고 비인권적인 발상의 극치이다. 이는 여성의 몸을 국가 발전을 위한 도구 정도로 인식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발상이다. 과거에 인구가 많았을 때에는 국가가 주도해 가면서 아이를 줄이라고 은근슬쩍 낙태를 권장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출산율이 낮으니 낙태를 줄여 인구를 늘이겠다니!! 국가에 의한 폭력이 이쯤 되면 정말 심각한 수준이다. 이쯤 되면 정부의 마초성, 폭력성은 정말 상상을 나날이 초월하는 단계로 거듭나고 있는 듯하다.

또한 정부의 저출산 대책과 궤를 같이해 불법 낙태 의사를 고발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 또한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후폭풍이 어마어마한 문제라는 것이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미 몸을 움츠리기 시작했고 무조건 낙태 수술 안 하겠다는 의사들이 속출할 것이다.

모자보건법이 인정하는 합법적인 낙태마저 이제는 힘들게 됐다. 성폭행을 당한 한 여학생이 임신 때문에 산부인과를 찾았지만 병원 측에선 성폭행을 입증할 고소장이나 판결문을 가져오라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한국의 사회 구조상 성폭행을 당한 피해 여성이 성폭행범죄자를 고소한다는 건 개인이 엄청난 사회적 고통을 감수해야 함을 의미한다. 성폭행을 당한 것도 모자라 제 2차 , 제 3차 정신적 충격이 두려워 성폭행을 당하고도 고소를 함부로 못 하는 게 한국 사회의 현실인데 이를 완전 무시한 처사인 것이다.

또한 산부인과가 낙태를 무조건 꺼린다고 정말 낙태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라는 게 또 문제다.벌써부터 불법 낙태 시술소가 속속 생겨나는 추세라고 하고 한탕을 노린 이들이 많아져 수술비는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한다. 필리핀 등에서 존재한다는 불법 낙태 시술소가 남의 나라의 일인 줄만 알았는데 이제는 한국에서도 위생도 엉망이고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이들에 의한 낙태 수술이 오히려 더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국내에서 낙태 수술을 하지 못하면 결국 해외로 나가기 마련이다. 벌써부터 중국으로 원정 낙태를 하러 가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고 낙태를 원하는 이들의 대다수가 사회 경제적 문제임을 감안하면 점점 더 안 좋은 상황에서 낙태가 시행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과거 독재 국가였던 루마니아 등에서도 엄격하게 낙태를 금지했던 적이 있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더 끔찍했다. 루마니아 여성들은 불법 시술소를 전전하며 점점 더 안 좋은 상황에서 거액을 지불하며 낙태를 해야 했고 그 와중에 낙태 중 사망하는 여성들도 속출했으며 낙태 자체가 불법이었기에 사망한 이후에도 어디 가서 하소연하기도 쉽지 않았다. 또한 루마니아 내에서 낙태가 힘들어지자 국경을 넘는 이들이 생겨났는데 이는 지금 한국의 모습과 비슷한 점이 많고 또한 미래의 한국의 모습이 될까봐 겁이 난다. 독재 국가에서나 벌어질 법한 무조건적인 밀어붙이기식 비민주적 낙태 금지가 얼마나 큰 후폭풍과 부작용을 불러오는지는 역사가 이미 증명한지 오래다. 루마니아의 낙태 관련 문제가 궁금한 사람은 [4개월 3주 그리고 2일]등의 영화나 각종 관련 글을 찾아볼 것을 권한다.

2011년 12월 28일 발표 때도 이야기했고 이 보고서 내에서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언급하듯이 나는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낙태는 무조건 옳다, 그르다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어느 시점까지가 낙태가 가능한 시기이고 어디서부터가 낙태가 가능해서는 안 되는 시기인지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 나는 신이 아니다. 현자도 아닐뿐더러 그저 무지한 인간일 뿐이다. 다만 내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기존의 이분법적인 낙태 논쟁으로는 실존하고 있는 이 다양한 문제들을 결코 해결할 수 없으며 낙태를 불편한 그 무언가로 치부하고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면 더더욱 문제 해결에서 멀어진다는 것이다.

무엇이 본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는 너무도 다양한 낙태가 존재하고 1000가지의 낙태에는 1000가지의 사연이 존재하기에 옳고 그름이라는 본질을 다루기에 앞서 실존하고 있는 차별과 문제점들에 대해 언급하고 싶었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에는 실존이 본질에 우선한다고 이야기하고 싶었다.

한국 사회에선 낙태를 선택하고 싶어하든, 낙태를 하고 싶지 않아하든 낙태의 주체적 결정권이 오롯이

당사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복잡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에 반해 그 피해는 산모가 되었든 태아가 되었든 당사자들에게만 돌아가는 것 같아 글을 쓰는 내내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혹시라도 내가 쓰고 있는 이 글이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었다면 정중하게 사과한다. "미안합니다." 다만 누군가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지라도 언급해야할 것은 언급해야한다고 생각했고 그 결과 이런 글이 나와버렸다. 불편하지만 실존하고 있는 현실에 눈을 돌리지 않고 그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야말로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 4. 낙태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복합 차별에 대해[4]

## 들어가며

우리 사회에서의 낙태는 여러가지 요인들로 인해 차별을 야기하고 있다. 낙태를 선택하게 되는, 혹은 낙태로 내몰리는 상황의 다양한 특수성에 비해 우리 사회가 낙태에 대처하는 방법은 천편일률적이다. 이유는 여전히 낙태하는 사람들에 대해 성적 문란함과 방만한 성생활, 그리고 생명을 경시하여 빚어진 과오로 여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낙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이토록 일률적이 된 까닭은 무엇인가? 일단 낙태에 대한 세간의 인식이 '생명윤리적 쟁점'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 태아의 생명권과 산모의 재생산권의 대립이라는, 각기 다른 전제를 내세운 논거로 접합점을 찾을 수 없는 논쟁을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인식에 따라 우선시 되는 가치에 대한 옹호가 상대적 입장에 박탈감을 낳을 수 있게끔 한다.

우리 사회는 낙태를 형법상 처벌이 가능한 죄목에 포함하고 있다. 그 이유는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하기에 이를 해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다. 결국 낙태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이를 막거나 줄이기 위한 제도적 조치를 실행하고 있는 것인데, 예방보다는 처벌에 무게를 둔다는 점이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결국 낙태를 막거나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제도적으로 취하고 있는 방법은 오로지 '처벌'밖에 없는 셈인데, 결국 낙태를 고려하는 여성들은 처벌을 두려워해서 낙태를 하지 않거나 음지에서 몰래 낙태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후발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낙태가 비범죄인 국가에 비해서 오히려 낙태률이 높다. 낙태에 대해 아무런 법적 처벌이 없는 나라보다 형법상 처벌이 가능한 나라가 낙태률

[4] 작성: 다음엇지 twitter @daumeotzi

이 더 높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한 낙태(산모에 대한 응급상황, 산모의 장애 혹은 태아의 기형, 그리고 강간에 의한 임신 등)를 제외하고서라도 수많은 낙태가 이뤄지고 있는 까닭은 무엇이고 그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어떠한가?

우리 사회가 품고 있는 여성에 대한, 그리고 낙태에 대한 편견으로 빚어진 복합차별은 일일히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맥락 몇 가지를 살펴보려 한다.

### 1) 원치않는 임신에 대한 인식

언제나 임신과 출산이라는 것이 모두의 축복을 받아야 할, 경사스러운 일이 될 수는 없는 것 같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혼전순결이 미덕처럼 여겨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나 혼인 전, 비혼 여성의 임신은 여러 면에서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먼저 사실관계와는 상관없이 문란하고 피임도 게을리 한, 방만한 성생활을 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주변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그렇게 비춰질까 걱정하는 것이 현실이기에 우리 사회에서 여성으로써, 원치 않는 시기에, 결혼을 할 정도로 각별한 사이가 아닌 상대와의 관계로 임신을 하게 된다면 세간의 인식으로 인해 임신 자체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임신을 계기로 결혼까지 하게 되는 것 역시 마찬가지의 맥락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상대와 결혼할 수 없는 상황, 즉 당사자들이 사회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라거나 결혼을 고려할 수 없는 대상일 경우 '미혼모'라는, 우리 사회에서는 불명예스러운 인식표를 달게 될까 두려워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처럼 미혼, 비혼 여성의 경우에 원치 않는 임신을 할 경우에 자신의 입장과는 무관하게 사회적 인식을 의식해서 결혼을 서두르거나 낙태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리곤 한다.

하지만 원치않는 임신이 낙태에 이르는 것은 기혼 여성도 마찬가지다. 미혼, 비혼 여성의 임신이라면 세간의 인식때문에라도 낙태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만, 안정적인 가정을 꾸린 기혼 여성이 낙태를 선택한다면, 어떤 의미에선 사회적으로 더 많은 도덕적, 윤리적 질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기혼 여성이라 하더라도 낙태를 선택하게 되는, 혹은 낙태로 내몰리는 상황에 얼마든지 봉착할 수 있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한 예를 들자면, 임산부는 임신 중에도, 그리고 임신 후에도 우울증에 시달리게 된다. 연년생을 임신하게 된 임산부는 산후우울증과 임신으로 인한 우울증이 심화되면서 자살까지 결심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 우울에서 벗어나기 위해 임신중절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으며, 자의가 아닌 타의로 임신중절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후자의 사례는 전형적인 남아 선호사상에 의한 여아 낙태인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산모의 자의적 판단보다는 주변의 종용에 의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런 주변 상황에도 불구하고 낙태를 하게 되면 그 책임과 비판은 고스란히 산모였던 여성에게 돌아가게 된다. 결국 미혼이든 기혼이든 비혼이든, 원치않는 임신을 했을 경우 사회적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도 세간의 관념에 의해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사회는 임신이 여성에게 '공포'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 2) 여성 차별

사실 앞선 내용에서도 비춰지듯이 낙태를 둘러싼 차별의 가장 주요한 부분 중 하나는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 크게 기인한다. 사실 임신이라는 것 자체가 여성 혼자서만은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낙태'라는 현상에 대해서는 오로지 여성만이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만 봐도 낙태를 둘러싼 차별에 성차별의 요소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아직도 전근대적인 혼전순결, '정조'의 문제를 여성에게 강요하거나 문란한 성생활의 경우에도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욱 비판을 받고 태아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 역시 마찬가지이다. 뿌리 깊은 성차별은 '낙태'라는 현상에 있어 심각한 차별을 야기하는 주요한 요소이다.

특히나 성관계에 있어서 발생하는 성차별은 낙태와 아주 직접적인 연관성을 띄고 있다. 낙태는 임신 없이는 있을 수 없고, 임신은 성관계 없이는 있을 수 없다. 모든 출발점은 성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 낙태에 대한 쟁점도 마찬가지다. 생명윤리적 관점에서만 본다면 수정체가 생명인지 아닌지에 대한 갑론을박만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낙태를 야기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성관계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남녀간의 성관계에서 일어나는 성적 차별이 결과적으로 낙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이 될 수 있겠다.

낙태를 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여성민우회의 사례집을 참고하자면,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을 피하기 위해 피임을 상대에게 요구해도 상대 남성이 받아들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성이 피임을 거부하는 이유도 천차만별인데 단순히 쾌감을 위해 피임기구를 쓰지 않는 경우, 그리고 피임을 요구하는 여성에게 '성에 밝다'라며 핀잔을 주는 경우까지, 성관계에 있어서도 여성은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지 못하고 상대 남성의 의사만이 주도적으로 행해진다는 것을 읽을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여성이 원치않는 임신을 피하고 싶어도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순간에 피임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임신까지 되었을 경우, 상대 남성이 함께 출산과 양육을 책임져주지 않는다면 여성은 태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 아이를 함께 만든 남성은 자의적, 도의적 책임에서 모두 빠져나가기 용이한 반면, 태아를 잉태한 여성은 그 모든 책임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되곤 한다.

### 3) 임신과 출산, 양육의 부담

원치않는 임신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한 부담이 없다면 낙태를 선택하는 여성은 현재보다 많이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임신은 곧 양육에 대한 막대한 지출과 이어져 있다. 임신은 곧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미혼이든 비혼이든 기혼이든, 혹은 원치 않는 임신이든 원했던 임신이든 간에 임신에서 출산까지의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출산이후의 양육비는 그야말로 부담스러운 비용이 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회에서 임신은 경제적 부담의 가중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물론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빠듯한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서민들에게 예기치 못한 임신은 청천벽력같은 비보가 될 수도 있다.

유아용품이나 조기교육비용이 비상식적으로 높은 현실 속에서 달리 대안을 찾을 수 없는 우리시대의 부모들은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감내하고서양육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설상가상으로 우리 사회는 저출산 시대를 맞아 임신과 출산을 장려는 하고 있지만,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은 극히 미비한 수준이기에 어느 정도 경제적 기반이 없으면 양육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경제적인 요인이 아니더라도, 시기적으로 학업이나 취업 등의, 개인적으로 중차대한 시점에 임신이 겹칠 경우 육아를 병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낙태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임신이라는 것 자체가 대부분의 사회생활과 병행할 수 없다는 육체적 한계점도 한 몫을 하겠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여성의 혼인 여부, 특히 출산 여부가 직장 생활의 관건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 출산과 양육을 기피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4) 낙태를 선택한 산모와 시술자에 대한 사법적 처벌

낙태라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는 단편화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제도는 이러한 특수성의 개별적 고려 없이, 오로지 처벌만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실제 낙태율에 비해서 기소율은 높지 않다. 낙태 자체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이러한 낙태를 고소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수 종교단체나 낙태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에서 낙태 시술자를 중심으로 한 집단 소송이 진행되기도 하여 낙태 시술자들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며, 사회적 인식이나 대외적 이미지를 고려해 현재 낙태 시술을 하는 산부인과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낙태를 원하는 여성은 낙태를 결심한다 하더라도 시술을 받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낙태에 대한 개별적 고려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후발적 조치를 통한 처벌만이 유일한 대안인 상황 속에서 현실적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특수성에 대한 고려는 전무한 상황. 융통성이 없는 범과 제도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 더 많은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낙태에 대처하는 제도적 방편은 그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편협한 측면이 있다.

## 맺으며

이 글의 요지는 낙태의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낙태를 둘러싼 편견과 차별에 대한 이야기이다. 낙태라는 현상에만 집중하게 되면 이분법적인 잣대, 다시 말해 생명권과 재생산권의 대립만이 화두에 오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한 발짝 물러나 낙태라는 현상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그 절차나 이유에 대해 관망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언급된 우리 사회의 인식, 그리고 편견, 그리고 그로 인한 차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들은 우

리가 '낙태'라는 현상만으로 여성의 도덕성과 윤리를 논하기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간과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실 이런 현실적 문제에 대한 고려가 없는 대안은 의미가 없고 오히려 차별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짚고 있다.

사실 우리시대의 낙태는 개인의 선택이라기 보다는 사회적 인식과 관념, 편견이 만들어내는 집단 현상이라고 보는게 맞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아직 일반화 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논의는 시작 단계에 있으며 뿌리깊은 기성의 고정관념을 대체하기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의 시작은 분명 의미가 있는 것이다. 낙태를 생명윤리적 관점에서만 보거나, 낙태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여성에게만 짊어지게 하는 모든 편견과 차별의 요소를 벗기 위해, 우리는 낙태를 할 수 밖에 없는 세태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시대에 낙태를 결심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경청해야하고 그녀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떠한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차별들이 존재하는 지를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가 표면으로 부상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으며 새로운 시각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때 비로소, 낙태를 둘러싼 편견과 차별의 굴레를 벗어던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맺음말

이슈과정 주제를 낙태로 정하면서 기타조 구성원들은 사실 수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어려운 주제를 제대로 다룰 수는 있을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할까... 단순히 과거의 이분법적인 대립구도를 그대로 답습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어디까지 낙태에 대해 접근할 수 있고 어디까지 발표할 수 있고 보고서에 담을 수 있을지 등등 그야말로 산적해있는 문제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한때는 괜히 낙태를 주제로 삼았나하는 후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이런 보고서를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적절한 상황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던 조원들에게 제대로된 방향 설정으로 해결책을 제시해주신 슈퍼바이저 일란 님과 민우회 신기루 님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인권대학을 준비하며 고생하신 서연 간사님과 진옥 팀장님 및 앰네스티 관계자 여러분들 , 인권대학을 함께한 이름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많은 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수고하셨고 함께할 수 있어 즐거웠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특히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심지어 크리스마스에도 함께 모여 낙태라는 다소 부담스럽고 어려운 주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함께 고민했던 기타조 모든분들에게 그동안 즐거웠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보고서만을 가지고 낙태와 관련된 많은 문제점들이 단번에 해결되라라는 기대감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고민과 생각을 이 보고서 안에 담고자 노력했고 조금쯤은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던 기존의 낙태에 대한 고정관념이 아주 조금이라도 흔들렸다면 낙태라는 것이 얼마나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있고 아주 복잡한 구조가 서로 얽히고 설켜 일어나는 문제인지를 전달할 수 있었다면 이 보고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장애인 접근권[1]

## 교육 접근권[2]

### 1. 장애인 교육권의 실태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에도 명시되어있는 기본권 중에 하나입니다. 헌법 31 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교육법 9 조에서 다시한번 모든 국민에게 그 능력에 따라 수학할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그리고 '직업을 가진 자의 수학을 위하여 야간제 ·계절제 ·시간제, 기타 특수한 교육방법을 강구한다'고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이렇듯, 교육 받을 권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응당 균등히 보장되어야 할 기회입니다. 게다가 고학력 사회에서 사실상 의무교육과정조차 거치지 못한 상태에서의 취직은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 〈2005 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성인의 45.2%가 초등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을 가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2011 년 현재, 기존의 특수교육 진흥법이 폐지되고 2008 년도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권이 새로이 제정되면서 이전보다 장애인의 교육권이 잘 보장될 것이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투쟁으로 제정해낸 법률이 있음에도, 그에 따라주지 못하는 행정과의 괴리 탓에 여전히 장애인의 교육권은 보장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결국 장애인에게 아직도 교육의 권리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사회적 환경에 의해 박탈되어지고 보장되어지지 못하는 권리인 것입니다.

[1] 모둠 구성원: 강민기, 김지연, 김한나, 원예진, 이정민
[2] 작성: 김한나

## 1) 영.유아 -전이가 효과적으로 이뤄져야 할 시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3 조(의무교육 등) ①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 8 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 24 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 세 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위 조항에서 알 수 있듯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만 3 세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법이 장애영.유아 교육을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으로 명시한 것은 조기진단 및 조기교육과 치료를 통해 아동의 발달은 촉진시키기 위함입니다. 또한 장애인 교육의 추세가 통합교육으로 맞춰감에 따라, 이 시기의 장애 영유아 조기교육기관은 장애아와 비장애 아동간의 통합교육을 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때에 이뤄지는 가정과 기관의 전이(하나의 환경에서 또다른 환경 또는 조건으로 이동하는 과정)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장애영유아의 가정에서 유아교육, 보육기관으로의 전이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 및 경험과 지원요구에 관한연구〉에 의하면

이 중에서도, 가정 또는 영아 프로그램에서 유아교육·보육기관으로의 전이 경험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서 3세 미만의 장애영아 교육이 무상화되고 유치원 과정 교육이 의무교육으로 됨에 따라서,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의 수가 증가될 것이며, 이에 따라 더 많은 전이도 이루어질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이다. 둘째, 영유아는 일반적으로 전이 과정에서 새로운 환경과 상황에서 오는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느끼는데, 장애영유아는 발달상의 지연으로 인하여 전이과정에서 일반 영유아보다 더 많은 난관에 직면하기 때문이다(Bruder & Cole, 1991; Noonan & McCormick, 1993). 셋째, 전이과정에서의 성공과 실패는 영유아의 사회 · 정서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성인이 된 후 나타나는 여러 행동에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박영균, 2008; 이소현, 2003). 넷째, 장애영유아들의 경우는 특수한 교육적, 치료적 요구로 인해 다양한 기관이나 프로그램에서 연속적이거나 두 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받으므로, 전이 기간 동안 더 많은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김경숙, 2001). 따라서 전이과정에서 장애 영유아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돕고,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조정하며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김미경, 2004; 조윤경, 홍은주, 이은정, 2003).

하며 전이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장애아동, 비장애아동 모두에게 처음 접해보는 세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유아기의 경험은 성인이 된 후에도 나타나는 여러 행동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때의 경험이 중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영유아 아동들의 학습권은 그리 잘 보장되어있지 않습니다. 유치원부터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시설의 부재와 특수교사의 부족도 있지만, 무엇보다 장애 학생의 입학을 꺼려하는 다른 비장애 아동의 학부모의 인식문제와 마찬가지로 이를 꺼려하는 시설의 인식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마치 장애가 죄인 같은...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도 좀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기가 조금 더 좋아지면 병설에 보내고 싶은데...통합이요. 그런데 안 받겠다고 하는 데가 많다고 하더라구요. 다른 엄마들이...아이들도 많고 또 힘들고...다른 엄마들이 장애아가 오면 애들이 따라한다고 좋아하지 않는다구요. (부모1. 2011. 1. 12)

또한, 기관과 부모, 교사를 체계적으로 연결해주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의사소통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일단 청주시 같은 경우도 장애아가 몇 명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서류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애가 지원받을 수 있는 거 솔직히 거의 몰라요. 그리고 동사무소 가서 물어봐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그런 거에 대한 용지라도 집으로 날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걸 보고 애한테 도움 될 수 있는 걸 쉽게 찾을 수 있을 텐데..……초등학교도 이왕이면 가까운데 보내고 싶은데 가까운데 특수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 아쉬운 거 같아요. (부모1. 2011. 1. 12)

이러한 소통의 부재는 결국 적절한 전이가 이뤄져야할 시기의 장애아동들을 교육 밖으로 밀려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 2) 초.중.고등학교 –차별에 직면하는 시기

고등학교 때, 같은 학년에 지적 장애인 친구들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도 같은 반을 해보지 않아 수업을 같이 받아 볼 기회가 없었는데, 생각해보면 당시에는 막연히 같이 수업을 받아도 되는 건가? 방해를 주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같은 수업을 소화 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았고, 소리를 지르거나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며 수업을 방해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또 왜 학교에 장애인 학생이 같이 수업을 듣는지를 아예 알지 못했습니다. 후에야 그것이 장애인 통합교육의 한 일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그 애들이 수업에 방해가 된다며 노골적으로 싫어했고, 때로는 짓궂은 장난을 치며 그 아이들을 놀리기도 했습니다. 혹은 무조건적으로 도와줘야 할 존재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불쌍하거나 모자란 애들, 수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애들. 이게 전반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 ① 인식에 의한 차별

장애인 교육법에서 제 4 조(차별의 금지) ①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고등교육법」 제 2 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 조항을 명시하는 것은 통합교육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학교는 장애학생의 입학을 거부할 수 없으며, 일반학교의 경우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을 두어 장애학생와 비장애학생이 같은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학생이 같은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다해서 차별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장애학생이 같이 수업을 받지만 무리에서는 배제되는 통합 속의 분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장애학생과 함께 수업을 듣는 비장애 학생들과 일반교사들이 인식개선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엔 학교에 장애학생이 같이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그 반의 학생이 아닌 경우엔 어떠한 장애이해교육도 받지 않고 같은 반 학생인 경우에도 대략 한교시도 되지 않는 장애이해교육을 받았을 뿐입니다. 일반교사들의 경우엔 〈장애이해교육〉에 대한 연수를 받을 수 있지만, 이마저도 실제 연수생들은 특수교사들뿐이어서 일반교사들의 장애이해도는 굉장히 떨어지는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11 년 학교 모니터링 실태 보고서-만들자! 차별없는 학교〉에 의하면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비율은 43.7%라고 합니다. 웅얼거리는 장애학생에게 도덕교사가 계속 웅얼대면 정신병원에 보내겠다고 말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아직도 현행학교의 교사들의 장애이해도는 많이 떨어지는 수준이며, 초등학교의 경우 장애학생이 보조교사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담임교사에게 방치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시설이 좋아진다 한들, 아이가 왕따를 당하고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환경에 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닐 것입니다. 제대로 된 인식개선의 노력이 없다면 통합교육은 허울 좋은 껍데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 ② 시설에 의한 차별

시각 장애학생의 경우 〈2011 학교 모니터링 실태조사〉에 따르면 통합학교의 경우 인력배치(초, 중-학생 6 명당 특수교사 1 명, 고등-7 명당 특수교사 1 명)와 개별 보행훈련을 위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인력 배치는 법적으로 준수, 이행되고 있으나 학교 시설물 접근 편의에 꼭 필요한 교문위치를 알려주는 차임벨 미설치가 96.9%, 교내 건물마다 촉지도판 미설치 96.9%, 학교 밖에서부터 학교 현관까지의 진입로 및 학교내 복도의 점자블록 미설치비율이 90.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뿐 아니라 재학중인 시강장해학생이 손으로 읽을 수 있는 높이에 점자표지판이 부착된 경우는 겨우 5.2%입니다. 특수교사인원 법적 준수와 보행 관련 서비스가 잘 이행되고 있다 해도 사실상 시각장애 학생이 일반학교를 다니기엔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각장애학생이 일반학교를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청각장애 학생의 경우도 이와 거의 다를 바가 없는 실정입니다. 학교내에 FM 보청기등 집단 청취 장치가 설치되어있으나 그 설치율이 26.3%로 저조하며 수업시간을 알리는 견광장치의 경우에도 설치율은 고작 2.5%에 그치고 있습니다. 문자로 방송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문자안내 설비 역시 설치율은 4.2%, 노크소리를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외부인의 노크소리를 빛으로 인지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 역시 설치율이 고작 5.1%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일반학교의 시설이 이렇게 미비한 가운데, 일반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한다는 것 역시 쉽지 않아 보입니다.

### ③ 장애성인- 장애 교육의 사각지대

한국의 장애인 학력은 위에도 말했듯, 절반의 가까운 수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학력자도 취직이 되지 않는 현실에서, 이러한 학력은 취업에 큰 걸림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제대로 된 장애이해교육을 받지 못한 부모들이나 친인척이 방에만 두거나 시설로 보내버려 한글 교육조차 받지 못해 문맹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한 장애인 교육법 이정에 제정되었던 특수 교육 진흥법의 경우엔 무상교육조차 제대로 명시되지 않았던 허물뿐인 법이었습니다.(후에 한차례의 개정을 거칩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장애성인들의 학창시절은 사실상 교육권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접근조차 할 수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결코 자신들이 선택한 일이 아닌, 강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애성인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국가시설은 전무하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사실상 현재 장애성인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장애인 야학뿐인데, 이 중에서도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해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야학은 몇 개가 되질 않습니다.

제 33 조(장애인 평생교육과정)
①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법」 제 2 조에 따른 장애인의 계속교육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평생교육법」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③「평생교육법」 제 19 조에 따라 설립된 평생교육진흥원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방안 및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④「평생교육법」 제 20 조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시• 도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법」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이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제 34 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 중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령기를 지난 장애인을 위하여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 1 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장애인 교육법은 평생교육과정을 두 조항에 걸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야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경우 교육감에게 등록을 하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시설과 설비를 갖춘 야학은 많지 못합니다. 장애인야학의 대부분은 소규모로 운영되며 대부분의 재정을 기부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전히 많은 장애인 야학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재정적 문제뿐 아니라, 야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 중의 많은 수를 차지하는 중증 장애인분들은 신체적으로 혼자만의 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보조를 해주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필요로 합니다. 2005 년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나서서 쟁취해낸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달별로 시간을 받아 그 시간을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의 300 시간을 받는다면 하루에 10 시간정도의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자체가 장애인에게 주는 활동보조서비스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며, 수입이 일정치 않은 장애인분들에게 무리한 자기부담금을 요구해 문제가 많은 서비스입니다. 이런 서비스의 제약으로 배움을 원하는 중증장애인분들이 배움을 위해 야학의 문턱을 두드리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또한, 장애성인과 학령기에 있는 장애학생의 교육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전개가 되어야 하는데, 이에 맞는 교재나 교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태는 전혀 그렇지 못할뿐더러, 정부에서는 어떠한 가이드라인 제시조차 없어 사실상 장애성인에 대한 교육권은 거의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2. 개선을 위해서

장애인의 학습권에 대한 차별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인식의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장애인에게도 교육받을 동등한 기회가 필요하며, 자신이 어디서 수업을 받을지를 정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장애인 본인의 결정대로 되어야 한다는 걸 비장애인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교육은 더욱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전에 장애인 야학에서 주최하는 연극제를 보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친구가 했던 말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나는 장애인을 만나본적도 없고, 친구를 해본적도 없어서 장애인이 어떻게 사는지, 뭐가 필요한지 전혀 몰랐다."
접할 기회가 없었고, 말해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장애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섣불리 시혜하고 동정하기만 합니다. 혹은 혐오를 하거나 경멸을 합니다. 이런 것은 장애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일입니다. 장애인이 아닌 그 장애인 개인을 볼 수 있도록, 우리는 통합교육을 하고 또 통합교육을 위해 어떤 시설을 설비해야 하고, 그들과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사의 수가 부족하고 학교의 설치가 미비한 것은 정부가 장애문제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 장애학생들이 장애학생을 괴롭히는 것, 일반 교사가 장애학생을 방치하고 때로는 모욕하는 것 역시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그 다름을 배우는 장애이해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참고문헌〉

1. 〈당신은 장애를 아는가?〉 - 김도현 저서, 메이데이 출판.
2. 〈장애영유아의 가정에서 유아교육, 보육기관으로의 전이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 및 경험과 지원요구에 관한 연구〉 - 이경원, 노진아, 이미숙 저.
3. 〈2011 학교 모니터링 실태 보고서-만들자!! 차별없는 학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지역사회 네트워크

# 시설 접근권[3]

## 1. 차별 사례

1)

| 차별세례 생활시설 입소를 조건으로 한 친권포기 강요 | |
|---|---|
| 차별당사자 | 자폐 1 급 장애아동 |
| 차별내용 | - 사설생활시설에 거주하며 학교에 다니고 있음<br>- 비용의 문제로 학교 옆에 있는 생활시설 입소를 원함.<br>- 시설에서는 수급권자와 편모 가정에게만 입소자격이 주어진다며 입소하려면 친권을 포기하라고 함. |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30 조] 제 5 항<br>(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br><br>'복지시설 등의 장은 장애인의 시설 입소를 조건으로 친권포기각서를 요구하거나 시설에서의 생활 중 가족 등의 면접권 및 외부와의 소통권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

2)

| 차별사례 시설에서 나와 자립 생활을 원하는 장애인의 지원방식 변경요청 거부 | |
|---|---|
| 차별당사자 |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3 명의 장애인 |
| 차별내용 | - 2009 년 12 월 16 일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3 명의 장애인이 음성군청과 양천구청을 대상으로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방식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을 함.<br>- 음성군청이 서비스변경신청에 대한 결정통보를 거부함. |

[3] 작성: 원예진

## 2.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이란?

수동적인 장애인의 무기력한 삶을, 장애인이 주체가 되는 능동적인 삶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잃어버렸던 장애인의 권리를 다시 찾는 장애인의 인권회복운동이다.
또한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이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그 결정에 대하여 위험을 동반할지라도 장애인 자신이 책임지며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창조적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장애인에게 있어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이란 기존의 신체적 자립이나 경제적 자립의 의미에 국한된 의미로서가 아니라, 삶 그 자체에 대한 결정과 관리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행하여지는 장애인의 권리 차원에서 논해야 할 것이다.

자립생활 지원정책과 제도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는 현실에서도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향한 도전은 계속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자립생활이 실천되도록 지원하는 과정에서 자립생활이념교육, 자립생활 체험 홈[4] 역할, 생활시설과 자립생활센터,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 생활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금 지원
- 영구임대아파트나 국민주택 입주의 장애인우선권 보장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가능할 수 있는 활동보조시간 지원
- 국민기초수급 신청 자격을 세대단위에서 개인단위로 변경
- 소득기준을 부모의 재산 조사가 아닌 장애인 개인으로 한정

**※ 지역사회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

1) 생활시설 내 자립생활 교육
자립생활이라는 새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고 자립생활 동기부여로 자립생활 프로그램에 참여를 유도한다.

2) 자립생활 연대모임
생활시설에나 집안에서만 생활하는 장애인을 사회로 끌어내는 첫 번째 과정으로 모임 구성원(중증장애인, 자원봉사자, 지역주민 등)이 처음으로 자립생활을 접하는 모임이다. 자립생활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4] 자립생활 체험 홈이란 중증장애인이 집이나 시설을 떠나서 자신의 자립생활을 체험하고, 준비하는 곳으로 가족의 보호와 시설생활을 벗어나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 생활하며, 장애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은 활동보조서비스를 통해 자립생활프로그램(금전관리, 시장보기, 이웃사귀기, 자기관리, 시간관리, 요리실습 등)을 실시하고, 지역사회 공공기관이나 관공서, 편의시설을 이용하며 사회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3) 자립생활 활동가 모임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자립생활 숙박체험
집이나 시설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이 자신을 매일 도와주는 사람을 떠나서 활동보조인의 보조를 받으면서 2 박 3 일~13 박 14 일정도(장애가 심할수록 체험 기간이 길다)자립생활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성인이 된 장애인도 실제의 자립생활을 시도하려 할 때에는 두려움이 있기 마련으로 시설생활을 오래한 장애인일수록, 가족을 떠나서 생활 해 보지 않은 장애인들일수록 자립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체험 해 보는 것이 실제 자립생활에 많은 도움이 된다.

5) 동료 상담
유사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지지하고 돕는 것으로 정보와 지식 제공에서 장애인의 권익옹호까지 대등한 관계의 상담이다.

## 3. 사회복지시설 생활경험과 '탈시설-자립생활'에 대한 욕구

**[사례 1]**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사람처럼 인정받고 대접받으며 살고 싶어요."

윤 국 진
2009 년 12 월 16 일 사회복지서비스변경신청 중 음성군수에게 보내는 편지

박수광 음성군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음성꽃동네에서 19 년간 생활하고 있는 윤국진입니다.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사람답게 사는 삶을 꿈꾸고 짧게나마 저의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꼭 끝까지 읽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아버지 어머니 사이가 안좋아서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고, 아버지 사업이 잘 안되서 감방에 들어가있는 동안 아는 아줌마가 우리 형제를 돌봐주셨습니다. 어느날 아줌마가 저에게 "꽃동네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가보지 않겠느냐? 그리고 네가 안가면 나중에 동생들이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라고 하시더군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그때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됐거든요. 늘 집에서만 생활해야 했고, 어머니 아버지는 집에 안 계셨으니까요. 시설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애덕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꽃동네 와서 한 삼일은 밤마다 울었어요. 애덕의 집에서는 한달여 생활하다가 희망의 집에 오게 됐습니다.
시설에서 살면서 좀 지나고 적응이 되니 '나 같은 사람은 살기 좋구나' 생각했었습니다. 제법 말도 잘하고, 꽃동네에 봉사 오는 사람들과도 친해지고, 직원들과도 잘 지낼 수 있었다는 것도 그랬고. 능력도 없는 내가 먹을 것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곳. 이 정도면 만족하고 살 수 있다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다가 2004 년도에 모 장애인단체를 통해 자립생활도 알게 되었고, 교육도 받았습니다. 여름캠프를

가게 되었는데.. 충격이었어요. 다른 장애인이 지역에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 나는 내가 그래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더 중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잘 살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시간들이 아까웠습니다. 그리고 한 켠에서 배신감도 밀려오더라고요. 아무도 나에게 시설 아닌 곳에서 살 수 있다는 걸 알려주지 않았으니까요. 아무것도 안하고, 아무것도 못한 채 10 년이 넘는 세월을 이 곳에서 살아왔으니까요. 그러다 같이 꽃동네에서 살던 형이 1 년 만에 시설에서 나가게 됐습니다. 내가 내고 싶지만 낼 수 없었던 그 용기가, 그 선택이 너무도 부러웠습니다.
그렇게 몇 년여 시간을 보내다가 체험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잠시 머무를 수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시설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집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잠시가 아닌 오랜 기간 머무르며 살 수 있는 공간.. 무작정 집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더라고요.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최소 500 만원 이상의 보증금이 필요한데 당시 통장에는 8 만원 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가족에게 돈을 부탁하는 방법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동생들은 그런 제가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는지 시설에서 나오는 것을 반대하였고 결국 다시 시설에 눌러앉게 되었습니다.
꽃동네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착찹했던 건 자립생활하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가 책임져야하는데 과연 내가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었어요. 우선 나가려면 집도 필요하고 활동보조도 필요하고, 또 돈도 필요하고.. 이 문제들이 걸리지 않았다면 더 빨리 나올 수 있었을 거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런 상담을 어디에 해야할지 막막했어요. 돈도 없는데...
앞으로 시설에서 나와 돈을 벌고 싶어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능력을 활용해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걸 고민해 봤어요. 요즘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마음 맞는 친구들 3~4 명 정도가 함께 살면서 조그맣게 쇼핑몰 혹은 컴퓨터와 관련된 무언가를 하면 좀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고생은 좀 하겠지만 자리가 잡히고 나면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동안 외출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면서 장애인들이 자립생활 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고 '내가 너무 편하게만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느 자립생활 교육을 갔을 때 어떤 사람이 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개 돼지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나는 사람인데 왜 개 돼지가 되어야 하는지.. 나의 삶이 그렇게 취급되어지는 것에 대해 화가 났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설에서 나와 살고 싶어도 집과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 슬펐습니다.
박수광 음수군수님!!
우리도 사람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사람처럼 인정받고 대접받으며 살다가 죽고 싶습니다. 시설에서 나가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례 2]**

"불쌍한 장애인이 아닌 당당한 시민으로 살고 싶습니다!!"

박 현
2009 년 12 월 16 일 사회복지서비스변경신청 중 음성군수에게 보내는 편지

박수광 음성군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음성 꽃동네에서 생활하고 있는 27 살의 박현입니다. 저는 뇌병변 1 급 장애인으로 음성 꽃동네에서 생활한지 14 년 정도 되었습니다. 시설안의 무의미한 생활보다는 내안의 삶을 찾고 싶어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꼭 끝까지 읽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시설에 오기 전까지 저는 주로 집에 누워서만 생활을 했었어요. 휠체어도 없고 해서 나간다는 건 생각도 못했지요. 꽃동네 오게 된 건 부모님 두 분 다 일을 하셔서 낮에는 동네 아주머니가 봐주시고

그러셨는데, 엄마가 너무 힘들다보니까 알아보셨나봅니다. 저는 집에만 있다가 나가는 게 좋아서 그래서 꽃동네 오는 걸 좋아했었어요. 그때는 '꽃동네가 시설이라는.. 이 안에서만 먹고 자야한다는 건' 몰랐어요. 다른 사람들이 학교에 다니는 것처럼 저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좋아했어요. 그런데 와보니 달랐습니다. 처음 꽃동네에 와서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모든 게 낯설고.. 그래서 많이 울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 당시는 가족이 있으면 꽃동네에 들어오는 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가족이 꽃동네 앞에 버리고 가는 경우도 많았지요. 저도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해서 꽃동네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면회 온 '엄마'를 '이모'라고 불러야 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엄마는 1 년에 두어번 정도만 오셨어요. 자주 오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그 때보다 조금 더 자유로워졌다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더 규제가 강해졌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자원봉사자에서 직원으로 바뀌고 나서 오후 4 시이후에는 면회도 되지 않습니다.

수없이 꽃동네를 나가 다른 친구들처럼 살고 싶었지만 엄마 속 썩이고 싶지 않고 시설에 계신 분들에게도 죄송해서 힘든 내색 않고 조용히 숨죽이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참다가 막상 시설에서 나가고 싶다고 말했는데 모두가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했지만, 막상 반대에 부딪치니 많이 서러웠습니다.

매일 똑같이 먹고 자고하는 생활을 이제는 더 이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동안은 저 같은 사람들이 나가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시설에서 나와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러나 저와 같은 뇌성마비 장애를 갖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지역에서 살면서 자유롭게 일도 하고 활동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함께 생활하던 저랑 같은 장애가 있는 형이 이곳을 나가서 자립도 하고 결혼도 하는 것을 보게되었습니다. 저도 나가서 자립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성친구도 사귀고 보통 사람들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사는 형을 따라 시설에서 나가 같이 살려고 했는데 그 형이 나가지 못하게 되면서 저도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집에 있을 때 한 번도 학교에 다녀본 적이 없었어요. 꽃동네에 와서 한글을 배우게 됐어요. 그때는 학교에 가고 싶긴 했는데, 아무도 갈 수 있다 이야기 해 주지 않아 갈 수가 없었죠. 갈 수 있는 곳인지도 몰랐어요. 지금은 검정고시를 통해 초등학교과정까지 마치게 되었어요. 검정고시 같은 경우도 내가 시설장한테 "저 공부 좀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어봐서 준비할 수 있었어요. 당시 대학교수가 꽃동네에서 일을 해 개강 전에는 1 주일에 5 일, 개강 후에는 1 주일에 3~4 일씩 7 개월 반 동안 함께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바빠지시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혼자 준비하려니 쉽지 않더라구요. 결국 포기했죠.

14 년 동안 살아온 이곳을 나가 스스로 살 생각을 하면 저 역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선 살 곳도 필요하고 활동보조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첫째로 집인 거 같아요. 저 같은 장애가 있는 친구들 3~4 명 정도가 함께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곳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살면서 못다한 공부도 하고 쉽지는 않겠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장애인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같은 뇌성마비 장애가 있는 친구들을 돕는 일도 하고 싶습니다. 왜 변호사냐고요? 나처럼 시설에서만 갇혀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지금 저를 도와주고 있는 변호사처럼...

박수광 음성 군수님!

많이 어렵겠지만 우리의 생각과 입장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에서 나와 공부도 하고 싶고, 변호사도 되고 싶습니다. 어려운 꿈이지만 저도 꿈을 갖고 살고 싶습니다. 시설장애인이 아닌 박현, 불쌍한 장애인이 아닌 당당한 시민으로 살고 싶습니다. 제가 시설에서 나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4.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환경조성

## 1)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국제장애인권리협약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07 년 4 월), 국제장애인권리협약 비준('08 년 12 월)
- 장애인 인권 관련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한국의 장애인정책은 인권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일대 전환을 가져오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환경(물리적, 사회적)을 광범위하게 개선하는 성과를 기대함

## 2) 자립생활 지원정책

- 자립생활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장애인복지법, '07 년)
- 자립생활센터 지원(정부 전국 20 개소, 지자체 추가지원 55 개소)
  -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정보제공 및 의뢰, 권익옹호, 지역사회 환경개선,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등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 3)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및 요양제도

- 최중증장애인 약 25,000 명에게 월 40~180 시간동안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사업을 실시하여 자립생활의 가능성 제고
  - 활동보조서비스는 최중증장애인의 원활한 신변처리 및 일상생활과 아울러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가능케 하는 획기적인 제도로서 평가됨
  - 시설에 의존해 있던 최중증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의 독립적인 생활에 도전할 수 있는 긴요한 서비스
  - 장애인지원서비스 중 최초로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운영되어 장애인의 선택권을 신장시킴

## 4) 장애인 편의시설

-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물리적 환경의 구축
  - 경사로, 장애인용화장실, 점자블럭, 엘리베이터 등의 편의시설 설치
- '08 년 전국 실태조사 결과 편의시설의 설치율이 77.5%이고, 적정설치율은 55.8%에 불과해 향후 본격적인 개선책이 요구됨

## 5) 주택

- 무주택 장애인의 공공임대주택 청약자격 및 가점 부여
- 생활시설 입소 장애인의 단독세대 및 무주택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탈시설 욕구가 있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지 확보의 걸림돌이 됨
  - 생활시설 입소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의 절대적 우선 조건은 주택의 확보

6)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등의 시설이 재가 장애인을 위한 재활서비스와 각종 지원프로그램 운영
- 치료, 교육, 훈련 등의 기초재활서비스 기능 중심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네트워크를 활용한 사례관리 기능의 강화가 요구됨
  - 그동안 축적된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인적·물적 인프라가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지원의 기능으로 재편되어야 함

## 5. 향후 과제

- 장애인의 욕구와 능력에 따라 장애인의 선택이 보장되고 그에 걸맞는 시설 및 재가지원의 다양한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 장애인판정 및 전달체계의 개편
  - 시설 및 재가서비스의 표준화
  - 공공주택의 보급 및 지원 등의 지역사회 거주지원 정책의 강화
  - 요양 및 활동보조서비스 등의 합리적인 확대

# 장애인 웹 접근성[5]

## 1. 도입

웹 2.0 시대를 맞이하여 요즘 접근성은 웹 개발에 있어서 최고의 화두 중 하나이다.
접근성을 높이는 개발을 위해서는 표준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웹 접근에 있어서 소외계층인 장애인의 요구사항을 듣거나 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한 사례로 짚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IT 강국임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웹 접근성을 먼저 갖추는 노력을 얼마나 했는가? 이다. 이러한 자세야 말로 보다 성숙된 사회의 자세일 것이다. IT 산업은 비장애인에게는 고용과 수익을 창출하는 수단이면서도 장애인에게는 장애를 극복하게 하는 중요한 재활수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 2. 장애인 웹 접근성 차별 실태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 1) 실태 1

최근 인터넷 쇼핑이 각광받고 있지만 장애인을 위한 이용 방법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아 인터넷 쇼핑에서 조차 '장애인 차별대우"가 심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96 년초부터 시중 대형 백화점들이 앞다투어 '인터넷 쇼핑몰"이란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만들어 집안에서 마우스 클릭으로 각종 상품을 주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장애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시각.지체 장애인들의 인터넷 사용을 돕는 터치 스크린(화면에 손을 대 이용하는 장치), 음성합성기(화면상 문자를 음성으로 바꿔주는 장치), 점자키보드 및 점자프린터 등 장애인 보조장비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롯데, 신세계, 현대 등 유명 백화점의 인터넷 쇼핑몰은 화면에 떠있는 문자나 그림 등을 장애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점자나 음성형태로 바꿔주는 장치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 무엇보다 화면이동이나 상품주문 등 대부분 작업이 마우스로 하게 돼있어 시각장애인이 이용하는 점자키보드로는 아예 인터넷 쇼핑몰의 접근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다. 백화점 관계자는 "전자상거래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지만 아직까지 장애인을 위한 보조장치나 지원프로그램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인터넷상의 장애인 차별대우"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미국에서는 장애인들과 해당업체간에

[5] 작성: 강민기

법적소송까지 벌어지고 있다. 미국의 전국시각장애인연합회(NFB)는 최근 세계적 인터넷운영업체인 '아메리카온라인사"의 쇼핑몰 사이트가 시각장애인들의 이용 자체를 막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우리 정부도 뒤늦게 올해부터 2003 년까지 100 억원을 투입해 장애인을 위한 인터넷 보조장비 구입과 컴퓨터교육 등을 지원키로 했지만 전체 장애인이 혜택받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관련, 외국과 같이 장애인도 일반인처럼 편안하게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할수 있도록 유통업체 등 관련기업들이 장애인 보조프로그램이나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규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출처 : 한국일보

## 2) 실태 2

정부가 장애인들이 인터넷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웹 접근성 지침'을 내렸지만 제주지역 공공 기관들의 웹 사이트는 팝업창 등을 이용해 각종 홍보 활동을 하고 있어 장애인의 눈을 가린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주지역 모 경찰서 홈페이지를 보면 3 개의 홍보성 팝업창이 있어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막고 있다. 팝업창인 경우 텍스트에 대한 별다른 구두 설명이 없기 때문에 시각 장애인에게는 아무런 내용이 없는 창들이 떠있는 셈이 된다.

이 밖에도 청각 장애인이 도서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 모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배경음악이 깔려 있거나 동영상이 자동으로 뜨게 되면 상당히 곤란한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 제주지역에서 웹 접근성을 평가하는 한국정보화진흥원 웹 접근성 연구소의 인증을 받은 사이트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한 곳 뿐이다.

장애인인권포럼 관계자는 "장애인도 일반인처럼 평등하게 인터넷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배려한 것이 웹 접근성의 취지인데 상당수 공공기관들이 웹 사이트를 시각효과나 디자인만을 고려해 운영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 년이 지났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이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접근할 때 장애 때문에 제한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4 월부터 공공기관의 웹사이트에서 장애인들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지침'이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웹 접근성 지침에 따르면 시각 장애인들이 자활보조 기기인 '스크린 리더' 등으로 웹 사이트의 정보를 소리로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미지로 만든 팝업창이나 플래시 사용은 엄격히 제한된다. 동영상은 자막을 제공해 청각장애인들이 문자 정보를 이용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출처: 제민일보

### 3) 실태 3

설, 추석, 크리스마스 등 연휴 극장가에서는 최신 영화를 보러오는 수많은 인파로 붐빈다. 하지만 명절 날 또는 연휴에 극장가를 자유롭게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청각장애인들이다. 청각장애인들에게는 본인이 원하는 영화를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관람하기란 좀처럼 쉬운일이 아니다. 자막 상영이 되지 않는 한국 영화가 많을 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화 상영은 영화관의 이벤트성 행사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 영화를 상영하는 곳은 전국을 통틀어 13 곳 정도로 전국 영화관 1975 여개 의 7%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며 이마저도 영화제작자 및 극장주들은 비용상의 문제를 들어 기피하고 있다. 비단 영화 뿐 만이 아니다.

지난 6 월 국회에서는 방송법 일부 개정을 통해서 방송사로 하여금 장애인 시청자를 위한 방송편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원하는 것은 비장애인들과 똑같은 프로그램을 똑같은 환경에서 볼 수 있는 것이지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별도의 공간을 제공하라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영화 및 방송 매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것이 정말 비용상의 문제일까?

미국에서는 지난 2010 년 21 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성 법 – the 21st Century Communications and Video Accessibility Act (CVAA) 을 제정하였다. 기존의 미국 장애인 법 ADA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 및 통신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을 뛰어 넘어 방송 관련 접근성 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통신 환경에서의 장애로 인한 정보 격차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기존의 미국 장애인 법의 경우에는 온라인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차별에 대한 규정이 법문상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늘 논란이 되어 왔었다. 하지만 이법의 제정과 함께 인터넷 환경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및 차별 금지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게 되었고 미국의 영화사 및 인터넷을 통한 영상물을 보급하고 있는 유투브등 온라인 업체들이 발빠른 대처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가장 큰 예로 지난 8 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에서는 21 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성 법 (CVAA)을 준수하기 위해 미국 영화 텔레비전 기술인 협회(Society of Motion Picture and Television Engineer, SMPTE) 에서 제정된 온라인 비디오 영상물 자막처리에 관한 표준을 모든 영화사 및 방송 관련 산업에서 준수할 것을 권고하였다.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장애인들의 영상물 접근성에 대한 접근성 표준을 영화 및 방송 영상물 제작사의 최고 기술진들로 이루어진 협회에서 직접 제정하고 이를 국가 표준으로 채택했다는 사실이다. 국내에서 처럼 정부 기관 주도로 접근성에 대한 표준을 만들어 사업자들에게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및 기업체에서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사회의 의무로 인식하고 직접 개발에 나선 것이다.

이번 방송 통신 영상물 접근성에 관한 규정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동영상의 자막 처리 기술을 통일화 함으로써 각종 미디어 플레이어 및 영상물의 자막 처리 변환을 보다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기존의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국가에서도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표준을 미국 표준으로 체택함으로써 전 세계 장애인들의 동영상 접근성을 높이도록 한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겠다.
현재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자막 처리 기술은 영화 상영시 사용되는 프로젝터에 자막을 넣어 상영하는 방법과 스크린에 별도의 자막 처리 영상 디스플레이를 설치하는 방법 그밖에 개인 관람자들을 위한 별도의 자막 처리 장치를 탈 부착하는 방법이 있다. 미국의 도레미 시네마(Doremi Cinema)라는 극장용 기기 개발 업체는 최근 캡티뷰(CaptiView) 라는 개인용 영화 자막처리 장치를 개발해서 큰 주목을 끌고 있다. 이 기기의 경우에는 기존의 영화관 의자에 별도의 자막 처리 장치를 부착하고 무선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자막을 관람자가 본인의 영화 감상시 별도의 화면을 통해 원하는 각도로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이밖에도 미국 영상 접근성 그룹(Media Access Group)에서 개발한 모픽스(Mopix)의 경우에는 투명한 화면에 자막을 띄워 영화 감상을 돕는 기기로 영화 화면 전체를 빠짐없이 관람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으로 알려져 있다.

해외 영화 제작사 및 영상 미디어 관련 기업 들은 자발적으로 청각 장애인들의 영화 관람을 위한 접근성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들은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관람객들을 똑같은 고객으로 생각하는 기업의 윤리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비용을 이유로 내세우며 장애인 접근성에 관한 사항을 외면시 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보고 배워야 할 점이다.

출처: 에이블뉴스(ablenews.co.kr)

## 3. 장애인 웹 접근성 차별 해결방안

미국 서니베일에 있는 저희 연구소에서는 개발자와 디자이너가 모두 눈을 가리거나 손을 쓰지 못하는 상태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몸으로 직접 느끼는 것이죠." 야후에서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 정책을 총괄하는 빅터 차란 포괄적디자인팀 수석매니저는 이렇게 말했다.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 노인 등 정보 취약 계층이 인터넷에서 차별 없이 다른 사용자와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차란 수석매니저는 "기술은 이미 충분히 있지만 개발하는 사람들이 실제 이용자 경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이런 원리는 모든 기술과 서비스 개발, 마케팅에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애인으로서 인터넷을 활용해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정말 고맙다. 내가 세상 보는 눈이 달라졌다"며 감동했다고 전했다. 차란 수석매니저 자신도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실천할 수 있었다. 차란 매니저는 1994 년 맹인학교에 다니면서 PC 를 처음 접한 후 인생의 큰 전환기를 맞았다. PC 를 통해 비장애 친구들의 도움 없이도 전공서적을 읽는 등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2005 년 야후에 합류한 이후 웹 접근성 전도사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PC 스크린에 떠 있는 문자를 읽어주는 스크린리더 등을 야후의 더 많은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데 일조했다. 차란 수석매니저가 일하는 연구소 이름은 원래 '야후 접근성 연구소'였지만 최근 포괄적디자인팀으로 바꿨다. 접근성 개념을 재정립하기 위한 개명이었다. 웹 접근성이 야후의 모든 활동에 내재될 수 있도록 한다는 생각이다.

한국의 웹 접근성이 취약하다는 부분에서는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한국에서는 2009 년 발효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웹사이트의 웹 접근성 준수를 의무화하고, 2015 년까지 개인 홈페이지를 뺀 모든 국내 웹사이트는 장애인 접근성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웹 접근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는 "미국에서는 최근 '21 세기 비디오 접근성법(21 Century Video Accessibility Act)이 통과됐다"면서 "이미 1990 년 장애인법이 제정돼 접근성 개념이 확립됐지만 최근 들어 정보가 모두 인터넷으로 모이면서 새로운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인식 아래 미국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앱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프롤로큐오투고(Prolo-quo2Go)는 iOS 기반 기기에서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또 비즈위즈(VizWiz) 애플리케이션(앱)은 시각장애인들의 눈이 돼주는 앱으로 카메라를 통해

이미지를 전송하고 질문하면 자동 이미지 처리 장치, 익명의 웹 사용자, 소셜네트워크 멤버들의 정보를 결합해 질문에 대한 빠른 답변을 해준다.

차란 수석매니저는 앞은 보지 못하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새로운 음악 세상을 열어가고 있다. "음악 영역은 웹 접근성에 큰 문제가 있다"는 그는 "이를 개선하는 데 작은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출처: 매일경제신문

# 4. 장애인 웹 접근성 준수 실태조사

한국 시각장애인 연합회 부설 한국 웹 접근성평가센터는 2009 웹 접근성 준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006 년부터 매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웹 접근성 준수 실태조사를 실시해오던 연합회는 2009 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첫 해를 맞이하여 그 대상 사이트를 확대하여 공공기관 뿐 아니라 정보취약계층의 욕구가 많은 교육, 문화예술, 의료기관 등 총 240 개 사이트를 조사했다. 행정안전부가 2009 년 3 월에 고시한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1.0 기초의 '웹 접근성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 을 평가기준으로 한 이번 조사결과는 평균 준수율 71.0%로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분야는 향상된 반면, 나머지 분야는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분야별 평균을 보면 공공기관 78.5%, 교육기관 58.7%, 문화예술기관 68.8%, 의료기관 61.0%, 공사, 공단 74.5%로 의료기관, 교육기관, 문화예술기관 등은 정보취약계층의 이용 욕구가 큰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 대한 접근성이 미비하여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사이트 중 접근성이 가장 우수한 사이트는 준수율 96.2%인 국회도서관 사이트이며 그 다음으로는 행정안전부 94.6%, 경상남도교육청 94.1%, 대한법률구조공단 93.5%, 연세의료원, 중소기업진흥공단 93.3% 순이다. 반면 준수율이 가장 낮은 사이트는 서울체신청 24.1%로 조사되었으며 경상남도의회 35.9%, 경남대학교 36.9%, 한국자산관리공사 37.1%, 아주대학교병원 37.6%, 전남대학교병원 38.7% 등으로 조사되었다.
출처: (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5. 장애인 차별 금지법상의 웹 접근성 향상의 문제점.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정보에 접근하는데 어떠한 장애물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기본 취지하에 진행된 법안으로 웹 사이트 제작 시 장애인들도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술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웹 사이트를 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웹 접근성이라 하여 '누구라도, 언제라도, 어디서든, 어떤 디바이스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사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이 2 가지 단어는 종국에는 '웹의 기본을 지키자'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2009 년 3 월 17 일 발표한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식의 용이성 (Perceivable)

- 이미지의 의미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 배경 이미지가 의미를 갖는 경우, 배경이미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 동영상,음성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수단(자막, 원고 또는 수화)을 제공해야 한다.
- 색상을 배제하여도 원하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색상 이외에도 명암이나 패턴 등으로 콘텐츠 구분이 가능해야 한다.

2) 운용의 용이성 (Operable)

- 서버축 이미지 맵을 제공할 경우 해당 내용 및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대체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 프레임을 제공할 경우, 해당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제목(Title,속성) 을 제공해야 한다.
- 깜빡이는 콘텐츠를 제공할 경우, 사전에 경고하고 깜빡임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 모든 기능을 키보드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링크를 건너뛸 수 있도록 건너뛰기 링크(Skip navigation)를 제공해야 한다.
- 시간제한이 있는 콘텐츠를 제공할 경우, 시간제어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새창(팝업창 포함)을 제공할 경우, 사용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3) 이해의 용이성(Understandable)

- 데이터 테이블을 제공할 경우, 테이블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제목, 요약정보 등)를 제공해야 한다.
- 데이터 테이블을 제공할 경우, 제목 셀과 내용 셀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 해당페이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페이지 제목(Title)을 제공해야 한다.
- 콘텐츠는 논리적인 순서로 구성되어야 한다.
- 온라인 서식을 제공할 경우, 레이블(Label)을 제공해야 한다.

4) 기술적 진보성(Robust)

- 애플릿, 플러그 인(Active X, 플래시) 등 부가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자체적인 접근성을 준수하거나 사용자가 대체 콘텐츠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마크 업 언어로 구현할 수 있는 기능(링크, 서식, 버튼, 페이지, 제목)을 자바 스크립트로만 구현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면 위의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은 알았지만 어떻게 해야 이것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일까?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서 웹 사이트 한번 만들기는 쉽다. 현재 권고안 대상인 공공기관의 경우, 이것을 바탕으로 웹 사이트 구축 프로젝트를 다시 띄웠고 해당 웹 사이트 제작 업체들은 공공기관에서 이를 바탕으로 웹 사이틀 만들 것을 주문하기만 하면 된다. 당연히 해당 웹사이트 제작 업체들은 해당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사이트 내용을 열심히 만들 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여기까지 뿐이다. 해당 웹사이트 제작 업체가 사라지게 되면 보통 운영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시는 실무자들이 이 가이드라인을 염두에 두고 준수하지 않으면 웹 사이트는 점차 '장애인들을 차별하는 웹 사이트'로 점점 변해가게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도 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웹 접근성 연구소(http://www.wah.or.kr/)'가 있어 여기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주로 취급하고 있으며 교육/세미나 그리고 웹 접근성 자동평가도구까지 함께 제공하고 있다.

웹 접근성이건 장애인차별금지법이건 상관 없이 모든 것은 '기본으로 돌아가면' 해결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미지에는 반드시 ALT 태그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입력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고, 프레임이나 이미지 맵이나 플래시 등과 같은 사람을 조금 '편하게 해주는 것들'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고 기본으로 돌아가서 한 장 한 장 그리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면 웹 접근성을 잘 준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크게 3 가지 항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웹 사이트 운영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웹 접근성이 왜 나왔는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왜 나왔는가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나라에서 권고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열심히 인지하고 웹 사이트 운영 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수동 검사 필요'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시스템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웹 접근성 품질마크를 취득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이를 실제로 사용하는 장애인들은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만든 시점에서는 문제 없겠지만, 그 이후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웹 접근성 연구소와 같은 곳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곳을 지적하고 해당 웹 마스터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웹 접근성 연구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검사 도구는 1 회성 강한 도구인지라 매일매일 공공기관 웹 사이트 체크해서 문제가 되는 곳들을 바로 공개해서 해당 웹 마스터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심적 부담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컨텐츠 생산하는 곳에서부터 웹 접근성을 고려해야 한다. 앞에서는 잘 이해하고 만들어진 사이트에 대해서 잘 검사하고 이를 잘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즘 대부분의 웹 사이트는 전문 웹 사이트 관리 프로그램인 컨텐츠관리시스템을 사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관계로 이러한 솔루션에서 웹 접근성 체크 도구와 함께 연동해서 컨텐츠 생성 단계에서부터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이미지 입력했는데 ALT 태그를 입력하지 않았으면 컨텐츠가 아예 등록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컨텐츠 생성하는 곳이나 디자인 혹은 프로그램 코드 관리되는 곳뿐만 아니라 생성한 웹

페이지 전체에 걸쳐서 필요에 의해서 검사를 하고 이 내용을 컨텐츠 생성자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자들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이드라인에 어긋난 내용들이 양산되어 결과적으로 완전히 가이드라인에 어긋난 웹 사이트로 재탄생! 하게 될 것이다.

[출처] 웹 접근성과 장애인차별금지법 그리고 컨텐츠관리시스템|작성자 이 히

# 6. Q&A

1) 2008 년 4 월 11 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우리사회는 장애인 전용극장설립 추진, 장애인 전용 방송프로그램 신설 장애인전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장애인의 웹 접근성 향상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 각계각층의 노력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2) 미국, 유럽 등 외국에서는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장애인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제품 개발, 홍보, 투자를 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 기업에서는 비용, 사회적 여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장애인의 웹 접근성 향상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적극적인 장애인 웹 접근성 강화정책이 기업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이미지 개선, 인지도 상승 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3) 2008 년 4 월 11 일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우리 정부도 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하거나 보완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4) 2008 년 4 월 11 일부터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다. 4 년차로 접어든 현 시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들의 웹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좀 더 보완하거나 수정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5) (사)제주장애인 인권포럼은 웹 와치 사업단을 발족하고 장애인 스스로의 힘으로 장애인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비단, 제주도 뿐 만이 아니라 서울, 경기 등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에서도 이러한 장애인 스스로의 힘으로 이러한 정보접근 차별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가? 있으면 구체적인 활동내용을 소개해 줄 수 있는가?

## 2011 인권대학 이슈과정 "내 안의 차별과 맞짱뜨기"와 함께 한 사람들

강민기, 김녹지, 김무진, 김시내, 김지연, 김지운, 김지환, 김한나, 김혜진, 맹업순, 박은경, 박진, 백가을, 여지우, 원예진, 윤재훈, 이미옥, 이은정, 이정민, 이정훈, 정다예, 정상은, 조명기, 조인영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_박진옥,박서연
차별금지법제정연대_일란,타리,훈창

모두모두 수고하셨습니다^^